

2012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3. 2

연구위원 천창민
연구위원 이현정



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서 언

2012년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도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유럽 재정위기와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코스닥시장은 물론 유가증권시장에서도 일평균거래대금이 급감하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산업에 유래 없는 한파가 몰아쳤던 한해였다. 더욱이 총선과 대선 등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이슈도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테마주 등의 이상급동종목에 대한 시장 건전화 방안을 마련해 불공정거래의 감시를 강화 등 자본시장에 대한투자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자본시장 관련 법률 및 제도의 다양한 제·개정 작업이 추진되었다.

우선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된 개정상법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지난 4월 상법시행령을 개정하고 구체적 사항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물출자의 검사인의 조사, 보고의 면제범위 구체화와 사채발행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사채관리회사와 준법통제 및 준법지원인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했다. 이어 6월 자본시장법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소액공모제도에 따른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고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를 도입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대응을 마련했다. 또한 PEF의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차입한도를 확대하였다. 12월에는 전자단기사채법시행령이 제정되어 2013년 1월15일부터 전자단기사채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투자은행(IB)육성을 위한 핵심법안이었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현재 장외과생상품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집중청산기관(CCP) 도입 등 일부 안전만이 의결된 채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

이 보고서는 종전과 같이 2012년에 이루어진 자본시장과 관련한 법률과 규제의 제·개정 사항을 개관하고 본문과 부록의 이원적 체제로 편성되어 있다. 본문의 경우 자본시장·금융투자업·감독행정·상장법인 등 각 분야별

로 분류하여 수록하였으며, 부록의 경우 관할 제·개정 기관을 중심으로 법령·금융위원회규정·한국거래소규정·금융투자협회규정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연구원의 천창민 연구위원과 이현정 연구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저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그리고 원고 정리와 편집을 담당한 박미영, 주혜림 연구조원에게도 감사드린다. 이 보고서가 우리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

2013년 2월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김 형 태

목 차

I. 자본시장	1
1. 주식시장	1
2. 채권시장	25
3. 파생상품시장	44
4. 예탁, 전자등록, 결제, 청산	63
5. 기업공시	66
II. 금융투자업	83
1. 금융투자회사	83
2. 집합투자기구	124
3. 헤지펀드	126
4. 부동산투자회사	127
III. 감독행정	133
1. 법적규제기관	133
2. 자율규제기관	133
IV. 상장법인	145
1. 합병	145
2. 상장, 재상장, 상장폐지	146
3. 신성장동력기업	162
4.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	164
5. 업무관리와 재무제도	180
V. 기타	183

<부 록> 규정별 변경내용

I. 법령 등	193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3
2. 신탁법 시행령	196
3. 상법 시행령	198
4.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3
II. 금융위원회 규정	207
1. 금융투자업 규정	207
2.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217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20
III. 한국거래소 규정	221
1.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221
2.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24
3.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229
4.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33
5.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237
6.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239
7. 유가증권시장 상장심사 지침	241
8.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243
9.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46
10.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47
11.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52
12.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256

13.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258
14. 코스닥시장 상장심사 지침	260
15.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261
16.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62
17. 시장감시규정	270
18.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270
19. 회원관리규정	276
20.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 업무규정	277
21. 전문평가기관제도 세부운영기준	292
22. 정보보호관리지침	293
23. 소송지원 운영지침	293
24. 분쟁조정규정 시행세칙	294
25. 공익 신고자 보호 및 포상에 관한 지침	294
26.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기준	295
27. 증권 및 관련금융상품 표준코드 관리기준	296

IV. 금융투자협회 규정 297

1.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97
2.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305
3.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311
4.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314
5.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322
6.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325
7.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326
8.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전담중개업자 모범 규준	326
9.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업무관련 대외활동 모범규준	328

10.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330
11. 기업공개 수요예측 모범규준	333
12. 파생결합증권 신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335
13. 파생결합증권의 발행 및 운용에 관한 모범규준	339
14.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342
15. 금융투자회사의 표준윤리준칙	345
16.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346
17. 금융투자회사등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 규준	348
18.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349
19. 신용거래 리스크관리 등을 위한 모범규준	351
20. 적격기관투자자 거래시스템 운영규정	352
21. 부동산 PF 리스크관리기준 표준안	354
22.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354
23.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355
24. 최종호가수익률 공시를 위한 수익률 보고 관련 기준	357
25. 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를 위한 전자문서 관리 모범 규준	360
26.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관리지침	362

I. 자본시장

1. 주식시장

- 「시장감시규정」 개정에 따라 매매거래정지 사유 중 시장감시위원회 요청이 있는 경우의 근거 조문을 변경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25조 1항, 42조 9항 : 2012/3/7 개정, 3/12 시행)
 - 개정 전 25조 1항 5의2는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요청된 경우”라고만 하였으나, 개정규정은 시장감시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변경하고 단기과열종목지정은 매매거래정지 사유에서 제외

- 호가의 적합성 등 점검항목에서 단일가매매 참여호가 접수시간의 경우 최유리지정가호가, 최우선지정가호가 및 조건부호가의 입력 제한을 제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2조의2 5호 나목 : 2012/3/8 개정, 3/9 시행)

- 「시장감시규정」 개정에 따라 매매거래정지대상을 시장감시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종목으로 개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35조 1항 : 2012/3/8 개정, 3/12 시행)

- 호가의 적합성 등 점검항목에서 단일가매매 참여호가 접수시간의 경우 최유리지정가호가, 최우선지정가호가 및 그 밖의 호가(경쟁대량매매호가 제외)의 입력제한을 제외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8조의3 : 2012/3/8 개정, 3/9 시행)

-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간외대량매매의 방법으로 자기주식 매매를 위탁받은 회원에 대한 자료제출 근거 규정을 마련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4조 1항 : 2012/3/8 개정, 3/12 시행)
 - 이때 회원사는 호가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시장감시규정」 개정에 따라 대용증권으로 지정되는 투자위험종목 해당 조문을 정비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44조 : 2012/3/8 개정, 3/12 시행)

- 신용거래 금지종목 확대
(신용거래 리스크관리 등을 위한 모범규준 II.2.(2) : 2012/4/1 개정 · 시행)
 - 기존 신용거래 보증금률을 상향하였던 것을 거래소의 투자주의종목 지정 시 지정일로부터 5거래일 동안 신용거래 매수를 불가능하도록 개정

- 신용거래용자의 최저보증금률을 40%에서 45%로 상향
(신용거래 리스크관리 등을 위한 모범규준 II.2.(3) : 2012/4/1 개정 · 시행)
 - 신용거래용자의 리스크 관리 필요성에 따라 최저보증금률을 40%에서 45%로 강화함

- 임의처분대상 주식수량 산정방법에 있어 임의처분 요건을 구체화함
(신용거래 리스크관리 등을 위한 모범규준 II.5.(4) : 2012/4/1 개정 · 시행)

- 기존 담보유지비율 미달 등에서 만기 미상환, 담보유지미달, 이자·매매수수료 및 제세금의 연체 등으로 규정함

- 담보 및 보증금으로 제공되는 상장주권 등의 평가를 신설
(신용거래 리스크관리 등을 위한 모범규준 II.5.(5) : 2012/4/1 개정·시행)
 - 당일종가로 평가함으로 원칙으로 하되 명시적인 투자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대용가 등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마련함
 - 단, 전산시스템 구축기간을 고려하여 본 개정사항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함

- 기세의 정의를 규정하는데 있어 기존 보통주를 보통주식으로, 우선주를 종류주식으로 변경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2조 : 2012/4/18 개정, 4/23 시행)
 - 상법이 종류주식의 발행을 허용함에 따라 기존 제출된 매수호가에 없는 것으로 보았던 보통주 기준가격의 10배를 초과하는 가격피리가 있는 우선주를 보통주식의 기준가격 10배를 초과하는 가격피리가 있는 종류주식으로 정비함

- 상장규정상 '주식 등'의 범위에 상환사채 및 교환사채 등을 포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조 17항 : 2012/4/18 개정, 4/23 시행)

- 보통주식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조 37항, 7조의2 1항 : 2012/4/18 개정, 7/23 시행)
 - 보통주식을 발행주식 중에서 상법상 종류주식을 제외한 주식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외국기업의 보통주식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

- 관리종목에 대해서도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8조의2 1항 : 2012/4/18 개정, 4/23 시행)
 -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이후 조기에 관리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잔여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기간만큼 해당 지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종목에 대해서도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을 허용함

- 종류주식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등 관련 내용을 마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9조 1항, 44조의2, 44조의3, 45조, 46조, 47조, 50조 : 2012/4/18 개정, 7/23 시행)
 - 종류주식의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사유 발생 시 매매거래정지의 근거를 신설함
 - 대상 종류주식의 상장폐지 시 당해 신주인수권증권 및 신주인수권 증서의 상장폐지 근거를 마련함

- 기세의 정의를 규정하는데 있어 기존 보통주를 보통주식으로, 우선주를 종류주식으로 변경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2조 : 2012/4/18 개정, 4/23 시행)
 - 기존 우선주에 대한 별도의 기세 불인정 내용을 상환주식, 전화주식 등을 포함한 종류주식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개정함

- 무액면주식 도입에 따라 규정을 정비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25조 1항 : 2012/4/18 개정, 4/23 시행)
 - 무액면주식의 분할을 수용하기 위하여 종래의 액면분할을 주식분할로 변경함

□ 적격기관투자자증권거래인력의 이용자 등록 및 등록해지

(적격기관투자자 거래시스템 운영규정 3조~4조 : 2012/4/13 개정, 5/2 시행)

- 적격기관투자자증권거래인력은 협회에 이용자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함
- 협회는 적격기관투자자가 등록해지를 요청하거나 이용자가 더 이상 적격기관투자자증권의 장외거래 또는 장외거래중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해당 등록을 해지할 수 있음

□ 적격기관투자자증권의 등록발행

(적격기관투자자 거래시스템 운영규정 5조 : 2012/4/13 개정, 5/2 시행)

- 적격기관투자자증권은 한국예탁결제원을 등록기관으로 하여 「공사채등록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며 발행인 또는 발행인지정 금융투자업자가 등록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 해당 등록서류에는 적격기관투자자증권 발행 관련 정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사본 또는 발행 결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무제표, 등록 또는 예탁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적격기관투자자증권의 보유자 현황에 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적격기관투자자증권의 거래는 등록신청서 제출일부터 1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개시

□ 적격기관투자자증권 거래시스템의 운영

(적격기관투자자 거래시스템 운영규정 6조~9조 : 2012/4/13 개정, 5/2 시행)

- 거래시스템은 프리본드와 동일하게 오전 7시부터 오후 20시까지 운영됨

- 적격기관투자자는 거래시스템을 통하여 적격기관투자자증권을 매매하여야 하며 협회는 거래시스템을 통한 매매거래 내역의 청산 및 결제와 관련하여 매매거래 당사자의 이행을 보장하거나 결제대금의 지급 및 적격기관투자자증권의 인도를 보증하지 아니함
- 협회는 규정 위반 또는 거래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해가 된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적격기관투자자의 거래시스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 적격기관투자자증권 거래 시 매도자의 고지의무 등

(적격기관투자자 거래시스템 운영규정 10조~11조 : 2012/4/13 개정, 5/2 시행)

- 협회는 등록신청서, 부속서류 및 거래시스템 이용제한에 대한 내용을 공지할 수 있음
- 적격기관투자자증권의 매도자는 매매거래 의사를 확정하기 전 다음 사항을 매수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 적격기관투자자증권은 적격기관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전매할 수 없다는 사실
 - 적격기관투자자증권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발행된다는 사실

□ 적격기관투자자증권거래 관련 자료제출 및 보고

(적격기관투자자 거래시스템 운영규정 12조~14조 : 2012/4/13 개정, 5/2 시행)

- 협회는 거래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적격기관투자자에게 거래시스템을 통한 체결결과 등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적격기관투자자는 투자판단을 위하여 적격기관투자자증권의 발행인에게 재무 및 사업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적격기관투자자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적격기관투자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적격기관투자자증권 보유현황을 익월 5일까지 협회에 보고하여야 함
 -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보고

- 적격기관투자자 중 적격기관투자자증권을 매매 또는 중개를 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는 보고자를 지정하여 월별 매매·중개 체결내역을 익월 5일까지 협회에 보고하여야 함

- 외국 법인에 관한 특례
(적격기관투자자 거래시스템 운영규정 15조 : 2012/4/13 개정, 5/2 시행)
 - 외국법인의 경우 현지의 법령이나 관행 등을 감안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함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기세 불인정 기준 강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6조의3 : 2012/4/20 개정, 7/23 시행)
 - 기존 우선주의 기준가격이 해당 보통주의 기준가격을 10배 초과하는 것을 종류주식의 기준가격이 해당 보통주식의 기준가격을 2배 초과하는 것으로 개정
 - 이는 종류주식이 거래체결 없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

- 이전상장하는 종목의 기준가격 결정에 대한 특례 삭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0조 : 2012/4/20 개정, 4/23 시행)
 - 이전상장하는 종목의 기준가격을 코스닥시장에서의 최종 매매거래 일종가로 일률적으로 규정

- ELW LP 변경에 대한 요건 및 절차의 마련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1조의3 : 2012/4/20 개정, 4/23 시행)

- 거래소가 인정하는 유동성공급자의 유동성공급업무 중단이 허용되는 사유는 투자자 보호 우려가 없는 경우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해당 주식워런트증권 유동성공급계약서상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유동성공급계약 해지 관련 서류
 - 해당 주식워런트증권의 발행인이 유동성공급자로서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계획서
 - 유동성공급자가 계약해지 시점부터 최소 3년 이상 주식워런트증권시장에서 유동성공급업무를 재개하지 아니한다는 약속서
 -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ELW의 LP를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거래소와 협의하여야 함

□ 개정 상법상 종류주식 및 무액면주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6조의3, 14조, 30조, 52조, 55조, 57조, 58조 별표 1, 별표 2 : 2012/4/20 개정, 4/23 시행)

- 기존 우선주에 대한 특칙을 종류주식에도 확대·적용하기 위해 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으로 개정함
- 무액면주식을 분할·병합하는 경우를 수용하기 위하여 액면분할(병합)을 주식분할(병합)로 변경함

□ 개정 상법상 종류주식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의 정비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조, 17조, 27조, 별표 1, 별표 2 : 2012/4/20 개정, 7/23 시행)

- 우선주 매수기세, 평가가격 및 기준가격 산정 등 기존 우선주에 관한 규정을 상환주식, 전환주식 등을 포함한 종류주식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변경

-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기세 불인정 기준을 강화하여 기존 우선주의 기준가격이 해당 보통주의 기준가격을 10배 초과하는 것을 종류주식의 기준가격이 해당 보통주식의 기준가격을 2배 초과하는 것으로 개정

□ 무액면주식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사항의 정비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0조, 17조, 23조, 별표 1 : 2012/4/20 개정, 4/23 시행)

- 무액면주식을 분할·병합하는 경우를 수용하기 위하여 액면분할(병합)을 주식분할(병합)로 변경

□ 투자자분류코드의 개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04조 1항 6호 : 2012/6/20 개정, 7/16 시행)

- 회원이 위탁자와 매매거래좌설정 시 확인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하는 사항인 투자자분류코드를 다음과 같이 변경
 - 기존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회사를 금융투자업자로 확대
 - 종합금융회사 급감에 따라 기존 종합금융회사 및 상호저축은행을 기타 금융기관으로 확대
 -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기구에 대한 분류에 공익성격의 비금융기관을 추가

□ 투자자분류코드의 개선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8조 2항 : 2012/6/22 개정, 7/16 시행)

- 기존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투자매매업자를 금융투자업자로 확대
- 종합금융회사 급감에 따라 기존 종합금융회사 및 상호저축은행을 기타 금융기관으로 확대

-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기구에 대한 분류에 공익성격의 비금융기관을 추가

□ 공모주식 배정이 제한된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개정하여 발행회사 및 그 계열회사 임원의 공모주식 청약을 허용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9조 4항 : 2012/6/28 개정, 7/1 시행)

- 기존 규정에 따르면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모주식을 배정할 수 없었음

- 동 규정은 이해관계인을 임원, 최대주주, 주요주주, 계열회사 및 그 임원,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 해당 개인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및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하고 있음(2조 9항)

- 공모가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결정되고 배정 또한 청약경쟁률에 따라 배정되므로 발행회사 및 그 계열회사 임원의 공모주 청약을 금지할 실익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허용

- 공모주식 배정이 제한된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임원 및 계열회사의 임원을 제외한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개정

□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 도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8조 2항 3호 : 2012/6/29 개정, 2012/8/30 시행)

- 증권을 공매도한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잔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한 경우 공매도 포지션(해당 증권의 보유수량을 초과해 매도한 수량) 등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함

- 개별 증권사가 투자자의 모든 정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투자자 본인에게 의무 부과

- 공매도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행위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잔고 개념의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임
 - 금융위기 이후 'IOSCO 공매도 규제원칙' 등에 따라 다른 나라들도 이미 공매도 보고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IOSCO에서는 국가별로 규제목적 및 시장여건을 감안, 자율적으로 적정한 수준을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보고의무 발생비율, 보고기한 및 주기 등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투자업규정에서 규정

□ 공매도 개념에 관한 조항 신설

(금융투자업 규정 6-30조 1항·3항 : 2012/8/30 개정·시행)

- 청약 또는 주문으로 인하여 해당 증권의 순보유잔고가 양수에서 음수로 변하거나 음수의 절대값이 증가하게 되는 매도거래를 공매도로 정의
 - 순보유잔고는 증권의 종목별로 보유총잔고에서 차입총잔고의 수량을 뺀 수량을 의미
- 보유총잔고 : 매도자가 순보유잔고를 산정하는 기준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수량을 합한 수량
 - 명의를 상관없이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증권의 수량
 - 법률의 규정이나 그 밖의 계약에 의해 타인에게 대여한 증권의 수량
 -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 등에 의해 타인을 위해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이 있는 증권의 수량
 - 그 밖에 법률의 규정이나 매매, 계약 등에 의해 인도받을 증권의 수량
- 차입총잔고 : 매도자가 기준시점에 인도할 의무가 있는 증권의 수량을 합한 수량
 - 기준시점 이전에 차입한 이후, 기준시점에 차입증권을 상환하지 않은 수량
 - 그 밖에 법률의 규정이나 매매, 계약에 의해 인도의무가 있는 증권의 수량
- 기준시점이란 매 영업일 24시를 의미

□ 공매도 포지션 보고대상 및 방법 신설

(금융투자업 규정 6-30조 2항·4항, 6-31조 : 2012/8/30 개정·시행)

- 보고대상 증권은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
 - ETF, ELW 및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거래 제외
 - 시장내 유동성 공급을 위한 시장조성행위로 인한 공매도 거래 제외
- 투자자의 일별 공매도 포지션(해당 증권의 보유수량을 초과해 매도한 수량)이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보고 의무화
 - 일별 공매도 포지션이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인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매일 보고를 통해 누락발생 방지
- 보고서 제출기한
 - 보고의무 발생일의 포지션 현황을 보고의무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오전 9시까지 보고
- 보고서 내용
 - 해당 증권에 관한 사항
 - 매도자의 성명, 주소, 국적,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투자등록번호), 연락처 등 인적사항(대리인의 경우는 대리인을 포함)
 - 매도자의 순보유잔고 수량 및 비율
- 보고서 제출방법
 - 인터넷망을 통한 전자통신의 방식에 따름
 - 단, 전산장애 등의 경우에는 모사전송(FAX) 등의 방식으로도 가능

□ 공매도 보고주체 및 공매도포지션 산정방식 신설

(금융투자업 규정 6-30조 5항, 6-31조 3항, 6-32조 1항 : 2012/8/30 개정·시행)

- 보고주체는 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별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모든 정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감안해 투자자 본인에게 보고의무 부여

-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전체의 관점에서 공매도포지션(해당 증권의 보유수량을 초과해 매도한 수량)을 산정하여 보고하는 것을 원칙
- 금융기관 내에서 조직별로 공매도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공매도 포지션은 법인 전체의 관점에서 산정하여 보고
- 다만, 펀드 등의 경우는 펀드별로 산정한 공매도 포지션을 합산하여 보고

□ 순보유잔고비율의 산정기준일 및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 명시에 관한 사항 등

(금융투자업 규정 2-22조, 2-23조, 6-31조 4항, 6-32조 2항, 6-33조 : 2012/8/30 개정·시행)

— 순보유잔고비율의 산정기준일

- 증권시장에서 증권을 매매한 경우 매매체결일
- 증권시장 외에서 증권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계약체결일
-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행사,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상장일 이전 제2영업일
- 교환사채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교환을 청구한 날
- 증권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는 경우 그 설정신청일, 환매로 인해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환매청구일
- 증권예탁증권의 계약해지에 따라 원주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이 확정된 날, 그 반대의 경우는 전환청구일
- 자본감소의 경우 변경된 주식의 상장일
- 위의 사항 외의 사유로 주식을 취득·처분할 경우 「민법」·「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법률행위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매도 주문의 수탁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할 때, 공매도 관련 법령의 준수여부를 확인 하도록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에 명시하도록 함

— 금융감독원장의 공매도 포지션 관련 자료요청권

- 독립거래단위를 운영하는 자의 운영내용과 보고 대상자의 순보유잔고 보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무차입공매도 적발자에 대한 공매도 주문 수탁요건 강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18조의2 3항 : 2012/9/19 개정, 10/30 시행)

- 무차입공매도 적발자의 공매도주문 수탁 시 차입계약서 징구대상 확대 및 징구기간 차등화
 - 차입계약서징구 대상을 기존의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 무차입공매도 규모에 따라 공매도 주문 수탁 시에 차입계약서 징구기간을 차등화
 - 무차입공매도가 10억원 초과 및 5일 이상인 경우에는 매도증권 사전입고의 경우에만 매도주문을 허용

<표 1-1> 규모 등에 따른 주문수탁 강화방안

누적규모 일수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1거래일	—	20일간 차입계약서 징구	40일간 차입계약서 징구
2~4거래일	20일간 차입계약서 징구	40일간 차입계약서 징구	60일간 차입계약서 징구
5거래일 이상	40일간 차입계약서 징구	60일간 차입계약서 징구	60일간 매도증권사전입고

□ 공매도잔고 보고의무 위반자도 무차입공매도 적발자와 동일하게 공매도주문 수탁요건을 신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18조의2 4항 : 2012/9/19 개정, 10/30 시행)

- 보고의무 위반 규모(기준은 일평균 금액) 및 기간에 따라 공매도 주문 수탁 시 차입계약서 사전 징구 또는 매도증권 사전입고 의무화 (요건은 앞의 표를 참조)

- 공매도잔고 보고제도의 도입에 따른 차입공매도호가 제한대상 확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17조 5항 : 2012/9/19 개정, 10/30 시행)
 - 기존의 차입공매도호가 제한대상에 공매도잔고 비중이 일정수준 이상인 종목도 추가
 - 법시행령(208조 2항 3호) 상의 순보유잔고 비율이 낮은 종목으로서 세칙이 정하는 종목

- 공매도호가 사후관리대상 확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18조의2 1항 : 2012/9/19 개정, 10/30 시행)
 - 결제일에 결제수량이 부족한 위탁자를 공매도호가 사후관리대상으로 했던 기존 규정에 결제지시서 미착 또는 하자의 경우도 사후관리대상으로 포함해 그 대상을 확대
 - 차입계약서 뿐만 증권보유잔고도 징구 자료에 추가

- 공매도 주문내용의 명확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18조의2 1항·2항 : 2012/9/19 개정, 10/30 시행)
 - “공매도 규정 준수”를 “소유하지 아니한 증권 또는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지 아니한 증권을 매도”로 바꾸어 의미를 명확하게 함

- 공매도거래에 대한 회원 수탁요건의 강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9조의4 3항, 42조 8항 3호 : 2012/9/19 개정, 10/30 시행)
 - 공매도거래 위반 전력자의 공매도 주문 수탁 시에 보다 강화된 의무 부과
 - 수탁요건은 유가증권시장의 공매도거래 수탁내용과 동일

- 공매도 포지션 보고 위반자에 대한 수탁절차 강화 신설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9조의4 4항~5항, 42조 8항 3호 : 2012/9/19 개정, 10/30 시행)
 - 공매도거래 위반 전력자에 준하여 포지션 보고 위반자에 대해서도 공매도 수탁 시 강화된 절차 적용

- 공매도 시장관리에 대한 사항 정비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9조의2 5항 1호의2, 9조의4 1항 : 2012/9/19 개정, 10/30 시행)
 - 종목별로 순보유잔고의 비율이 일정수준 이하인 종목에 대하여 공매도 호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결제수량이 충분하더라도 결제지시서 미도착 또는 하자 등으로 결제를 불이행한 위탁자를 공매도 관련 사후 점검대상에 추가

- 차입공매도 호가를 금지할 수 있는 대량 순보유잔고 종목을 구체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4조의3 : 2012/9/20 개정, 10/30 시행)
 - 최근 20 매매거래일 동안 발행증권총수 대비 법시행령(208조 2항 3호)에 따라 보고된 순보유잔고 비율의 일평균이 음수(-)로서 그 절대값이 5% 초과하는 종목

- 공매도 관련 그 밖의 조문 및 서식의 정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7조, 24조의2, 24조의3, 28조의2 : 2012/9/20 개정, 10/30 시행)
 - 차입공매도 확인방법, 차입공매도호가의 제한, 공매도호가의 사후 관리

□ 단기과열종목 지정기준 마련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106조의2 : 2012/10/17 개정, 11/5 시행)

— 단기간 내에 주가상승률, 거래회전율 및 주가변동성이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종목 및 시장감시위원회에서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으로서 매매거래정지를 요청한 종목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

- 주가상승률, 거래회전율 및 주가변동성 등이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
- 시장감시위원회가 매매거래정지를 요청한 종목
- 기타 사항은 세칙으로 위임

□ 단기과열종목 관리방안 마련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26조, 38조의2, 107조 : 2012/10/17 개정, 11/5 시행)

— 관리종목 등의 매매거래 정지

-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위한 냉각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일정기간 (1일) 매매거래를 정지
- 시장감시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감시위원회가 매매거래정지를 요청한 종목이 단기과열종목 지정 중인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를 미실시할 수 있음

— 매매체결방법

- 가격불균형을 유발하는 비정상적인 매매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별도의 매매방법(30분 단위 단일가매매)으로 거래를 체결

□ 단기과열종목 단일가매매 실시 근거 마련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23조 1항 3호 : 2012/10/17 개정, 11/5 시행)

— 주기적(30분 단위) 단일가매매 실시

□ 단기과열종목 지정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23조의2 1항 : 2012/10/17 개정, 11/5 시행)

— 주가상승률, 거래회전을 및 주가변동성이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종목과 시장감시규정에 의해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으로서 매매거래정지가 요청된 종목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

-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동안 중복지정 배제
- 지정 관련 세부사항은 세칙에 위임

□ 단기과열종목 매매거래정지 근거 마련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25조 1항 5호의2, 5호의3 : 2012/10/17 개정, 11/5 시행)

— 1일간 매매거래정지

— 단기과열종목 지정 중에는 경고·위험 종목에 따른 매매거래정지는 미 실시

□ 단기과열종목 지정기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33조, 133조의2 : 2012/10/22 개정, 11/5 시행)

— 단기과열종목 지정을 위한 주가상승률, 거래회전을 및 주가변동성 기준을 구체화하고 해당 기준의 계산방법을 마련

- 주가상승률 : 당일종가가 직전 40매매거래일 종가 평균의 100분의 130 이상
- 거래회전을 : 최근 2매매거래일 평균이 직전 40매매거래일 평균의 100분의 600 이상
- 주가변동성 : 최근 2매매거래일 평균이 직전 40매매거래일 평균의 100분의 150 이상

— 단기과열종목의 지정·지정예고 방법 및 지정 예외사유 등을 구체화

□ 단기과열종목 해제기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34조 : 2012/10/22 개정, 11/5 시행)

- 지정일부터 4매매거래일이 경과하는 경우 지정을 해제
 - 해당일 종가가 지정일 전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 지정기간을 연장하되, 연장기간은 총 10매매거래일을 초과할 수 없음

□ 단기과열종목 매매체결방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56조의2 : 2012/10/22 개정, 11/5 시행)

-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중 30분 단위 단일가매매 적용
 - 현행 코스닥시장 관리종목의 매매거래체결방법과 동일

□ 단기과열종목 매매거래정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40조 : 2012/10/22 개정, 11/5 시행)

- 단기과열종목 지정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

□ 단기과열종목에 대한 호가입력 제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4조 : 2012/10/22 개정, 11/5 시행)

- 조건부·최유리·최우선지정가호가 및 IOC·FOK 금지

IOC(Immediate or Cancel) orders

호가접수시점에서 호가한 수량 중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수량에 대해서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수량은 취소하는 조건

FOK(Fill or Kill) orders

주문 즉시 전부 체결시키거나 전부 체결되지 않으면 전부 자동취소되는 주문 조건. 따라서 FOK 주문을 낼 경우 지정가 주문이 지정가격에서 거래가 되었다 할지라도 고객의 주문서가 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단기과열종목 지정·지정예고 기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28조의2, 3 : 2012/10/26 개정, 11/5 시행)

- 단기과열종목 지정을 위한 주가상승률, 거래회전을 및 주가변동성 기준을 구체화하고 해당 기준의 계산방법을 마련
 - 주가상승률 : 당일종가가 직전 40매매거래일 종가 평균의 100분의 130 이상
 - 거래회전을 : 최근 2매매거래일 평균이 직전 40매매거래일 평균의 100분의 600 이상
 - 주가변동성 : 최근 2매매거래일 평균이 직전 40매매거래일 평균의 100분의 150 이상
- 단기과열종목의 지정·지정예고 방법 및 지정 예외사유 등 구체화
 - 위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10매매거래일 이내에 다시 세 가지 기준을 재충족(재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날의 종가가 기준일의 종가보다 높을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해당 종목의 지정예고가 가능

□ 단기과열종목 지정해제 기준 신설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28조의4 : 2012/10/26 개정, 11/5 시행)

- 단기과열종목 지정일로부터 4매매거래일 경과 및 지정일 전일종가 대비 당일 종가가 100분의 120 미만

- 종가는 각각 배당락, 권리락,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이 있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계산

— 연장기간은 총 10매매거래일 초과 불가

□ 단기과열종목에 단일가매매방식 적용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8조, 28조 : 2012/10/26 개정, 11/5 시행)

—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매매체결방식을 준용하여 30분 단위 단일가매매로 체결

- 기세 결정에 참여가 제한되는 호가 범위, 랜덤엔드 등을 관리종목과 동일하게 적용

□ 단기과열종목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30조 : 2012/10/26 개정, 11/5 시행)

— 시장감시규정에 따라 매매거래정지 요청을 받은 경우 : 1일

- 단, 이미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주가·회전율·변동성 요건에 따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 단기과열종목 지정일 1일

□ 수요예측 관련 위반금액기준 현실화 및 제재금 부과 대상 확대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17조의 2 5항 : 2012/10/26 개정, 11/1 시행)

— 기존은 미청약·미납입의 경우 위반금액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6~12개월간 수요예측참여를 제한

<표 1-2> 기존 수요예측 참여제한 내용

구분	적용대상		제재내용
수요예측 참여금지	미청약 · 미납입	위반 금액	100억원 초과
			1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12개월 이내 금지
			9개월 이내 금지
			6개월 이내 금지

- 지정기준상의 위반 금액을 현실화하여 대폭 감액(½수준)하고 위반 구간을 세분화함

<표 1-3> 개정 수요예측 참여제한 내용

구분	적용대상		제재내용
수요예측 참여금지	미청약 · 미납입	위반 금액	20억원 초과
			10억원 초과~20억원 이하
			2억원 초과~10억원 이하
			2억원 이하
			12개월 이내 금지
			10개월 이내 금지
			8개월 이내 금지
			6개월 이내 금지

- 기존 규정 내용은 운용사의 책임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그 피해(공모주 미배정)가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집합투자기구에서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만 일정요건 충족 시 제재금 부과가 가능했음
- 불성실 수요예측자에 대한 제재의 선택범위 확대 등으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과대상을 확대하고 부과요건을 폐지

<표 1-4> 부과대상과 부과요건의 신·구 대조표

구분	기존	개정
부과대상	집합투자기구	협회 회원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부과요건	해당 사유발생일 직전 1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가 없었던 경우	폐지

□ 외국인의 시장집중의무를 완화

(금융투자업 규정 6-7조 6항 : 2012/11/21 개정 · 시행)

- 외국인의 상장증권 장외거래는 단주의 매매거래나 상장수익증권의 매매거래 등에 한정하여 인정되었으나 6항을 신설하여 외국인의 상장증권 장외거래를 인정하고 그 절차와 거래 후 신고의무를 부과
 - 다만, 외국인의 상장증권 장외거래에 관한 일반조항을 신설했음에도 불구하고 6-7조 1항에서 상장증권의 장외거래에 관한 열거적 규정을 존치하고 있음

□ 회사가 원화와 외화 간 환전은 물론 외화와 외화간의 환전 및 송금업무까지 대행하도록 약관에 명시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6조 2호 : 2012/11/23 개정, 12/5 시행)

- 기존 약관이 회사가 외화증권의 매매 및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원화와 외화 간 환전만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 엔화를 보유한 고객이 미국시장에 참여하는 경우와 같이 외화증권의 매매 시 고객이 보유한 외화를 사용하여 다른 국가의 자본시장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국내 외국환거래법 상으로도 환전통화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약관은 회사의 환전 업무를 원화와 외화 간으로 축소하고 있었음
 - 또한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회사는 환전 및 송금업무를 일괄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약관은 송금업무를 생략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 필요

□ 환전업무의 실질반영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6조 2호~3호 : 2012/11/23 개정, 12/5 시행)

- 환전일을 고객이 매매주문하기 전에 지정한 날(매매주문일 또는 매매주문일 이전 영업일에 한함)로 변경

- 기존 약관은 환전일을 약정일(매매주문일의 익영업일)로 한정
- 적용환율을 회사와 외국환은행간 협의·결정한 환율 또는 회사가 별도로 제시하는 환율로 확대
 - 외환거래규정에 따르면 회사가 보유한 외화를 이용하여 고객의 투자 자금에 대한 환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약관은 회사가 외국환은행과 협의·결정한 환율로만 적용하도록 규정
- 환전일과 혼동되는 환전결제일 관련 내용은 삭제
 - 기존 약관에는 환전일 외에 환전결제일을 규정하여 회사의 업무 및 고객의 투자판단에 혼란을 초래

□ 외화증권에 대한 예탁·보관 관련 조문정비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7조 1항 : 2012/11/23 개정, 12/5 시행)

-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외화증권을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외국보관기관 중에 한국예탁결제원이 선임한 외국보관기관예탁을 원칙으로 함
- 외국법령 또는 관행 등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이 외국보관기관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외국보관기관 중에 회사가 직접 예탁할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하도록 함
 - 기존 약관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달리 외화증권의 경우에도 국내증권과 유사하게 회사에 혼합·예탁하도록 하고 회사가 이를 회사 명의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은 외국보관기관에 집중 예탁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었음

□ 권리행사 시 비용처리절차 마련 및 조문정비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8조 : 2012/11/23 개정, 12/5 시행)

- 각종 세금 등에 대하여 고객계좌의 예수금에서 우선 징수하고 잔액이 부족한 경우 고객에게 일정기간 내에 납부할 것을 최고
 - 최고 이후에도 고객이 미납할 경우 결제불이행 시 처리방법을 규정한 기존 약관 제4조를 준용

- 기존 약관은 외화증권의 권리행사 시 발생하는 각종 세금, 연체료 및 기타 부과금 등에 대한 징수 근거 미비로 고객과의 분쟁소지가 상존하고 있었음

□ 각종 수수료 납부일 정비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11조 : 2012/11/23 개정, 12/5 시행)

- 회사의 업무현실을 반영하여 각종 수수료 납부일을 매수의 경우 매매체결일, 매도의 경우에는 “고객 또는 회사의 외화예금계정에 입금일까지”로 변경
 - 기존 약관은 각종 수수료 납부일을 매수의 경우 약정일(매매주문일의 익영업일), 매도의 경우에는 외화가 예탁원의 외화예금계정에 입금된 날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회사는 매수의 경우 매매체결일, 매도의 경우에는 회사가 실제 수수료 차감이 가능한 “고객 또는 회사의 외화예금계정에 입금된 날까지” 징수하고 있었음

2. 채권시장

□ 적격기관투자자(Qualified Institutional Buyer : QIB)제도의 도입함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2-2조, 2-2조의2 : 2012/1/3 개정, 5/2 시행)

- 적격기관투자자는 국가, 한국은행, 은행, 금융투자업자, 예금보험공사 등의 전문투자자로 자금중개회사,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협회, 예탁결제원, 거래소, 금융감독원은 제외함
- 적격기관투자자가 발행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적격기관투자자 사이에서만 양도·양수되는 채무증권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등(자본시장법 시행령 10조 2항)의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채권상장법인, 공기업(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 5조 3항 1호) 또는 직전 사업연도말 총자산이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발행한 증권이 아니어야 함
- 금융위원장이 인정하는 거래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되어야 함

적격기관투자자(Qualified Institutional Buyer : QIB)

적격기관투자자 제도란 중소기업 등 국내 비상장기업 증권 및 해외기업 발행 증권을 적격기관투자자 사이에서만 거래되는 것을 전제로 발행기업의 발행·유통공시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임. 적격기관투자자 제도는 중소기업(신성장기업, 녹색기업 등)에 대한 자금조달기회를 확대하고 금융투자회사의 투자기능을 활성화하는 한편 국내 자본시장의 국제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함

- * 적격기관투자자의 범위 :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가운데 투자 전문성, 리스크 감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격기관투자자의 범위를 설정함
- * 적격기관투자자 증권 발행인 : 중소기업 등 비상장법인 및 비상장 외국법인
- * 적격기관투자자 증권 범위 : 중소기업의 주자금조달수단이 채권 및 주식관련 채권을 우선적으로 허용하고 주식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허용여부를 판단
- * 적격기관투자자 거래시스템 : 협회의 '프리본드' 시스템을 활용

□ 무보증사채의 수요예측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수요예측 실시예외를 규정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12조 : 2012/1/17 개정, 1/18 시행)

- 기존의 경우 시장수급이 아닌 발행회사에 의해 미리 결정되는 발행금리와 유통금리간의 차이로 인하여 인수회사가 양 금리 간의 차이를 부담하게 되는 문제 발생
 - 주관회사가 발행사로부터 채권을 비싸게(낮은 금리로) 인수한 후 수수료 범위내에서 인수가격보다 싸게(높은 금리로) 할인 매각하는 이른바 '수수료녹이기' 현상이 발생
- 무보증사채의 공모금리는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
- 단, 다음의 경우 수요예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 공모예정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
 - 전환사채, 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무보증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 공모예정금액의 전부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 무보증사채의 인수금리는 수요예측결과를 감안하여 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금리를 공모금리로 함
- 대표주관회사는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자신의 고유재산과 집합투자재산을 구분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여야 하며 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별 신청금리 및 신청수량 등의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본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7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 (부칙 2조)

□ 무보증사채 대표주관회사의 인수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주관업무 수행 금지 규정의 삭제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13조 2항 : 2012/1/17 개정, 1/18 시행)

- 기존의 경우 무보증사채의 대표주관회사는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인수회사의 실질적인 주관업무 수행 금지를 규정하였음
- 주관업무란 인수회사를 대표하여 발행회사와 인수조건을 결정, 청약업무 통할, 증권신고서 제출 등을 의미
- 하지만 실질적인 주관업무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고 그 위반여부 판단이 어려운데다 수요예측제도의 도입으로 공모가격 결정과정의 투명성이 제고됨에 따라 이를 개정
- 대표주관회사는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인수회사가 가장 많은 수량을 인수하도록 하거나 인수가격의 결정과정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안 됨

- 무보증사채의 주권회사 제한요건에 보유비율 산정 시 준용규정을 신설하면서 조합 등을 통해 간접보유하는 경우를 추가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13조 3항 : 2012/1/17 개정, 1/18 시행)

- 기존 무보증사채는 조합 등을 통하여 발행회사 또는 주권회사에 대하여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여도 이에 대한 보유비율 산정규정이 없어 주권회사 업무 수행이 가능하였음
- 이에 무보증사채의 경우에도 대표주권회사 제한 요건을 주식과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개정
- 본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31일 이후 대표주관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부칙 2조)

- 불성실수요예측참여행위에 무보증사채의 경우를 추가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17조의2 : 2012/1/17 개정, 1/18 시행)

- 이는 새롭게 마련되는 수요예측제도와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기관 투자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함 것임
- 대표주권회사는 무보증사채 공모와 관련하여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개월간 무보증사채 공모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를 허용하거나 공모무보증사채를 배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본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7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 (부칙 2조)

- 채권거래전용시스템 이용자 신고 부분과 호가보고책임자 신고 부분을 분리하여 규정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30호 : 2012/1/18 개정, 3/5 시행)

-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거래전용시스템 이용자의 신고서 서식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함

□ 금융투자회사는 무보증사채의 공모금리 결정을 위해 수요예측을 실시하여야 함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 2012/2/1 제정, 4/17 시행)

- 금융투자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고, 수요예측 참여자의 신청수량 및 가격 기재 시 착오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수요예측 참여자의 요구 시 금리대별로 희망물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금융투자회사는 수요예측기간 중 경쟁률은 비공개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펀드재산과 고유재산을 구분하여 접수하여야 함
 - 또한 공모금액 미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예측 종료 후 별도의 수요를 파악하여서는 안 됨
- 금융투자회사는 수요예측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발행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함

□ 금융투자회사는 공모금리를 결정하는데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 2012/2/1 제정, 4/17 시행)

- 금융투자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 및 가격평가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참여자의 금리결정 가중치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대표주관계약 체결 시 기재한 수요예측 및 공모금리 결정 방법으로 공모금리가 결정되면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발행하여야 함
- 수요예측 이전에 발행금리를 확약하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됨
- 인수회사는 수요예측 참여물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발행예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계산으로 인수할 수 없음
 - 수요예측 참여물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발행예정 금액에 미달하여 인수회사가 잔여물량을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유효 수요 중 가장 높은 금리 미만으로 인수할 수 없음

- 금융투자회사는 공모채권을 배정하는데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 2012/2/1 제정, 4/17 시행)

- 금리를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하여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하여야 함
-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 및 투자행태 등을 고려하여 공모채권 배정 시 가중치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금융투자회사는 다음과 같이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 2012/2/1 제정, 4/17 시행)

-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는 다음과 같음
 -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채권을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사채청약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 수요예측 참여 시 관련정보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 인수회사와의 이면 합의 등을 통해 사전에 약정된 금리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서 상기 사항에 준하는 경우
- 금융투자회사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수요예측 참여자에게 다음 사항을 충분히 고지하여 실제 배정받을 물량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함
 - 무보증사채 발행 시 일정기간 수요예측 참여가 제한되며 공모채권을 배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함

-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에 따른 일부 청산·결제 방법 개정 사항의 시행시점을 기존 2012년 2월 6일에서 2월 20일로 2주 연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부칙 1조·2조 : 2012/2/3 개정, 2/20 시행)

- 2012년 4월 15일 시행되는 개정상법을 반영하여 규정상의 수탁회사를 사채관리회사로, 수탁계약서를 사채관리계약서로 개정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2012/3/29 개정, 4/15 시행)
 - 상법이 수탁회사의 권한 가운데 사채관리 기능 부분을 분리하여 사채관리회사가 운용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한 것임

- 정책금융공사채권이 기존 산업금융채권을 대체함에 따라 채권사가평가 기준수익률(매트릭스)내 구분을 특수채 가운데 공사채 및 공단체에 속하였던 것을 독립적인 정책금융공사채권으로 분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44호 : 2012/4/3 개정, 4/9 시행)

- 사채발행 절차와 발행기준의 구체화
(상법 시행령 20조~24조 : 2012/4/10 개정, 4/15 시행)
 - 개정 상법은 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 및 상환사채, 파생결합사채의 발행을 허용하면서 사채발행의 내용 및 발행방법 등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상법 469조)
 - 이에 시행령은 각종 사채발행에 대한 세부내용을 마련함

	발행 절차
이익참가 부사채 (2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는 정관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에 정한 바 없는 이익참가부사채의 총액, 이익배당 참가의 조건 및 내용, 주주에게 이익참가부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이익참가부사채의 금액을 결정하여야 함 • 주주 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정관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그 가액과 참가 내용에 관하여 정하여야 함 • 회사는 이익참가부사채의 인수권을 보유한 각 주주에게 그 인수권을 가진 이익참가부사채의 액, 발행가액, 이익 참가의 조건 및 일정한 기일까지 이익참가부사채 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무기명식 주권인 경우 공고)하여야 함 • 회사는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시 납입완료시부터 2주 내에 본점 소재지에 이익참가부사채의 총액 및 각각의 금액, 납입금액,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과 이익 배당 참가의 조건 및 내용을 등기하여야 함
교환사채 (2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는 교환할 주식이나 유가증권의 종류 및 내용, 교환의 조건, 교환 청구기간을 결정함 • 주주 외의 자에게 교환사채 발행 시 그 상대방에 대한 정관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함 • 회사는 사채권자가 교환청구를 하는 때 또는 그 사채의 교환청구기간이 끝나는 때까지 교환에 필요한 주식 또는 유가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함
상환사채 (2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는 상환할 주식이나 유가증권의 종류 및 내용, 상환의 조건, 회사의 선택 또는 일정한 조건의 성취나 기한의 도래에 따라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상환한다는 뜻을 정하여야 함 • 주주 외의 자에게 상환사채 발행 시 그 상대방에 대한 정관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이를 결정함 • 상환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조건이 성취되는 때 또는 기한이 도래하는 때까지 상환에 필요한 주식 또는 유가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함
파생결합 사채 (2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는 상환 또는 지급 금액을 결정하는데 연계할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의 자산이나 지표, 해당 자산이나 지표와 연계하여 상환 또는 지급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을 정하여야 함 • 또한 시행령은 위임사항을 구체화하여 파생결합사채를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에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사채로 규정함(20조)

□ 사채관리회사 자격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상법 시행령 26조, 27조 : 2012/4/10 개정, 4/15 시행)

- 개정 상법은 사채모집 수탁회사의 권한 중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그 밖에 사채관리기능을 분리하여 사채관리회사에게 지정·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면서 사채관리회사의 자격에 대한 일부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였음(상법 480조의3)
- 이에 시행령은 사채관리회사의 자격으로 상법상 규정한 은행, 신탁회사 이 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산용사업부문, 신탁업자로서 일반투자자로부터 금전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투자매매업자로서 일반투자자에 대한 인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를 명시
- 또한 시행령은 사채관리회사 자격에서 배제되는 사채관리회사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최대주주, 주요주주 및 사채발행회사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회사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상법상 사채에 대한 전자등록제 도입에 따른 규정의 마련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15조 2항, 25조 1항, 29조, 31조 : 2012/4/20 개정, 4/23 시행)

- 전자등록된 채권에 대하여 발행권종을 구분하지 않도록 하고, 신규 상장신청, 변경상장신청 시 견양제출을 면제

□ 개정 상법상의 내용을 반영하여 무보증사채 발행인과 사채관리회사 간 동규정 제6조의 주식 주권회사의 제한 등에 대한 적용 규정을 삭제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11조의2 4항 : 2012/6/28 개정, 7/1 시행)

- 개정 상법은 사채모집 수탁회사의 권한 중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그 밖에 사채관리기능을 분리하여 사채관리회사에게 지정·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면서 사채관리회사의 자격으로 인수인 및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하고 은행, 신탁회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제한하였음(상법 480조의2, 480조의3)
 - 또한 상법 시행령에서 사채관리회사 자격에서 배제되는 사채관리회사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최대주주, 주요주주 및 사채발행회사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회사, 사채발행회사 주식보유 혹은 사채발행회사 임원겸임 등으로 사채권자의 이익과 충돌하는 특수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사채관리를 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상법 시행령 27조)
- 기존 인수업무 규정에서 무보증사채 발행인과 사채관리회사간 제6조 제1항 주식 주관회사 제한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정 상법상의 제한에 비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
- 이에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동규정 제6조 제1항 적용 규정을 삭제하고 「상법」 제480조의3, 「상법 시행령」 제27조를 준용하도록 함

□ 공모희망금리 결정근거 상세공시 신설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3조 3항 : 2012/8/8 개정, 8/20 시행)

- 수요예측 공모희망금리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
 - 민간채권평가사(2개사 이상) 평가금리
 - 동종업계·동일등급 채권의 최근 발행금리 및 유통금리 등

□ 유효수요의 판단기준 신설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5조 3항, 8항 : 2012/8/8 개정, 8/20 시행)

- 금융투자회사가 내부적으로 합리적인 유효수요의 판단기준을 정하여 운영
 - 수요예측 결과를 근거로 유효수요를 산정
 - 수요예측 결과를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그 때 유효수요를 산정하는 방법 등

- 유효수요 범위 및 금리결정 시 수요예측내용 반영 방법 공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5조 8항 : 2012/8/8 개정, 8/20 시행)
 - 유효수요 판단기준에 따라 산정된 유효수요 범위
 - 최종 공모금리 결정 시 수요예측결과를 반영한 방법을 공지해야 함

- 청약물량 배정 시 수요예측 참여자에 우선권 부여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6조 3항, 4항 : 2012/8/8 개정, 8/20 시행)
 -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자에게는 미참여 기관에 비해 청약물량 배정 시에 우선권을 부여
 - 금융투자회사는 공모채권의 배정에 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함

- 수익률공시대상채권에 국고채권 30년물 추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50조 1항 1호, 2호 : 2012/8/29 개정, 9/11 시행)

- 특정 잔존기간의 수익률 보고대상 채권과 잔존만기별 수익률 보고대상 채권에 국고채권 30년물 추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51조 2항 1호, 2호 : 2012/8/29 개정, 9/11 시행)

- 시가평가 기준수익률 대상에 국고채권 30년물 추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44호 : 2012/8/29 개정, 9/11 시행)

- 대고객환매조건부매매약관 정의 조항 수정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2조 4항 : 2012/8/31 개정, 9/10 시행)

환매조건부매매

일명 Repo거래(Repurchase Agreement Transaction)라고 하며, 대상물을 환매일에 사전에 정한 금액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거나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매매거래
우리나라에서는 거래대상 증권을 채권에만 국한하고 있고, 채권을 매수(매도)하면서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조건(가격)으로 다시 매도(매수)하는 2건의 매매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유가증권 매도·매수계약을 의미

- 자본시장법 시행령(181조 1항)에서 환매조건부매매의 경우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날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표준약관상의 정의 규정은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날을 약정하지 아니한 조건부 매매를 “개방형 거래”로 정의하고 있어 혼란의 우려가 있음
- 개방형 거래에 대한 정의를 고객이 환매수 또는 환매도를 신청한 날을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정한 조건부매매로 명확히 함

기한부거래와 개방형거래

환매조건부매매에는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을 미리 약정한 기한부거래와 미리 약정하지 않은 개방형거래로 나뉘는데 바꾸어 말하면 약정기간이 정해진 거래와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거래로 설명될 수 있음

- 전자단기사채등의 범위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 : 2012/12/4 제정, 2013/1/15 시행)

-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전자단기사채 등의 범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증권 중 지방채증권을 추가

□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 개설자의 범위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 : 2012/12/4 제정, 2013/1/15 시행)

- 고객계좌를 관리하는 계좌관리기관이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등이 전자단기사채등의 관리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의 개설자는 기금과 기금 관리·운용 법인, 투자매매업자, 정리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그 밖에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를 개설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자로 정하고 있음

□ 발행 등록 및 계좌간 대체 등록의 방법·절차 마련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8조~9조 : 2012/12/4 제정, 2013/1/15 시행)

- 전자단기사채등을 발행하는 경우 고객계좌부와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부에 발행등록을 하는 순서와 등록사항을 각각 정하고 있음
- 고객계좌부에 등록할 사항인 경우
 - 한국예탁결제원은 발행인계좌부에 기록
 - 한국예탁결제원은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관리계좌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고 그 사실을 해당 계좌관리기관에 통지
 - 계좌관리기관은 지체없이 통지내용에 따라 고객계좌부에 해당 사항을 등록
-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부에 등록할 사항인 경우
 - 한국예탁결제원은 발행인관리계좌부에 각 사항을 기록
 - 한국예탁결제원은 해당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부에 각 사항을 등록

- 전자단기사채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계좌간대체등록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신청하도록 하고, 양도인의 계좌에서 감액등록하며 양수인의 계좌에서 증액등록하도록 하는 등 그 등록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
 - 법원의 명령·판결, 상속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에 의해 전자단기사채등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경우 포괄승계인이 권리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좌간대체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 채권자증명서의 발행 방법 및 처분제한 방법 마련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 : 2012/12/4 제정, 2013/1/15 시행)

-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부에 등록된 전자단기사채등에 대한 채권자증명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고객계좌부에 등록된 전자단기사채등에 대한 채권자증명서는 계좌관리기관이 각각 발행
- 채권자증명서에는 다음의 내역을 기재
 -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 증명하려는 전자단기사채등의 종류·종목 및 금액
 - 행사하려는 권리의 내용
 - 그 밖에 채권자의 지위 증명과 관련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해당 증명서를 발급한 한국예탁결제원과 계좌관리기관은 채권자증명서의 발행으로 해당 전자단기사채등의 처분이 제한됨을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부 등에 표시하여야 함

□ 발행금액과 계좌부 현황 불일치 시 권리자 보호방안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17조 : 2012/12/4 제정, 2013/1/15 시행)

- 전자단기사채등의 권리가 등록되어 있는 계좌(고객계좌부)의 발행 총액이 이를 관리하기 위해 만든 관리계좌(고객관리계좌부)에 기록된 총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한 말소방법을 선의취득자가 있는지에 따라 구분하여 정함
 - 초과분 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계좌관리기관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은 원리금 지급의무를 짐
- 초과분을 말소등록하기 전까지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금액에 대한 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 속성코드, 발행체고유코드, 종목구분코드 및 단축속성코드 구성
(증권 및 관련금융상품 표준코드 관리기준 8조 1항, 9조 6항, 10조 13항, 16조 2항 : 2012/12/5 개정, 2013/1/15 시행)

- 어음 속성코드 “F”에 전자단기사채등 포함
- 어음 및 전자단기사채등 발행체고유코드는 발행기관명코드 5자리로 구성
- 어음 및 전자단기사채등 종목구분코드는 연중발생순위코드 2자리 및 발행년코드 1자리로 구성
- 어음 단축속성코드 “P”에 전자단기사채등 포함

□ 정의규정

(최종호가수익률 공시를 위한 수익률 보고 관련 기준 2조 : 2012/12/14 제정·시행)

- “최종호가수익률”이란 협회에 의해 지정된 보고회사가 국채, 통화안정증권 등 특정 채무증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를 거래한 최종 거래수익률 또는 호가수익률을 산술평균한 수익률

□ 수익률 보고회사 지정

(최종호가수익률 공시를 위한 수익률 보고 관련 기준 3조 : 2012/12/14 제정·시행)

- 협회는 매 6개월마다 종류별로 실적을 감안하여 수익률 보고회사를 지정
 - 채권과 CD는 실적 상위 10개사를 지정하며, CP는 종금업무 경영 3개 은행과 실적 상위 5개사를 지정
- 실적산정기간은 상반기의 경우 직전년도 6월부터 11월까지로 하고, 하반기의 경우 직전년도 12월부터 당해년도 5월까지로 함
- 채권의 실적은 채권 장외거래(자기매매, 중개매매)실적과 일반회사채(공모) 인수실적을 각각 70%와 30%씩 반영하여 산정
 - 실적산정 시 동률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래실적이 높은 회사에 우선권 부여
 - 거래실적과 인수실적이 각각 동일하여 동률이 될 경우에는 거래건수가 많은 회사에 우선권 부여
- CD의 실적은 CD 거래실적으로 함
 - 실적산정 시 동률이 발생하는 경우 거래건수가 많은 회사에 우선권 부여
 - 거래실적 및 거래건수가 동일하여 동률이 될 경우에는 신규로 발행된 91일물 CD의 거래실적이 많은 회사에 우선권 부여
- CP의 실적은 CP 거래실적으로 함
 - 이하 CD의 우선권 부여 조건과 동일
- 수익률 보고회사로 지정된 회사는 지정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채무증권 또는 CD와 관련된 업무를 중단할 예정이 아닌 한, 보고회사 지정을 거부할 수 없음

□ 수익률 보고회사의 의무

(최종호가수익률 공시를 위한 수익률 보고 관련 기준 4조 : 2012/12/14 제정·시행)

- 수익률 보고회사로 지정된 회사는 지정기간 동안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익률을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회사로 지정된 기간 동안 보고업무의 연속성 및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수익률 보고회사는 수익률 보고업무와 관련하여 관리자의 업무 지도·감독 등 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 수익률 보고의 기본원칙

(최종호가수익률 공시를 위한 수익률 보고 관련 기준 5조 : 2012/12/14 제정·시행)

- 채권의 경우 해당 채권의 당일 거래내역, 매수·매도 호가, 채권간 스프레드, 한국은행 기준금리, 채권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고
- CD의 경우 당일 CD의 발행 및 거래내역, 은행채 등 유사채권의 수익률, 한국은행 기준금리, 단기금리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고
- CP의 경우 당일 CP의 발행 및 거래내역, 한국은행 기준금리, 단기금리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고

□ 수익률 보고 대상 채권 등

(최종호가수익률 공시를 위한 수익률 보고 관련 기준 6조 : 2012/12/14 제정·시행)

- 수익률 보고 대상 채권
 - 국채 : 국고채권(3월, 6월, 9월, 1년, 1년6월, 2년, 2년6월, 3년, 5년, 10년, 20년, 30년), 제1종 국민주택채권(5년)
 - 통화안정증권 : 통화안정증권(91일, 1년, 2년)
 - 특수채 : 한국전력공사채권(3월, 6월, 9월, 1년, 1년6월, 2년, 2년6월, 3년, 5년)
 - 금융채 : 산업금융채권(3월, 6월, 9월, 1년, 1년6월, 2년, 2년6월, 3년, 5년)

- 회사채(AA-, 무보증) : 회사채(3월, 6월, 9월, 1년, 1년6월, 2년, 2년6월, 3년, 5년)
- 회사채(BBB-, 무보증) : 회사채(3월, 6월, 9월, 1년, 1년6월, 2년, 2년6월, 3년, 5년)
- 단, 회사채(AA-, BBB-)의 경우 공모회사채 중 협회가 제시하는 대표적 인 종목군을 참조

— 수익률 보고 대상 CD

- 시중은행CD : 신용평가등급이 AAA인 시중은행이 발행한 91일 CD 발행분
- 특수은행CD :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이 발행한 91일 CD 발행분

— 수익률 보고 대상 CP

- 신용등급이 A1인 CP : CP(7일, 15일, 1월, 3월, 6월, 1년)
- 신용등급이 A2+인 CP : CP(7일, 15일, 1월, 3월, 6월, 1년)
- 신용등급이 A3+인 CP : CP(7일, 15일, 1월, 3월, 6월, 1년)

□ 지정기간 중 수익률 보고회사 변경

(최종호가수익률 공시를 위한 수익률 보고 관련 기준 7조 : 2012/12/14 제정·시행)

— 수익률 보고회사로 지정된 회사가 이하의 사유로 수익률 보고회사로 존속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실적 차순위 회사를 보고회사로 지정할 수 있음

- 영업정지, 해당업무의 예기치 못한 중단 등으로 정상적인 수익률 보고가 곤란한 경우
- 시장상황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공정한 수익률을 보고하는 경우
- 월 3회 이상 수익률 보고를 누락하거나 수익률 입력시한을 초과하는 경우
- 기타 수익률 보고회사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보고기간이 1월 이내로 남거나, 기타 사유로 보고회사를 변경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고회사를 변경하지 않을 수 있음

- 수익률을 보고하지 못하는 회사가 발생하였으나, 보고회사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 당해회사의 보고수익률을 본회 수익률공시의 안정성을 감안하여 평균값으로 처리

□ 은행 등의 채권 장외거래내역 집중·관리근거 마련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7-5조 : 2012/12/17 개정·시행 단, 7-5조는 2013/1/2 시행)

-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은행, 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의 채권 장외거래 상세내역 보고 근거 마련
 - 해당 은행 등이 증권회사와 거래한 내역을 거래당일 19시까지 일괄 보고할 수 있음

□ 은행 등의 채권 장외거래내역 보고사항 명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49조 1항 : 2012/12/17 개정·시행. 단, 49조는 2013/1/2 시행)

-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은행, 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가 증권회사 등과의 채권 장외거래시의 보고 항목을 명시
 -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가 거래체결 후 15분 이내에 협회에 보고하는 항목과 동일하게 적용

□ 국채증권에 대한 유동성 공급 근거 신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01조의4 2항 : 2012/12/26 개정, 2013/1/7 시행)

- 매도회원이 16시 30분까지 국채증권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거래소가 해당 증권에 대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거래소는 국채증권에 대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하여 3년·5년 국고채 등을 일정규모 보유할 예정
 - 결제시한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간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시간으로 함

□ 유동성 공급의 세부사항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01조의5 5항 : 2012/12/26 개정, 2013/1/7 시행)

- 매도회원이 국채증권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거래소가 담보를 제공받고 해당 회원에게 대여하는 방법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며 공급 받은 유동성으로 증권을 납부한 경우 해당 회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증권수령결제회원에게 해당 증권을 인도
 - 거래소는 예탁결제원과 협조하여 상반기중에 증권결제계좌로 대체하는 방법에 의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 경우 국채증권을 일정 시점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 결제지연손해금을 부과할 예정

3. 파생상품시장

□ 유사해외통화선물(FX마진) 손익계좌비율을 협회에 제출하여 공시하도록 규정 신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3-34조 : 2012/1/17 개정, 3/5 시행)

- 이는 FX마진거래 투자자의 손익현황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 투기적 거래를 지양하고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는 합리적 투자로 유도하기 위함
- 금융투자회사는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직전 4개 분기에 대한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손실계좌비율과 이익계좌비율을 협회에 제출하고 협회는 동 비율을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함
 - 손실계좌비율이란 손익금액 0이 아닌 계좌수를 '분기중 거래 실적' 또는 '분기말 미결제약정'을 보유한 계좌수로 나눈 것을 의미함
 - 이익계좌비율이란 1에서 손실계좌비율을 (-) 하는 것을 의미함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관한 위험고지'에 투자자와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간의 이해상충의 위험을 명시하고 손익계좌비율을 제시하도록 신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별표 2-1 : 2012/1/17 개정, 3/5 시행)

- 이는 FX마진거래의 위험을 투자자가 정확히 인식하고 보다 신중한 투자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임
- 투자자 거래 손익과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손익의 상충 가능성 및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의 신용위험을 명기하고 손익계좌비율을 공시하도록 개정함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손익계좌비율의 산정기준은 별지 제53호를 통해 마련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58조 : 2012/1/18 개정, 3/5 시행)

- 손실계좌비율이란 해당 분기 동안 거래가 있거나 분기초부터 분기말까지 계속 미결제약정을 보유한 유사해외통화선물 계좌 중에서 손익금액이 0과 같거나 작은 계좌수의 비율
- 이익계좌비율이란 100% - 손실계좌비율
- 계좌별 손익금액이란 (당분기말 계좌평가액 - 직전분기말 계좌평가액) + (분기중 계좌인출총액 - 분기중 계좌유입총액)
 - 해당분기동안 거래가 있거나, 분기초부터 분기말까지 계속 미결제약정을 보유한 계좌가 대상임
 - 당분기말 계좌평가액이란 당분기말 장종료후 현금잔액 + 당분기말 증가로 평가한 미결제포지션의 평가액
 - 직전분기말 계좌평가액이란 직전분기말 장종료후 현금잔액 + 직전분기말 증가로 평가한 미결제포지션의 평가액
 - 분기중 계좌인출총액이란 분기중에 발생한 현금 출금액
 - 분기중 계좌유입총액이란 분기중에 발생한 현금 입금액

□ 유사해외통화선물의 평균스프레드 산정 시 종전 체결정보에서 1분 단위 호가 정보를 이용토록 개정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3호 : 2012/2/1 개정 · 시행)

— 평균스프레드 산정에 있어 기존 체결된 왕복계약(진입 및 청산)에서 발생한 스프레드의 단순 평균치로서 간접수수료와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FDM)수취수수료의 합계를 직전분기 1분단위 호가정보의 스프레드 평균치로서 간접수수료와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FDM)수취수수료의 합계로 변경

□ 호가한도수량을 별표 17의2로 위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61조 1항 : 2012/2/17 개정, 3/9 시행)

— 별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호가 한도수량
선물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스피200선물거래(정규거래) • 스타지수선물거래 • 3년국채선물거래 • 5년국채선물거래 • 10년국채선물거래 • 금선물거래 • 미니금선물거래 • 돈육선물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계약 - 다만, 유동성관리상품의 경우에는 100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선물거래 • 미국달러선물거래 • 엔선물거래 • 유로선물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0계약 - 다만, 유동성관리상품의 경우에는 500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스피200선물거래(글로벌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계약
선물 스프레드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스피200선물스프레드거래 • 스타지수선물스프레드거래 • 3년국채선물스프레드거래 • 5년국채선물스프레드거래 • 10년국채선물스프레드거래 • 금선물스프레드거래 • 미니금선물스프레드거래 • 돈육선물스프레드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선물스프레드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0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달러선물스프레드거래 • 엔선물스프레드거래 • 유로선물스프레드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0계약
옵션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가지수옵션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계약 - 다만, 유동성관리상품의 경우에는 100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옵션거래 • 미국달러옵션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0계약 - 다만, 유동성관리상품의 경우에는 500계약

□ 코스피200옵션 거래승수 변경에 따른 단일가 배분방식의 변경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62조 1항 : 2012/2/17 개정, 3/9 시행)

— 단일가약정가격이 상·하한가로 결정되는 경우 상·하한 단일가호가 간 수량 배분 방식을 현행 선물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

- 코스피200옵션의 계약당최소증거금액을 기존 1만원에서 5만원으로 변경하고 코스피200선물·옵션거래의 미결제약정수량 환산방법을 조정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별표 19, 별표 23 : 2012/2/17 개정, 3/9 시행)

- 호가 적합성 점검항목에서 회원이 사전에 점검하기 어려운 일부 항목을 제외하도록 개정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49조의2 5호 : 2012/2/17 개정, 3/9 시행)
 - 이때, 회원의 사전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항목은 단일가호가인 경우 최유리지정가호가, 일부/전량충족조건이 부여된 호가의 입력제한 여부임

- 착오거래 정정에 있어 회원이 위탁자의 파생상품계좌번호를 착오한 경우 이를 정정하도록 허용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77조, 별지 4호 서식 : 2012/2/17 개정, 3/9 시행)

- 현금예탁필요액비율, 선물현금비율 및 총위험현금비율의 인상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45조 : 2012/2/17 개정, 3/9 시행)
 - 사전현금예탁필요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 최저율을 기존 1/3에서 50%로 변경

-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에서 제외되는 차익·헤지거래의 증빙방법 및 신고양식의 표준화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63조, 별지 12호 서식, 별지 13호 서식 : 2012/2/17 개정, 3/9 시행)

- 기초주권이 상장폐지되는 경우 해당 주식선물스프레드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64조 : 2012/2/17 개정, 3/9 시행)

- 투자결정 시 일반투자자가 투자판단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16-1-4조의 내용을 준용하여 증권신고서(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 투자설명서 등에 기재
(파생결합증권 신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 2012/2/29 제정·시행)

- 파생결합증권의 공모가격 결정방법은 신고서 제출시점 기준으로 발행사 또는 외부 평가기관에서 산정한 파생결합증권의 공정가액을 기재
(파생결합증권 신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 2012/2/29 제정·시행)
 - 신고서 제출시점에 제3의 독립된 평가기관 또는 발행인이 산정한 이론상의 평가금액에 만기까지의 헤지비용을 추산하여 더한 가격을 기재
 - 복수의 평가기관이 산정한 평가금액을 사용하는 경우 평가기관의 가격들을 단순평균한 가격에 만기까지의 헤지비용을 추산하여 더한 가격을 기재

- 파생결합증권 신고서에 기초자산의 변동에 따른 자동조기상환 또는 만기 시 예상손익을 기재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파생결합증권 신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 2012/2/29 제정·시행)
 - 파생결합증권의 보유자가 받게 될 최대손실액과 그 조건, 최대이익액과 그 조건 등
 -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알기 쉽게 표현된 표나 그림 또는 그래프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및 만기평가가격에 따른 투자수익률을 구체적으로 설명
 - 과거 5년간 기초자산의 가격을 이용한 수익률 모의실험결과 표 및 그래프

- 파생결합증권 신고서상 권리내용의 통지방법 및 절차
(파생결합증권 신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 2012/2/29 제정·시행)
 - 일일 공정가액(기준가)을 발행인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다는 사실,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또는 만기평가가격 결정 시 지체 없이 상환금액을 산정하여 발행인 본·지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는 사실, 공정가액(기준가)의 산정주체(외부 평가기관 또는 발행인), 확인방법 및 확인가능시간 등을 기재하여야 함

- 투자자의 요청에 의해 중도 상환하는 경우 파생결합증권 신고서상 다음 사항을 기재
(파생결합증권 신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2012/2/29 제정·시행)
 - 본 증권이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본 증권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본 증권을 중도상환할 수 있다는 사실
 - 단, 본 증권이 시장청산이 불가능한 경우 중도상환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함

- 중도상환 청구권에 대한 사항으로 중도상환 신청 시 헤지비용, 잔존 만기, 기초자산가격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중도상환금액이 산정됨에 따라 원금보장형이라도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을 기재하여야 함
 - ELS의 경우 발행 후 6개월 미만인 상품은 공정가액의 90% 이상, 6개월 경과 상품은 공정가액의 95% 이상을 적용하여 중도상환가격 항목에 기재(DLS는 현행 90% 이상 유지)
 - 중도상환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정가액(기준가)을 산정하는 주체에 관련한 사항,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도상환금액 산정에 관한 세부내역(공정가액(기준가), 실제 중도상환가격, 공정가액(기준가) 대비 실제 중도상환가격의 비율)을 교부한다는 사항, 발행인별 공정가액(기준가) 대비 중도상환가격 비율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비교·검색할 수 있음을 기재하여야 함

□ 권리내용 변경 시 파생결합증권 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

(파생결합증권 신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 2012/2/29 제정·시행)

- 발행인의 파산 등 또는 기초자산의 상장폐지 등의 사유로 조기종결하게 되는 경우 조기종결사유, 방법 등
- 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 지수 계산방법 변경 또는 지수산출의 폐지, 지수제공자 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권리내용이 조정될 수 있다는 사실
- 기초자산이 개별주식인 경우 기초자산 주권에 대하여 증자, 주식배당, 액면병합·분할 등의 사유 발생 시 기준가격 조정에 관한 산식
 - 또한 미리 정한 기준가격 조정산식이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 고객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준수하여 기준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사실
- 당해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이 있을 시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통지·공고한다는 사실

□ 투자위험요소는 가격변동위험, 발행인 위험, 조기종결 및 중도상환위험, 기타 투자위험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파생결합증권 신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 2012/2/29 제정·시행)

<표 1-5> 투자위험요소의 구분

가격변동 위험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된다는 점, 공정가액(기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위험, 발행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미치는 영향, 평가손실 위험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설명
발행회사 위험	발행회사의 재무상태 및 신용상태 악화에 따른 투자자 손실가능성을 기재
조기종결 및 중도상환 위험	조기종결 위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제한될 위험, 중도상환 시 원금손실 위험, 중도상환가격산정 관련 이해상충 위험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설명
기타 투자위험	일반적인 파생결합증권의 위험, 장내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위험, 세제 및 법률상 위험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

□ 파생결합증권 신고서상 기재하여야 할 기초자산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파생결합증권 신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 2012/2/29 제정·시행)

- 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 지수 개요, 산출기관 등을 간략히 서술하고, 추가정보를 참조할 수 있도록 지수 산출기관의 웹사이트 등을 기재
 - 기초자산이 개별주식인 경우 대상 회사의 기업 개요 및 대상 회사가 발행시점 기준 과거 6개월간 공시한 공시 목록을 서술하고, 이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과 링크(또는 연결화면)
- 기초자산의 최근 5년간 가격변동 추이에 대해 수치 또는 도해 등을 활용하여 주가상승기 및 하락기의 추이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기재하여야 함

□ 착오거래 구제제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78조의2~4 : 2012/5/9 개정, 6/25 시행)

- 착오거래의 구제요건

- 투자자착오거래의 약정가격과 착오거래구제기준가격과의 차이에 해당 거래의 약정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수치를 합산한 금액이 10억원 이상
- 투자자착오거래의 약정가격이 착오거래구제제한범위를 초과
- 투자자착오거래초래 회원과 상대방간 착오거래의 구제에 대해 합의

— 착오거래구제 신청 시한 등의 신설

- 협의거래와 글로벌거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착오거래가 발생한 날의 장종료 후 15분 이내에 거래소에 착오거래의 구제를 신청하여야 함
- 해당 착오거래의 구제신청은 거래소과생상품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함

— 착오거래 구제방법

- 투자자착오거래의 약정가격이 착오거래구제제한범위상단가격 보다 높은 경우 : 해당 약정가격과 착오거래구제제한범위상단가격 이내 투자자착오거래를 초래한 회원과 상대방간 합의한 가격
- 투자자착오거래의 약정가격이 착오거래 구제제한 범위하단가격보다 낮은 경우 : 착오거래 구제제한 범위하단가격과 해당 약정가격 이내 투자자착오거래를 초래한 회원과 상대방간 합의한 가격
- 회원은 거래소가 의제한 투자자착오거래의 약정가격을 회원과 위탁자간 결제 시 사용하고 거래소는 착오거래의 구제와 관련된 서류를 10년동안 기록·유지의무를 부담

□ 호가공개기준을 호가가격단위에서 잔량기준으로 변경하고, 국채 선물의 총호가 수량을 공개하도록 함

(과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79조 1항 1호 : 2012/5/9 개정, 6/25 시행)

- 단일가호가시간 외의 호가접수시간의 호가공개기준을 각 매도·매수별 최우선 호가의 가격을 포함하는 5개의 우선호가의 가격, 해당 가격의 호가수량, 호가건수 및 각 매도·매수별 총호가수량·호가건수로 변경

- 기존 호가가격단위의 호가공개기준의 경우 체결 가능한 호가정보가 부족하고 투명성이 낮은데다 주식시장과 상이하여 투자자의 판단에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
- 이에 호가잔량기준으로 호가공개기준을 변경
- 또한 기존 국채선물상품 이외의 상품에 한하여 공개되었던 총호가수량 정보를 확대하여 국채선물상품도 공개하도록 함

□ 단일가 호가시간에 예상체결가 및 총호가 수량을 공개하도록 함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79조 1항 2호 : 2012/5/9 개정, 6/25 시행)

- 기존 예상체결가 미공개로 인하여 가격 급등락의 위험이 크고 불확실성이 상당하다는 비판에 따라 단일가호가시간 중 모든 상품의 예상체결가격 및 각 매도·매수별 총호가수량·호가건수를 공개하도록 변경

<표 1-6> 호가 공개방식 및 예상체결가 공개 개선

상 품		호가 공개방식		예상체결가 공개					
		현행	개선	현행			개선		
				시가	장중	종가	시가	장중	종가
주식 관련 통화 / 일 반 상 품	코스피200선물· 옵션, 스타지수선물, 주식선물·옵션	호가 가격 단위 기준	호가 잔량 기준	×	×	×	○	○	○
	통화선물·옵션, 금·미니금· 돈육선물			○	○	×	○	○	○
금 리	국채(3·5·10년) 선물	호가 잔량 기준		○	○	○	○	○	○

자료 : KRX

□ 거래증거금률·위탁증거금률 등 위임근거 신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별표 19 : 2012/9/26 개정, 10/2 시행)

- 기존 세칙에서 각 증거금률을 수치로 입력해 표로 나타냈던 것을 없애고 적시조정이 가능하도록 거래소에 위임하는 뜻의 문구로 개정

□ 단기물 발행제한

(파생결합증권의 발행 및 운용에 관한 모범규준 : 2012/10/26 제정, 10/30 시행)

- 금융투자회사는 파생결합증권(ELS 및 DLS)의 만기를 3개월 이상으로 해야 하고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조기상환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 단, 즉시지급조건의 달성에 의해 발행일부터 상환금 지급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일 수 있는 상품의 발행은 가능하나 이 경우라도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조기상환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설정해야 함
 - 만기 : 발행일부터 투자자에게 최종 상환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날짜까지의 기간
 - 조기상환 : 자동조기상환(autocallable), 발행자 임의상환(callable), 투자자 임의상환(puttable) 등 명목만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원리금의 상환
 - 즉시지급조건 : 기초자산의 가격이 사전에 정해진 행사가격 이상이 되는 경우 즉시 자동조기상환이 이루어지는 조건

□ 헤지자산의 구분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파생결합증권의 발행 및 운용에 관한 모범규준 : 2012/10/26 제정, 10/30 시행)

- 금융투자회사는 파생결합증권의 발행대금으로 운용하는 모든 헤지자산을 고유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 헤지자산은 ELS와 DLS별로 구분·관리하여야 함
 - 파생결합증권 및 헤지자산은 종류별(현금포함)로 세부내역을 상시적으로 측정 가능하여야 하며 부서간 대여 등 타 부서를 통해 운용되고 있는 자산내역도 상시적으로 파악 가능하여야 함
 - 헤지자산의 구분은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에 따른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보고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금융투자회사는 파생결합증권 및 헤지자산 현황을 일별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 헤지자산의 건전성 확보

(파생결합증권의 발행 및 운용에 관한 모범규준 : 2012/10/26 제정, 10/30 시행)

- 금융투자회사는 헤지자산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내부규정에 다음의 사항을 반영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 헤지자산에 대한 투자가능등급
 - 요인별 리스크한도
 - 승인절차
 - 일별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등
- 금융투자회사는 내부규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거나 투자가능등급 외의 자산을 헤지자산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승인 절차를 마련해야 함
- 별도의 승인절차에 따라 헤지자산을 편입하고자 하는 경우 내부통제 부서가 그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문제점 발견 시 담당임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함
- 금융투자회사는 헤지자산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 및 계열회사의 자산을 기초로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운용하여서는 안 됨
- 단, 관련법령을 준수하는 경우로 해당 증권 및 유동화증권이 투자적격 등급(BBB-) 이상인 경우에는 운용 가능함

- 금융투자회사는 헤지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파생결합증권의 자금흐름, 만기, 유동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 내부통제와 위험 관리

(파생결합증권의 발행 및 운용에 관한 모범규준 : 2012/10/26 제정, 10/30 시행)

- 금융투자회사는 파생결합증권에 관한 내부규정과 이 기준의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 금융투자회사는 헤지자산 운용현황, 헤지자산의 적정성 및 위험의 종류별 한도 준수 여부 등을 매일 모니터링
- 금융투자회사는 기초자산에 개별주식이 하나라도 포함되는 경우 <만기 시 수익 지급조건> 및 <백투백헤지 시 ELS·DLS 발행사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 단, <만기 시 수익 지급조건>은 공모펀드에 편입되는 사모 ELS·DLS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적용
- 만기 시 수익 지급조건
 - 개별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DLS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만기평가가격을 최종만기 평가일을 포함한 직전 3영업일 이상 종가의 평균값 또는 최종만기평가일의 거래량 가중평균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함
 - ① 기초자산에 포함된 주식이 증권신고서 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전월말 기준으로 한 종목이라도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이 상위 20위 밖인 경우
 - ② ELS·DLS 발행금액(공·사모를 포함,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해당 개별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당일 발행금액의 합)이 당해 신고서 제출일 전전월의 1개월간 해당 주식의 일평균 거래대금의 10%를 한 종목이라도 초과하는 경우
- 백투백헤지 시 ELS·DLS 발행사의 의무

- 백투백헤지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ELS·DLS를 발행한 금융투자회사가 만기평가가격 산정 시 평균가격 등을 적용하는 경우 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헤지하는 금융투자회사의 명칭을 명시하여 투자자에게 공시
- Bridge 회사가 있는 경우 최종 헤지운용사와 Bridge 금융회사를 모두 명시
- 헤지운용사는 만기이전에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

□ 자체적으로 헤지를 하는 ELS·DLS 발행사는 'ELS·DLS 헤지관련 운용지침'을 제정·운영하여야 하며, 백투백헤지를 이용하는 ELS·DLS 발행사는 헤지운용사가 운용지침의 제정·운영여부를 확인해야 함

(과생결합증권의 발행 및 운용에 관한 모범규준 : 2012/10/26 제정, 10/30 시행)

- ELS·DLS 등 헤지관련 주식은 여타 고유계정 보유주식과 내부적으로 구분 가능할 것
- ELS·DLS 만기평가일 또는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본인 또는 제3자를 통한 기초자산 시장가격의 의도적인 시세조종금지
- ELS·DLS 헤지관련 주식 주문계좌를 사전에 확정하고 변경 시 기록 절차를 마련할 것

□ 10년국채선물 미결제약정 제한수량 확대

(과생상품시장 업무규정 154조 : 2012/12/12 개정, 12/24 시행)

— 장기 국채현물시장 규모 확대 및 기관투자자 중심의 시장특성을 반영하여 미결제약정 제한수량을 5천 계약에서 1만 계약으로 확대

- 기존 10년 국채선물의 미결제약정 제한수량(5,000계약)은 코스피200지수 파생상품의 개인투자자와 같은 수준이었음
- 보유기간을 '최종거래월'(1개월)에서 '거래기간 전체'(6개월)로 연장하되, 최근월물과 원월물을 상계한 '순미결제약정수량' 기준으로 산정

- 대상상품 · 종목 · 기간 명확화 및 최우선호가간격의 상품별 지정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83조, 85조 : 2012/12/12 개정, 12/24 시행)
 - 시장조성대상의 상품 · 종목 · 기간을 명확화하고, 상품별 특성을 반영하여 최우선호가간격을 탄력적으로 운영

-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거금 감면제도 폐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87조 : 2012/12/12 개정, 12/24 시행)
 - 시장조성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적고, 동일 위험 동일 증거금 부과 원칙 유지를 위해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거금 감면제도 폐지

- 증거금 예탁수단 확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88조, 90조~92조, 127조, 129조의2, 130조~132조, 136조, 138조, 139조, 152조, 169조 : 2012/12/12 개정, 12/24 시행)
 - 거래(위탁)증거금 예탁수단으로 현행 현금, 대용증권, 외화(9개 통화) 이외에 외화증권의 예탁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 외화증권 중 주요국 국채의 예탁을 허용하되, 환금성 · 지급보증성 등을 고려하여 미국국채(US Treasury Securities)를 우선적으로 도입

- 파생상품담당자 제도 폐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162조~164조 : 2012/12/12 개정, 12/24 시행)
 - 거래 · 결제 등의 업무 전산화로 파생상품담당자의 역할 축소, 회원 업무 편의 및 시장간 규제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 등록 · 관리 방식에서 회원 자율운영으로 전환

- 시장조성호가 제출 상품·종목 등 명확화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81조 : 2012/12/18 개정, 2013/3/18 시행)
 - 시장조성대상상품을 신상품 및 유동성관리상품 중 시장조성개시 3년 미경과 상품 등으로 명시
 - 옵션거래의 경우 시장조성계약서에서 정한 종목수 이상으로 하여 신고한 종목으로 하도록 하는 것을 특정종목으로 구체화
 - 기존 : 시장조성계약에서 정한 종목 수 이상으로 하여 신고한 종목
 - 개선 : 등가격 콜옵션, 풋옵션종목 및 등가격에 연속하는 상하 각각 1개의 행사가격 콜옵션, 풋옵션종목

- 시장조성호가 제출 간격 차별화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84조 : 2012/12/18 개정, 2013/3/18 시행)
 - 상품별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성 등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장조성호가 간격을 차별화
 - 기존의 10호가 간격을 상품별 기초자산가격 변동성 등을 반영하여 별표에서 정하는 간격(10~100호가 간격)으로 함

- 시장조성자에 대한 거래증거금 감면 제도 폐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88조 : 2012/12/18 개정, 2013/3/18 시행)
 - 규정에서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거금 감면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삭제

- 시장조성대가 지급기간 확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90조 : 2012/12/18 개정, 2013/3/18 시행)

- 시장조성에 따른 비용 등 일정금액(고정비성 경비)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기존 최대 8분기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최대 기간을 삭제하고 분기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조성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도록 함
- 단일 시장조성자에 대하여는 고정비성 경비를 차등지급(150%)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외화증권에 의한 거래증거금 예탁한도 마련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91조 : 2012/12/18 개정, 2013/3/18 시행)

- 기존 대응증권 및 외화의 예탁한도와 동일하게 거래증거금 전액으로 가능하도록 설정하며, 시장관리상 필요 시 거래소의 예탁한도 변경 근거 마련

□ 거래·위탁증거금 예탁 대상 외화증권 종류 신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92조의2, 123조의2 : 2012/12/18 개정, 2013/3/18 시행)

- 미국국채 중 발행 후 금융상황에 따라 가격(수익률)이 달라지는 시장성(marketable)을 가진 국채[US Treasury Bill(단기), Note(중기), Bond(장기) 등]를 증거금 납부수단으로 허용
 - 그 밖의 거래소가 인정하는 외화증권 포함

□ 외화증권의 기준시세, 사정비율 등 평가방법 마련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92조의2, 123조의2 : 2012/12/18 개정, 2013/3/18 시행)

- 외화증권 기준시세에 매매기준율 및 사정비율을 곱하여 원화로 평가한 가격을 거래일마다 산출함(1원 미만 절사)

- 외화증권의 기준시세는 국제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거래소에 순차적으로 제공한 최근 5거래일간 종목별 시세를 단순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 단, 신규발행 등으로 가격제공일수가 5거래일 미만의 경우 제공된 시세를 산술평균함
- 미국국채(T-Bill, T-Note 및 T-Bond)의 만기가 1년 미만에서 30년까지 다양함에 따라 잔존만기별로 다른 사정비율 적용¹⁾
 - Treasury Bill(단기채) 및 잔존만기 1년 미만 : 92%
 - Treasury Note, Bond : 잔존만기 10년 미만인 경우 88%, 10년 이상 84%

- 거래증거금 외화증권 예탁 및 인출 신청 서식 마련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7호의2 : 2012/12/18 개정, 2013/3/18 시행)
- 유동성관리상품²⁾에 대한 주가지수선물CB(Circuit Breaker)제도 적용 배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75조 : 2012/12/18 개정, 2013/3/18 시행)
 - 가격발전기능이 없는 유동성관리상품 경우 선물CB의 잦은 발동으로 투자자의 혼란을 초래하므로 선물CB의 적용을 배제
- 파생상품담당자 제도가 규정에서 폐지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67조, 별지 12호~13호 서식 : 2012/12/18 개정, 2013/3/18 시행)

1) 국내 국공채 대용증권 사정비율 : 95%

2) 매월 직전 3개월의 일평균 거래량이 일정 수치 미달(주가지수상품의 경우 일평균 300계약)일 경우 유동성관리상품으로 지정

□ 자구 수정

(과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33조, 별표 24 : 2012/12/18 개정, 2013/3/18 시행)

— 사전위탁증거금의 예탁, 착오거래구제 제한범위

4. 예탁, 전자등록, 결제, 청산

□ 전자단기사채등의 범위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 : 2012/12/4 제정, 2013/1/15 시행)

—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전자단기사채등의 범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증권 중 지방채증권을 추가

□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 개설자의 범위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 : 2012/12/4 제정, 2013/1/15 시행)

— 고객계좌를 관리하는 계좌관리기관이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등이 전자단기사채등의 권리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의 개설자는 기금과 기금 관리·운용 법인, 투자매매업자, 정리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그 밖에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를 개설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자로 정하고 있음

□ 발행 등록 및 계좌간 대체 등록의 방법·절차 마련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8조~9조 : 2012/12/4 제정, 2013/1/15 시행)

- 전자단기사채등을 발행하는 경우 고객계좌부와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부에 발행등록을 하는 순서와 등록사항을 각각 정하고 있음
- 고객계좌부에 등록할 사항인 경우
 - 한국예탁결제원은 발행인계좌부에 기록
 - 한국예탁결제원은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관리계좌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고 그 사실을 해당 계좌관리기관에 통지
 - 계좌관리기관은 지체없이 통지내용에 따라 고객계좌부에 해당 사항을 등록
-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부에 등록할 사항인 경우
 - 한국예탁결제원은 발행인관리계좌부에 각 사항을 기록
 - 한국예탁결제원은 해당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부에 각 사항을 등록
- 전자단기사채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계좌간대체등록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신청하도록 하고, 양도인의 계좌에서 금액등록하며 양수인의 계좌에서 증액등록하도록 하는 등 그 등록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
 - 법원의 명령·판결, 상속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에 의해 전자단기사채등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경우 포괄승계인이 권리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좌간대체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 채권자증명서의 발행 방법 및 처분제한 방법 마련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 : 2012/12/4 제정, 2013/1/15 시행)

-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부에 등록된 전자단기사채등에 대한 채권자증명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고객계좌부에 등록된 전자단기사채등에 대한 채권자증명서는 계좌관리기관이 각각 발행
- 채권자증명서에는 다음의 내역을 기재
 -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 증명하려는 전자단기사채등의 종류·종목 및 금액
 - 행사하려는 권리의 내용

- 그 밖에 채권자의 지위 증명과 관련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해당 증명서를 발급한 한국예탁결제원과 계좌관리기관은 채권자증명서의 발행으로 해당 전자단기사채등의 처분이 제한됨을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부 등에 표시하여야 함

□ 발행금액과 계좌부 현황 불일치 시 권리자 보호방안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17조 : 2012/12/4 제정, 2013/1/15 시행)

- 전자단기사채등의 권리가 등록되어 있는 계좌(고객계좌부)의 발행 총액이 이를 관리하기 위해 만든 관리계좌(고객관리계좌부)에 기록된 총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한 말소방법을 선의취득자가 있는지에 따라 구분하여 정함
 - 초과분 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계좌관리기관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은 원리금 지급의무를 짐
- 초과분을 말소등록하기 전까지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금액에 대한 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 속성코드, 발행체고유코드, 종목구분코드 및 단축속성코드 구성

(증권 및 관련금융상품 표준코드 관리기준 8조 1항, 9조 6항, 10조 13항, 16조 2항 : 2012/12/5 개정, 2013/1/15 시행)

- 어음 속성코드 “F”에 전자단기사채등 포함
- 어음 및 전자단기사채등 발행체고유코드는 발행기관명코드 5자리로 구성
- 어음 및 전자단기사채등 종목구분코드는 연중발생순위코드 2자리 및 발행년코드 1자리로 구성
- 어음 단축속성코드 “P”에 전자단기사채등 포함

5. 기업공시

- 금적립계좌(골드뱅킹)의 신고서 및 보고서 관련 규정의 마련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2-3조 1항 7호, 2-19조 5항 : 2012/1/3 개정·시행)
 - 금적립계좌(은행업감독규정 25조의2 1항) 발행을 위하여 제출한 일괄신고서가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제출하는 정정신고서는 수리된 날에 그 효력 발생
 - 제출 후 3일인 과생결합증권 정정신고서 효력발생기간을 골드뱅킹에 한해 제출일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개정
 - 금적립계좌의 발행인이 매 사업연도의 순발행실적 등을 기재한 발행실적보고서를 사업연도말부터 1개월 내에 금융위에 제출한 경우 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 모집 또는 매출 완료 시 제출하는 발행실적보고서를 개방형 집합투자증권과 같이 매년 1회 제출하도록 개정한 것임

- 증권신고서 첨부서류에 기업실사 관련 서류를 추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2-6조 8항 1호 파목 하목 : 2012/1/3 개정, 2/1 시행)
 - 이는 증권투자자의 IPO 및 회사채 투자 판단에 있어 인수주관회사의 기업실사 이행 및 결과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기업실사 관련 서류는 주관회사의 적절한 주의의무 이행 서류, 증권시장에 주권 상장 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재무관련사항이 기업의 재무상황을 적정하게 반영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회계감사인의 확인서 등을 의미함

□ 합병가액산정에 있어 SPAC과의 합병에 따른 비상장기업 가치평가 관련 규정을 개선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5-13조 3항, 4항 : 2012/1/3 개정·시행)

— 투자자 보호요건을 충족하는 SPAC이 비상장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양 자간 협의를 통한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비상장기업의 자산가치·수익가치의 가중산술평균방법, 수익가치와 상대가치의 산출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비상장기업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가중산술평균방법은 양자간 협의로 정할 수 있음
- 비상장기업의 수익가치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당추정이익을 자본환원율로 나누어 산출함. 이때 자본환원율은 주권비상장법인의 실질적인 자본조달비용을 감안하여 양 자간 협의로 정할 수 있음
- 비상장기업의 상대가치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초로 산출. 이때 유사회사는 거래소의 업종 분류상 소분류 업종에 속한 주권상장법인 중에서 자산총계, 매출액 및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비교하여 각각 ± 100 분의 10이내인 법인을 포함하며, 상대가치 산정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양자간 협의로 정할 수 있음

— 비우량기업과의 합병추진에 따른 주가하락 등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 요건을 다음과 같이 신설

- SPAC이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제2항에 따라 매수하는 주식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매수하여야 함
- 투자매매업자가 소유하는 증권을 합병기일 이후 1년간 계속 소유하고 합병가액을 비교하여 공시하여야 함

□ 자산유동화기업어음증권(ABCP) 거래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개선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52조, 53조 : 2012/1/11 개정, 1/16 시행)

- 자산유동화기업어음증권의 거래내역으로 거래일, 발행회사, 기초자산, 신용등급, 거래구분 그 밖에 거래내역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함
 - 자산유동화기업어음증권이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증권·파생상품·대출채권 등 유동화대상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발행한 기업어음증권을 의미함

□ 증권신고 효력발생기간 산정 시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토요일을 산입하지 않도록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2조 5항 : 2012/3/2 개정·시행)

- 단,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적용 제외
- 이는 영업일 기준으로 증권신고 효력발생기간을 산정하도록 하여 투자자가 충분히 숙고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일정한 경우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시기를 3일 연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2조 4항 : 2012/3/2 개정·시행)

- 금융위원회는 다음의 경우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효력발생시기를 3일 연장할 수 있음
 -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제출한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분기보고서상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경우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단,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라 발행되는 담보부사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2조 제8항에 따른 보증사채권, 일괄신고서에 의하여 모집 또는 매출되는 채무증권을 모집·

매출하는 경우와 비상장법인이 상장하기 위하여 지분증권을 모집·매출하는 경우에는 제외됨

□ 금융투자협회의 대표주관회사 실적공시시스템 개선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의 제출서식을 개정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2호 : 2012/3/29 개정, 4/15 시행)

— 대표주관회사는 상장일로부터 3년간 발행회사 관련 사항을 서식에 따라 협회에 통보하고 협회는 통보받은 내용을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음

— 본 개정 서식은 2012년 3월 31일부터 시행

□ 현물출자에 있어 검사인의 조사, 보고의 면제범위를 구체화함

(상법 시행령 7조, 14조 : 2012/4/10 개정, 4/15 시행)

— 개정 상법이 회사설립 혹은 신주발행을 위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산총액이 정관에 기재된 자본금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그 재산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 정관기재가격이 대통령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위 사항에 준하는 기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 검사 또는 감정을 면제하도록 하여 현물출자규제를 완화하였음(상법 299조 2항, 422조 2항)

— 이에 시행령은 현물출자한 재산 가액을 5천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유가증권의 현물출자 시 정관기재가격에 대한 시세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

- 시세산정기준은 정관 효력발생일로부터 소급한 거래소에서의 1개월 평균 증가, 1주일 평균증가 및 정관 효력발생일 직전 거래일의 증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 혹은 정관 효력발생일의 직전 거래일의 증가 중 낮은 금액임
- 단, 현물출자 재산 및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에 그 사용, 수익, 담보제공,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한 물권적 또는 채권적 제한이나 부담이 설정된 경우 위 시세산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 회계원칙을 구체화하여 회사 유형별로 적합한 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상법 시행령 15조 : 2012/4/10 개정, 4/15 시행)

- 개정 상법은 회사의 회계는 상법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 규정을 마련함(상법 446조의2)
- 이에 시행령은 회계실무의 적합성을 높이고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회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외의 회사로 분류하여 각각의 회계기준을 정함

□ 공시책임자의 자격을 강화함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2조 4항 : 2012/4/18 개정, 4/23 시행)

- 기존의 공시책임자는 상근이사 또는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상근 자이었음
- 이에 공시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또는 상근이사,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 회의에 참석하는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상근 자로 개정함
 -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공시책임자를 대표집행임원 또는 집행임원으로 대체함

□ 상장외국법인의 공시의무비율 적용기간을 개선함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3조 4항 : 2012/4/18 개정, 4/23 시행)

- 국내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사업연도 종료후 90일까지) 이후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는 상장외국법인의 사업보고서 마감

시한을 감안하여 상장외국법인의 재무정보의 적용기간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다음 사업연도 종료후 4월이 되는 날까지로 규정함

□ 개정 상법을 반영하여 관련 공시제도를 정비하고, 투자위험 정보에 관한 공시를 신설함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7조 1항 2호 : 2012/4/18 개정, 4/23 시행)

- 개정 상법이 특정한 경우 제한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였던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수시공시 의무대상을 자본시장법상의 자기주식에서 상법상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으로 확대함
- 개정 상법이 무액면주식의 발행을 허용함에 따라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간의 전환관련 사항을 공시의무에 추가함
- 개정상법이 현물배당을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금전 이외 현물배당 결정사실을 공시의무에 추가함
- 장래 발생 가능한 투자위험 요인을 사전에 공시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관련하여 자기자본의 5%(대규모법인 2.5%)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원리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공시의무대상에 추가함
- 또한 자기자본의 5%(대규모법인 2.5%) 이상의 타인에 대한 선급금 지급, 금전의 가지급, 금전대여 또는 증권의 대여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 공시의무를 부여
 - 현행 금전 가지급 등 사항을 유가증권시장은 자율공시사항으로, 코스닥시장은 수시공시의무사항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모두 공시의무사항으로 전환한 것임
 - 이후 선급금,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의 50% 이상 변경 시 공시변경조치를 하여야 함(31조)

□ 공시위반제재금의 상향 조정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35조의2 : 2012/4/18 개정, 4/23 시행)

-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함으로써 불성실공시 제재를 강화

□ 집합투자업자등에 대한 불성실공시 사실게재의무 신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86조 2항 : 2012/4/18 개정, 4/23 시행)

- 거래소가 집합투자업자등의 불성실공시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해당 사실과 경위 등을 증권시장지에 불성실공시한 날로부터 5일간, 전자공시시스템에 1개월간 각각 게재하도록 하여 투자자보호를 강화

□ 공시책임자의 자격을 강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2조 4항 : 2012/4/18 개정, 4/23 시행)

- 이에 공시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시책임자를 등기이사로 지정하도록 함

□ 상장외국법인의 공시의무비율 적용기간을 개선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3조 4항 : 2012/4/18 개정, 4/23 시행)

- 국내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사업연도 종료후 90일까지) 이후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는 상장외국법인의 사업보고서 마감시한을 감안하여 상장외국법인의 재무정보의 적용기간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다음 사업연도 종료 후 4월이 되는 날까지로 개선

□ 개정 상법을 반영하여 관련 공시제도를 정비하고, 투자위험 정보에 관한 공시를 신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6조 1항 2호 : 2012/4/18 개정, 4/23 시행)

- 개정 상법이 종전에는 특정한 경우 제한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였던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수시공시 의무대상을

자본시장법상의 자기주식에서 상법상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으로 확대

- 개정 상법이 무액면주식의 발행을 허용함에 따라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간의 전환관련 사항을 공시의무에 추가
- 개정상법이 현물배당을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금전 이외 현물배당 결정사실을 공시의무에 추가
- 장래 발생 가능한 투자위험 요인을 사전에 공시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관련하여 자기자본의 10%(대기업 5%)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원리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공시의무대상에 추가

□ 공시위반제재금을 상향 조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34조 1항 : 2012/4/18 개정, 4/23 시행)

-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불성실공시 제재를 강화

□ 집합투자업자등에 대한 불성실공시 사실게재의무를 신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72조 : 2012/4/18 개정, 4/23 시행)

- 거래소가 집합투자업자 등의 불성실공시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해당 사실과 경위 등을 증권시장지에 불성실공시한 날로부터 5일간, 전자공시시스템에 1개월간 각각 게재하도록 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

□ 시가배당률 계산에 현물배당을 포함하도록 함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6조의3 : 2012/4/18 개정, 4/23 시행)

- 상법 개정으로 금전, 주식배당 외에 현물배당도 가능하게 됨에 따라 시가배당률 계산에 있어 현물배당을 추가함

- 자원개발의 중단 및 진행사항에 대한 공시의무를 신설함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13조 : 2012/4/18 개정, 4/23 시행)
 - 자원개발 착수이후 해당 자원개발 중단 또는 반기별 진행사항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여함
 - 또한 추정 매장량 등 경제성 평가에 관한 공시에 대해 평가기관 명시, 평가보고서 제출의무 및 평가기관에 관한 사항의 기재의무 신설함

- 매매거래정지제도를 개선함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18조 : 2012/4/18 개정, 4/23 시행)
 - 집단소송, 워크아웃 및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 지정사유 발생 등 반복·중복적인 정지사유 발생 시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시점을 최초 공시시점으로 명시함

- 공시책임자의 자격요건 강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21조 1항 : 2012/4/18 개정, 4/23 시행)
 - 공시책임자의 등기이사 선임이 의무화됨에 따라 공시책임자 신고 시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도록 규정

- 불성실공시 제재심의기준을 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별표 1 : 2012/4/18 개정, 4/23 시행)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심의 시 병합심의의 근거를 마련
 - 공시위원회는 다수의 공시의무 위반행위가 동일한 원인사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나의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
 - 감경사유로서 교육프로그램의 자발적 이수를 신설
 - 거래소가 인정하는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경우 감경사유(0.5점) 반영하도록 규정

- 공시위반제재금 미납 시 가중벌점 부과절차를 명확하게 규정
 - 납부기한내 미납한 경우 7일이내에 납부할 것으로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 가중벌점을 부과
 - 상장폐지된 법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내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벌점을 부과하지 아니함

- 서류제출 또는 조회공시 통보방법으로 전자문서를 추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3조, 7조 : 2012/4/19 개정, 4/23 시행)
 - 상장법인의 서류제출 또는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통보방법으로 우편·인편 또는 모사전송 이외에 전자문서 방법을 허용

- 자율공시사항의 정비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8조 : 2012/4/19 개정, 4/23 시행)
 - 투자자에게 자원개발 투자 관련정보를 제공하도록 자원개발 착수 이후 진행사항 및 사업중단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
 - 매장량 등 경제성 판명을 공시하는 경우 평가보고서 제출 및 평가기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 금전의 가지급, 대여금 등의 사항이 공시의무사항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자율공시사항에서 삭제

- 공시위반제재금의 상향 조정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13조의3 : 2012/4/19 개정, 4/23 시행)
 - 고의·중과실·상습적 공시위반사항의 경우 공시위반제재금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불성실공시법인 제재를 강화
 - 경미한 위반사항(대체부과)의 경우에도 부과벌점 1점당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대표집행임원에 회사대표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관련 서식을 개정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별지 1~6 : 2012/4/19 개정, 4/23 시행)

- '주요 경영상황 공시 항목'에 '회계기간 변경을 결정한 경우'를 제 4호로 추가하고 공시양식 제4-1호를 신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2호 : 2012/4/24 개정, 5/2 시행)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에서 금융투자회사의 공시사항에 '회계기간 변경을 결정한 경우'가 추가함에 따라 해당 공시양식을 신설

- 벌점 대체부과 대상의 변경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13조의3 1항 1호 : 2012/5/21 개정, 5/22 시행)
 - 공시위반제재금 부과기준의 부과대상 변경하여 벌점 대체부과 신청을 허용하고 공시위원회에서 벌점 대체부과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기존의 경우 예고벌점이 5점 미만 시 제한하여 대체부과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대체부과 요건은 벌점 5점 미만이고 고의·중과실 또는 상습적이거나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사실이 없어야 함

-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예고벌점 기준의 변경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별표 : 2012/5/21 개정, 5/22 시행)
 - 기존 위반사항의 중요성 및 위반기간에 따라 설정되었던 벌점 기준을 위반의 중요성에 따라 재설정함
 - 중대한 위반의 경우 7점, 통상의 위반의 경우 5점, 경미한 위반의 경우 3점으로 정하고, 공시위반기간을 가중·감경사유에 반영하도록 함

□ 불성실공시 제재심의기준의 마련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별표 2 : 2012/5/21 개정, 5/22 시행)

- 예고별점 및 위반의 동기를 기준으로 가중감경사유를 반영하여 부과별점을 심의하도록 함

위반의 중요성 \ 위반동기	고의	중과실	과실	단순착오
중대한 위반	10점	8점	6점	4점
통상의 위반	8점	6점	4점	2점
경미한 위반	6점	4점	2점	0점

- 또한 부과별점의 합리적 부과를 위하여 위반경위별 가중·감경사유를 확대하고 사유별 ±1점씩 총 ±2점의 범위에서 가중 및 감경의 폭을 조정하도록 함

□ 녹색경영정보에 대한 자율적인 공시제도의 도입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13조 12호 : 2012/6/22 개정, 7/1 시행)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한 자율공시를 신설
 - 녹색기술, 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의 확인 및 그에 대한 인증취소 또는 확인취소
 - 관리업체 지정 또는 취소
 - 개선명령, 시정이나 보완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
 - 녹색기업 지정 또는 취소
 - 온실가스 배출권의 취득 또는 처분 등 녹색경영정보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불성실공시와 관련된 매매거래정지 기준별점을 조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정함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16조 2항, 18조 3항, 별표 1 : 2012/6/22 개정, 7/1 시행)

- 불성실공시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과별점을 기존 2.5점에서 2점으로 하향
- 불성실공시로 인한 매매거래정지 기준별점을 기존 4점 이상에서 5점 이상으로 변경
- 또한 최근 2년간 의무공시교육 미이수법인에 대한 불성실공시가 발생하는 경우 공시위반제재금 대체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소액공모 제도의 투자자 보호 강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0조 1항, 125조 2항, 137조 1항 : 2012/6/29 개정·시행)

소액공모제도

자본시장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10억원 이하를 공모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등을 면제하여 공시부담을 경감해주는 위한 제도 (자본시장법 119조 1항, 동법 시행령 120조 1항)

- 종래 주식, 회사채 등 증권의 종류별로 소액공모한도를 산정하던 것을, 증권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증권의 발행금액을 총액기준 10억원으로 합산하도록 함
 - 일반공모에 따른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 이전 소액공모 누적실적을 삭제하고 소액공모금액을 재산정하는 예외적용도 폐지
 - 소액공모를 통해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를 축소하여 상장폐지 직전 한계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소액공모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투자자가 충분한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소액공모 개시 3일전까지 관련 서류를 공시하도록 함
- 소액공모 시 청약증거금을 증권회사 및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 또는 증권금융이 관리(수납, 보관, 환급)하도록 의무화

- 증거금의 납입·반환 과정에서 횡령 등의 사고 발생을 방지

□ 판매비중의 공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8조의2 9항 1호 : 2012/7/10 개정, 7/11 시행)

- 펀드 판매회사는 당해 회사 홈페이지와 협회 인터넷홈페이지에 판매한 펀드에 대한 계열 및 비계열 자산운용사 판매비중·수익률·비용을 비교 공시하도록 함

□ 펀드 불완전판매 제재사실 공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8조의2 9항 2호 : 2012/7/10 개정, 7/11 시행)

- 투자자의 펀드 판매사 선택을 돕기 위해 감독당국으로부터 펀드 불완전판매 제재를 받은 판매회사는 그 사실을 해당 회사 및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함

□ 수익률·비용 비교공시 대상 펀드 명확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조의2 1항 : 2012/7/10 개정, 7/11 시행)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2-8조의2 9항 1호)에 따른 계열·비계열 판매비중, 수익률, 비용 공시의무의 대상은 공모 집합투자기구로 한정

□ 불완전 판매 제재사실 공시 대상 제재 범위 명확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조의2 2항~3항, 별지 54호 : 2012/7/10 개정, 7/11 시행)

- 불완전판매 제재사실 공시대상이 되는 제재를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17조에 따른 기관에 대한 제재로 한정

— 제재사실 공시의 작성 및 제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지로 정함

□ 연금저축펀드를 운용하는 집합투자회사에 금융업권간 통일된 기준으로 산출된 상품수익률 및 수수료율 공시의무 신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4-72조의 2 : 2012/9/18 개정, 9/30 시행)

— 기존의 업권별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 및 수수료율 공시기준이 서로 달라 타업권 상품과 단순비교 불가

-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투자자가 각 업권별 상품에 투자했을 때의 투자성과를 공시하도록 하여 업권별 상품비교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집합투자회사는 연금저축펀드별 수익률 및 수수료율을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산정해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그에 관한 자료를 협회에 제출해야 함

□ 연금저축상품간 계약이전을 원활히 하여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연금저축펀드 판매회사에 연금저축펀드의 기간별 계약유지율과 계약이전수수료 공시의무 부과 및 관련서식 신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4-72조의 2 2항~4항 : 2012/9/18 개정, 9/30 시행)

— 연금저축펀드 판매회사는 연금저축펀드별 계약유지율 및 계약이전수수료를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그에 관한 자료를 협회에 제출해야 함

— 연금저축펀드 판매회사는 협회가 공시하는 연금저축펀드별 수익률 및 수수료율 중 해당 판매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수익률 및 수수료율을 제출마감일 후 15일 이내에 해당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함

- 연금저축펀드 비교공시 관련 자료작성방법 및 제출양식 신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14-1호
(2012년 3월 31일부로 발표하는 영업보고서부터 소급적용) :
2012/9/18 개정, 9/30 시행)

- 지정해제사유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와 동시에 해당 종목의 매매
거래를 정지할 수 있도록 매매정지 시점을 명시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32조 1항 3호 :
2012/9/18 개정, 9/19 시행)
— “조회공시에”를 “조회공시를 요구한 때부터 조회공시에”로 변경

- 연금저축 비교공시 중 수익률 산정 방식 개선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14-1호
: 2012/10/30 개정, 10/31 시행)
 - 금융소비자리포트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한 평균연간수익률 신설
 - $(\text{적립금} - \text{원금}) / \text{원금평잔} \div \text{설정일부터 공시기준일까지 년수}$
 - 기존의 “(적립금 - 원금)/ 원금” 개념에서 “적립금/ 원금합계”의 개념으로 변경됨
 - 즉, 누적수익률에서 적립률로 변경됨

- 관계인수인과의 거래에 관한 공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6조의2 :
2012/12/17 개정 · 시행. 단, 49조는 2013/1/2 시행)
— 관계인수인과의 거래에 관한 공시의 작성 및 제출방법 마련

II. 금융투자업

1. 금융투자회사

- 내부통제기준 규정 사항에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대표주관회사 업무 영위 시 업무의 공정한 영위 및 이해상충방지 등에 관한 내용 신설

(금융투자업 규정 2-22조 1항 10호 : 2012/1/3 개정·시행)

- 해당 내용에는 대표주관회사의 담당직원의 적격기준, 기업실사 수행의 최소기간 및 법률·회계전문가 등 참여의무자, 일반적인 조사·검증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매매주문처리에 관한 내부통제사항 강화

(금융투자업 규정 2-26조 : 2012/1/3 개정·시행)

- 금융투자업자의 매매주문의 처리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지 아니할 것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접수·처리할 수 있는 체계와 이를 점검·확인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할 것
- 매매주문 방법, 처리방법 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투자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 투자자의 매매주문 방법별로 매매주문을 공정하고 안전하게 접수하고 주문접수 시 주문자의 정당한 권한여부를 확인할 것
- 매매주문을 접수, 집행하는 경우 투자자별 거래한도, 위탁증거금 등에 대한 관리를 통해 결제가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
- 투자자로부터 접수한 매매주문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적합성 점검항목을 준수할 것

-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접수, 집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위탁자에게 감독 원장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 설비, 서비스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투자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접수받아 처리·전달하는 경우 투자자가 주문에 대한 처리상황, 체결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할 것
 - 투자자의 금융거래내역 등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전산·통신설비의 장애로 인하여 투자자의 매매주문이 처리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처리방안을 수립·운영할 것 등
- 금융투자업자는 매매주문처리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경우 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접수, 집행에 있어 자료, 설비, 서비스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은 2012년 4월 2일부터 시행(부칙)

□ 영업용순자본비율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정함

(금융투자업 규정 3-6조, 3-14조, 3-16조, 3-17조, 3-19조, 3-20조, 3-22조, 3-23조 : 2012/1/3 개정·시행)

-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는 항목에 무형자산(시장성이 인정되는 무형자산은 제외), 지급예정 현금배당액, 금융투자협회 가입비 등을 신설하고 일부 조정하면서 차감 항목에 적용한 위험값을 적용하여 금융투자업자의 과도한 자본부담을 완화하도록 함
- 사모채권(3-14조 4호에 해당하는 사모사채 및 전환사채,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관련 사모사채는 제외)은 대출채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위험값을 적용하고 정부에 의해 결손보전이 이루어지는 공공법인은 신용집중위험액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 시 실질적 리스크가 감안될 수 있도록 함
- 국고채 ETF, 일반상품 관련 금융상품 등의 출현에 따라 이에 대한 적절한 위험값 산정기준을 신설

□ 금지되는 불건전한 인수행위에 다음 사항을 추가

(금융투자업 규정 4-19조 3~6호 : 2012/1/3 개정 · 시행)

- 투자자의 증권 청약증거금 관리, 반환 등의 업무에 대해 적절한 주의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
- 증권의 공모가격 결정 및 절차 등이 협회가 정한 기준 등 건전한 시장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행위
- 자신 및 이해관계인이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장일 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취득한 동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30일 이내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 회사가 협회가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인수업무조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행위

□ 회계기관 및 업무위탁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 임한 사항의 규정

(금융투자업 규정 3-3조 5항, 3-70조 1항 6호, 4-4조 : 2012/1/3 개정, 2013/4/1 시행)

-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에서 허용한 금융투자업자 회계기간 변경요건은 다음과 같음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3조 1항 1호에 따른 회계처리 기준을 적용하는 금융투자업자가 회계기간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변경하는 경우를 의미함
- 회계기간 변경을 결정한 경우 경영공시사항에 추가하여 금융위 보고 및 공시하도록 함
-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과 관련 이미 보고한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전신고의 예외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

-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이미 보고한 위탁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거나 수수료 변경, 계약기간의 변경(갱신 포함) 등 경미한 일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주된 업종이 동일한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이미 보고한 위탁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거나 수수료 변경, 계약기간의 변경 등 경미한 일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해당 금융투자업자 또는 주된 업종이 동일한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이미 보고한 위탁내용에 대해 관련되는 경미한 일부 업무를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경우로서 위탁업무 범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등

□ 기관투자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한국투자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 및 우정사업본부를 추가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2조 8호 : 2012/1/17 개정, 1/18 시행)

— 이는 인수제도 개선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의 기반 확대를 위한 것임

- 현재 기관투자자는 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보험회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법인,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투자신탁, 투자익명조합,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국법인임

□ 대표주관계약체결과 관련한 제출서류에 발행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하고 계약서 내용에 계약의 해제·해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개선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3조 : 2012/1/17 개정, 1/18 시행)

— 금융투자회사는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식인수를 의뢰받은 경우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고, 주식인수의뢰서 사본, 대표주관계약서 사본 및 발행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계약 체결일 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신고하여야 함

-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기준의 내용을 반영하여 대표주관계약서 내용에 계약의 해제·해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추가

- 금융투자회사는 무보증사채의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협회에 신고하여야 함
 -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11조 : 2012/1/17 개정, 1/18 시행)
 - 기존의 경우 무보증사채의 발행과정에서 발행회사와 주관회사간 명문화된 계약체결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발행회사의 일방적인 발행 취소, 증권사 간의 무분별한 금리 경쟁, 기업실사 부실화 문제가 발생하였음
 - 금융투자회사는 무보증사채의 인수를 의뢰받은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10영업일 이전에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고, 대표주관계약서 사본을 계약체결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신고하여야 함
 - 다만, 무보증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
 - 대표주관계약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발행회사의 경영실적, 영업관련 사항 및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확인 및 조사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의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및 그 최대주주 등에 대한 평판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수요예측 실시 등 공모금리 결정과 관련한 사항
 - 계약의 해제·해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본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31일 이후 대표주관계약 체결분부터 적용(부칙 2조)

- 무보증사채의 수요예측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수요예측 실시예외를 규정
 -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12조 : 2012/1/17 개정, 1/18 시행)

- 기존의 경우 시장수급이 아닌 발행회사에 의해 미리 결정되는 발행금리와 유통금리간의 차이로 인하여 인수회사가 양 금리 간의 차이를 부담하게 되는 문제 발생
 - 주관회사가 발행사로부터 채권을 비싸게(낮은 금리로) 인수한 후 수수료 범위내에서 인수가격보다 싸게(높은 금리로) 할인 매각하는 이른바 '수수료녹이기' 현상이 발생
- 무보증사채의 공모금리는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
- 단, 다음의 경우 수요예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 공모예정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
 - 전환사채, 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무보증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 공모예정금액의 전부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 무보증사채의 인수금리는 수요예측결과를 감안하여 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금리를 공모금리로 함
- 대표주관회사는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자신의 고유재산과 집합투자재산을 구분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여야 하며 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별 신청금리 및 신청수량 등의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본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7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 (부칙 2조)

□ 무보증사채 대표주관회사의 인수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주관업무 수행 금지 규정의 삭제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13조 2항 : 2012/1/17 개정, 1/18 시행)

- 기존의 경우 무보증사채의 대표주관회사는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인수회사의 실질적인 주관업무 수행 금지를 규정하였음

- 주관업무란 인수회사를 대표하여 발행회사와 인수조건을 결정, 청약업무 통할, 증권신고서 제출 등을 의미
 - 하지만 실질적인 주관업무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고 그 위반여부 판단이 어려운데다 수요예측제도의 도입으로 공모가격 결정과정의 투명성이 제고됨에 따라 이를 개정
 - 대표주관회사는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인수회사가 가장 많은 수량을 인수하도록 하거나 인수가격의 결정과정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안 됨
- 무보증사채의 주관회사 제한요건에 보유비율 산정 시 준용규정을 신설하면서 조합 등을 통해 간접보유하는 경우를 추가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13조 3항 : 2012/1/17 개정, 1/18 시행)
- 기존 무보증사채는 조합 등을 통하여 발행회사 또는 주관회사에 대하여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여도 이에 대한 보유비율 산정규정이 없어 주관회사 업무 수행이 가능하였음
 - 이에 무보증사채의 경우에도 대표주관회사 제한 요건을 주식과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개정
 - 본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31일 이후 대표주관계약 체결분부터 적용(부칙 2조)
- 불성실수요예측참여행위에 무보증사채의 경우를 추가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17조의2 : 2012/1/17 개정, 1/18 시행)
- 이는 새롭게 마련되는 수요예측제도와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기관투자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함 것임
 -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 공모와 관련하여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개월간 무보증사채 공모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를 허용하거나 공모무보증사채를 배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본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7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
(부칙 2조)

□ 공공적법인 등에 대하여 수요예측, 배정에 관한 일부 인수규정의 적용을 배제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20조 : 2012/1/17 개정, 1/18 시행)

— 기존의 경우 금융투자회사가 공공적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였음

— 하지만 본 규정은 상장을 목적으로 한 비상장법인의 공모 시 적용되므로 상장법인인 공공적 법인에 대한 인수규정 적용배제는 실효성이 없음

• 공공적법인이란 국가기간산업 등 국민경제상 중요한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법인임(자본시장법 152조 3항)

— 이에 자본시장법 상의 공공적법인과 일부 기관에 대하여 수요예측, 배정 규정(5조, 9조 1항~2항, 17조의2)만을 제한하여 적용 배제하도록 개정

• 공공적 법인 외 일부기관은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2조)와 정부가 50% 이상 지분 소유 혹은 30% 이상 지분소유하고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조 1항 3호)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을 의미

— 단, 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하는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관리(17조의2) 규정은 적용

□ 임직원은 대외활동 시 해당 활동의 성격, 이해상충 등을 감안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업무관련 대외활동 모범규준 1.3조, 1.4조 : 2012/1/27 제정, 3/1 시행)

- 회사의 공식의견이 아닌 경우 사건임을 명백히 표현하여야 함
- 대외활동으로 인하여 회사의 주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됨
- 대외활동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회사에 신고하여야 함
-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 임직원의 대외활동 시 금지행위는 다음과 같음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업무관련 대외활동 모범규준 1.5조 : 2012/1/27 제정, 3/1 시행)

- 업무상 취득한 비밀(미공개중요정보 등 포함)을 외부에 전송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중요자료나 홍보물 등을 배포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불확실한 사항을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또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주장이나 예측이 담긴 내용을 제공하는 행위
- 합리적인 논거 없이 시장이나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또는 증권발행기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하는 행위
-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나 부당권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제공하는 행위
- 경쟁업체의 금융투자상품, 인력 및 정책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명확한 근거 없이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행위
- 관계법규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의 인적사항, 매매거래 정보 및 신용정보 등에 관한 내용을 제공하는 행위

- 회사는 일정사유 발생 시 대외활동을 하는 임직원에게 그 활동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 임직원은 해당 활동을 중단하여야 함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업무관련 대외활동 모범규준 1.6조 : 2012/1/27 제정, 3/1 시행)

- 일정 사유란 해당 대외활동으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된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거나 고객, 주주 및 회사 등과의 이해상충이 확대되는 경우임

- 회사는 대외활동의 종류, 허용범위, 준수사항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제정할 수 있음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업무관련 대외활동 모범규준 1.7조 : 2012/1/27 제정, 3/1 시행)

- 임직원의 세부 대외활동에 대한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마련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업무관련 대외활동 모범규준 2012/1/27 제정, 3/1 시행)

- 임직원의 외부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등의 활동의 경우 사전에 그 내용 및 원고 등의 자료를 회사에 보고하여야 함(2.1조)
- 임직원의 언론매체와 접촉 시 사전에 관계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회사는 임직원의 언론매체 접촉계획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함(2.2조)
- 임직원이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2.3조)
 -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설명 등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게시하거나 대량의 메시지를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투자자 등 고객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면서 자기, 회사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됨

- 익명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도 비공개를 요하는 정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하여서는 안 됨
- 다른 임직원의 전자통신수단 계정을 도용 불가
- 임직원은 직접 또는 임직원의 개인계좌(자기계산계좌 포함)를 통한 투자자금이나 그 밖의 투자를 위한 재산의 수취행위 금지

□ 「신용정보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 홍보 또는 판매목적의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선택적 동의사항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등 <별지 제2호> 서식을 개정함에 따라 관련 서식을 변경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3-18조, 별지 20호 : 2012/2/1 개정·시행)

□ 금융투자회사는 발행기업의 의사를 반영하되 최대한 채권의 적정 발행금리를 추정하여 공모희망금리와 발행물량을 제시하여야 함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 2012/2/1 제정, 4/17 시행)

— 이때 제시하는 최저금리는 최고금리의 일정 범위 내이어야 함

□ 금융투자회사는 발행기업의 의사를 고려하되 최대한 기업의 적정 가격을 추정하여 공모희망가격을 제시하여야 함

(기업공개 수요예측 모범규준 : 2012/2/1 제정, 3/31 시행)

□ 금융투자회사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기업공개 수요예측 모범규준 : 2012/2/1 제정, 3/31 시행)

— 수요예측참여자의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수요예측참여자의 신청수량, 신청가격, 의무보유확약 여부 기재 시착오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집합투자업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을 구분하여 접수하여야 함
- 또한 수요예측이 진행되는 동안 경쟁률은 비공개하여야 하며 공모금액 미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예측 종료 후 별도의 수요파악을 하여서는 안 됨
- 수요예측 관련사항 기록 및 해당 자료를 상장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함

□ 금융투자회사는 공모가격 결정 시 수요예측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함

(기업공개 수요예측 모범규준 : 2012/2/1 제정, 3/31 시행)

- 수요예측참여자의 성향 및 가격평가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모가격 결정 시 가중치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공모가격 결정 시 제외하여야 함

□ 금융투자회사는 공모주식 배정에 있어 기관투자자의 매매성향, 가격분석능력 및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하여 차등 배정할 수 있음

(기업공개 수요예측 모범규준 : 2012/2/1 제정, 3/31 시행)

- 이때 의무보유확약을 한 수요예측참여자 등 중·장기 투자성향의 투자자에 대하여 우대 배정하여야 함
-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기관투자자에 대해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안 됨
 -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 금융투자회사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기업공개 수요예측 모범규준 : 2012/2/1 제정, 3/31 시행)

-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란 다음과 같음
 -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후 청약에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 내에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의무보유기간 확약의 준수여부는 해당기간 중 일별잔고를 기준으로 확인)
 - 수요예측 참여 시 관련정보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서 상기 사항에 준하는 경우
- 금융투자회사는 수요예측 참여 기관투자자에게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일정기간 수요예측참여가 제한되며 주식을 배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함
- 또한 의무보유확약을 한 수요예측참여기관에 대하여 수요예측배정결과 통보 시 의무보유확약 여부 및 기간(매매가능시기) 등을 고지하여야 함

- 금융투자회사는 무보증사채의 공모금리 결정을 위해 수요예측을 실시하여야 함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 2012/2/1 제정, 4/17 시행)

- 금융투자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고, 수요예측 참여자의 신청수량 및 가격 기재 시 착오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수요예측 참여자의 요구 시 금리대별로 희망물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금융투자회사는 수요예측기간 중 경쟁률은 비공개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펀드재산과 고유재산을 구분하여 접수하여야 함

- 또한 공모금액 미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예측 종료 후 별도의 수요를 파악하여서는 안 됨
- 금융투자회사는 수요예측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발행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함

□ 금융투자회사는 공모금리를 결정하는데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 2012/2/1 제정, 4/17 시행)

- 금융투자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 및 가격평가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참여자의 금리결정 가중치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대표주관계약 체결 시 기재한 수요예측 및 공모금리 결정 방법으로 공모금리가 결정되면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발행하여야 함
- 수요예측 이전에 발행금리를 확약하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됨
- 인수회사는 수요예측 참여물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발행예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계산으로 인수할 수 없음
 - 수요예측 참여물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발행예정 금액에 미달하여 인수회사가 잔여물량을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유효 수요 중 가장 높은 금리 미만으로 인수할 수 없음

□ 금융투자회사는 공모채권을 배정하는데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 2012/2/1 제정, 4/17 시행)

- 금리를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하여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하여야 함
-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 및 투자행태 등을 고려하여 공모채권 배정 시 가중치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금융투자회사는 다음과 같이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 2012/2/1 제정, 4/17 시행)

—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는 다음과 같음

-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채권을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사채청약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 수요예측 참여 시 관련정보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 인수회사와의 이면 합의 등을 통해 사전에 약정된 금리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서 상기 사항에 준하는 경우

— 금융투자회사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수요예측 참여자에게 다음 사항을 충분히 고지하여 실제 배정받을 물량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함

- 무보증사채 발행 시 일정기간 수요예측 참여가 제한되며 공모채권을 배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함

□ 변경대상 제외 펀드에서 사모펀드와 판매보수이연(CDSC) 펀드를 제외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40-1조 3호, 5호 : 2012/2/24 개정, 3/2 시행)

— 기존에는 전산시스템 미비 등을 이유로 사모펀드 및 공모펀드 중 판매보수이연(CDSC) 펀드, 세계혜택펀드 등 일부 펀드가 펀드판매회사 변경제도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판매보수이연(CDSC) 펀드의 경우 전환기준일 또는 전환기준일 이전 1영업일인 경우 변경절차 적용을 배제함(40-2조 3호)

- 이는 펀드의 결산일 또는 결산일 이전 1영업일인 경우 확인서 발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목적임

— 펀드의 결산일 및 판매보수이연(CDSC)펀드의 전환기준일 이동제함과 관련하여 <별지 제47호: 계좌정보확인서> 유의사항에 다음 내용을 마련함

- 펀드의 결산일 및 판매보수이연(CDSC)펀드의 전환기준일 이전 1영업일부터 계좌정보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유의사항을 명시

□ 계좌별 손익금액 산정기준 가운데 분기중 계좌인출총액과 분기중 계좌유입총액 산정기준을 변경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53호 : 2012/3/2 개정, 3/9 시행)

- 분기중 계좌인출총액에서 이미 당분기말 계좌평가액에 반영되어 있는 포지션 보유로 인한 롤오버이자 출금액, 포지션 청산으로 인한 결제 출금액, 거래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제외
- 분기중 계좌유입총액에서 이미 당분기말 계좌평가액에 반영되어 있는 포지션 보유로 인한 롤오버이자 입금액, 포지션 청산으로 인한 결제 입금액을 제외

□ 금융투자회사의 투자광고관련 금지행위 중 공정한 거래질서 및 건전한 투자문화를 저해하는 행위 항목을 구체적으로 실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별표 10 : 2012/3/9 개정 · 시행)

- 기존 투자위험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가격변동위험, 국가위험, 환율변동위험 등의 투자위험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으로 명시

□ 자문형 랩어카운트 수수료에 대한 자료주기, 제출방법, 대표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전체 수수료 부과기준 기재양식을 마련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3호 4호 서식 : 2012/3/16 개정 · 시행)

- 자문형 랩어카운트취급 증권사는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매분기말 기준으로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체계 및 부과기준 제정 또는 변경사항을 업무지원서비스(<http://work.kofia.or.kr>)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 대표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전체 수수료 부과기준 기재 양식은 다음과 같음

회사명	기준일자	전체 수수료 체계 및 부과 기준	대표 수수료 체계 및 부과기준						
			기본 수수료				기타 수수료	성과 보수	비고
			구분	선취	후취	합계			
		(hwp, pdf, doc 등 파일 제출)							

- 전체 수수료 체계 및 부과기준 양식은 다음과 같음

회사명	기준일자	투자자문업자명 (국내, 해외 구분)	서비스 및 계약명	기본 수수료				기타 수수료	성과 보수	비고
				구분	선취	후취	합계			

□ 자기자본 범위의 정비

(금융투자업 규정 별표 20 : 2012/3/27 개정, 4/1 시행)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IFRS-K) 도입에 따라 자기자본의 범위를 정비함
 - 이때 자기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산출
- 기본자본 항목상 다음 사항을 변경
 - 기존 이익잉여금에 증권금융회사 자신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누적미실현평가손익,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이익잉여금으로 계상된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재평가이익에서 각각의 항목에 대한 세액효과를 차감한 금액 및 대손준비금을 제외
 - 또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외환차이를 신설하고 기존 자본조정중 미교부주식배당금을 제외
- 보완자본 항목상 다음 사항을 변경

- 기존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평가이익의 45% 상당액에서 유형자산 재평가이익의 70% 상당액을 포함
- 또한 이익잉여금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이익잉여금으로 계상된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재평가이익으로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 정관의 변경 등에 의해 배당이 제한된 금액의 100분의 70 상당액을 신설

□ 대손준비금 제도의 도입

(금융투자업 규정 8-7조, 8-9조 : 2012/3/27 개정, 4/1 시행)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IFRS-K) 도입에 따라 발생손실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면서 손실흡수능력 유지 등을 위하여 대손준비금 제도를 마련

□ 기존 제40조 매매주문 처리준칙에서 규정하던 사항을 개정하여 제40조에서 제40조의10 까지 확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함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2012/3/27 개정, 4/2 시행)

□ 매매주문 처리준칙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40조 : 2012/3/27 개정, 4/2 시행)

- 기존에는 관계 법령 등에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위임하였음
- 매매주문시스템이란 회사의 매매주문 접수, 호가의 점검 및 집행 등 매매주문처리와 관련된 시스템
- 침입차단시스템(Firewall)이란 전자통신을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기기
- 대외계시스템(FEP)이란 회사와 거래소를 연결하는 서버로서 회사 시스템과 거래소 시스템간에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관한 주문이나 거래 체결 내역 및 시세정보를 송·수신하는 회사의 통신제어시스템

- 프로세스란 회사와 거래소 간의 호가 및 거래 체결내역을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논리적 회선을 의미

□ 매매주문처리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음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40조의2 : 2012/3/27 개정, 4/2 시행)

- 신의성실의 원칙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접수·처리할 수 있는 체계와 이를 점검·확인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
- 매매주문 절차에 대한 고객 설명의무 부여 및 투자자 선택권 보장
- 투자자의 매매주문 공정·안전 접수 및 주문자의 권한여부 확인의무, 호가의 적합성 점검항목 준수 의무, 투자자별 거래한도, 위탁증거금 등에 대한 관리를 통한 결제의 이행보증의무
- 특정 위탁자에 대한 자료, 서비스 등 차별적 제공 금지
- 매매주문을 접수받아 처리전달 시 주문에 대한 처리상황, 체결내역 등에 대한 고객 통지 의무 및 고객의 금융거래내역 등이 제삼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의무 명시

□ 회사는 매매주문시스템을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함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40조의3 : 2012/3/27 개정, 4/2 시행)

- 이때 회사가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에는 회사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간주

- 회사는 침입차단시스템을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함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40조의4 : 2012/3/27 개정, 4/2 시행)
 - 침입차단기능만을 전용으로 침입차단시스템을 설치하고 이때 회사의 다른 전산설비와 물리적으로 구분되도록 하여야 함

- 회사는 시세정보의 제공형태나 제공방식 등에 대해서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않고 특정 위탁자에게만 차별적으로 제공여서는 안 됨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40조의5 : 2012/3/27 개정, 4/2 시행)
 - 매매주문시스템을 통해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 처리를 위한 설비나 시설 등에 대한 차별적 제공행위도 금지
 - 또한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거래소 호가시스템에 전송하는 과정에서 거래소가 정한 기준을 벗어나 프로세스별로 속도차이가 발생하도록 하여서는 안 됨

- 회사는 투자자의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40조의6 : 2012/3/27 개정, 4/2 시행)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용조건을 제한하거나 비용을 차등부과 하지 아니할 것
 - 투자자의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 등 선택 시 투자자의 신용도, 전문성, 위험관리능력 등을 고려할 것
 -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투자자와 매매거래계좌설정 계약 체결 시 이를 반영할 것

-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회사의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 등은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을 것
 - 전자통신방법에 따라 매매주문을 접수하는 경우 해당 매매주문은 자체 매매주문 정보처리시스템상 최초로 침입차단시스템을 경유하여야 함
- 회사는 전산·통신 설비 장애로 인하여 매매주문처리 불능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운용하여야 함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40조의8 : 2012/3/27 개정, 4/2 시행)
- 회사는 주문착오방지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적절한 주문착오 방지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40조의9 : 2012/3/27 개정, 4/2 시행)
- 임직원의 착오로 인해 투자자 주문이 주문내용과 달리 체결되었거나 또는 체결 가능한 주문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 회사의 착오매매처리에 관한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관련 내역 및 증빙자료를 3년 이상 보관·유지하여야 함
- 파생결합증권의 간이투자설명서 이용 시 핵심설명서 교부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5조 3항 : 2012/3/29 개정, 4/1 시행)
- 파생결합증권 판매 시 교부되는 핵심설명서가 법령상 간이투자설명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오용될 소지가 상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 핵심설명서는 본질은 자본시장법상의 간이투자설명서에 해당하지만 기재내용이 단순하고 법적 공시서류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책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25조)의 적용이 곤란하였음

— 이에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핵심설명서 교부의무를 배제함

□ 현금위탁증거금을 현금예탁필요액으로 변경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3-5조 3호 : 2012/4/13 개정, 5/2 시행)

- 2012년 2월 29일 감사원은 파생상품 투자자이용료 지급에서 제외되는 현금위탁증거금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현금위탁증거금 초과한 부분에 대한 적정한 이용료 지급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
- 이에 현금위탁증거금을 현금예탁필요액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현금예탁필요액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예탁한 위탁증거금을 예탁금 이용료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 현금위탁증거금을 현금예탁필요액으로 변경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5조, 7조, 8조, 19조, 별첨 1 : 2012/4/18 개정, 5/2 시행)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 파생상품 예탁금 이용료 지급제외대상인 현금위탁증거금을 현금예탁필요액으로 개정함(4.13)에 따라 이를 반영
- 또한 금융투자회사별로 별첨1을 통하여 현금예탁필요액을 명시하여 투자자에게 고지하도록 함

□ 금융투자회사의 공시사항에 회계기간 변경 결정 내용등(금융투자업규정 3-70조 1항 6호)을 추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59조 : 2012/4/24 개정, 5/2 시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6조)으로 금융투자회사의 기존 3월 결산 외에 12월 결산이 가능해짐

- 이에 「금융투자업규정」에서 회계기간 변경 결정한 경우를 금융투자회사 공시사항으로 추가함에 따라 하위 동 규정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개정

□ 수수료 부과기준의 개선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3호 제1호 서식 : 2012/4/24 개정, 5/2 시행)

- 수수료 부과기준 서식에 위탁매매수수료 외에 기타 수수료를 추가 하면서 각각 수수료에 대한 양식은 각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작성 하도록 함

□ 지연인출제도 도입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에 반영 내용을 마련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별표 9, 10조의2 : 2012/5/9 개정, 6/11 시행)

- 고객이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등 전자적 장치에서 카드,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고객 본인 계좌의 현금을 인출하고자 할 때, 인출전 1회 300만원 이상의 현금이 송금 및 이체되어 고객본인계좌로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10분간 입금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출이 지연될 수 있음을 규정

<표 II-1> 자연인출제도

도입배경	피해자의 송금과 동시에 이를 인출하는 피싱의 특성상 기존 지급정지 제도를 통한 피해액 환급 가능성이 제한적이고, 지급정지 성공확률 개선을 위하여 피해금 인출 전 은행의 충분한 자체 모니터링 후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동제도를 도입함
이체금액 인출제한	300만원 이상의 계좌 간 이체금액은 수취계좌로 입금 된지 10분 후에 인출이 가능하도록 설정 1. 입금방식 : 송금·이체 등 구분없이 모든 입금에 대해 적용 2. 출금매체 : 자동화기기에서 인출할 수 있는 접근매체(현금, 신용, 체크, 직불카드 등 모든 카드 및 예금통장)에 적용 3. 출금방식 : 자동화기기에서 인출하는 경우에만 적용 4. 출금지역 : 국내·외 모두 적용 5. 거래주체 : 개인·법인 모두 적용 6. 출금제한 금액 산정 : 한도 개념을 적용하여, 300만원 이상이 계좌에 입금된 후 이체 등으로 잔액이 변동되어도 입금된 금액을 한도로 10분간 계속 출금을 제한

□ 투자상담관리인력 등록요건의 변경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1-4조 4호 : 2012/6/28 개정, 8/1 시행)

- 기존 금융투자회사는 효율적인 영업점 감독을 위하여 영업점별 투자상담사 및 투자권유대행인의 업무를 감독하는 투자상담관리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실무상으로는 라이선스를 보유한 신입직원이 이에 지정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음
- 이에 다음과 같이 투자상담관리인력의 등록요건을 강화
 - 투자상담관리인력은 해당 지점 또는 영업소 등에서 투자권유가 가능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모든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금융투자회사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지점장 등 해당 지점 또는 영업소 등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함
- 또한 금융투자회사 1년 경력자에 대한 투자상담관리인력 등록교육 면제를 제외(5-2조)

□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등록거부범위의 축소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2-3조 : 2012/6/28 개정, 8/1 시행)

- 기존의 경우 특정 라이선스를 보유한 전문인력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라이선스의 등록이 정지되고 다른 라이선스 취득 시 신규 등록이 불가능하였음
- 부서 이동 등으로 인하여 기존 보수교육이 불필요함에도 전문인력이 다른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하여 미이수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불합리함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수교육 미이수자의 해당 업무와 무관한 다른 라이선스의 신규 등록을 허용하도록 개정

□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의 국내 판매 허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 3항 5호의2 : 2012/6/29 개정, 2012/9/30 시행)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 투자매매업자의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대해 금융투자업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외국의 투자매매업자가 국외에서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을 다른 주식, 회사채, 펀드, 파생상품 등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함
 - 외국 투자매매업자는 해당 국가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건전성, 불공정거래방지 등에 관한 감독을 받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장외파생상품에 관한 인가를 받은 국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인수와 중개를 통해서만 판매가 가능하며, 판매대상은 전문투자자로 한정

□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 차단에 관한 규제 정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50조 1항, 68조 2항 4호의2~4호의4 : 2012/6/29 개정, 2012/9/30 시행)

-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중개업 중 일정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업무와 신탁업을 하나의 부서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 등 고객의 재산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판매업무에 한정
 - 다만 이해상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탁업무 수행 시 고유재산 운용업무와 구분 운영하는 등의 추가 요건을 부과함
- 주선, 기업인수 및 합병에 대한 자문 등의 업무를 맡는 기업금융업무부서에 대해 일정한 투자은행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비상장기업에 대한 출자, 상장주식에 대한 대량매매(block deal)와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중개 업무 등
- 기업의 설비투자, 자원개발 등에 관한 금융자문 등을 수행하는 '프로젝트금융(project financing)'업무는 원칙적으로 기업금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수행하도록 함
 - 프로젝트금융을 담당하는 기업금융업무부서는 고유재산운용업무를 동시 수행 가능

□ 계열사 펀드 등에 대한 차별적인 판매촉진행위 금지

(금융투자업 규정 4-20조 : 2012/7/10 개정·시행)

- 펀드판매사가 자신의 계열회사등이 운용하는 펀드 판매를 늘리기 위해 영업직원에게 대해 차별적인 보상이나 성과보수의 제공, 집중적 판매독려 등과 같은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는 것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
 - 다만,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적 판매촉진행위는 가능
 - 계열회사등: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로서 자기가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회사, 상호간 임원 겸임 또는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 등의 사실이 있는 회사 등을 말함

-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효과 등을 감안하여 전문투자자를 제외한 일반투자자에게만 적용

□ 산업분야 경력자의 근무경력 인정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1-4조 6호 다목, 2-1조 : 2012/7/27 개정, 8/1 시행)

- IT, 바이오, 전자, 화학 등과 같은 특정 분야의 산업현장에서 연구 개발(R&D), 산업동향 분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에 대해서는 윤리·준법 교육만 이수하면 금융투자분석사(애널리스트) 등록을 허용
 - 회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자로 한정
- 애널리스트의 윤리 및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최초 등록 시 10시간 이상의 윤리·준법교육 이수 의무화
 - 준법·윤리교육 이수 확인서(동 규정 별지 5호의2)의 제출 의무 부과

□ 평가전문인력의 근무경력 인정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1-4조 6호 라목~바목, 2-1조 : 2012/7/27 개정, 8/1 시행)

- 신용평가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집합투자재산평가회사에서 채권 및 펀드 등의 금융투자상품이나 기업에 대한 평가·분석업무에 종사한 자는 윤리·준법 교육만 이수하면 금융투자분석사(애널리스트) 등록을 허용
 - 신용평가 전문인력: 공인회계사 및 금융기관, 채권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에서 증권의 평가·분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집합투자기구평가 전문인력: 금융기관 또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증권 등의 평가·분석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집합투자재산평가 전문인력: 금융기관 또는 채권평가회사에서 증권의 평가·분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애널리스트의 윤리 및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최초 등록 시 10시간 이상의 윤리·준법교육 이수 의무화
 - 준법·윤리교육 이수 확인서(동 규정 별지 5호의2)의 제출 의무 부과

□ 인정 연구기관 범위 확대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1-4조 6호 사목, 2-1조 : 2012/7/27 개정, 8/1 시행)

- 기존에는 2년간의 근무 경력만 있으면 애널리스트 등록이 가능한 연구기관이 자본시장연구원과 금융연구원 두 곳뿐이었으나, 정부와 기업출연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의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준법 교육만 이수하면 금융투자분석사(애널리스트) 등록을 허용
 - 산업분야 경력요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연구기관 근무경력 기간도 3년으로 조정
- 애널리스트의 윤리 및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최초 등록 시 10시간 이상의 윤리·준법교육 이수 의무화
 - 준법·윤리교육 이수 확인서(동 규정 별지 5호의2)의 제출 의무 부과

□ 자율규제위원장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의 범위 확대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9조 : 2012/7/27 개정, 8/1 시행)

- 자율규제위원장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으면 금융투자분석사 등록이 가능하므로, 종래 자본시장연구원과 금융연구원으로 한정되어 있던 연구기관의 범위를 확대·규정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이 출자한 연구기관
 - 자본시장법 시행령(10조 2항)의 금융기관이 출자한 연구기관
 - 자본시장법 시행령(10조 3항 1호~13호)의 공사 등 법인이 출자한 연구기관
 - 주권상장법인이 출자한 연구기관

□ 공모희망금리 결정근거 상세공시 신설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3조 3항 : 2012/8/8 개정, 8/20 시행)

- 수요예측 공모희망금리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
 - 민간채권평가사(2개사 이상) 평가금리
 - 동종업계·동일등급 채권의 최근 발행금리 및 유통금리 등

□ 유효수요의 판단기준 신설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5조 3항, 8항 : 2012/8/8 개정, 8/20 시행)

- 금융투자회사가 내부적으로 합리적인 유효수요의 판단기준을 정하여 운영
 - 수요예측 결과를 근거로 유효수요를 산정
 - 수요예측 결과를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그 때 유효수요를 산정하는 방법 등

□ 유효수요 범위 및 금리결정 시 수요예측내용 반영 방법 공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5조 8항 : 2012/8/8 개정, 8/20 시행)

- 유효수요 판단기준에 따라 산정된 유효수요 범위
- 최종 공모금리 결정 시 수요예측결과를 반영한 방법을 공지해야 함

□ 청약물량 배정 시 수요예측 참여자에 우선권 부여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6조 3항, 4항 : 2012/8/8 개정, 8/20 시행)

-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자에게는 미참여 기관에 비해 청약물량 배정 시에 우선권을 부여

- 금융투자회사는 공모채권의 배정에 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함

□ 공매도 보고주체 및 공매도포지션 산정방식 신설

(금융투자업 규정 6-30조 5항, 6-31조 3항, 6-32조 1항 : 2012/8/30 개정·시행)

— 보고주체는 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별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모든 정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감안해 투자자 본인에게 보고의무 부여

-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전체의 관점에서 공매도포지션(해당 증권의 보유수량을 초과해 매도한 수량)을 산정하여 보고하는 것을 원칙
- 금융기관 내에서 조직별로 공매도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공매도 포지션은 법인 전체의 관점에서 산정하여 보고
- 다만, 펀드 등의 경우는 펀드별로 산정한 공매도 포지션을 합산하여 보고

□ 순보유잔고비율의 산정기준일 및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 명시에 관한 사항 등

(금융투자업 규정 2-22조, 2-23조, 6-31조 4항, 6-32조 2항, 6-33조 : 2012/8/30 개정·시행)

— 순보유잔고비율의 산정기준일

- 증권시장에서 증권을 매매한 경우 매매체결일
- 증권시장 외에서 증권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계약체결일
-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행사,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상장일 이전 제2영업일
- 교환사채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교환을 청구한 날
- 증권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는 경우 그 설정신청일, 환매로 인해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환매청구일

- 증권예탁증권의 계약해지에 따라 원주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이 확정된 날, 그 반대의 경우는 전환청구일
 - 자본감소의 경우 변경된 주식의 상장일
 - 위의 사항 외의 사유로 주식을 취득·처분할 경우 「민법」·「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법률행위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매도 주문의 수탁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할 때, 공매도 관련 법령의 준수여부를 확인 하도록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에 명시하도록 함
- 금융감독원장의 공매도 포지션 관련 자료요청권
- 독립거래단위를 운영하는 자의 운영내용과 보고 대상자의 순보유잔고 보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보고서 서식 중 신탁업무와 관련된 세부사항 변경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1호 : 2012/9/18 개정, 9/30 시행)
- 대차대조표(겸영신탁업자 신탁계정) : 계정과목을 전면 수정
 - 손익계산서(부동산신탁사 신탁계정)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법인세비용 항목 추가
 - 손익계산서(겸영신탁업자 신탁계정) : 계정과목을 전면 수정
 - 신탁별 수탁현황 : 특정금전신탁을 수시입출금, 자문형, 자사주로 세분화하고 종합재산신탁을 추가
 - 금전신탁 자금조달 현황, 금전신탁 자금운용 현황 : 특정금전신탁 세분화 및 상품 세분화
- 윤리기준(금융투자회사의 표준윤리준칙 2012/10/26 제정)
- 애널리스트 윤리강령에 있는 윤리기준과 행위기준상 신의성실의무 및 법령준수의무를 표준윤리준칙에 편입시킴

□ 행위기준(금융투자회사의 표준윤리준칙 2012/10/26 제정)

- 임직원의 의무
- 소속회사에 대한 의무
- 고객에 대한 의무
 - 기존 표준윤리강령의 고객이익우선에 관한 조항의 '자기 또는 제3자의'를 신설 모범규준에서는 '본인, 회사 또는 제3자의'로 바꿈
 - 업무관련 대외활동 모범규준에서 규정하던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활동'사항 중 투자자금등의 직접 수취행위금지에 관한 조항을 대외활동에 한정하지 않고 대고객 금지행위로 편입
- 업무관련 대외활동
 - 종래 업무관련 대외활동 모범규준의 내용을 표준윤리준칙으로 편입

□ 모범 규준의 구성

(금융투자회사등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 규준 : 2012/10/26 제정)

- 제1편 총칙
 - 집행임원 정의 규정삭제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용어 개정을 염두
 - '감사위원회' 정의 추가
 - '상근감사' 정의 추가
 - '감사인' 정의 추가
- 제2편 사외이사
 - 총칙
 - 사외이사의 선임 : 상법 제542의 8 제4항의 개정내용 반영
 - 사외이사의 임기
 - 사외이사의 역할 및 활동 등
 -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및 보상
 - 사외이사 활동의 지원
 - 공시 등

— 제3편 감사위원회

- 총칙 : 상근감사관련 규정 신설
- 권한 및 업무 : 상법 제391조 2항 개정내용 반영
- 회의 : 상법 제415조의 2 제5항에서 규율
- 감사인 : 준법감시 및 리스크 관리 부서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인사 및 대우 부분 삭제,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계획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 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
- 기타

□ 제정 모범규준의 목적과 정의조항 정비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1-1조, 1-2조 : 2012/10/26 제정)

— 제정된 모범규준은 금융투자회사의 매매주문 시 착오입력, 금융범죄 예방 및 임직원 금융범죄 발생 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투자자와의 건전한 거래질서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용어의 정의

-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 : CMA계좌, 증권계좌, 파생상품계좌, 종합계좌 등 계좌종류를 불문하고 고객이 자유롭게 입출금을 할 수 있는 계좌
- 비대면채널 :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는 입출금거래 방법으로서, CD·ATM거래, 폰뱅킹, 인터넷 뱅킹, HTS 이용거래, 직불카드 결제거래 등
- 금융범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형법 등을 위반하여 범한 죄
- 시스템매매에 의한 주문 : 고객 자신의 판단을 배제하고 사전에 내장된 일련의 조건에 의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종목, 매매시점 또는 매매호가에 대한 의사결정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동으로 매매주문을 내는 전산소프트웨어에 의한 매매
- 대포통장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통장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반하는 타인에게 양도·대여·판매된 통장

- CMS : 은행, 금융투자회사(증권사 등), 금융결제원이 공동 참여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CMS 이용기관이 고객이 거래하는 금융기관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거나 고객계좌로 자금을 입금할 수 있는 서비스

□ 기존 '금융투자회사의 주문착오방지를 위한 모범규준'의 내용을 신설 모범규준 상 2편 금융투자회사의 주문착오방지로 편입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 2012/10/26 제정)

- 적용범위와 기본원칙 조문화(2-1조, 2-2조)
- 주문착오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보류기준에 해당하는 주문과 경고기준에 해당하는 주문의 입력관련 내용의 조문화(2-3조)
- 적용제외 대상의 조문화(2-4조)
 - 기존 장중대량매매, 장중바스켓 매매, 시스템매매에 관하여 각주 처리된 정의부분을 한국거래소 업무규정의 용어는 준용규정으로 위임하고, 시스템매매에 의한 주문은 정의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하여 삭제
- 상품별 적용기준에 대한 기본 원칙 조문화(2-5조)
 - 가격미지정건에 대한 적용방식 제시

□ 기존 '신분증위변조 및 CMS이용 금융범죄행위방지 모범규준'의 내용을 신설 모범규준 상 3편 금융범죄행위방지로 편입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2012/10/26 제정)

- CMS 이체한도 설정(3-1조)
- 본인 확인절차 강화(3-2조)
- 이상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3-3조)
- 고객 정보 확인(3-4조)
- 징구서류(3-5조)

- 기존 '전화금융사기 등 피해예방대책 세부방안'의 내용을 신설 모범규준 상 3편 금융범죄행위방지로 편입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 2012/10/26 제정)
 - 신원확인 및 계좌개설 거절(3-6조)
 - 계좌 개설요건 강화(3-7조)
 - 계좌 개설 허용(3-8조)
 - 비대면채널 추가 신청(3-9조)
 - 양도금지 문구기재(3-10조)
 - 주의문구(3-11조)
 - 음성경고(3-12조)

- 기존 '금융범죄행위에 대한 고발기준 표준안'의 내용을 신설 모범규준 상 4편 임직원 금융범죄행위에 대한 고발로 편입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 2012/10/26 제정)
 - 보고(4-1조)
 - 고발대상(4-2조)
 - 고발주체(4-3조)
 - 처리결과 보고(4-4조)
 - 기록·유지(4-5조)

- 모범 기준의 구성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2012/10/26 제정)
 - 제1편 총칙
 - 기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 제2편 유동성리스크 관리(기존의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편입)
 - 총칙

- 유동성리스크의 인식 및 측정
- 유동성리스크의 통제 및 완화
- 담보관리 및 유동성 관리

— 제3편 신용거래 리스크 관리

- 총칙
- 신용거래 리스크관리
- 고객별 리스크관리
- 리스크관리 내부통제의 의의

— 제4편 연계신용거래 리스크 관리

- 총칙
- 연계신용 업무 취급기준
- 연계신용 이용고객 보호
-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 제5편 적격기관투자자 파생상품 위험한도 관리

- 총칙
- 적격기관투자자
- 위험노출액 한도 관리
- 모니터링

— 제6편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 총칙
- 고유재산의 부동산 PF업무
- 투자자재산의 부동산 PF업무

□ 파생결합증권 발행규제의 역외적용 요건 구체화

(금융투자업 규정 1-5조 : 2012/11/21 개정 · 시행)

-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는 역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금융투자업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요건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 함

- 자산총액, 영업규모 등이 국제적 영업활동에 적합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
-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일 것
-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일 것
- 최근 3년간 법, 영,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법 처벌법(이에 상당하는 외국 관련법령을 포함)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법,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투자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이상(이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포함)의 조치를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났을 것(업무의 전부정지인 경우는 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일부정지인 경우는 끝난 날부터 2년, 지점·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인 경우는 해당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년)

□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 차단장치(Chinese Wall) 규제 정비

(금융투자업 규정 4-6조 1항 3호 다목, 4-6조 2항~4항 : 2012/11/21 개정·시행)

- 정보교류 차단장치의 적용과 관련하여 기업금융업무 및 자산관리 업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전담중개업무의 범위에 환매조건부매매를 포함하고 그 업무 영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정보교류 차단 규제
 - 환매조건부매매업무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을 위한 투자중개업무와 신탁업 간의 업무행위는 정보교류 차단장치 없이 가능
 - 기업금융업무와 주권비상장법인에 출자하거나 사채, 신주인수권증권 등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또는 비상장기업의 위험관리를 위한 목적의 파생상품거래를 통해 주권비상장법인에 자금을 지원하는 업무행위도 정보교류 차단장치 없이 가능

- 기업금융업무와 적격기관투자자가 발행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하고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격기관투자자 사이에서만 양도·양수되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증권에 대한 매매나 매매의 중개·주선·대리 업무도 정보교류 차단장치 없이 가능

① 그 채무증권은 주권상장법인, 채권상장법인, 시행령에 따른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기업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말 총 자산이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발행한 증권이 아닐 것

② 금융위원장이 인정하는 거래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될 것

□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채권의 매수제한 완화 관련 구체적 요건 명시
(금융투자업 규정 4-60조, 4-73조의2, 4-89조의2 : 2012/11/21 개정·시행)

—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관계인수인과의 거래를 허용한 채권에 대하여 구체적인 발행조건·거래절차(일정 신용등급 이상, 발행금액의 일정 비율 이하 취득 등)을 정함

-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가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청약을 통하여 매수하며 그 매수금액이 발행금액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이 거래를 행한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해 준법감시인의 확인 필요. 다만, 투자일임업자의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의 확인 필요)
- 거래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 이내의 신용등급을 받은 채권일 것
- 관계인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채권의 종목, 수량 등 거래내역을 협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매분기별로 공시할 것

□ 전담중개업무 범위 확대

(금융투자업 규정 4-101조 2항 6호 : 2012/11/21 개정·시행)

— 전담중개업무의 범위에 환매조건부 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대리 업무 추가

□ 투자자산운용사 시험 과목 개편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2012/11/30 개정, 2013/1/1 시행)

- 고객상담·재무설계 과목 폐지
- 기본적인분석, 기술적인분석, 산업분석, 국제금융시장분석 과목 통합

과목	기존(문항수)	개정(문항수)
제1과목	고객상담·재무설계(7)	-
	세제관련법규·세무전략(10)	세제관련법규·세무전략(7)
제2과목	기본적인분석(7), 기술적인분석(5), 산업분석(5), 국제금융시장분석(5)	투자분석기법(12)
제3과목	직무윤리(7)	직무윤리(5)
	주식투자운용·투자전략(8)	주식투자운용·투자전략(6)
	채권투자운용·투자전략(8)	채권투자운용·투자전략(6)
	파생상품투자운용·투자전략 (8)	파생상품투자운용·투자 전략(6)
	투자운용결과분석(5)	투자운용결과분석(4)
	거시경제(5)	거시경제(4)
총 30문항 축소(130문항 → 100문항)		

□ 증권분석사 시험의 폐지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2012/11/30 개정, 2013/1/1 시행)

- 증권분석사 시험을 협회의 자율자격시험에서 제외하고 증권분석사 시험 관련 조문 삭제

- 증권분석사 시험주관은 증권분석사회로 이관

□ 회원별 등록수수료의 차등 징수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2012/11/30 개정, 2013/1/1 시행)

— 회원의 종류(정회원·준회원)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수수료를 미납한 회사는 전문인력 신규등록 정지조치 부과
- 구체적인 징수 절차·금액 등은 시행세칙 개정 후 안내 예정

□ 전문인력 등록수수료를 license별로 부과하되, 회원 종류 및 회원 가입 여부에 따라 차등화된 금액 신설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14조: 2012/12/17 개정, 2013/1/1 시행)

— 준회원 : 3만원, 비회원 : 6만원

— 협회는 매년 발생한 등록수수료를 산정해 금융투자회사에 통보하고 금융투자회사는 등록수수료를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협회에 납부

□ 등록요건 산정 시 세부기준의 명확화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 관리지침 3조 : 2012/12/27 제정·시행)

— 법령상 모집인의 자격요건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세부기준 명시

- 경력기간의 산정은 협회에 등록된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되, 투자권유 대행인과 보험설계사간 경력 합산은 불가 등

□ 등록신청 서류 종류 및 제출방법의 구체화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 관리지침 4조 : 2012/12/27 제정·시행)

— 등록신청서 및 등록규정에 따른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부 서류는 전산처리(경력 요건사항)로 같음

□ 등록 거부사유의 구체화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 관리지침 5조 : 2012/12/27 제정·시행)

— 등록규정상 거부사유에 해당되는 자(자격요건 미충족자, 등록취소 일로부터 3년 미경과자 등)

-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타 등록기관에 신청 중인 자, 미성년자, 외국인(단, 체류자격 구분에 따라 취업활동을 제한받지 않는 경우는 제외)

□ 등록의 말소신청 시 절차의 구체화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 관리지침 9조 : 2012/12/27 제정·시행)

— 소속 회사 또는 모집인 본인이 직접 말소 신청 가능

- 말소신청서, 등록증 등
- 처리결과를 사업자에게 전산으로 통보

□ 협회의 자격요건 상실자에 대한 말소 처리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 관리지침 11조 : 2012/12/27 제정·시행)

— 자격요건이 상실된 자에 대해 소속 회사에 말소신청 요구 및 말소 신청이 없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모집인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요청

□ 기타 사항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 관리지침 13~16조 : 2012/12/27 제정·시행)

— 수수료, 기타 서식 마련 등

2. 집합투자기구

- 보호예수가 면제되는 전문투자자의 범위 확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조의5 : 2012/4/20 개정, 4/23 시행)
 - 신탁중앙회 및 사모펀드를 제외한 집합투자기구를 추가

-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 이하 PEF)의 자산운용의 자율성 제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2조 4항, 296조 3항 : 2012/6/29 개정, 2013/1/1 시행)
 - 종래에는 PEF의 자산운용방법으로서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증권이나 그 증권의 가격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파생상품(증권의 가격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만 투자가 가능하였으나
 - PEF의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외화증권에 대한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내·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를 허용함
 - PEF의 글로벌 투자와 관련하여 환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위함
 - PEF가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차입할 수 있는 한도를 종래 자기자본의 200%에서 300%로 확대

- 펀드 투자권유 방식 개선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8조 10호, 2-8조의2 7항~8항 : 2012/7/10 개정, 7/11 시행)
 - 일반투자자에게 계열회사등인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펀드만을 투자권유하거나 안내하는 행위 금지

- 계열회사등은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로서 자기가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회사, 상호간 임원 겸임 또는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 등의 사실이 있는 회사 등을 말함(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 10호)
- 펀드 판매회사는 계열회사등이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하는 경우 계열 자산운용사 펀드라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계열사의 펀드도 함께 투자권유하도록 함
-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효과 등을 감안하여 전문투자자를 제외한 일반투자자에게만 적용

□ 원활한 소규모 펀드 해소를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금융투자업 규정 7-25조 6항 : 2012/11/21 개정·시행)

- 소규모 펀드가 모자형펀드로 전환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간 유사성(종류·투자목적·투자전략) 등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고 투자자에 대한 사전통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
 - 이전하고자 하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투자목적, 투자방침, 투자전략 등에 관한 사항이 상호간에 유사할 것
 -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할 경우에 자집합투자기구 각각의 보수, 수수료 등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이전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이전하고자하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을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 등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할 것
 - 이전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전에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통지할 것

□ 집합투자업자 등 관계인수인 거래 시 거래내역 제출규정 신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62조의2 : 2012/12/17 개정·시행 단, 7-5조는 2013/1/2 시행)

-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예외 확대인 인수가 가능해진 채권을 관계인수인으로부터 인수한 경우의 세부 공시내용 및 절차를 정함

- 매수한 채권의 종목 및 수량 등 거래내역을 공시하고자 할 경우,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협회로 제출

3. 헤지펀드

□ 고유재산 운용제한 완화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전담중개업자 모범규준 43조 1항 1호, 3호 : 2012/12/14 제정·시행)

- 운용업자의 고유재산(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여 동일한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없는 제한규정에 대하여 1년 유예 기간 부여
- 동일 헤지펀드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의 3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는 투자금지 규정에 대한 유예기간(기존 1년)을 1년 추가 연장
 - 헤지펀드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2년까지는 적용하지 않음

□ 재간접 헤지펀드 적용 기준 명확화 등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전담중개업자 모범규준 7장 : 2012/12/14 제정·시행)

-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재간접 헤지펀드) 적용기준을 50% 초과 투자 사모펀드로 명확히 하고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헤지펀드도 동일 적용토록 관련 규정 신설

□ 전담중개업자 업무 추가 등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전담중개업자 모범규준 73조 및 91조 : 2012/12/14 제정·시행)

- 전담중개업자의 업무범위에 RP거래를 포함하는 상위규정개정 사항 반영

- 전담중개업자 RP 업무 추가에 따라 표준전담중개업자계약서의 제2절 세부사항 중 「2-9 환매조건부매매거래」 신설
- 정보교류의 이해상충이 크지 않은 경우로서 제외되는 전문투자자 대상 RP 업무 시 정보교류의 차단 제외 관련 상위규정개정 사항 반영

□ 신용공여 이자율 산정방식 자율화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전담중개업자 모범규준 77조 6항 : 2012/12/14 제정·시행)

- 일률적인 신용공여 이자율 산정방식을 폐지하고, 신용공여 이자율 산정에 대한 전담중개업자의 자율성 부여
 - 전담중개업자의 헤지펀드에 대한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전담신용거래용자 또는 전담신용거래대주를 제공하는 경우 보증금율은 20% 이상으로 정함
 - 전담중개업자가 담보물 및 담보평가금액 등을 고려한 신용위험액(신용공여 가산이자)을 적정하게 산정하고 이를 감안하여 적정 신용공여이자를 산정하는 것으로 함

4. 부동산투자회사

□ 리스크 관리규제의 강화

(부동산 PF 리스크관리기준 표준안 6조 4항 : 2012/4/30 개정, 5/1 시행)

- 회사로 하여금 부동산 PF 관련 투자절차, 투자한도, 자금 집행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사고예방 및 리스크관리를 위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

□ 금융투자회사 고유재산의 부동산 PF 익스포저 한도에 대한 적용 대상의 확대

(부동산 PF 리스크관리기준 표준안 8조 2항 1호 : 2012/4/30 개정, 5/1 시행)

— 부동산 PF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하여 매입보장약정이행으로 취득한 부동산 PF 대출 관련 유동화증권을 포함하여 부동산 PF 익스포저 한도를 자기자본의 30% 이내로 제한함

- 부동산 PF 대출에 부동산 PF 대출채권의 매입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자기자본 30% 이내 제한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감소로 투자금액이 자기자본의 30%를 초과하게 된 경우 이를 30%로 간주하도록 규정함
- 또한 자기자본의 의미를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하되 자본금 증가사유 발생 시 이를 반영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 제 336조상의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겸영하는 회사는 해당 시점의 대손충당금 차감 전 대출채권 금액임을 명시함

□ 선지급 대상 확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2012/10/26 개정, 11/1 시행)

— 기존의 규정은 선지급가능 기관을 토지비를 대여한 대출금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개발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다양한 기관의 참여가 곤란한 문제점이 있었음

- 위탁자의 토지 취득을 위한 자금조달처는 금융기관 외에도 연기금, 공제회, 펀드, 시공사, 일반법인, 개인 등 다양

— 선지급이 가능한 자의 범위를 대출금융기관에서 토지비를 대여한 자로 확대함(관리형 토지신탁)

□ 용어의 정의 명확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2012/10/26 개정, 11/1 시행)

- 관리형 토지신탁의 경우 선지급 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시공사의 책임준공약정이 필요한데 사업 참여자간 책임준공에 대한 해석이 달라 분쟁의 소지가 있음
- 책임준공의 정의를 명확화함
 - 책임준공 : ‘천재지변, 내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공사가 공사비 지급 지연 또는 민원 등 여하한 이유로도 공사를 중단하거나 지연할 수 없고 예정된 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를 득하기로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
- 해당 신탁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논란 방지

□ 분양계약서 기재사항 명확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2012/10/26 개정, 11/1 시행)

- 기존 분양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되어있는 선지급기준 부분도 수정하여 선지급대상 범위를 금융기관 외에 토지비를 대여한 자로 확대
 - 기존 기준은 분양기금이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목적으로 금융기관의 PF대출금 상환인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어 분양계약서 기재사항에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의 지급 등에 사용될 수 있음을 명기(관리형 토지신탁)
- 분양대금의 사용에 대해 수분양자에게 명확히 고지함으로써 수분양자 보호 강화 및 향후 선지급 등 분양대금의 비용 집행과 관련된 분쟁 방지

□ 대출원리금 상환제한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해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2012/10/26 개정, 11/1 시행)

- 분양이 양호하여 사업비 및 토지비 비율 선지급을 지출하고도 과도한 잉여현금을 보유할 경우 사업수지 개선(이자비용 절감)을 위해 추가적인 토지비 지급이 필요하지만 기존의 기준은 추가지급을 금지

- 이에 따라 잉여자산의 운용수익보다 토지비 대출 이자비용이 높아 사업수지 악화가 발생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수익자의 수익이 감소
 - 토지비, 사업비의 집행 후 남은 분양수입금은 신탁재산 운용 시 발생하는 여유자금으로 보아 운용방법을 금융기관 예치, 국채증권 등의 매수 등 안전자산위주로 운용하도록 자본시장법 제106조(여유자금의 운용)로 제한
- 토지신탁에서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토지비 선지급 가능금액이 확대될 수 있게 추가적인 기준 설정(관리형토지신탁)
 -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최소 사업비 이상의 분양대금 수입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예상 분양수입금이 사업비의 110%를 초과
 - 초기 사업비의 지급이 가능하고, 임의로 계약해지가 불가능한 경우 : 전체 공사비(부지 매입비 제외)의 50% 이상 투입이 확인된 경우(단, 아파트의 경우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로서 직전 회차 중 도금이 완납된 때
 - 시공사의 신용도를 고려하여 책임준공 약정 이행가능성이 높은 경우 : 시공사 신용등급 BBB+ 이상
- 추가된 선지급 금액 산정방식
 - 선지급 금액 ≤ 분양수입금 - 사업비
- 선지급기준의 탄력적 적용으로 분양율이 양호한 사업의 경우 잉여 분양수입금을 토지비의 상환에 사용할 수 있어 시공사의 지급보증 조기 해소 및 사업수지 개선이 예상됨

□ 지급기준 상 적용예외 부분의 자의적인 해석 방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2012/10/26 개정, 11/1 시행)

- 기존 기준상 적용예외의 경우 시공사의 관계회사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할 수 있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해석상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범위를 명확화 함(관리형토지신탁)

□ 적용예외 조항 개정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2012/10/26 개정, 11/1 시행)

- 기존 조항상 1인 단독매수자가 확정된 경우 일정요건을 추가하여 적용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나 매수자가 수인(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등)일 경우 적용예외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 문제로 되어 왔음
- 이에 수인의 매수자(기관 등)가 분양물건을 일괄 매수하는 경우를 적용예외에 포함(관리형 토지신탁)하도록 함
 - 단, 다수의 매수자(수분양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 제외)가 일괄매입 하는 경우 선지급조건의 예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수자 전원의 별도 서면동의서 징구를 의무화 함
- 매입자금의 규모가 크거나 리스크 분담을 위해 수인의 매수자가 공유 방식 등으로 일괄매입 하는 경우에도 선지급 기준의 예외로 인정하여 펀드 등 기관투자자의 개발사업 투자 참여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
 - 토지비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비용 감소금액 만큼 투자수익 증가 가능

□ 금지사항 보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2012/10/26 개정, 11/1 시행)

- 기존 조항에서 선지급기준 적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탁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하는 대출약정 효력이 신탁계약의 효력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의 신탁계약서 체결을 금지하고 있음
- 이로 인해 대출약정의 효력과 신탁계약의 효력이 동일한 것으로 보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토지비 상환 시 선지급기준과 대출약정과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대출약정의 효력이 신탁계약의 효력과 동등하거나 우선하는 내용의 신탁체결을 금지함으로써 충돌방지가 가능

Ⅲ. 감독행정

1. 법적규제기관

□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공익 신고자 보호 및 포상에 관한 지침 10조 1항 : 2012/10/17 개정·시행)

- 임직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를 신고하는 경우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포상금 지급기준
 - 임직원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176조(시세조종행위의 금지), 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행위 신고 시 : 1,000만원

2. 자율규제기관

□ 재무상황 보고 시 자기자본보고를 의무화함

(회원관리규정 30조 2항 : 2012/1/27 개정, 2012/3/1 시행)

- 결제회원의 거래소 재무상황 보고에 있어 기존 영업용순자본비율 180% 미달하거나 미달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서 자기자본 100억원 미달하거나 미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보고하도록 추가함
 - 재무요건 중 자기자본은 자본금과 달리 회사의 영업 및 재무상황에 따라 수시변동 가능하므로 재무상황 보고대상에 포함시킴

□ 재무요건 미달에 따른 회원조치인 거래정지를 폐지함

(회원관리규정 36조 1항 : 2012/1/27 개정, 2012/3/1 시행)

- 재무요건 미달 관련 회원조치인 6월 이내의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규정을 삭제하여 재무요건 미달정도 및 회복가능성, 회원사 및 투자자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회원조치가 운용될 수 있도록 개선함

- 회원자격 또는 거래의 정지기간 내에 재무요건 충족을 확인한 경우 회원조치를 해지하도록 함
 - (회원관리규정 37조 2항 : 2012/1/27 개정, 2012/3/1 시행)

- 회원조치 유예기간중 재무요건 미달 사항을 해결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 조치유예를 중단하고 조치사유에 따른 회원조치가 가능하도록 함
 - (회원관리규정 37조 3항 : 2012/1/27 개정, 2012/3/1 시행)
 - 이는 유예기간중의 긴급사항에 대한 회원조치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함

- 재무요건 미달에 따른 회원조치 시 재무요건 개선을 요구하는 개선기간을 부여하도록 함
 - (회원관리규정 37조 4항 : 2012/1/27 개정, 2012/3/1 시행)
 - 이는 회원조치 부과 시 개선기간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원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 회원조치 통지 및 의견제출, 재심청구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함
 - (회원관리규정 38조 1항~4항 : 2012/1/27 개정, 2012/3/1 시행)
 - 거래소의 회원조치 사유 발생사실 통보의무를 명시함
 - 회원은 거래소의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 의견 제출하여야 하며 재무요건 미달 시 개선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함

- 거래소의 조치사유 발생 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 회원조치를 처리하여 함
 - 기존 회원의 재심청구를 이의신청 제도로 체계화함(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 참가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 업무규정 3조, 5조, 8조, 9조 : 2012/3/23 제정, 3/30 시행)
 - 정제업자, 수출입업자, 대리점, 주유소인 석유사업자는 다음의 가입요건을 충족하여 거래소로부터 가입승인을 통보받은 경우 본 전자상거래에 참여할 수 있음
 - 가입신청일 현재 석유사업법에 따른 석유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2개월 내에 석유제품의 매매거래실적을 보유할 것
 -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등으로 인하여 석유사업법에 따라 사업정지처분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가입신청일 현재 그 처분 또는 조치기간의 종료일부턴 1년이 경과하였을 것
 - 참가자는 탈퇴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또한 다음 사유 발생 시 당연 탈퇴함
 - 석유사업법에 따른 석유사업의 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석유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 석유사업의 변경등록 및 양도, 합병 또는 해당 사업자의 사망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석유사업이 승계된 경우
 - 지급불능으로 되거나 회생절차개시, 파산 신청 또는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 거래소가 본 규정에 따라 참가자탈퇴를 결정하여 탈퇴일을 통지한 경우
- 매매거래정지 대상을 시장감시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종목으로 확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107조 1항 : 2012/3/7 개정, 3/12 시행)
- 기존에는 투자위험종목에 대해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었음
- 투자정보 제도상의 매매거래 정지범위 확대
(시장감시규정 5조의3 : 2012/3/7 개정, 3/12 시행)

- 기존의 경우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 후에도 3일 연속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위원회가 매매거래정지를 요청할 수 있었음
- 현행 매매거래정지 요건을 완화하여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후에도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후에도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위원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매매거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

□ 불공정거래 예방조치의 강화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2조의2 : 2012/3/8 개정, 3/12 시행)

- 투자경고 또는 투자위험종목에 관여한 계좌와 관련된 회원에게 기존 유선상을 제외하고 서면으로만 예방조치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예방조치요구를 받는 회원이 고객에게 취하여야 할 조치 가운데 주문수탁의 거부예고를 추가
- 또한 다음의 경우 주문수탁의 거부예고 이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 고객의 계좌가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에 관여하여 예방조치요구를 받는 경우와 주문의 양태, 종목별 관여율 및 주가변동 등을 감안할 때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어 예방조치요구를 받는 경우

□ 투자경고종목 및 투자위험종목 지정요건의 완화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3조의3, 3조의4 : 2012/3/8 개정, 3/12 시행)

- 기존의 매매거래일수를 20일에서 15일로 축소하는 등 투자경고종목 및 투자위험종목 지정을 용이하게 개선하여 단기급등종목에 대한 투기적 매매 관리감독을 강화

- 투자경고종목의 매매거래정지 요청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3조의5 : 2012/3/8 개정, 3/12 시행)
 - 위원회는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후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하도록 시장에 요청할 수 있음
 - 특정일의 주가가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보다 높고 특정일의 2일간 주가상승률이 20% 이상인 종목
 - 이때 위원회는 투자경고종목으로 특정일의 주가가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보다 높거나 특정일의 2일간 주가상승률이 20% 이상이 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의 익일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고할 수 있음

- 투자위험종목의 매매거래 정지요건을 추가하여 투자위험종목 지정 시 지정일에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3조의6 : 2012/3/8 개정, 3/12 시행)
 - 위원회는 기존의 거래정지 요청 및 거래정지 예고에 있어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일 및 그 지정 예고일에 매매거래정지 요청 및 예고할 수 있도록 함

- 약식제재금 부과기준상 우선주를 종류주식으로 변경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별표 2 : 2012/4/10 개정, 4/23 시행)
 - 상법이 종류주식의 발행을 허용함에 따라 약식제재금 부과기준의 자기주식매매 신고관련 규정 위반과 관련하여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을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함

- 각종 서식상 기존 대표이사에 대표집행임원 추가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별지 1, 2, 4, 6호 : 2012/4/10 개정, 4/23 시행)

- 상법이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상장법인 주요주주 등의 자기주식 등 거래현황 보고, 공정거래질서저해우려 품문 또는 이상거래 징후·현상 보고, 민원·분쟁현황 및 처리결과 보고, 위탁자 기본정보 현황 서식들에 대표이사과 대표집행임원을 병기하도록 함

□ 포상금·소액포상금 지급한도 상향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6조의3 1항 : 2012/7/3 개정, 7/9 시행)

- 불특정 다수 대상 범죄인 불공정거래의 사회적 파급효과 및 최근 대법원의 양형 기준이 강화된 것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 및 소액포상금의 지급한도를 상향 조정
 - 포상금 : 1억원 → 3억원
 - 소액포상금 : 70만원 → 130만원

□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6조의3 2항 : 2012/7/3 개정, 7/9 시행)

- 포상금의 지급대상 사안으로 종래의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 및 거래소 회원조치' 이외에도 '거래소의 감독기관 통보'를 추가

□ 특별포상금제도 신설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6조의3 3항 : 2012/7/3 개정, 7/9 시행)

-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품문 유포 등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에 대해, 위원회가 제보를 받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기간 중의 신고내용이 시장감시 업무의 수행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특별포상금제도를 마련
 - 각 사안별 중대성에 따라 최고 5천만원 이내로 지급하며, 지급여부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함

□ 투자유의 안내제도 신설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2조의 3항 : 2012/8/27 개정, 9/3 시행)

- 불공정거래나 자본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투자자 유의사항을 한국거래소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안내
 - 시장질서 저해행위로 다수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 그밖에 자본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예상 될 경우

□ 유가증권시장의 투자경고·위험종목 지정기준 중 주가상승률 비교지수 요건 개선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3조의 3 : 2012/9/12 개정, 9/13 시행)

- 산업별주가지수의 구성종목이 10개 이하인 유가증권시장 상장종목의 경우 투자경고·위험 종목의 지정에 있어 주가상승률 비교기준이 되는 주가지수로 종합주가지수를 적용하도록 함

산업별 주가지수

산업별 주가동향을 단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주가지수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서는 1974년부터 이를 산출·발표하고 있음

산업별 주가지수는 주가동향의 파악은 물론 투자자의 산업별 투자결정에 도움이 되는 지표로서 ① 산업의 선정 및 분산 범위의 결정, ② 선정된 산업에 서의 투자종목의 결정, ③ 선정된 종목의 적정주가수준의 결정 등에 활용되 는 지표임

□ ELW(주식워런트증권)의 시장경보제도 도입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3조 1항 : 2012/10/5 개정, 10/8 시행)

- ELW의 특성상 규제 실익 및 적용가능성을 감안하여 시장경보제도 중 투자주의종목 지정제도만 도입하여 소수지점·계좌 거래집중종목에 대한 지정기준을 마련
 - ELW에 관한 3조 1항~3항의 시행은 2012년 10월 29일부터임

□ 투자주의종목 지정기준 변경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3조 2항 : 2012/10/5 개정, 10/8 시행)

-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소수계좌·지점 거래집중종목 추가등락률 요건을 완화하고 지점 연계성이 약화된 점을 고려하여 소수지점 관여율 상향 조정
 - 소수지점·계좌 거래집중종목의 추가상승률 및 하락률을 20%에서 15%로 완화
 - 특정 지점의 매수관여율과 매도관여율을 40%로 상향
- 상한가 잔량 상위의 이상급등종목의 지정빈도를 높이기 위해 참여계좌수 요건을 삭제하고 소수계좌 상한가 호가잔량 요건을 신설
 - 정규시장 종료 시 상한가 매수호가의 미체결수량이 10만주 이상이면서 미체결수량 상위 10개 계좌의 미체결수량 합계가 전체 미체결수량의 90% 이상인 종목
- 다양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시장경보기능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예방조치 반복 적출종목에 대한 지정기준을 신설
 - 15일간 예방조치요구 과다종목 : 최근 15일(당일 제외) 중 직전 매매거래일을 포함하여 3일 이상 예방조치 요구를 받은 계좌가 관여한 종목

□ 투자경고·위험종목 지정기준 등 개선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3조의3, 3조의4 : 2012/10/5 개정, 10/8 시행)

- 지정 및 지정예고 시 불공정거래 개연성 측면을 감안하여 추가상승률 기준에 요건을 추가
 - 최고가 매수체결 과다
 - 최고가 매수호가 잔량과다
 - 일중 매도·매수거래량 일치 계좌 과다
- 투자경고·위험종목 지정기준 중 추가급등락종목의 비교지수대비 추가 상승률 요건 조정

- 단기: 5배, 중장기: 3배

— 상호중복소지 등이 있는 지정요건들을 합리적으로 정비

□ 일중 매도·매수거래량 일치 계좌 과다 판단기준 산식 정의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3조의7 : 2012/10/5 개정, 10/8 시행)

— 투자경고·위험종목 지정 시 '일중 매도·매수거래량 일치 계좌 과다' 개념을 도입함에 따라 '매도·매수 거래량 일치율' 및 '일치계좌수 비중'의 산출방식을 정의

- 매수·매도거래량 일치율 = [일정기간 특정 계좌의 매수(매도)수량/일정기간 특정 계좌의 매도(매수) 수량] × 100(이 경우 분모는 매수수량과 매도수량 중 더 많은 수량으로 함)
- 매수·매도거래량 일치 계좌수 비중 = (일중 매수·매도거래량 일치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계좌수)/(일중 정규시장 참여 전체 계좌수) × 100(이 경우 일정기간 일치 계좌수 비중 산정은 가 매매거래일 일치 계좌수 비중의 단순 산술평균으로 함)

□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기준 3조 : 2012/10/17 개정·시행)

— 자본시장법 시행령 64조 2항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 및 모집·매출 금지

-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예탁증권
- 주권 관련 사채권으로서 지분증권이나 증권예탁증권과 관련된 것
- 지분증권, 증권예탁증권이나 이들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파생결합증권
- 장내파생상품

— 단, 지수형 추가연계증권을 제외하며, 임직원이 되기 전에 취득한 금융투자상품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인 매매 허용

- 투자금융상품 처분방법 및 절차의 구체화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기준 4조 2항, 9조 1항 : 2012/10/17 개정 · 시행)
 - 지수형 추가연계증권 및 예외적으로 매매가 허용되는 금융투자상품 (투자금융상품)을 처분하고자 하는 임직원은 사전에 신고하도록 함
 - 계좌개설 신고도 사전 신고 시까지 하도록 명시
 - 단, 지수형 추가연계증권은 매매거래가 있는 날이 속한 분기 종료 후 익월 15일까지 신고

- 시장관련부서의 매매제한과 사전신고의무 삭제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기준 5조, 12조 1항 : 2012/10/17 개정 · 시행)
 - 투자금융상품의 매매와 관련해 사전신고를 의무화함에 따라 시장 관련부서에 대한 규제(매매제한과 사전신고의무)의 실익이 없어 삭제

- 매매제한 등의 적용예외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금융상품으로 지정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기준 6조 삭제 : 2012/10/17 개정 · 시행)

- 자구 수정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기준 9조, 10조, 13조, 16조 : 2012/10/17 개정 · 시행)
 - “시장관련부서” 삭제
 - “규제금융상품”을 “투자금융상품”으로 변경

- 개정 전 적법절차에 따라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을 적용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기준 부칙 2조 : 2012/10/17 개정 · 시행)

□ 표준약관의 성격상 금융투자협회규정으로 하는 것이 체계상 부적절한 점이 있어 약관규정에서 표준약관을 분리하여 별도 관리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3조 1항, 2항 : 2012/10/26 개정, 11/12시행)

- 영업행위 규제 등 회원사를 구속하는 내용의 금융투자협회규정과 달리 표준약관은 회사와 고객 간의 계약내용을 표준화한 것임
 - 따라서 회사는 표준약관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 상황에 따라 수정 가능
 - 표준투자권유준칙이나 모범규준도 표준약관과 같이 회사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협회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음
-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표준약관 제·개정 시 금융감독원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는 바 협회는 자율규제위원회 결의를 거친 후 금감원으로 신고하여 사전심사를 받고 있었음
 - 이로 인해 위원회의 자율규제와 금감원의 공적규제가 상호 충돌할 우려가 있고 신속한 표준약관 개정애 애로점이 있음
 - 또한, 자본시장법과 거래소규정 등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신속한 표준약관 개정이 필요한 경우 규정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신속한 개정이 어려울 수 있음
- 금융감독원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표준약관 개정보고와 금융투자협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규정 개정보고업무가 중복됨
 - 표준약관 개정애 대해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거치고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에 표준약관의 개정 보고를 하므로 투자자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음

□ 포상금의 산정 및 지급에 대한 심의절차 신설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6조의3 : 2012/12/27 개정, 2013/1/1 시행)

-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의 산정·지급과 관련하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의 산정·지급에 대한 심의절차를 둘 수 있는 근거 마련

□ 회원 모니터링시스템 적출기준 등의 결정에 대한 위원장에의 위임 근거 명시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3조의8 5항 신설 : 2012/12/27 개정, 2013/1/1 시행)

— 회원의 모니터링시스템 감시항목 및 적출기준의 결정을 시장감시 위원장에 위임하는 근거 마련

IV. 상장법인

1. 합병

□ 소규모합병에 대한 상장기준의 정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32조, 36조 : 2012/4/18 개정, 4/23 시행)

- 결산승인 이전의 상장심사청구를 허용하거나 재상장요건에서 제외되는 소규모합병등의 범위를 세척에 위임
 - 이는 개정 상법이 소규모합병의 요건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기준을 10%로 완화함에 따라 현행 기준과 동일한 소규모합병만 특례가 인정되도록 상장규정을 개정한 것임

□ SPAC의 현금합병 제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32조의3 1항 3호, 80조의2 : 2012/4/18 개정, 4/23 시행)

- 현금자산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하여 합병하는 경우 SPAC의 자금조달효과가 반감됨에 따라 SPAC의 현금합병을 제한함
- 만약 이를 위반하여 SPAC이 합병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상장을 폐지하도록 함
- 단, 합병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단주의 처리 등을 위하여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제외함

□ SPAC의 현금합병 제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19조의4 2항 4호, 38조 1항 24호 자목 : 2012/4/18 개정, 4/23 시행)

- 현금자산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하여 합병하는 경우 SPAC의 자금조달효과가 반감됨에 따라 SPAC의 현금합병을 제한

- 만약 이를 위반하여 SPAC이 합병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상장을 폐지하도록 함
- 단, 합병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단주의 처리 등을 위하여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개정 상법을 반영하여 소규모합병에 대한 상장기준 신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3조의2, 24조의2 : 2012/4/20 개정, 4/23 시행)

- 결산승인 이전 상장심사청구를 허용하는 소규모합병을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의 총수가 합병 후 존속법인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합병으로 규정
 - 단,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이 존속법인의 자기자본 100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2. 상장, 재상장, 상장폐지

□ 상장주선인의 기업실사 점검표(Due Diligence 체크리스트)에 유형별 Due Diligence 현황 신설

(유가증권시장 상장심사 지침 별표 4 : 2012/2/3 개정, 2/6 시행)

- 투명성과 계속성에 따라 기업을 분류하여 유형별로 기업실사 시 파악한 기업에 관한 사항과 대표주관회사의 개선사항을 기재하도록 함
- 이를 위하여 '투명성과 계속성 판단을 위한 조건 및 세부기준'을 첨부함

<표 IV-1> 투명성과 계속성 판단을 위한 조건 및 세부기준

투명성	계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경영자 리더십 1. 환경변화 통찰 및 전략수행 능력 2. 이해관계자 관리 및 의사소통 능력 3. 기업 내외의 리스크 인지 및 관리 능력 4. 기업의 사회적 및 환경적 책임 의식 5. 도덕성 및 윤리의식 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구조 안정성 1. 매출과 영업이익의 지속적인 성장 2. 안정적인 수익모델 구축 (외부충격흡수) 3. 고정적인 매입처 및 매출처 확보 4. 재무위험 관리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배구조의안정성 1. 최대주주 및 관계회사로부터 경영 독립성 유지 2. 경영권의 안정성 및 후계자 육성 3. 주주 및 경영진간 상호협력·견제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지배력 유지 1. 제품 및 서비스의 차별화 (경쟁우위 원천 확보) 2. 브랜드 이미지 확보 3. 고객만족 경영(고객 충성도 유지) 4. 지속적인 신시장 개척 (글로벌시장 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통제조직 정비 1. 회계 및 내부통제시스템 정비 2. 투명한 경영의사결정 과정 3. 부정행위 발생 시 즉각적인 보고 및 개선 4.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의 독립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 1. 시장선행 전략수립 및 조직혁신 2. 연구개발 및 우수인재에 투자 3. 신제품 개발을 통한 성장동력 발굴

— 또한 ‘대표주관회사의 Due Diligence 가이드라인’을 마련

- 기업의 투명성을 지배구조의 불안전, 경영의 불안전, 최대주주 및 경영자의 전횡, 경영통제시스템 미비, 내부통제시스템 미비, 회계시스템 미비, 투자자 보호 7가지로 나누어 현황, 필수 Due Diligence 사항, 예비심사청구전 개선방안을 제시
- 또한 기업의 계속성에 대하여 소송 등의 발생, 재무안정성 등의 악화, 기업실적 악화, 경쟁기업 등의 출현, 성장성 악화 5가지 별로 현황, 필수 Due Diligence 사항, 예비심사청구전 개선방안을 제시

□ 위원회 심의기간을 기존 2월에서 영업일 기준 45일로 변경

(코스닥시장 상장심사 지침 12조 1항 : 2012/2/29 개정, 3/1 시행)

—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 및 1차상장 외국기업은 기존 3월에서 65일로 변경

□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에 대한 상장심사 방법 및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

(코스닥시장 상장심사 지침 22조 : 2012/2/29 개정, 3/1 시행)

- 국내SPC의 실체가 외국기업임을 고려하여 외국기업에 준한 상장심사를 실시하도록 함

□ 외국기업 정관 필수기재사항으로 일정한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강화함

(코스닥시장 상장심사 지침 별표 3 : 2012/2/29 개정, 3/1 시행)

- 주요외국자회사 지분의 전부를 매각하거나 일부를 매각하여 당해 주요외국자회사가 외국자회사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또는 주요외국자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4분의3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2 이상의 수로써 하도록 개정함
 - 기존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의 결의요건이 적용되었음

□ 외국기업 현장답사결과보고서 작성기한을 기존 5일에서 7일로 연장함

(코스닥시장 상장심사 지침 21조 : 2012/2/29 개정, 3/1 시행)

- 이는 외국기업의 회계투명성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

□ 보통주 관련 상장기준의 정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2조 5항, 32조, 33조, 34조, 36조~41조, 75조, 80조 : 2012/4/18 개정, 7/23 시행)

- 기존 주식수, 주주수, 공모주식수, 거래량, 시가총액 등 상장 및 상장폐지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기존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산하였던 것을 보통주만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개정
- 또한 상법상 무액면주식 도입에 따라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상장기준을 정비

- 상장규정상 정의와 관련하여 상환사채 및 교환사채를 '주식등'의 범위에 포함함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2조 13항 : 2012/4/18 개정, 4/23 시행)

- 지주회사인 공기업등에 대한 상장특례규정의 개선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33조 4항 : 2012/4/18 개정, 4/23 시행)
 -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점을 고려하여 지주회사 형태의 공기업에게도 공기업 상장특례규정의 적용을 허용
 - 상장요건에 있어 공공적 법인 및 민영화대상 공기업은 양도제한 요건,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은 분산요건과 양도제한 요건을 적용

- 종류주권의 상장폐지를 규정하고, 기존 우선주 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삭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78조, 95조, 103조 : 2012/4/18 개정, 7/23 시행)
 - 종류주식의 자진상장폐지 시 종류주주의 동의를 요구하고,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 등 보통주와 동일한 요건 및 절차를 적용하도록 규정함
 - 또한 종류주식에 대한 유동성 상장폐지요건 및 진입요건 도입에 따라 우선주에 대한거래정지 및 상장유예를 폐지함

- 종류주식에 대한 상장요건 마련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103조의2 : 2012/4/18 개정, 7/23 시행)
 - 종류주권의 발행인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 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 주권의 재상장신청인일 것
 - 단, SPAC, 부동산투자회사 및 선박투자회사 주권의 발행인은 제외함
 -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상장주권이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상장예정인 주식수가 50만주 이상일 것
- 기준시가총액이 20억원 이상일 것
-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수의 100분의 25 이상일 것
- 주주의 수가 300명 이상일 것
- 전환청구권 등의 잔존권리행사기간 또는 만기가 상장신청일 현재 1년 이상 남아있을 것
- 주식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 해당 종류주권이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남용되거나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거래소는 요건의 충족여부에 관한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확정
 - 다만, 공익과 투자자보호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예외

□ 종류주식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요건 및 상장폐지요건 신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103조의3 : 2012/4/18 개정, 7/23 시행)

- 종류주식의 관리종목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음
 - 해당 종류주권 발행인의 보통주식 주권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상 해당 종류주권의 주주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 반기말 현재 해당 종류주권의 상장주식수가 5만주 미만인 경우
 - 해당 종류주권의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반기의 월평균거래량이 1만주 미만인 경우(단, 해당 종류주권이 신규로 상장된 경우, 반기 중 매매거래정지일수가 해당 반기의 매매거래일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유동성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예외)
 - 해당 종류주권의 상장시가총액이 5억원에 미달하는 상태가 30일간 계속되는 경우
- 종류주권의 관리종목지정 해제요건은 다음과 같음

- 종류주권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해당 발행인의 보통주식 주권이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해소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사업보고서 등에 의하여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해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종류주권의 상장폐지요건은 다음과 같음

- 해당 종류주권의 발행인의 보통주식 주권이 상장폐지되는 경우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류주권이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상 종류주식 주주의 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류주권이 다음 반기말에도 같은 규정에 따른 상장주식수 미달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류주권이 다음 반기에도 같은 규정에 따른 거래량 미달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이 경과하는 동안 해당 종류주식 상장시가총액이 5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 해당 종류주권의 양도에 제한을 받는 경우
- 그 밖에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주권 등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의 특례로서 2012년 7월 23일 현재 상장되어 있는 주권, 외국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의 수를 합산한 소액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비율로 적용 가능하도록 함(부칙 2조)

— 또한 종류주권의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에 대한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를 위하여 일정 퇴출요건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마련(부칙 3조)

□ 개정 상법상 이사회 결의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상장 및 퇴출요건에 이를 반영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4조 4항 5호, 28조 1항 10호, 38조 1항 13호 : 2012/4/18 개정, 4/23 시행)

— 상법은 재무제표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과

감사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이 아닌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도록 특칙을 마련(상법 449조의2)

— 이를 적용하여 관련 상장요건 및 상장폐지 요건에 기존 주주총회 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결의로 재무제표를 승인한 경우 이사회를 추가

□ 신규상장 심사요건 중 기준시가총액 및 주식의 분산, 재상장 심사요건 중 유통주식수 등 보통주식을 기준으로 명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6조 1항, 7조의2 1항, 17조 2항·4항, 28조 1항 12호 나목, 38조 1항 20호 : 2012/4/18 개정, 7/23 시행)

□ 종류주식의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등의 마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40조의2 : 2012/4/18 개정, 7/23 시행)

— 관리종목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음

- 당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보통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당해 종목의 주주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당해 종목의 상장주식수가 5만주 미만인 경우
- 당해 종목의 시가총액이 5억원 미만인 상태가 30일간 지속되는 경우
- 코스닥시장을 통한 당해 종목의 분기의 월평균거래량이 1만주 미만인 경우

— 상장폐지요건은 다음과 같음

- 당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보통주식이 상장폐지되는 경우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 다음 사업연도에도 주주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 다음 반기에도 동 규정에 의한 상장주식수 미달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간의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시가총액 5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되거나 시가총액 5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되지 아니한 경우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 다음 분기에도 동 규정에 따른 거래량 미달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 종류주식의 상장요건 및 절차 등의 신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6조의2 : 2012/4/18 개정, 7/23 시행)

- 발행인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거나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법인일 것
 - 단, SPAC, 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
-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예정주식수가 50만주 이상일 것
- 상장신청일 현재 당해 종류주식의 기준시가총액이 20억원 이상일 것
- 주식 분산요건으로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국내에서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수가 당해 종류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이고 주주수가 300명 이상일 것
- 잔존권리행사기간 또는 만기가 상장신청일 현재 1년 이상일 것
- 주식양도의 제한 요건을 충족할 것
- 종류주식이 경영권의 남용 또는 기존주주의 이익침해 등에 해당하지 않고, 그 밖에 공익과 투자자보호상 부적합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될 것
- 종류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신청전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및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 예비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거래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할 수 있음

□ 상법상 무액면주식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6조 1항 16호, 16조의2 1항, 18조, 28조, 41조 : 2012/4/18 개정, 7/23 시행)

- 신규상장요건 중 액면가액, 신주인수권증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수 요건, 관리종목요건의 거래량 요건의 예외, 외국기업의 상장폐지 관련 무액면주식의 적용 등을 적용하는데 있어 무액면주식을 고려하여 관련 기준에 반영함

□ 코스닥 상장법인의 소속부 지정에 있어 기업경영의 건전성 요건 추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7조 1항 : 2012/4/18 개정, 4/23 시행)

- 우량기업부 기업에 대한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 기업규모, 재무상태, 경영성과 요건 이외 별도의 기업경영의 건전성 요건을 마련함

□ 개정 상법을 반영하여 특수관계인 및 임원의 범위 집행임원을 포함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조 13항, 7조의3 1항 7호 : 2012/4/18 개정, 4/23 시행)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및 SPAC 임원의 범위에 상법상 집행임원을 포함시켜 분산 및 매각제한, 자격요건 등을 적용받도록 규정함

□ 종류주권의 상장요건 신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51조의3 : 2012/4/20 개정, 4/23 시행)

- 종류주권의 상장신청 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음

- 종류주권(통일규격증권)의 권종별 견양 또는 통일규격증권 발행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
- 종류주권의 발행을 결의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사본
- 종류주권의 보호예수와 관련한 서류
-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
- 그 밖에 거래소가 상장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종류주권의 질적심사사유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함

- 당해 종류주식이 기존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는 경우

- 출자지분과 회사지배에 관한 비례적 이익간 불균형이 발생하여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 이익배당이나 상환을 위한 재원이 충분히 유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공익과 투자자보호에 위배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또한 상장위원회 심의 면제사유로 질적심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를 명시함

□ 종류주권의 관리종목지정 및 해제시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51조의4 : 2012/4/20 개정, 4/23 시행)

- 종류주권의 관리종목지정 시기는 다음과 같음
- 해당 보통주식 주권의 관리종목지정일
 - 사업보고서 제출일 다음 날
 - 반기의 최초매매일
 - 해당 사실의 확인일 다음 날
- 종류주권의 관리종목지정 해제시기는 다음과 같음
- 해당 보통주식 주권의 관리종목지정 해제일
 - 사업보고서, 주식분포상황표, 주주명부 또는 실질주주명부에 따른 지정 사유해소 확인일 다음 날
 - 반기의 최초매매일
 - 해당 종류주권이 상장시가총액이 5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 되거나 상장시가총액이 5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인 요건을 충족한 날의 다음 날

□ 종류주권의 자진상장폐지 신청 시 동의서 요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44조의3 : 2012/4/20 개정, 4/23 시행)

- 자진상장폐지 시 동의서는 해당 종류주권의 상장폐지를 결의한 종류주주총회의 의사록 사본이거나 혹은 해당 종류주식 주주의 과반수가 그 종류주권의 상장폐지에 동의 및 확인하고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이어야 함

- 수익증권 변경상장수수료 면제범위를 수량변경에 한정하도록 함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50조 5항 : 2012/4/20 개정, 4/23 시행)
 - 수익증권도 ETF·투자회사 주권과 동일하게 수량변경(신탁원본액 변경)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상장수수료를 면제하도록 명시함

- 보통주를 기준으로 하는 주식분포상황표 제출근거를 마련하면서
주식분포상황표에 대한 적용근거를 규정함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41조의2 : 2012/4/20 개정, 4/23 시행)
 - 상장법인은 주식분포상황과 관련하여 주식분포상황표(별지 제18호)를 해당 사업보고서 제출일까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함
 - 이때 주식분포상황표는 소액주주 및 유동주식수를 기준을 작성함
 - 주식분포상황과 관련한 관리종목지정기준 및 상장폐지기준은 주식분포상황표 또는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적용함

- 종류주식제도 도입에 따라 신규상장기준 및 관리종목 지정·해제 관련 사항, 상장수수료 등의 세부 규정 마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7조의2, 33조의5, 38조 : 2012/4/20 개정, 7/23 시행)
 - 종류주식의 상장심사청구 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음
 -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견양, 주선인의무이행각서, 이해관계자투자현황 등(신규상장예정기업은 동일 서류의 제출 생략 가능)

- 종류주식 발행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2부
 - 그 밖에 상장에비심사와 관련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2부
- 종류주식의 질적요건으로 경영권의 남용 또는 기존주주의 이익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 해당 종류주식이 기존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써 남용될 수 있는 경우
 - 출자지분과 회사지배에 관한 비례적 이익간 불균형이 발생하여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 이익배당이나 상환을 위한 재원이 충분히 유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공익과 투자자보호에 위배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종류주식의 신규상장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
- 의무이행확약서, 인수계약서, 주주명부요약표, 주금납입증명서 등
- 종류주식의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시기는 다음과 같음
- 기본적으로 당해 보통주식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시기 또는 해제시기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세부적으로 지정 및 해제시기를 명시

	지정 시기	해제 시기
주주수 미달	공시규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	[상장서식 2]에 따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주주명부요약표와 실질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주주수가 확인된 날의 익일
상장주식수 미달	확인된 날의 익일	최근 반기말이나 사업연도말의 상장주식수가 5만주 이상인 것이 확인된 날의 익일
시가총액 미달	확인된 날의 익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의 익일 (1) 시가총액이 5억원 이상인 일수가 10일 이상 계속될 것 (2) 시가총액이 5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일 것
거래실적 부진	분기종료일의 익일	거래요건을 충족한 분기 종료일의 익일

- 거래소는 해당 종류주식의 상장폐지 등과 관련된 향후 세부절차를 시장안내사항으로 공시하여야 함

— 종류주식에 대한 수수료 납부근거 명시

- 종류주식에 대한 상장심사수수료를 보통주식의 1/2로 하되 신규상장 예정법인의 경우 면제

□ 우량기업부 정기심사요건으로 기업경영건전성 요건에 대한 세부 사항 마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4조 1항 : 2012/4/20 개정, 4/23 시행)

— 기업경영의 건전성 요건은 다음과 같음

- 최근 2년간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어 부과받은 벌점의 합계가 4점 이하일 것
- 최근 2년간 3회 이상 최대주주 변경사실이 없을 것

□ 회계분식 관련 중과실조치에 대한 실질심사사유 보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33조 : 2012/4/20 개정, 4/23 시행)

- 기존 4월 이상의 증권발행제한 또는 검찰 고발·통보(전·현직 임원에 대한 경우 포함)의 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서 2년 이상의 감사인지정, 임원해임권고(임원해임권고 상당을 포함)사항을 추가함

□ 주권 및 외국주권 등의 연부과금 및 상장수수료 부과기준 변경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50조, 별표 2 : 2012/7/20 개정, 7/23 시행)

- 상장법인의 주권 및 외국주권과 외국주식예탁증권의 연부과금 및 상장수수료 산정 시 부과기준을 시가총액 기준으로 변경함

- 종래 주권에 대한 자본금 기준 부과방식과 외국주권과 외국주식예탁 증권의 상장주식 수 기준 부과방식을 폐지함

<표 IV-2> 시가총액 기준 부과세 세부 내용

구분	부과기준
연부과금	직전년도의 평균시가총액
신규상장수수료	기준시가총액
신주(추가) 상장수수료	신주·추가상장할 시가총액(신주·추가상장 주식수에 상장신청일 직전일의 증가를 곱하여 산출)
재상장수수료	재상장금액(재상장주식수에 평가가격 ¹⁾ 을 곱하여 산출)

주: 1) 유가증권 업무규정 시행세칙 30조 1항 3호

- 무액면주권의 연부과금과 상장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주권과 동일하게 시가총액 기준으로 설정

무액면주식

액면주식과 달리 주식의 권면에 주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식 수만 기재되는 주식으로, 해당 주주는 전체 발행주식에 대한 자기 지분 비율만을 알 수 있으며, 액면금액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기업의 경제가치를 반영하는 발생시점의 시장가치에 의하여 발행되고 기업의 자본금도 그 발행가액에 따라 결정됨. 기업의 재무관리 편의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2011년 상법개정(2012년 4월 15일 시행)으로 도입됨

- 부과기준 변경에 따른 혼선 방지를 위해 상장수수료는 2012년 8월 6일 이후 납부하는 상장수수료부터 적용하고, 연부과금의 경우 2013년도분 징수시(2014년초 납부)부터 해당 기준을 반영
- 시가총액 기준으로 부과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상장수수료와 연부과금이 인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액구간별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인하
 - $\text{상장수수료} = \text{상장할 금액} \times \text{수수료율}$
- 연부과금과 상장수수료의 최저·최대 금액 설정

구분	종 래		개 정	
	최저	최대	최저	최대
연부과금	-	-	120만원	5천만원
신규상장수수료	120만원	-	120만원	8천만원
재상장/신주·추가상장	10만원	-	10만원	8천만원

— 상장심사수수료는 500만원으로 함

- 주권과 무액면주권, 외국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

□ 종류주식에 대한 연부과금과 상장수수료 부과 기준 마련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50조, 별표 2 : 2012/7/20 개정, 7/23 시행)

— 상장법인이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연부과금은 종류주식 시가총액을 보통주식 시가총액에 합산하여 1건으로 부과함

- 외국종류주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을 1건으로 합산하여 평균시가총액을 계산함

— 종류주식의 상장수수료는 보통주식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신규상장심사수수료는 250만원으로 함

- 다만, 종류주식(외국종류주식 포함)을 보통주식과 동시에 상장예비심사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장심사수수료는 100만원으로 하고, 그 밖의 상장수수료는 보통주식과 합산하여 1건으로 부과함

□ 전문평가 기간 연장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9조 8항 : 2012/9/1 개정·시행)

— 전문평가의 내실 있는 운영 및 충분한 평가기간 확보를 위해 현행 4주에서 6주로 연장

□ 상장수수료 등 부과기준 변경 및 부과한도율 조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50조 : 2012/12/26 개정, 12/31 시행 단, 50조 1항은 2013/1/1 시행)

-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의 부과기준을 자본금에서 시가총액으로 변경하고, 자본금에 대한 시가총액의 배율에 비례하여 부과한도율을 동일한 비율로 하향 조정
 - 자본금대비 시가총액 배율(12배)에 비례하여 부과한도율을 기존대비 12분의 1 수준으로 조정

□ 영업손실 관련 관리종목 지정기준 정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8조 1항 3호의2 : 2012/12/26 개정, 12/31 시행)

- 영업손익의 손익계산서 본문 기재가 의무화됨에 따라 영업손익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및 주식에 기재하는 경우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기준 적용방법을 삭제

□ 수수료 부과 구간 및 요율 조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상장서식 3 : 2012/12/28 개정, 2013/1/1 시행)

-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부과구간 및 요율을 합리적으로 재조정

□ 수수료면제기준에 의한 면제사유 세칙 반영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38조 3항 7호 : 2012/12/28 개정, 2013/1/1 시행)

- 공시우수법인에 대한 수수료 면제근거 명정 및 지배구조우수법인 등에 대한 수수료 면제근거를 면제기준에서 세칙으로 이관

□ 상장폐지법인에 대한 연부과금 면제사유 추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38조 3항 1호 바목 : 2012/12/28 개정, 2013/1/1 시행)

— 부도, 해산, 자본전액잠식에 따른 상장폐지 법인의 수시납부 연부과금 면제

- 상장폐지법인의 경우 무자력(無資力) 또는 수수료 납부여력이 없는 법인으로서 연부과금 부과 실익이 없는 현실을 고려

	구간(시가총액)	수수료율
연 부 과 금	100억 이하	10억당 1만원
	100억~300억 이하	10만원 + 100억원 초과액 10억원당 8천원
	300억~500억 이하	26만원 + 300억원 초과액 10억원당 7천원
	500억~700억 이하	40만원 + 500억원 초과액 10억원당 6천원
	700억~1,000억 이하	52만원 + 700억원 초과액 10억원당 4천원
	1,000억~2,000억원 이하	64만원 + 1,000억원 초과액 10억원당 2천원
	2,000억~5,000억원 이하	84만원 + 2,000억원 초과액 10억원당 1천원
	5,000억원 초과	114만원 + 5,000억원 초과액 10억원당 5백원
	구간(기준시가총액)	수수료율
상 장 수 수 료	100억 이하	10억당 3만원(최저한도 5만원)
	100억~300억 이하	30만원 + 100억원 초과액 10억원당 2만5천원
	300억~500억 이하	80만원 + 300억원 초과액 10억원당 2만원
	500억~700억 이하	120만원 + 500억원 초과액 10억원당 1만5천원
	700억~1,000억 이하	150만원 + 700억원 초과액 10억원당 1만원
	1,000억~2,000억원 이하	180만원 + 1,000억원 초과액 10억원당 5천원
	2,000억~5,000억원 이하	230만원 + 2,000억원 초과액 10억원당 2천5백원
	5,000억원 초과	305만원 + 5,000억원 초과액 10억원당 5백원

3. 신성장동력기업

□ 이노비즈 인증기업 특례근거 신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조 9항 : 2012/4/18 개정, 4/23 시행)

— 기존 벤처기업에 대한 상장특례규정이 이노비즈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벤처기업 범위에 이노비즈기업을 포함시킴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근거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이노비즈기업으로 명명함

- 이노비즈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상장특례 도입에 따라 상장 예비심사청구 시 이노비즈 인증확인서를 추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3조 : 2012/4/20 개정, 4/23 시행)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기존 벤처기업수준의 상장특례가 허용됨에 따라 심사청구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발급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2부를 징구하도록 규정함
 - 또한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등에 이노비즈기업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서식을 정비함(상장서식 30, 30-3, 30-5, 30-7)

- 전문평가 기간을 연장하고 평가회의 2회 이상 의무화 조항 신설
(전문평가기관제도 세부운영기준 6조 8항·9항 : 2012/9/1 개정·시행)
 - 전문평가의 내실 있는 운영 및 충분한 평가기간 확보를 위해 평가기간을 현행 4주에서 6주로 연장
 - 전문평가기관은 거래소에 기술평가서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기업에 대한 실사와 의견청취를 위해 2회 이상 평가회의 개최
 - 기존의 평가회의는 기업실사 성격으로 Kick-off 미팅 1회만 실시

- 전문평가 신청기업 등에 대한 평가결과 및 내용의 공개근거를 신설
(전문평가기관제도 세부운영기준 7조 : 2012/9/1 개정·시행)
 -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도 제고를 위해 각 전문평가기관의 종합평가결과에 한해 해당 기업 및 상장주선인에게 공개할 수 있음
 - 단, 기술평가가 상장예비심사 청구의 전제조건인 신성장동력기업에 한정함

- 전문평가 후 6월 이내 재신청 제한에 대한 예외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재신청 남용방지를 위해 재평가 결과의 재평가신청 제한조항 신설

(전문평가기관제도 세부운영기준 10조 : 2012/9/1 개정·시행)

- 전문평가기관 간 등급격차 과다, 직전평가결과 적격기업의 평가 탈락 등의 경우
 - 전문평가기관으로 지정된 2개의 기관이 산정한 종합평가등급의 차이가 2등급 이상인 경우로서 이 중 1개 기관의 종합평가등급이 A 이상인 경우
 - 최종 평가등급이 BBB 이하인 경우로서 해당 최종 평가등급 확정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다른 전문평가에서 A 이상의 최종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 녹색인증기업이 1개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전문평가를 받은 경우로서 최종 평가등급이 BBB인 경우
 - 그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예외적인 전문평가 재신청 허용의 남용 방지를 위하여 재평가 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재평가 신청은 제한

4.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

- 회원조치 통지 및 의견제출, 재심청구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함
(회원관리규정 38조 1항~4항 : 2012/1/27 개정, 2012/3/1 시행)
 - 거래소의 회원조치 사유 발생사실 통보의무를 명시함
 - 회원은 거래소의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 의견 제출하여야 하며 재무요건 미달 시 개선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함
 - 거래소의 조치사유 발생 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 회원조치를 처리하여 함

- 기존 회원의 재심청구를 이의신청 제도로 체계화함(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 참가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 업무규정 3조, 5조, 8조, 9조 : 2012/3/23 제정, 3/30 시행)
 - 정제업자, 수출입업자, 대리점, 주유소인 석유사업자는 다음의 가입요건을 충족하여 거래소로부터 가입승인을 통보받은 경우 본 전자상거래에 참여할 수 있음
 - 가입신청일 현재 석유사업법에 따른 석유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2개월 내에 석유제품의 매매거래실적을 보유할 것
 -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등으로 인하여 석유사업법에 따라 사업정지처분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가입신청일 현재 그 처분 또는 조치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것
 - 참가자는 탈퇴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또한 다음 사유 발생 시 당연 탈퇴함
 - 석유사업법에 따른 석유사업의 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석유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 석유사업의 변경등록 및 양도, 합병 또는 해당 사업자의 사망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석유사업이 승계된 경우
 - 지급불능으로 되거나 회생절차개시, 파산 신청 또는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 거래소가 본 규정에 따라 참가자탈퇴를 결정하여 탈퇴일을 통지한 경우
- 참가자는 참가자단말기에서 실행되는 호가입력프로그램을 통해 매매거래시스템에 접속하여 석유제품의 매매거래를 할 수 있음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 업무규정 11조~15조 : 2012/3/23 제정, 3/30 시행)
- 이때 참가자는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신의의 원칙에 따라 거래하며 일정 사유 발생 시 거래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여야 함

□ 매매거래 운영 규제는 다음과 같음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 업무규정 20조, 22조, 24조 : 2012/3/23 제정, 3/30 시행)

- 매매거래시간은 10시부터 16시로 공휴일, 근로자의 날, 토요일, 그 밖에 거래소가 매매거래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은 휴일로 매매거래를 하지 아니함
- 거래소는 참가자 간 석유제품의 매매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중개업무를 담당함
- 매매거래의 대상종목은 저유소별로 석유제품의 종류·상표로 구분함
 - 저유소란 석유제품의 저장 등을 위하여 석유제품의 저장시설 중 거래소가 정하는 석유저장시설
 - 석유제품의 종류란 자동차용 휘발유중 보통휘발유(1호)와 경유 중 자동차용 경유
 - 상표란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알뜰상표, 자가상표(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알뜰상표가 아닌 석유제품의 상표)를 의미함

□ 호가 관련 규제는 다음과 같음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 업무규정 25조~30조, 35조 : 2012/3/23 제정, 3/30 시행)

— 호가의 제출

- 정제업자(직영대리점 포함)의 경우 해당 정제업자의 상표, 알뜰상표 또는 자가상표에 대한 매도호가
- 수출입업자의 경우 알뜰상표 또는 자가상표에 대한 매도호가
- 대리점의 경우 모든 상표에 대한 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
- 주유소의 경우 모든 상표에 대한 매수호가
- 단, 상표권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대리점은 해당 정제업자의 상표에 대한 매도호가를 제출할 수 없음
- 또한, 전속공급계약을 체결한 주유소는 해당 정제업자의 상표에 한하여 매수호가를 제출할 수 있음

- 호가접수시간은 매매거래시간
- 호가의 종류는 저유소·석유제품의 종류·상표, 수량 및 가격을 지정하는 호가로서 지정한 가격 또는 그 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려는 호가 즉 지정가호가로 함
- 호가수량단위 및 매매수량단위는 각각 2만리터로 하며, 호가가격단위는 0.5원임
- 호가한도수량은 최소 2만 리터에서 최대 50만 리터로 함
- 호가 제출 시 또는 미리 호가수량단위당 150만원의 거래보증금을 거래소 명의의 보증금계좌에 현금으로 예탁하여야 함
 - 단,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보증금을 현금에 갈음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로 예탁 가능
- 호가는 각 저유소의 종목별로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가격의 제한을 받음
 - 기준가격이라 함은 1)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 체결가격, 2) 1호 가격이 없는 경우 직전 매매거래일에 체결된 동종 석유제품의 동일 상표의 전체 매매거래의 거래량 가중평균가격, 3) 1호와 2호 가격이 없는 경우 직전 매매거래일에 체결된 석유제품의 종류별 매매거래의 거래량 가중평균가격을 의미
 - 호가는 각 저유소의 종목별 기준가격에 5% 상하한의 제한을 받음

<그림 IV-1> 석유 전자상거래시장 참가자 구조



□ 경쟁매매원칙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 업무규정 36조~38조 : 2012/3/23 제정, 3/30 시행)

- 경쟁매매에 있어서의 호가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낮은 가격의 매도호가 높은 가격의 매도호가에 우선, 높은 가격의 매수호가는 낮은 가격의 매수호가에 우선
 - 가격이 동일한 호가 간에는 접수시간에 따라 먼저 접수된 호가가 나중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
- 종목별로 매매거래일의 최초 체결가격과 최종 체결가격은 단일가격에 의한 경쟁매매에 따라 결정함
- 그 외의 매매거래는 복수가격에 의한 경쟁매매에 따름

□ 참가자가 저유소·석유제품의 종류·상표, 가격 및 수량에 관하여 협의상대거래의 내용을 거래소에 신청하는 경우 협의 내용에 따라 매매거래 체결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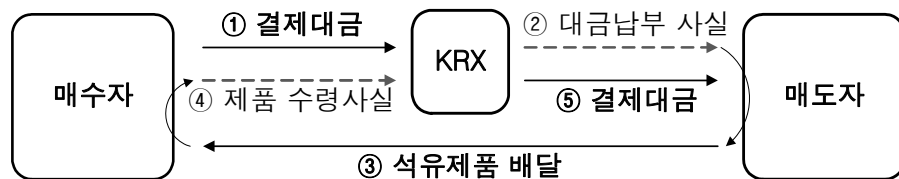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 업무규정 39조 : 2012/3/23 제정, 3/30 시행)

- 협의상대거래의 신청시간은 10시부터 15시 30분까지이며 협의상대거래를 거래소 신청 후에는 참가자는 해당 신청을 취소·정정하여서는 안 됨

□ 매매거래의 당사자는 매매체결될 때마다 석유제품과 결제대금을 일정 시한 이내에 지체없이 직접 수수하여 결제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 업무규정 45조 : 2012/3/23 제정, 3/30 시행)

- 결제관리를 위해서 결제대금은 거래소 명의의 결제계좌를 경유하여 수수하여야 하는데 이때 거래소는 매도자 및 매수자를 대리, 대행하거나 그 이행을 보조하지는 않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



□ 참가자들의 금지행위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 업무규정 53조 : 2012/3/23 제정, 3/30 시행)

- 취득 또는 처분의 의사 없이 통정매매거래,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장거래
- 시세조정행위
- 시세를 상승·하락 또는 고정·안정시키기 위한 담합행위
- 그 밖에 매매거래의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행위 등

□ 거래소는 매매거래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안정을 위하여 매매거래 상황을 감시할 수 있음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 업무규정 54조 : 2012/3/23 제정, 3/30 시행)

- 이때 거래소는 참가자에 대하여 매매거래와 관련된 업무 또는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 참고자료의 제출, 사실과 상황에 관한 진술서의 제출 및 진술을 위한 출석 요구 및 매매거래와 관련된 업무, 재산상황, 장부, 서류 기타의 문서 조사가 가능함

□ 참가자는 거래소에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 업무규정 56조 : 2012/3/23 제정, 3/30 시행)

- 거래소는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조정 전 합의 권고 가능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분쟁을 조정할 수 있음

□ 참가자 가입요건의 정비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 업무규정 5조 2호, 3호 : 2012/5/2 개정, 5/7 시행)

- 가입신청일 현재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등으로 인하여 석유사업법에 따라 사업정지처분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기존의 경우 가입신청일 현재 그 처분 또는 조치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이 경과한 경우 가입을 허용하였음
- 또한 수출입업자 또는 대리점의 경우 가입신청일 현재 석유사업자로 등록이후 1년 경과 시점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참가자에 대한 조치로 다른 참가자에 대한 피해 상황을 구체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 업무규정 15조 1항 5호 : 2012/5/2 개정, 5/7 시행)

- 대리점 등의 세금탈루 등 조세 관련 법규 위반으로 다른 참가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함

□ 알뜰상표에 대한 호가 관련 규정의 정비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 업무규정 25조 1항 : 2012/5/2 개정, 5/7 시행)

- 알뜰상표의 매도호가 제출자로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농협중앙회를 추가하고 알뜰상표에 대한 매수호가는 알뜰상표의 주유소에 제한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거래소 지정종목의 경우 호가수량단위 및 매매수량단위의 수량에 대하여 온도환산 방식을 적용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 업무규정 28조 2항, 45조 4항 : 2012/5/2 개정, 5/7 시행)

- 정유사 공장에서 직접 출하 시 고온에 따른 부피 팽창으로 과대 수량이 측정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거래소가 지정하는 종목에 한하여 석유제품의 수량 계측 시 온도환산방식을 적용하도록 함
- 온도환산방식 적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거래소의 결제대금과 달리 결제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해당 차액을 당사자간 직접 수수하도록 함

□ 거래보증금 예탁 면제범위를 확대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 업무규정 30조 1항 : 2012/5/2 개정, 5/7 시행)

- 기존 SK에너지(주), GS칼텍스(주), 현대오일뱅크(주), 에스-오일(주), 한국석유공사, 그 밖에 거래소가 인정하는 자에서 삼성토탈을 포함하는 모든 정제업자, 석유공사 이외에 도로공사, 농협중앙회 및 매매거래실적이 일정수량이 있는 사업자, 그 밖에 거래소가 인정하는 자로 확대함
 - 매매거래실적이 일정수량이 있는 사업자란 직전 주를 포함한 직전 3주간의 매매거래 실적이 수출입업자와 대리점의 경우 20만리터, 주유소의 경우 10만리터 이상이면서 직전 1주간의 매매거래실적이 4만리터 이상인 석유사업자를 의미하며 매주 금요일 거래종료후 평가하여 다음주 월요일부터 면제함

□ 협의상대거래에 대한 수량제한을 완화하고 출하증명서 사본의 제출을 의무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 업무규정 39조 2항 4호, 39조 6항 : 2012/5/2 개정, 5/7 시행)

- 협의상대거래의 최소 수량을 기존 20만리터에서 10만리터로 축소함
 - 알뜰상표 종목에서 알뜰상표의 주유소가 석유제품을 매수하는 경우 4만리터를 최소 수량으로 조정함

- 또한 매수자에게 석유제품 인수 후 다음 매매거래일까지 출하증명서 사본을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함

□ 매매체결후 매매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출하도, 도착도의 배송조건 구분 변경을 허용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 업무규정 43조 1항 : 2012/5/2 개정, 5/7 시행)

- 기존 매수자의 호가 입력 시 일반적으로 정하도록 한 배송조건을 매매체결후 1시간까지 매매당사자간 합의하에 출하도와 도착도를 구분하여 변경을 허용하고 이를 거래소에 통지하도록 함

□ 배송비 관련 규정 정비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 업무규정 46조 1항 : 2012/5/2 개정, 5/7 시행)

- 당사자간 합의한 배송비가 배송요율표보다 낮은 경우 합의된 금액으로 하도록 함

□ 거래보증금 면제자의 결제불이행 시 거래보증금 인상 및 지연손해금 산정방식 변경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 업무규정 52조 : 2012/5/2 개정, 5/7 시행)

- 참가자가 거래보증금을 미납하는 경우 호가수량단위당 500만원의 거래보증금을 부과함
 - 거래소는 해당 거래보증금이 납부될 때까지 거래보증금의 미납부사실을 홈페이지 및 호가입력프로그램에 게시하여야 함
- 거래보증금은 통지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통지일의 다음날부터 해당 거래보증금액에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부과함

□ 종목 단순화 및 상장종목 확대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 업무규정 20조 1항, 24조 2항·5항, 46조 1항 : 2012/7/13 개정, 7/23 시행)

- 종래 전국 36개 저유소 기준으로 세분화된 정유사 상표 종목을 6개 권역 기준으로 변경함
 - 권역은 거래소가 정한 석유저장시설인 저유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수도권, 강원, 충청, 영남, 호남, 제주의 6개 권역으로 구분됨
 - 이에 따라 정유사 상표종목이 종래 135개에서 70개로 축소됨으로써 거래 유동성 제고가 기대됨
- 다만, 특정 지역위주로 영업하여 권역 단위로 매매가 곤란한 경우는 현행 저유소 기준 유지함
 - 수입사와 대리점이 주로 매매하는 자가상표 종목과 정유사의 온도보정종목
- 전자상거래의 상장종목 및 매매지역 확대
 - 제주지역 5개 상표(정유 4사, 자가)를 신규상장(10종목)함
 - 알뜰상표를 종래 4개 저유소(8개 종목)에서 5개 권역(10개 종목)으로 확대함
- 권역 종목의 배송비는 해당 권역 내에서 매수자가 호가제출 시 지정한 저유소를 기준으로 산정함

□ 거래소에 의한 주유소 호가입력 대행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 업무규정 11조 2항·3항, 31조 1항, 42조의2 등 : 2012/7/13 개정, 7/23 시행)

- 온라인에 익숙치 않은 주유소인 참가자가 거래소에 전화, 모사전송 등으로 요청하면 주유소를 대신하여 거래소가 전산시스템에 호가입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참가자는 최초의 호가입력 대행 요청 전에 거래소와 호가입력대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 호가입력대행의 범위·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이외에도 호가입력 대행으로 거래소 착오 발생 시 착오매매의 정정 방법이나 최소로 인한 손익에 대해 호가입력대행계약에서 정함

<증권·파생상품시장에서의 위탁과 전자상거래의 호가 대행 차이>

위탁

위탁자를 대신하여 수탁자(금융투자회사)가 수탁자의 명의로 호가를 제출하고 이에 따른 결제이행의 책임도 수탁자가 부담

호가입력 대행

참가자를 대신하여 거래소가 참가자의 명의로호가입력을 하고 매매거래의 결제 이행책임은 해당 참가자가 부담

거래시간의 확대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 업무규정 20조 2항, 39조 4항, 45조 1항, 48조 2항 : 2012/7/13 개정, 7/23 시행)

- 거래 종료시간을 1시간 연장하여 종래 10시~16시이던 매매시간을 10시~17시로 확대함
 - 매매시간 연장에 따라 현금 결제시한(17시 → 18시) 및 당일 결제대금 지급시한(18시 → 19시)을 조정
- 협의상대매매의 매매시간을 종래 10시~15:30분에서 10시~16:50분으로 연장함

수출입업자의 참여 편리성 제고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 업무규정5조 3호, 6조의2, 25조 1항 : 2012/7/13 개정, 7/23 시행)

- 기존 대리점이 신규로 수출입업을 등록하거나 수출입업자가 대리점을 신규 등록할 경우, 가입 신청과 심사 등의 별도의 참가자 가입절차 없이도 신규 석유사업 등록증을 제출하면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거래소는 석유사업 등록증을 제출받은 경우 필요한 자료의 징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수출입업과 대리점을 겸업하는 참가자는 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를 모두 제출할 수 있음
- 수출입업자의 석유사업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이후에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 요건을 폐지
 - 대리점은 종래와 마찬가지로 석유사업 등록시점부터 1년 경과 후에 가입을 허용

□ 협의상대거래의 호가수량단위 조정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 업무규정 39조 2항 4호 : 2012/7/13 개정, 7/23 시행)

- 비표준 매매거래인 협의상대거래에 한하여 10만리터 이상 200만리터 내에서 기존 2만리터 단위의 호가에서 2천리터 단위의 정수배 호가로 하향함
 - 수송차량의 크기는 2만리터가 가장 일반적이거나, 1만 2천리터, 2만 4리터, 2만 8천리터 등으로 다양한 것을 감안한 조치
 - 호가수량단위의 예 : (종래) 10만, 12만, 14만 등 → (개정) 10만, 10만 2천, 10만 4천, 12만, 12만 2천 등(단위: 리터)

□ 출하희망 저유소 변경 허용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 업무규정 43조 1항 : 2012/7/13 개정, 7/23 시행)

- 매도자가 매수자와 협의하에 출하 저유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결제이행능력을 제고함
 - 매수자 지정 저유소의 물량 부족 시, 배송차량 미확보, 교통체증,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 권역 기준 종목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 권역 내 저유소 중에서 변경

□ 참가자 요청에 따른 거래보증금 미환급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 업무규정 30조 6항 단서 : 2012/7/13 개정, 7/23 시행)

- 참가자 요청 시 당일 사용된 거래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익일 매매의 거래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거래보증금 미환급에 따른 이자는 거래소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안분 배분
 - 거래보증금은 2만 리터당 150만원(협의상대거래는 2천 리터당 15만원)임

□ 결제불이행에 대한 조치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 업무규정 51조 1항, 52조 1항 : 2012/7/13 개정, 7/23 시행)

- 매수 참가자가 천재지변, 결제은행의 전산시스템 오류, 그 밖의 거래소가 인정하는 사유로 현금결제시한(18시)까지 결제가 곤란한 경우 결제 이연을 허용함
 - 해당 매매거래일 내에서 거래소가 정하는 시간까지 결제할 수 있음
- 매도 참가자가 일부 수량에 대해서 결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결제가 이행되지 않은 수량을 기준으로 거래보증금 및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도록 함

□ 법인인감증명 사본 제출 폐지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 업무규정 별지서식 1호 : 2012/7/13 개정, 7/23 시행)

- 법인사업자의 가입신청 시 법인인감증명 사본 제출 폐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은행통장 사본으로 법인실체의 대체 확인 가능

□ 수입석유제품에 대한 가격모니터링 체계 구축³⁾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 업무규정 13조의2, 14조 2항·3항 : 2012/11/19 개정·시행)

- 참가자는 수입석유제품의 세금혜택이 소비자에게 많이 분배될 수 있는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해야 함
- 수입석유제품에 대한 가격모니터링을 위하여 매수자는 인수한 내역을 거래소에 통지하고 매도자는 인도내역의 증빙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함
 - 매수자는 수입석유제품에 대한 저유소에서 출하일시, 수송차량번호 등을 통지(협의상대거래 포함)
 - 매도자는 수입석유제품에 대한 출하증빙서류를 제출(협의상대거래 포함)

□ 수입석유제품에 대한 세금혜택 등을 자신의 과도한 수익으로 챙긴 주유소에 대해서는 분기단위로 평가하여 제재 조치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 업무규정 15조 : 2012/11/19 개정·시행)

- 세금혜택 등에 따른 전자상거래 수익률에 따른 제재
 - 전국주유소의 평균수익률과 해당 지역주유소의 평균수익률에 비해 각각 20% 이상 초과하면서 전자상거래 수익이 전국주유소의 평균수익 대비 리터당 40원 이상 큰 주유소에 대해 제재
 - 제재 심의 전에 의견진술 기회부여 및 석유제품위원회에서 제재수준 심의

□ 일반판매소의 참가 허용 및 대리점의 가입요건 완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 업무규정 3조, 5조, 25조 : 2012/11/19 개정·시행)

- 석유판매업자인 일반판매소에 대해 일정요건 충족 시 가입을 허용하고 경유에 한해 매수호가 제출 허용

3) 2012년 국감에서 세금혜택의 소비자 분배강화를 위한 모니터링체계 구축 요구

- 석유사업자 등록 1년 미만인 대리점이 연간 총매출액 50억원 이상이면서 과거 2년간 세금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가입 허용

□ 수출입업과 대리점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복수 ID로 자전거래를 통하여 법인세를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 ID 1개 부여를 명확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 업무규정 7조 3항 : 2012/11/19 개정 · 시행)

자전거래(cross-trading)

대량으로 주식을 거래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매매를 중개하는 증권회사가 같은 주식을 동일가격으로 동일수량의 매도·매수 주문을 내어 매매거래를 체결시키는 것으로 거래량 급변동으로 인해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주로 기업이 장부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해 보유 중인 주식을 판 뒤 곧바로 동일한 가격과 동일한 수량으로 되사는 경우 또는 그룹 계열사끼리 지분을 주고받을 때 나타남

□ 온도환산종목에 대한 온도환산수량과 온도보정금액 산출방법 명확화 및 인수수량에 대한 이의제기 시점 명확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 업무규정 28조 2항, 45조 4항, 48조 6항, 50조 7항 : 2012/11/19 개정 · 시행)

- 온도환산종목의 경우 매매수량단위는 온도환산수량으로 하고, 결제 자금은 결제대금과 온도보정금액간 차액을 당사자 간 직접 수수
 - 온도환산수량은 석유제품의 부피환산계수에 2만리터를 곱하여 산출
 - 온도보정금액은 온도환산수량에 체결가격을 곱하여 산출
 - 석유제품의 부피환산계수는 미국재료시험학회(ASTM)의 환산계수 등 국내 석유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계수를 활용
- 온도환산적용종목에서 석유제품을 매도한 자는 출하전표, 온도환산 수량 및 온도보정금액을 거래소에 통지

- 매도자는 출하증빙서류에 해당 저유소에서 측정한 출하온도가 기재되도록 저유소에게 요구 의무화
 - 매수자는 인수도 수량에 이의가 있는 경우 매수자의 저장시설 입고 전에 제기해야 하며 입고이후는 불가
- 협의상대거래의 경쟁매매 유도를 위해 전월 거래량의 일정수준 이상 경쟁거래 시 협의상대거래 신청 허용⁴⁾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 업무규정 39조 6항 : 2012/11/19 개정·시행)
- 협의상대거래에 대한 종목별 시세 공표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 업무규정 44조 1항 : 2012/11/19 개정·시행)
- 경쟁매매에 대한 영향 최소화 및 가격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매거래시간종료 후 종목별 시세, 거래량, 거래대금 공표
- 정유사가 자신의 상표권 없이 공급하는 혼합판매용 자가상표 추가 상장 및 주유소의 혼합판매계약 내용 통보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 업무규정 24조 4항, 14조 1항 9호, 25조 : 2012/11/19 개정·시행)
- 정유사의 혼합판매종목 설정근거를 마련
 - 주유소가 정제업자 또는 그의 대리점과 혼합판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내용을 거래소에 통보
 - 혼합판매목적의 자가상표(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알뜰상표가 아닌 석유제품의 상표를 말함)종목에는 정유사 4사만 매도 허용

4) 2012년 국감에서 협의상대거래 비중이 높다고 지적

혼합판매(석유제품 복수상표 자율판매)

폴사인 주유소에서 타사 또는 수입석유제품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정유사와 주유소간 자유로운 정률 또는 물량 계약에 따라 일정부분의 물량을 혼합판매하는 제도로 금년 9월부터 시행 중

□ 석유제품위원회 심의사항 추가 및 위원 변경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 업무규정 59조 : 2012/11/19 개정 · 시행)

— 가격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참가자 제재심의 근거 마련

— 참가자 위원은 축소하되 객관적 · 중립적 전문가 위원 증대

- 석유제품위원회(15인 이내) : 정제 · 수출입 2명, 대리점 · 주유소 · 판매소 3명, 유관협회 2명, 유관기관 2명, 학계 4명, 공무원 1명(안전별 7인 이내 회의)

5. 업무관리와 재무제도

□ 자기주식의 취득 절차와 방법 마련

(상법 시행령 9조, 10조 : 2012/4/10 개정, 4/15 시행)

— 개정 상법은 회사로 하여금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공개매수와 시장매수) 혹은 상환주식을 제외하고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함(상법 341조 1항)

— 이에 시행령은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혹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매수 방법을 통해 자기주식을 취득하도록 규정함

- 자기주식 취득회사는 지체없이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 간 보관하여야 하며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이에 대한 열람 및 등본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음
- 또한 자기 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사전에 이사회 결의로써 취득목적,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내용 및 그 산정 방법,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등의 총액, 양도신청기간, 양도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에 주식 취득의 조건을 정하여야 함
- 회사는 양도신청기간 시작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 현황,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이사회 결의로 정한 사항을 서면으로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함
 - 단, 무기명식 주권발행의 경우 양도신청기간 시작일 3주 전에 공고하여야 함

□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의 자격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

(상법 시행령 39조~42조 : 2012/4/10 개정, 4/15 시행)

- 개정 상법은 준법경영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상장회사로 하여금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1인 이상의 준법지원인을 둘 것을 규정함(상법 542조의13)
- 이에 시행령은 준법지원제도 적용대상을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회사로 규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준법지원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사항을 마련함
 - 준법통제기준은 제정 및 변경절차, 준법지원인의 임면절차, 준법지원인의 독립적 직무수행의 보장 등에 대하여 규정하여야 하며, 준법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 시 이사회의 결의가 요구됨
 - 준법지원인의 자격은 상장회사에서 감사·감사위원·준법감시인 또는 이와 관련된 법무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법률학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장회사에서 감사·감사위원·준법감시인 또는 이와 관련된 법무부서에서 근무한 경

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으로 준법지원인은 자신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 단, 준법지원인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인 회사에게 적용을 배제함(부칙 5조)

□ 상법상 도입된 집행임원제도에 대해서도 보호예수의무, SPAC 임원자격 등 관련 규제의 적용 대상에 포함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2조 32항, 13조, 55조 : 2012/4/18 개정, 4/23 시행)

□ 집행임원설치회사에 있어 대표집행임원에 대하여 대표권한 부여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6조의2 : 2012/4/18 개정, 4/23 시행)
— 이사회와 감독 아래 회사업무를 집행하는 전담기관인 집행임원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이사 대신 대표집행임원이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

V. 기타

- 금융투자협회 업무지원사이트 개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일임업자, 신탁업자의 수수료 부과기준 제출사이트를 <http://work.kofia.or.kr>로 변경함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3호 2호 서식 : 2012/3/16 개정·시행)

-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 시 신청인 제출서류에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추가함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10조 1항 4호, 별지 6호 : 2012/6/28 개정·시행)

-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2011.3.29 제정, 2012.3.30 시행)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함

- 신탁사무와 관련된 서류의 보존기간

(신탁법 시행령 3조 : 2012/7/23 개정, 7/26 시행)

- 수탁자가 신탁사무와 관련된 서류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을 정함
 - 신탁의 재산목록, 재무제표 및 신탁재산의 운용내역서 등 중요한 서류는 해당 신탁이 종료된 때부터 10년간 보존
 - 그 밖의 신탁사무와 관련된 서류는 해당 신탁이 종료된 때부터 5년간 보존
- 수익자가 신탁에 대한 감독권을 적절히 행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수익자집회 소집 시 제공할 서류 및 전자투표의 절차

(신탁법 시행령 4조~5조 : 2012/7/23 개정, 7/26 시행)

- 수익자집회 소집 시 집회목적에 따라 소집자가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의 세부적인 기재사항을 정함
- 수익자가 수익자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문서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 수익증권과 수익자명부의 기재사항

(신탁법 시행령 6조~7조 : 2012/7/23 개정, 7/26 시행)

- 수익증권을 둘러싼 권리관계가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수익증권과 수익자명부의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 수익증권의 기재사항: 신탁기간, 수탁자 보수의 계산방법, 수익권에 대한 양도 제한의 취지 등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
 - 수익자명부의 기재사항: 위탁자 및 수탁자의 성명, 주소 등
- 수익증권의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수익권의 양도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신탁사채 발행 한도

(신탁법 시행령 8조 : 2012/7/23 개정, 7/26 시행)

- 자본시장법 87조에 따른 신탁사채(수익증권발행신탁인 유한책임신탁이 발행하는 신탁사채)의 발행한도를 대차대조표상 유한책임신탁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로 정함
 - 최종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사채의 발행 시점에 유한책임신탁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로 함
- 수탁자의 과도한 사채 발행으로 인한 도산 위험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신탁의 합병계획서 등의 기재사항 및 이행계획의 공고의무

(신탁법 시행령 9조~12조 : 2012/7/23 개정, 7/26 시행)

- 신탁을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합병계획서, 분할계획서 및 분할합병계획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 신탁재산의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수탁자에 대해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신탁채무의 이행계획’을 공고하거나 최고하도록 함

□ 유한책임신탁의 회계서류 및 수익자 급부 가능 한도

(신탁법 시행령 14조~15조 : 2012/7/23 개정, 7/26 시행)

- 유한책임신탁의 수탁자가 작성해야 하는 회계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법률에서 직접 정하는 회계서류 외에 자본 변동표, 신탁재산명세서 등
- 수탁자의 책임범위가 신탁재산에 한정되는 유한책임신탁의 신탁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한책임신탁의 수익자에게 급부가 가능한 한도의 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 급부를 할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의 순자산액에서 신탁행위로 정한 유보액과 급부를 할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미 급부한 신탁재산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

□ 분쟁조정기관의 예시에 한국거래소 추가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22조,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36조, 신용거래약관 19조,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16조 : 2012/8/31 개정, 9/10 시행)

- 기존 표준약관은 분쟁조정기관으로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으로 규정되어 있었음

- 회원사가 개별 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별 신탁계좌 주문의 일괄호가를 수용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9조의3, 12조 : 2012/9/20 개정, 10/30 시행)
 - 다수계좌와 관련된 주문내용으로서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과 개별신탁재산의 운용 시 자기명의로 계좌로 주문내용을 호가하는 경우 일괄호가에 편입
 - 개별 신탁재산 일괄호가 시 시장관리상 필요한 내용의 명확화

-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접속기록을 10년 이상 보존하도록 함
(정보보호관리지침 10조 : 2012/10/15 개정, 10/16 시행)
 - 시장시스템 · 상장공시시스템 · 시장감시시스템의 가동기록

- 주민등록번호 대체 확인 수단 도입
(소송지원 운영지침 별지 제1호~3호 : 2012/10/15 개정, 10/22 시행)
 - 소송지원신청서, 위임장 및 소송신청취하서상의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 대리인 위임 인감증명 제출 폐지
(소송지원 운영지침 별지 제2호 : 2012/10/15 개정, 10/22 시행)
 - 위임장 제출 시 인감증명서의 제출 없이 위임인을 통한 소송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첨부요건을 삭제

- 주민등록번호 대체 확인 수단 도입
(분쟁조정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호~4호 및 9호 : 2012/10/15 개정, 10/22 시행)

- 분쟁조정신청서, 조정신청조서, 위임장 등 각종 서식상의 주민번호 기입란 삭제 후 생년월일의 기입으로 대체

□ 대리인 위임 인감증명 제출 폐지

(분쟁조정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3호 : 2012/10/15 개정, 10/22 시행)

- 위임장 제출 시 인감증명서 제출 없이 위임인을 통한 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첨부요건을 삭제

□ 예탁결제원을 통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공시

(금융투자업 규정 7-41조 3항 : 2012/11/21 개정·시행)

- 신탁업자가 예탁결제원을 통해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 등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에 필요한 정보를 예탁결제원에 제공해야 함

□ 총칙

(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를 위한 전자문서 관리 모범규준 : 2012/12/26 제정, 2013/1/2 시행)

- 모범규준의 목적과 적용범위 및 정의규정을 두고 있음

□ 전자문서 작성

(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를 위한 전자문서 관리 모범규준 : 2012/12/26 제정, 2013/1/2 시행)

- 사전동의
 - 전자문서의 요건, 사전동의 및 동의내용, 보관, 확인자료 제시에 관해 규정
-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

- 인증정보 보관, 실명확인증표의 해상도, 대리인 확인방식에 관해 규정
- 전자문서의 화면표시
 - 화면규격과 화면 적합성 규정
- 전자문서에 대한 입력
 - 입력방법, 표시, 장치 저장제한 규정
- 전자서명
 - 전자서명 방법, 추가적용, 인장 해상도, 전자문서의 설명의무에 관해 규정
- 전자문서 보관
 - 타임스탬프 및 전송 후 보관제한 규정
- 전자문서 사후열람
 - 제공방법, 조회 및 출력, 출력표시 규정
- 계좌개설에 따른 후속 조치
 - 보안카드 등 제공 및 거래 가능시기, 매매제한 규정

□ 암호화 및 위변조 방지

(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를 위한 전자문서 관리 모범규준 : 2012/12/26 제정, 2013/1/2 시행)

- 전자문서 암호화 등
 - 암호화 및 보안전송 규정
- 전자문서 위변조 방지
 - 불변경성, 시스템 제한, 무결성 확보, 생성시점, 통합생성 등, 구간 암호화 규정

□ 전자문서 관리

(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를 위한 전자문서 관리 모범규준 : 2012/12/26 제정, 2013/1/2 시행)

— 개인정보보호

- 정보보호 방안 수립

— 보안 및 통제

- 보안원칙, 통제절차 수립, 기록유지, 보안대책 수립, 보안성 심의 규정

— 복구 및 백업

- 전자문서 백업 등 규정

<부록> 규정별 변경내용

I. 법령 등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의 국내 판매 허용

(7조 3항 5호의2 : 2012/6/29 개정, 2012/9/30 시행)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 투자매매업자의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대해 금융투자업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외국의 투자매매업자가 국외에서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을 다른 주식, 회사채, 펀드, 파생상품 등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함
 - 외국 투자매매업자는 해당 국가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건전성, 불공정거래방지 등에 관한 감독을 받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장외파생상품에 관한 인가를 받은 국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인수와 중개를 통해서만 판매가 가능하며, 판매대상은 전문투자자로 한정함

□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 차단에 관한 규제 정비

(50조 1항, 68조 2항 4호의2~4호의4 : 2012/6/29 개정, 2012/9/30 시행)

-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중개업 중 일정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업무와 신탁업을 하나의 부서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 등 고객의 재산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판매업무에 한정
 - 다만 이해상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탁업무 수행 시 고유재산 운용 업무와 구분 운영하는 등의 추가 요건을 부과함
- 주선, 기업인수 및 합병에 대한 자문 등의 업무를 맡는 기업금융업무부서에 대해 일정한 투자은행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비상장기업에 대한 출자, 상장주식에 대한 대량매매(Block Deal)와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중개 업무 등
- 기업의 설비투자, 자원개발 등에 관한 금융자문 등을 수행하는 '프로젝트금융(Project Financing)' 업무는 원칙적으로 기업금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수행하도록 함
 - 프로젝트금융을 담당하는 기업금융업무부서는 고유재산운용업무의 동시 수행 가능

□ 소액공모 제도의 투자자 보호 강화

(120조 1항, 125조 2항, 137조 1항 : 2012/6/29 개정·시행)

소액공모제도

자본시장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10억원 이하를 공모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등을 면제하여 공시부담을 경감해주는 위한 제도 (자본시장법 119조 1항, 동법 시행령 120조 1항)

- 종래 주식, 회사채 등 증권의 종류별로 소액공모한도를 산정하던 것을, 증권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증권의 발행금액을 총액기준 10억원으로 합산하도록 함
 - 일반공모에 따른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 이전 소액공모 누적실적을 삭제하고 소액공모금액을 재산정하는 예외적용도 폐지
 - 소액공모를 통해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를 축소하여 상장폐지 직전 한계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소액공모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투자자가 충분한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소액공모 개시 3일전까지 관련 서류를 공시하도록 함
- 소액공모 시 청약증거금을 증권회사 및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 또는 증권금융이 관리(수납, 보관, 환급)하도록 의무화함
 - 증거금의 납입·반환 과정에서 횡령 등의 사고 발생을 방지

□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 도입

(208조 2항 3호 : 2012/6/29 개정, 2012/8/30 시행)

- 증권을 공매도한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잔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한 경우 공매도 포지션(해당 증권의 보유수량을 초과해 매도한 수량) 등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함
 - 개별 증권사가 투자자의 모든 정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투자자 본인에게 의무부과
- 공매도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행위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잔고 개념의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임
 - 금융위기 이후 'IOSCO 공매도 규제원칙' 등에 따라 다른 나라들도 이미 공매도 보고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IOSCO에서는 국가별로 규제 목적 및 시장여건을 감안, 자율적으로 적절한 수준을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보고의무 발생비율, 보고기한 및 주기 등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투자업규정에 마련할 것임

□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 이하 PEF)의 자산운용의 자율성 제고

(292조 4항, 296조 3항 : 2012/6/29 개정, 2013/1/1 시행)

- 종래에는 PEF의 자산운용방법으로서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증권이나 그 증권의 가격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파생상품(증권의 가격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만 투자가 가능하였으나,
- PEF의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외화증권에 대한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내·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를 허용함
 - PEF의 글로벌 투자와 관련하여 환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위함

- PEF가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차입할 수 있는 한도를 종래 자기자본의 200%에서 300%로 확대함

2. 신탁법 시행령

□ 신탁사무와 관련된 서류의 보존기간

(3조 : 2012/7/23 개정, 7/26 시행)

- 수탁자가 신탁사무와 관련된 서류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을 정함
 - 신탁의 재산목록, 재무제표 및 신탁재산의 운용내역서 등 중요한 서류는 해당 신탁이 종료된 때부터 10년간 보존
 - 그 밖의 신탁사무와 관련된 서류는 해당 신탁이 종료된 때부터 5년간 보존
- 수익자가 신탁에 대한 감독권을 적절히 행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수익자집회 소집 시 제공할 서류 및 전자투표의 절차

(4조~5조 : 2012/7/23 개정, 7/26 시행)

- 수익자집회 소집 시 집회목적에 따라 소집자가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의 세부적인 기재사항을 정함
- 수익자가 수익자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문서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 수익증권과 수익자명부의 기재사항

(6조~7조 : 2012/7/23 개정, 7/26 시행)

- 수익증권을 둘러싼 권리관계가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수익증권과 수익자명부의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 수익증권의 기재사항: 신탁기간, 수탁자 보수의 계산방법, 수익권에 대한 양도 제한의 취지 등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
 - 수익자명부의 기재사항: 위탁자 및 수탁자의 성명, 주소 등
- 수익증권의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수익권의 양도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신탁사채 발행 한도(8조 : 2012/7/23 개정, 7/26 시행)

- 자본시장법 87조에 따른 신탁사채(수익증권발행신탁인 유한책임신탁이 발행하는 신탁사채)의 발행한도를 대차대조표상 유한책임신탁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로 정함
- 최종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사채의 발행 시점에 유한책임신탁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로 함
- 수탁자의 과도한 사채 발행으로 인한 도산 위험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신탁의 합병계획서 등의 기재사항 및 이행계획의 공고의무

(9조~12조 : 2012/7/23 개정, 7/26 시행)

- 신탁을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합병계획서, 분할계획서 및 분할합병계획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 신탁재산의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수탁자에 대해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신탁채무의 이행계획'을 공고하거나 최고하도록 함

□ 유한책임신탁의 회계서류 및 수익자 급부 가능 한도

(14조~15조 : 2012/7/23 개정, 7/26 시행)

- 유한책임신탁의 수탁자가 작성해야 하는 회계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법률에서 직접 정하는 회계서류 외에 자본변동표, 신탁재산명세서 등

- 수탁자의 책임범위가 신탁재산에 한정되는 유한책임신탁의 신탁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한책임신탁의 수익자에게 급부가 가능한 한도의 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 급부를 할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의 순자산액에서 신탁행위로 정한 유보액과 급부를 할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미 급부한 신탁재산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

3. 상법 시행령

□ 현물출자에 있어 검사인의 조사, 보고의 면제범위를 구체화함

(7조, 14조 : 2012/4/10 개정, 4/15 시행)

- 개정 상법이 회사설립 혹은 신주발행을 위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산총액이 정관에 기재된 자본금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그 재산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 정관기재가격이 대통령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위 사항에 준하는 기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 검사 또는 감정을 면제하도록 하여 현물출자규제를 완화하였음(상법 299조 2항, 422조 2항)
- 이에 시행령은 현물출자한 재산 가액을 5천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유가증권의 현물출자 시 정관기재가격에 대한 시세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
 - 시세산정기준은 정관 효력발생일로부터 소급한 거래소에서의 1개월 평균 증가, 1주일 평균증가 및 정관 효력발생일 직전 거래일의 증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 혹은 정관 효력발생일의 직전 거래일의 증가 중 낮은 금액임
 - 단, 현물출자 재산 및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에 그 사용, 수익, 담보제공,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한 물권적 또는 채권적 제한이나 부담이 설정된 경우 위 시세산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 자기주식의 취득 절차와 방법을 마련

(9조, 10조 : 2012/4/10 개정, 4/15 시행)

- 개정 상법은 회사로 하여금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공개매수와 시장매수) 혹은 상환주식을 제외하고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함(상법 341조 1항)
- 이에 시행령은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혹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매수 방법을 통해 자기주식을 취득하도록 규정함
 - 자기주식 취득회사는 지체없이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하며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이에 대한 열람 및 등본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음
- 또한 자기 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사전에 이사회 결의로써 취득목적,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내용 및 그 산정 방법,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등의 총액, 양도신청기간, 양도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에 주식 취득의 조건을 정하여야 함
- 회사는 양도신청기간 시작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 현황,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이사회 결의로 정한 사항을 서면으로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함
 - 단, 무기명식 주권발행의 경우 양도신청기간 시작일 3주 전에 공고하여야 함

□ 회계원칙을 구체화하여 회사 유형별로 적합한 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15조 : 2012/4/10 개정, 4/15 시행)

- 개정 상법은 회사의 회계는 상법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 규정을 마련함(상법 446조의2)
- 이에 시행령은 회계실무의 적합성을 높이고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회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외의 회사로 분류하여 각각의 회계기준을 정함

□ 사채발행 절차와 발행기준을 구체화함

(20조~24조 : 2012/4/10 개정, 4/15 시행)

- 개정 상법은 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 및 상환사채, 파생결합사채의 발행을 허용하면서 사채발행의 내용 및 발행방법 등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상법 469조)
- 이에 시행령은 각종 사채발행에 대한 세부내용을 마련함

	발행 절차
<p>이익참가 부사채 (21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는 정관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에 정한 바 없는 이익참가부사채의 총액, 이익배당 참가의 조건 및 내용, 주주에게 이익참가부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이익참가부사채의 금액을 결정하여야 함 • 주주 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정관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그 가액과 참가 내용에 관하여 정하여야 함 • 회사는 이익참가부사채의 인수권을 보유한 각 주주에게 그 인수권을 가진 이익참가부사채의 액, 발행가액, 이익 참가의 조건 및 일정한 기일까지 이익참가부사채 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무기명식 주권인 경우 공고)하여야 함 • 회사는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시 납입완료시부터 2주 내에 본점 소재지에 이익참가부사채의 총액 및 각각의 금액, 납입금액,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과 이익 배당 참가의 조건 및 내용을 등기하여야 함
<p>교환사채 (22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는 교환할 주식이나 유가증권의 종류 및 내용, 교환의 조건, 교환 청구기간을 결정함 • 주주 외의 자에게 교환사채 발행 시 그 상대방에 대한 정관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함 • 회사는 사채권자가 교환청구를 하는 때 또는 그 사채의 교환청구기간이 끝나는 때까지 교환에 필요한 주식 또는 유가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함
<p>상환사채 (23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는 상환할 주식이나 유가증권의 종류 및 내용, 상환의 조건, 회사의 선택 또는 일정한 조건의 성취나 기한의 도래에 따라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상환한다는 뜻을 정하여야 함 • 주주 외의 자에게 상환사채 발행 시 그 상대방에 대한 정관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이를 결정함 • 상환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조건이 성취되는 때 또는 기한이 도래하는 때까지 상환에 필요한 주식 또는 유가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함
<p>파생결합 사채 (24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는 상환 또는 지급 금액을 결정하는데 연계할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의 자산이나 지표, 해당 자산이나 지표와 연계하여 상환 또는 지급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을 정하여야 함 • 또한 시행령은 위임사항을 구체화하여 파생결합사채를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에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사채로 규정함(20조)

□ 사채관리회사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

(26조, 27조 : 2012/4/10 개정, 4/15 시행)

- 개정 상법은 사채모집 수탁회사의 권한 중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그 밖에 사채관리기능을 분리하여 사채관리회사에게 지정·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면서 사채관리회사의 자격에 대한 일부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였음(상법 480조의3)
- 이에 시행령은 사채관리회사의 자격으로 상법상 규정한 은행, 신탁회사 이 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산용사업부문, 신탁업자로서 일반투자자로부터 금전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투자매매업자로서 일반투자자에 대한 인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를 명시함
- 또한 시행령은 사채관리회사 자격에서 배제되는 사채관리회사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최대주주, 주요주주 및 사채발행회사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회사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자격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함

(39조~42조 : 2012/4/10 개정, 4/15 시행)

- 개정 상법은 준법경영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상장회사로 하여금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1인 이상의 준법지원인을 둘 것을 규정함(상법 542조의13)
- 이에 시행령은 준법지원제도 적용대상을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회사로 규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준법지원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사항을 마련함
 - 준법통제기준은 제정 및 변경절차, 준법지원인의 임면절차, 준법지원인의 독립적 직무수행의 보장 등에 대하여 규정하여야 하며, 준법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 시 이사회의 결의가 요구됨
 - 준법지원인의 자격은 상장회사에서 감사·감사위원·준법감시인 또는 이와 관련된 법무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법률학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장회사에서 감사·감사위원·준법감시인 또는 이와 관련된 법무부서에서 근무한 경

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으로 준법지원인은 자신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 단, 준법지원인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인 회사에게 적용을 배제함(부칙 5조)

4.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전자단기사채등의 범위(2조 : 2012/12/4 제정, 2013/1/15 시행)

-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전자단기사채등의 범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증권 중 지방채증권을 추가

□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 개설자의 범위

(7조 : 2012/12/4 제정, 2013/1/15 시행)

- 고객계좌를 관리하는 계좌관리기관이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등이 전자단기사채등의 권리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의 개설자는 기금과 기금 관리·운용 법인, 투자매매업자, 정리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그 밖에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를 개설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자로 정하고 있음

□ 발행 등록 및 계좌간 대체 등록의 방법·절차 마련

(8조~9조 : 2012/12/4 제정, 2013/1/15 시행)

- 전자단기사채등을 발행하는 경우 고객계좌부와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부에 발행등록을 하는 순서와 등록사항을 각각 정하고 있음

- 고객계좌부에 등록할 사항인 경우
 - 한국예탁결제원은 발행인계좌부에 기록
 - 한국예탁결제원은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관리계좌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고 그 사실을 해당 계좌관리기관에 통지
 - 계좌관리기관은 지체없이 통지내용에 따라 고객계좌부에 해당 사항을 등록
-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부에 등록할 사항인 경우
 - 한국예탁결제원은 발행인관리계좌부에 각 사항을 기록
 - 한국예탁결제원은 해당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부에 각 사항을 등록
- 전자단기사채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계좌간 대체등록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신청하도록 하고, 양도인의 계좌에서 감액등록하며 양수인의 계좌에서 증액 등록하도록 하는 등 그 등록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
 - 법원의 명령·판결, 상속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에 의해 전자단기사채등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경우 포괄승계인이 권리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좌간 대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 계좌간 대체 등록은 양도인등의 계좌에서 감액등록하고 양수인등의 계좌에 증액 등록하는 방법에 의함

□ 채권자증명서의 발행 방법 및 처분제한 방법 마련

(14조 : 2012/12/4 제정, 2013/1/15 시행)

-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부에 등록된 전자단기사채등에 대한 채권자증명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고객계좌부에 등록된 전자단기사채등에 대한 채권자증명서는 계좌관리기관이 각각 발행
 -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 증명하려는 전자단기사채등의 종류·종목 및 금액
 - 행사하려는 권리의 내용
 - 그 밖에 채권자의 지위 증명과 관련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해당 증명서를 발급한 한국예탁결제원과 계좌관리기관은 채권자증명서의 발행으로 해당 전자단기사채등의 처분이 제한됨을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부 등에 표시하여야 함

□ 발행금액과 계좌부 현황 불일치 시 권리자 보호방안

(16조~17조 : 2012/12/4 제정, 2013/1/15 시행)

- 전자단기사채등의 권리가 등록되어 있는 계좌(고객계좌부)의 발행총액이 이를 관리하기 위해 만든 관리계좌(고객관리계좌부)에 기록된 총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한 말소방법을 선의취득자가 있는지에 따라 구분하여 정함
 - 초과분 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계좌관리기관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은 원리금 지급의무를 짐
- 초과분을 말소등록하기 전까지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금액에 대한 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II. 금융위원회 규정

1. 금융투자업 규정

- 내부통제기준 규정 사항에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대표주관회사 업무 영위 시 업무의 공정한 영위 및 이해상충방지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2-22조 1항 10호 : 2012/1/3 개정 · 시행)

- 해당 내용에는 대표주관회사의 담당직원의 적격기준, 기업실사 수행의 최소기간 및 법률·회계전문가 등 참여의무자, 일반적인 조사·검증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매매주문처리에 관한 내부통제사항을 강화함

(2-26조 : 2012/1/3 개정 · 시행)

- 금융투자업자의 매매주문의 처리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지 아니할 것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접수·처리할 수 있는 체계와 이를 점검·확인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할 것
 - 매매주문 방법, 처리방법 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투자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 투자자의 매매주문 방법별로 매매주문을 공정하고 안전하게 접수하고 주문접수 시 주문자의 정당한 권한여부를 확인할 것
 - 매매주문을 접수, 집행하는 경우 투자자별 거래한도, 위탁증거금 등에 대한 관리를 통해 결제가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
 - 투자자로부터 접수한 매매주문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적합성 점검항목을 준수할 것

-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접수, 집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위탁자에게 감독 원장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 설비, 서비스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투자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접수받아 처리·전달하는 경우 투자자가 주문에 대한 처리상황, 체결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할 것
 - 투자자의 금융거래내역 등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전산·통신설비의 장애로 인하여 투자자의 매매주문이 처리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처리방안을 수립·운영할 것 등
- 금융투자업자는 매매주문처리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경우 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접수, 집행에 있어 자료, 설비, 서비스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은 2012년 4월 2일부터 시행함(부칙)

□ 영업용순자본비율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정함

(3-6조, 3-14조, 3-16조, 3-17조, 3-19조, 3-20조, 3-22조, 3-23조 : 2012/1/3 개정·시행)

-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는 항목에 무형자산(시장성이 인정되는 무형자산은 제외), 지급예정 현금배당액, 금융투자협회 가입비 등을 신설하고 일부 조정하면서 차감 항목에 적용한 위험값을 적용하여 금융투자업자의 과도한 자본부담을 완화하도록 함
- 사모채권(3-14조 4호에 해당하는 사모사채 및 전환사채,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관련 사모사채는 제외)은 대출채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위험값을 적용하고 정부에 의해 결손보전이 이루어지는 공공법인은 신용집중위험액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 시 실질적 리스크가 감안될 수 있도록 함
- 국고채 ETF, 일반상품 관련 금융상품 등의 출현에 따라 이에 대한 적절한 위험값 산정기준을 신설함

□ 금지되는 불건전한 인수행위에 다음 사항을 추가함

(4-19조 3~6호 : 2012/1/3 개정 · 시행)

- 투자자의 증권 청약증거금 관리, 반환 등의 업무에 대해 적절한 주의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
- 증권의 공모가격 결정 및 절차 등이 협회가 정한 기준 등 건전한 시장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행위
- 자신 및 이해관계인이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장일 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취득한 동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30일 이내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 회사가 협회가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인수업무조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행위

□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함

(3-3조 5항, 3-70조 1항 6호, 4-4조 : 2012/1/3 개정, 2013/4/1 시행)

-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에서 허용한 금융투자업자 회계기간 변경요건은 다음과 같음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3조 1항 1호에 따른 회계처리 기준을 적용하는 금융투자업자가 회계기간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변경하는 경우를 의미함
- 회계기간 변경을 결정한 경우 경영공시사항에 추가하여 금융위 보고 및 공시하도록 함
-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과 관련 이미 보고한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전신고의 예외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
 -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이미 보고한 위탁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거나 수수료 변경, 계약기간의 변경(갱신 포함) 등 경미한 일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주된 업종이 동일한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이미 보고한 위탁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거나 수수료 변경, 계약기간의 변경 등 경미한 일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해당 금융투자업자 또는 주된 업종이 동일한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이미 보고한 위탁내용에 대해 관련되는 경미한 일부 업무를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경우로서 위탁업무 범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등

□ 대손준비금 제도를 도입(8-7조, 8-9조 : 2012/3/27 개정, 4/1 시행)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IFRS-K) 도입에 따라 발생손실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면서 손실흡수능력 유지 등을 위하여 대손준비금 제도를 마련

□ 자기자본의 범위를 정비(별표 20 : 2012/3/27 개정, 4/1 시행)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IFRS-K) 도입에 따라 자기자본의 범위를 정비함
 - 이때 자기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산출
- 기본자본 항목상 다음 사항을 변경
 - 기존 이익잉여금에 증권금융회사 자신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누적미실현평가손익,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이익잉여금으로 계상된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재평가이익에서 각각의 항목에 대한 세액효과를 차감한 금액 및 대손준비금을 제외
 - 또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외환차이를 신설하고 기존 자본조정중 미교부주식배당금을 제외
- 보완자본 항목상 다음 사항을 변경
 - 기존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평가이익의 45% 상당액에서 유형자산 재평가이익의 70% 상당액을 포함
 - 또한 이익잉여금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이익잉여금으로 계상된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재평가이익으로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 정관의 변경 등에 의해 배당이 제한된 금액의 100분의 70 상당액을 신설

□ 계열사 펀드 등에 대한 차별적인 판매촉진행위 금지

(4-20조 : 2012/7/10 개정 · 시행)

- 펀드판매사가 자신의 계열회사등이 운용하는 펀드 판매를 늘리기 위해 영업직원에게 대해 차별적인 보상이나 성과보수의 제공, 집중적 판매독려 등과 같은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는 것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함
 - 다만,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적 판매촉진행위는 가능
 - 계열회사등: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로서 자기가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회사, 상호간 임원 겸임 또는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 등의 사실이 있는 회사 등을 말함
-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효과 등을 감안하여 전문투자자를 제외한 일반투자자에게만 적용

□ 공매도 개념에 관한 조항 신설

(6-30조 1항 · 3항 : 2012/8/30 개정 · 시행)

- 청약 또는 주문으로 인하여 해당 증권의 순보유잔고가 양수에서 음수로 변하거나 음수의 절대값이 증가하게 되는 매도거래를 공매도로 정의
 - 순보유잔고는 증권의 종목별로 보유총잔고에서 차입총잔고의 수량을 뺀 수량을 의미
- 보유총잔고 : 매도자가 순보유잔고를 산정하는 기준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수량을 합한 수량
 - 명의에 상관없이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증권의 수량
 - 법률의 규정이나 그 밖의 계약에 의해 타인에게 대여한 증권의 수량
 -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 · 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 등에 의해 타인을 위해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이 있는 증권의 수량
 - 그 밖에 법률의 규정이나 매매, 계약 등에 의해 인도받을 증권의 수량

- 차입총잔고 : 매도자가 기준시점에 인도할 의무가 있는 증권의 수량을 합한 수량
 - 기준시점 이전에 차입한 이후, 기준시점에 차입증권을 상환하지 않은 수량
 - 그 밖에 법률의 규정이나 매매, 계약에 의해 인도의무가 있는 증권의 수량
- 기준시점이란 매 영업일 24시를 의미

□ 공매도 포지션 보고대상 및 방법 신설

(6-30조 2항·4항, 6-31조 : 2012/8/30 개정·시행)

- 보고대상 증권은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
 - ETF, ELW 및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거래 제외
 - 시장내 유동성 공급을 위한 시장조성행위로 인한 공매도 거래 제외
- 투자자의 일별 공매도 포지션(해당 증권의 보유수량을 초과해 매도한 수량)이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보고 의무화
 - 일별 공매도 포지션이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인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매일 보고를 통해 누락발생 방지
- 보고서 제출기한
 - 보고의무 발생일의 포지션 현황을 보고의무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오전 9시까지 보고
- 보고서 내용
 - 해당 증권에 관한 사항
 - 매도자의 성명, 주소, 국적,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투자등록번호), 연락처 등 인적사항(대리인의 경우는 대리인을 포함)
 - 매도자의 순보유잔고 수량 및 비율
- 보고서 제출방법

- 인터넷망을 통한 전자통신의 방식에 따름
- 단, 전산장애 등의 경우에는 모사전송(FAX) 등의 방식으로도 가능

□ 공매도 보고주체 및 공매도포지션 산정방식 신설

(6-30조 5항, 6-31조 3항, 6-32조 1항 : 2012/8/30 개정·시행)

— 보고주체는 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별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모든 정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감안해 투자자 본인에게 보고의무 부여

-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전체의 관점에서 공매도포지션(해당 증권의 보유수량을 초과해 매도한 수량)을 산정하여 보고하는 것을 원칙
- 금융기관 내에서 조직별로 공매도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공매도 포지션은 법인 전체의 관점에서 산정하여 보고
- 다만, 펀드 등의 경우는 펀드별로 산정한 공매도 포지션을 합산하여 보고

□ 순보유잔고비율의 산정기준일 및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 명시에 관한 사항 등

(2-22조, 2-23조, 6-31조 4항, 6-32조 2항, 6-33조 : 2012/8/30 개정·시행)

— 순보유잔고비율의 산정기준일

- 증권시장에서 증권을 매매한 경우 매매체결일
- 증권시장 외에서 증권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계약체결일
-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행사,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상장일 이전 제2영업일
- 교환사채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교환을 청구한 날
- 증권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는 경우 그 설정신청일, 환매로 인해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환매청구일
- 증권예탁증권의 계약해지에 따라 원주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이 확정된 날, 그 반대의 경우는 전환청구일

- 자본감소의 경우 변경된 주식의 상장일
 - 위의 사항 외의 사유로 주식을 취득·처분할 경우 「민법」·「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법률행위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매도 주문의 수탁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할 때, 공매도 관련 법령의 준수여부를 확인 하도록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에 명시하도록 함
- 금융감독원장의 공매도 포지션 관련 자료요청권
- 독립거래단위를 운영하는 자의 운영내용과 보고 대상자의 순보유잔고 보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파생결합증권 발행규제의 역외적용 요건 구체화

(1-5조 : 2012/11/21 개정·시행)

-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는 역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금융투자업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요건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 함
- 자산총액, 영업규모 등이 국제적 영업활동에 적합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
 -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일 것
 -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일 것
 - 최근 3년간 법, 영,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법 처벌법(이에 상당하는 외국 관련법령을 포함)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법,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투자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이상(이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포함)의 조치를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났을 것(업무의 전부정지인 경우는 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일부정지인 경우는 끝난 날부터 2년, 지점·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인 경우는 해당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년)

□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 차단장치(Chinese Wall) 규제 정비

(4-6조 1항 3호 다목, 4-6조 2항~4항 : 2012/11/21 개정·시행)

— 정보교류 차단장치의 적용과 관련하여 기업금융업무 및 자산관리 업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전담중개업무의 범위에 환매조건부매매를 포함하고 그 업무 영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정보교류 차단 규제

- 환매조건부매매업무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을 위한 투자중개업무와 신탁업 간의 업무행위는 정보교류 차단장치 없이 가능
- 기업금융업무와 주권비상장법인에 출자하거나 사채, 신주인수권증권 등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또는 비상장기업의 위험관리를 위한 목적의 파생상품거래를 통해 주권비상장법인에 자금을 지원하는 업무행위도 정보교류 차단장치 없이 가능
- 기업금융업무와 적격기관투자자가 발행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하고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격기관투자자 사이에서만 양도·양수되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증권에 대한 매매나 매매의 중개·주선·대리 업무도 정보교류 차단장치 없이 가능

① 그 채무증권은 주권상장법인, 채권상장법인, 시행령에 따른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기업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말 총자산이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발행한 증권이 아닐 것

② 금융위원장이 인정하는 거래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될 것

□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채권의 매수제한 완화 관련 구체적 요건 명시

(4-60조, 4-73조의2, 4-89조의2 : 2012/11/21 개정·시행)

—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관계인수인과의 거래를 허용한 채권에 대하여 구체적인 발행조건·거래절차(일정 신용등급 이상, 발행금액의 일정 비율 이하 취득 등)를 정함

-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가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청약을 통하여 매수하며 그 매수금액이 발행금액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이 거래를 행한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해 준법감시인의 확인 필요. 다만, 투자일임업자의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의 확인 필요)

- 거래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 이내의 신용등급을 받은 채권일 것
- 관계인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채권의 종목, 수량 등 거래내역을 협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매분기별로 공시할 것

□ 전담중개업무 범위 확대(4-101조 2항 6호 : 2012/11/21 개정·시행)

- 전담중개업무의 범위에 환매조건부 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대리업무 추가

□ 원활한 소규모 펀드 해소를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7-25조 6항 : 2012/11/21 개정·시행)

- 소규모 펀드가 모자형펀드로 전환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간 유사성(종류·투자목적·투자전략) 등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고 투자자에 대한 사전통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함
 - 이전하고자 하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투자목적, 투자방침, 투자전략 등에 관한 사항이 상호간에 유사할 것
 -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할 경우에 자집합투자기구 각각의 보수, 수수료 등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이전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이전하고자하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을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 등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할 것
 - 이전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전에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통지할 것

□ 예탁결제원을 통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공시

(7-41조 3항 : 2012/11/21 개정·시행)

- 신탁업자가 예탁결제원을 통해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 등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에 필요한 정보를 예탁결제원에 제공해야 함

- 외국인의 시장집중의무를 완화(6-7조 6항 : 2012/11/21 개정 · 시행)
 - 외국인의 상장증권 장외거래는 단주의 매매거래나 상장수익증권의 매매거래 등에 한정하여 인정되었으나 6항을 신설하여 외국인의 상장증권 장외거래를 인정하고 그 절차와 거래 후 신고의무를 부과
 - 다만, 외국인의 상장증권 장외거래에 관한 일반조항을 신설했음에도 불구하고 6-7조 1항에서 상장증권의 장외거래에 관한 열거적 규정을 존치하고 있음

2. 증권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 적격기관투자자(Qualified Institutional Buyer : QIB)제도를 도입함
(2-2조, 2-2조의2 : 2012/1/3 개정, 5/2 시행)
 - 적격기관투자자는 국가, 한국은행, 은행, 금융투자업자, 예금보험공사 등의 전문투자자로 자금중개회사,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협회, 예탁결제원, 거래소, 금융감독원은 제외함
 - 적격기관투자자가 발행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적격기관투자자 사이에서만 양도·양수되는 채무증권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등(자본시장법 시행령 10조 2항)의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채권상장법인, 공기업(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 5조 3항 1호) 또는 직전 사업연도말 총자산이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발행한 증권이 아니어야 함
 - 금융위원장이 인정하는 거래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되어야 함

적격기관투자자(Qualified Institutional Buyer : QIB)

적격기관투자자 제도란 중소기업 등 국내 비상장기업 증권 및 해외기업 발행 증권을 적격기관투자자 사이에서만 거래되는 것을 전제로 발행기업의 발행·유통공시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임. 적격기관투자자 제도는 중소기업(신성장기업, 녹색기업 등)에 대한 자금조달기회를 확대하고 금융투자회사의 투자기능을 활성화하는 한편 국내 자본시장의 국제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함

- * 적격기관투자자의 범위 :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가운데 투자 전문성, 리스크 감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격기관투자자의 범위를 설정함
- * 적격기관투자자 증권 발행인 : 중소기업 등 비상장법인 및 비상장 외국법인
- * 적격기관투자자 증권 범위 : 중소기업의 주자금조달수단이 채권 및 주식관련 채권을 우선적으로 허용하고 주식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허용여부를 판단
- * 적격기관투자자 거래시스템 : 협회의 '프리본드' 시스템을 활용

□ 금적립계좌(골드뱅킹)의 신고서 및 보고서 관련 규정을 마련함

(2-3조 1항 7호, 2-19조 5항 : 2012/1/3 개정·시행)

- 금적립계좌(은행업감독규정 25조의2 1항) 발행을 위하여 제출한 일괄신고서가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제출하는 정정신고서는 수리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 제출 후 3일인 파생결합증권 정정신고서 효력발생기간을 골드뱅킹에 한해 제출일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개정함
- 금적립계좌의 발행인이 매 사업연도의 순발행실적등을 기재한 발행실적보고서를 사업연도말부터 1개월 내에 금융위에 제출한 경우 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 모집 또는 매출 완료 시 제출하는 발행실적보고서를 개방형 집합투자증권과 같이 매년 1회 제출하도록 개정함

□ 증권신고서 첨부서류에 기업실사 관련 서류를 추가함

(2-6조 8항 1호 파목 하목 : 2012/1/3 개정, 2/1 시행)

- 이는 증권투자자의 IPO 및 회사채 투자 판단에 있어 인수주관회사의 기업실사 이행 및 결과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기업실사 관련 서류는 주관회사의 적절한 주의의무 이행 서류, 증권시장에 주권 상장 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재무관련사항이 기업의 재무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회계감사인의 확인서 등을 의미함

□ 합병가액산정에 있어 SPAC과의 합병에 따른 비상장기업 가치평가 관련 규정을 개선함

(5-13조 3항, 4항 : 2012/1/3 개정 · 시행)

- 투자자 보호요건을 충족하는 SPAC이 비상장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양 자간 협의를 통한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비상장기업의 자산가치·수익가치의 가중산술평균방법, 수익가치와 상대가치의 산출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 비상장기업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가중산술평균방법은 양 자간 협의로 정할 수 있음
 - 비상장기업의 수익가치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당추정이익을 자본환원율로 나누어 산출함. 이때 자본환원율은 주권비상장법인의 실질적인 자본조달비용을 감안하여 양 자간 협의로 정할 수 있음
 - 비상장기업의 상대가치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초로 산출함. 이때 유사회사는 거래소의 업종 분류상 소분류 업종에 속한 주권상장법인 중에서 자산총계, 매출액 및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비교하여 각각 ± 100 분의 10이내인 법인을 포함하며, 상대가치 산정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양 자간 협의로 정할 수 있음
- 비우량기업과의 합병추진에 따른 주가하락 등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 요건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
 - SPAC이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제2항에 따라 매수하는 주식을 공모 가격 이상으로 매수하여야 함
 - 투자매매업자가 소유하는 증권을 합병기일 이후 1년간 계속 소유하고 합병가액을 비교하여 공시하여야 함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정한 경우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시기를 3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함
(12조 4항 : 2012/3/2 개정·시행)

- 금융위원회는 다음의 경우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효력발생시기를 3일 연장할 수 있음
 -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제출한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분기보고서상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경우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단,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라 발행되는 담보부사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2조 제8항에 따른 보증사채권, 일괄신고서에 의하여 모집 또는 매출되는 채무증권을 모집·매출하는 경우와 비상장법인이 상장하기 위하여 지분증권을 모집·매출하는 경우에는 제외됨

□ 증권신고 효력발생기간 산정 시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토요일을 산입하지 않도록 함
(12조 5항 : 2012/3/2 개정·시행)

- 단,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적용 제외
- 이는 영업일 기준으로 증권신고 효력발생기간을 산정하도록 하여 투자자가 충분히 숙고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Ⅲ. 한국거래소 규정

1.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 매매거래정지 대상을 시장감시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종목으로 확대함

(107조 1항 : 2012/3/7 개정, 3/12 시행)

— 기존에는 투자위험종목에 대해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었음

□ 기세의 정의를 규정하는데 있어 기존 보통주를 보통주식으로, 우선주를 종류주식으로 변경함

(2조 : 2012/4/18 개정, 4/23 시행)

— 상법이 종류주식의 발행을 허용함에 따라 기존 제출된 매수호가 없는 것으로 보았던 보통주 기준가격의 10배를 초과하는 가격피리가 있는 우선주를 보통주식의 기준가격 10배를 초과하는 가격피리가 있는 종류주식으로 정비함

□ 무차입공매도 적발자에 대한 공매도 주문 수탁요건 강화

(18조의2 3항 : 2012/9/19 개정, 10/30 시행)

— 무차입공매도 적발자의 공매도주문 수탁 시 차입계약서 징구대상 확대 및 징구기간 차등화

- 차입계약서징구 대상을 기존의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 무차입공매도 규모에 따라 공매도 주문 수탁 시에 차입계약서 징구기간을 차등화
- 무차입공매도가 10억원 초과 및 5일 이상인 경우에는 매도증권 사전 입고의 경우에만 매도주문을 허용

<부록 표 III-1> 규모 등에 따른 주문수탁 강화방안

누적규모 일수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1거래일	-	20일간 차입계약서 징구	40일간 차입계약서 징구
2~4거래일	20일간 차입계약서 징구	40일간 차입계약서 징구	60일간 차입계약서 징구
5거래일 이상	40일간 차입계약서 징구	60일간 차입계약서 징구	60일간 매도증권사전입고

- 공매도잔고 보고의무 위반자도 무차입공매도 적발자와 동일하게 공매도주문 수탁요건을 신설

(18조의2 4항 : 2012/9/19 개정, 10/30 시행)

- 보고의무 위반 규모(기준은 일평균 금액) 및 기간에 따라 공매도 주문 수탁 시 차입계약서 사전 징구 또는 매도증권 사전입고 의무화 (요건은 앞의 표를 참조)

- 공매도잔고 보고제도의 도입에 따른 차입공매도호가 제한대상 확대

(17조 5항 : 2012/9/19 개정, 10/30 시행)

- 기존의 차입공매도호가 제한대상에 공매도잔고 비중이 일정수준 이상인 종목도 추가
 - 법시행령(208조 2항 3호) 상의 순보유잔고 비율이 낮은 종목으로서 세척이 정하는 종목

- 공매도호가 사후관리대상 확대

(18조의2 1항 : 2012/9/19 개정, 10/30 시행)

- 결제일에 결제수량이 부족한 위탁자를 공매도호가 사후관리대상으로 했던 기존 규정에 결제지시서 미착 또는 하자의 경우도 사후관리대상으로 포함해 그 대상을 확대함
 - 차입계약서 뿐 아니라 증권보유잔고도 징구되는 자료에 추가

□ 조문내용의 명확화

(18조의2 1항·2항 : 2012/9/19 개정, 10/30 시행)

- “공매도 규정 준수”를 “소유하지 아니한 증권 또는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지 아니한 증권을 매도”로 바꾸어 의미를 명확하게 함

□ 단기과열종목 지정기준 마련

(106조의2 : 2012/10/17 개정, 11/5 시행)

- 단기간 내에 주가상승률, 거래회전을 및 주가변동성이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종목 및 시장감시위원회에서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으로서 매매거래정지를 요청한 종목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
 - 주가상승률, 거래회전을 및 주가변동성 등이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
 - 시장감시위원회가 매매거래정지를 요청한 종목
 - 기타 사항은 세칙으로 위임

□ 단기과열종목 관리방안 마련

(26조, 38조의2, 107조 : 2012/10/17 개정, 11/5 시행)

- 관리종목 등의 매매거래 정지
 -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위한 냉각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일정기간(1일) 매매거래를 정지
 - 시장감시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감시위원회가 매매거래정지를 요청한 종목이 단기과열종목 지정 중인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를 미실시할 수 있음
- 매매체결방법
 - 가격불균형을 유발하는 비정상적인 매매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별도의 매매방법(30분 단위 단일가매매)으로 거래를 체결

2.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에 따른 일부 청산·결제 방법 개정사항⁵⁾의 시행시점을 기존 2012년 2월 6일에서 2월 20일로 2주 연기함
(부칙 1조·2조 : 2012/2/3 개정, 2/20 시행)

- 호가의 적합성 등 점검항목에서 단일가매매 참여호가 접수시간의 경우 최유리지정가호가, 최우선지정가호가 및 조건부호가의 입력 제한을 제외함
(12조의2 5호 나목 : 2012/3/8 개정, 3/9 시행)

- 「시장감시규정」 개정⁵⁾에 따라 매매거래정지대상을 시장감시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종목으로 개정함
(135조 1항 : 2012/3/8 개정, 3/12 시행)

-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기세 불인정 기준을 강화함
(6조의3 : 2012/4/20 개정, 7/23 시행)
 - 기존 우선주의 기준가격이 해당 보통주의 기준가격을 10배 초과하는 것을 종류주식의 기준가격이 해당 보통주식의 기준가격을 2배 초과하는 것으로 개정함
 - 이를 통해 종류주식이 거래체결 없이 비정상적으로 가격 형성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

- 이전상장하는 종목의 기준가격 결정에 대한 특례를 삭제함
(30조 : 2012/4/20 개정, 4/23 시행)
 - 이전상장하는 종목의 기준가격을 코스닥시장에서의 최종 매매거래일의 종가로 일률적으로 규정함

5)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2012년 1월 「자본시장 제도동향」을 참조

□ ELW LP 변경에 대한 요건 및 절차를 마련함

(31조의3 : 2012/4/20 개정, 4/23 시행)

- 거래소가 인정하는 유동성공급자의 유동성공급업무 중단이 허용되는 사유는 투자자 보호 우려가 없는 경우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해당 주식워런트증권 유동성공급계약서상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유동성공급계약 해지 관련 서류
 - 해당 주식워런트증권의 발행인이 유동성공급자로서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계획서
 - 유동성공급자가 계약해지 시점부터 최소 3년 이상 주식워런트증권시장에서 유동성공급업무를 재개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서
 -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ELW의 LP를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거래소와 협의하여야 함

□ 개정 상법상 종류주식 및 무액면주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6조의3, 14조, 30조, 52조, 55조, 57조, 58조 별표 1, 별표 2 : 2012/4/20 개정, 4/23 시행)

- 기존 우선주에 대한 특칙을 종류주식에도 확대·적용하기 위해 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으로 개정함
- 무액면주식을 분할·병합하는 경우를 수용하기 위하여 액면분할(병합)을 주식분할(병합)로 변경함

□ 투자자분류코드를 개정함

(104조 1항 6호 : 2012/6/20 개정, 7/16 시행)

- 회원이 위탁자와 매매거래계좌설정 시 확인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하는 사항인 투자자분류코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
 - 기존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회사를 금융투자업자로 확대함

- 종합금융회사 급감에 따라 기존 종합금융회사 및 상호저축은행을 기타 금융기관으로 확대함
-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기구에 대한 분류에 공익성격의 비금융기관을 추가함

□ 차입공매도 호가를 금지할 수 있는 대량 순보유잔고 종목을 구체화
(24조의3 : 2012/9/20 개정, 10/30 시행)

- 최근 20 매매거래일 동안 발행증권총수 대비 법시행령(208조 2항 3호)에 따라 보고된 순보유잔고 비율의 일평균이 음수(-)로서 그 절대값이 5% 초과하는 종목

□ 회원사가 개별 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별 신탁계좌 주문의 일괄호가를 수용
(9조의3, 12조 : 2012/9/20 개정, 10/30 시행)

- 다수계좌와 관련된 주문내용으로서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과 개별신탁재산의 운용 시 자기명의로 계좌로 주문내용을 호가하는 경우 일괄호가에 편입
- 개별 신탁재산 일괄호가 시 시장관리상 필요한 내용의 명확화

□ 기타 조문 및 서식의 정비

(7조, 24조의2, 24조의3, 28조의2 : 2012/9/20 개정, 10/30 시행)

- 차입공매도 확인방법, 차입공매도호가의 제한, 공매도호가의 사후관리

□ 단기과열종목 지정기준

(133조, 133조의2 : 2012/10/22 개정, 11/5 시행)

- 단기과열종목 지정을 위한 주가상승률, 거래회전을 및 주가변동성 기준을 구체화하고 해당 기준의 계산방법을 마련

- 증가상승률 : 당일종가가 직전 40매매거래일 증가 평균의 100분의 130 이상
- 거래회전율 : 최근 2매매거래일 평균이 직전 40매매거래일 평균의 100분의 600 이상
- 증가변동성 : 최근 2매매거래일 평균이 직전 40매매거래일 평균의 100분의 150 이상

— 단기과열종목의 지정·지정예고 방법 및 지정 예외사유 등을 구체화

□ 단기과열종목 해제기준(134조 : 2012/10/22 개정, 11/5 시행)

- 지정일부터 4매매거래일이 경과하는 경우 지정을 해제
 - 해당일 종가가 지정일 전일 증가보다 높은 경우 지정기간을 연장하되, 연장기간은 총 10매매거래일을 초과할 수 없음

□ 단기과열종목 매매체결방법

(56조의2 : 2012/10/22 개정, 11/5 시행)

-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중 30분 단위 단일가매매 적용
 - 현행 코스닥시장 관리종목의 매매거래체결방법과 동일

□ 단기과열종목 매매거래정지(40조 : 2012/10/22 개정, 11/5 시행)

- 단기과열종목 지정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

□ 단기과열종목에 대한 호가입력 제한

(14조 : 2012/10/22 개정, 11/5 시행)

- 조건부·최유리·최우선지정가호가 및 IOC·FOK 금지

IOC(Immediate or Cancel) orders

호가접수시점에서 호가한 수량 중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수량에 대해서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수량은 취소하는 조건

FOK(Fill or Kill) orders

주문 즉시 전부 체결시키거나 전부 체결되지 않으면 전부 자동취소되는 주문 조건. 따라서 FOK 주문을 낼 경우 지정가 주문이 지정가격에서 거래가 되었다 할지라도 고객의 주문서가 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국채증권에 대한 유동성 공급 근거 신설

(101조의4 2항 : 2012/12/26 개정, 2013/1/7 시행)

- 매도회원이 16시 30분까지 국채증권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거래소가 해당 증권에 대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거래소는 국채증권에 대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하여 3년·5년 국고채등을 일정규모 보유할 예정
 - 결제시한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간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시간으로 함

□ 유동성 공급의 세부사항을 정함

(101조의5 5항 : 2012/12/26 개정, 2013/1/7 시행)

- 매도회원이 국채증권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거래소가 담보를 제공받고 해당 회원에게 대여하는 방법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며 공급받은 유동성으로 증권을 납부한 경우 해당 회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증권수령결제회원에게 해당 증권을 인도
 - 거래소는 예탁결제원과 협조하여 상반기중에 증권결제계좌로 대체하는 방법에 의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 경우 국채증권을 일정 시점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 결제지연손해금을 부과할 예정임

3.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 보통주 관련 상장기준을 정비함

(2조 5항, 32조, 33조, 34조, 36조~41조, 75조, 80조 : 2012/4/18 개정, 7/23 시행)

— 기존 주식수, 주주수, 공모주식수, 거래량, 시가총액 등 상장 및 상장폐지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기존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산하였던 것을 보통주만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개정함

— 또한 상법상 무액면주식 도입에 따라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상장기준을 정비함

□ 상장규정상 정의와 관련하여 상환사채 및 교환사채를 '주식등'의 범위에 포함함

(2조 13항 : 2012/4/18 개정, 4/23 시행)

□ 상법상 도입된 집행임원제도에 대해서도 보호예수의무, SPAC 임원자격 등 관련 규제의 적용 대상에 포함

(2조 32항, 13조, 55조 : 2012/4/18 개정, 4/23 시행)

□ 소규모합병에 대한 상장기준을 정비함

(32조, 36조 : 2012/4/18 개정, 4/23 시행)

— 결산승인 이전의 상장심사청구를 허용하거나 재상장요건에서 제외되는 소규모합병등의 범위를 세척에 위임함

- 이는 개정 상법이 소규모합병의 요건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기준을 10%로 완화함에 따라 현행 기준과 동일한 소규모합병만 특례가 인정되도록 상장규정을 개정한 것임

□ SPAC의 현금합병을 제한함

(32조의3 1항 3호, 80조의2 : 2012/4/18 개정, 4/23 시행)

- 현금자산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하여 합병하는 경우 SPAC의 자금조달효과가 반감됨에 따라 SPAC의 현금합병을 제한함
- 만약 이를 위반하여 SPAC이 합병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상장을 폐지하도록 함
- 단, 합병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단주의 처리 등을 위하여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제외함

□ 지주회사인 공기업등에 대한 상장특례규정을 개선함

(33조 4항 : 2012/4/18 개정, 4/23 시행)

-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점을 고려하여 지주회사 형태의 공기업에게도 공기업 상장특례규정의 적용을 허용함
- 상장요건에 있어 공공적 법인 및 민영화대상 공기업은 양도제한 요건,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은 분산요건과 양도제한 요건을 적용함

□ 종류주권의 상장폐지를 규정하고, 기존 우선주 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삭제함

(78조, 95조, 103조 : 2012/4/18 개정, 7/23 시행)

- 종류주식의 자진상장폐지 시 종류주주의 동의를 요구하고,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 등 보통주와 동일한 요건 및 절차를 적용하도록 규정함
- 또한 종류주식에 대한 유동성 상장폐지요건 및 진입요건 도입에 따라 우선주에 대한거래정지 및 상장유예를 폐지함

□ 종류주식에 대한 상장요건을 마련함

(103조의2 : 2012/4/18 개정, 7/23 시행)

- 종류주권의 발행인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 주권의 신규상장 신청인, 주권의 재상장신청인일 것
 - 단, SPAC, 부동산투자회사 및 선박투자회사 주권의 발행인은 제외함
-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상장주권이 관리종목 지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상장예정인 주식수가 50만주 이상일 것
- 기준시가총액이 20억원 이상일 것
-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수의 100분의 25 이상일 것
- 주주의 수가 300명 이상일 것
- 전환청구권 등의 잔존권리행사기간 또는 만기가 상장신청일 현재 1년 이상 남아있을 것
- 주식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 해당 종류주권이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남용되거나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거래소는 요건의 충족여부에 관한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확정함
 - 다만, 공익과 투자자보호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예외

□ 종류주식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요건 및 상장폐지요건을 신설함

(103조의3 : 2012/4/18 개정, 7/23 시행)

- 종류주식의 관리종목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음
 - 해당 종류주권 발행인의 보통주식 주권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상 해당 종류주권의 주주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 반기말 현재 해당 종류주권의 상장주식수가 5만주 미만인 경우

- 해당 종류주권의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반기의 월평균거래량이 1만주 미만인 경우(단, 해당 종류주권이 신규로 상장된 경우, 반기 중 매매거래정지일수가 해당 반기의 매매거래일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유동성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예외)
- 해당 종류주권의 상장시가총액이 5억원에 미달하는 상태가 30일간 계속되는 경우

— 종류주권의 관리종목지정 해제요건은 다음과 같음

- 종류주권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해당 발행인의 보통주식 주권이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해소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사업보고서 등에 의하여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해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종류주권의 상장폐지요건은 다음과 같음

- 해당 종류주권의 발행인의 보통주식 주권이 상장폐지되는 경우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류주권이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상 종류주식 주주의 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류주권이 다음 반기말에도 같은 규정에 따른 상장주식수 미달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류주권이 다음 반기에도 같은 규정에 따른 거래량 미달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이 경과하는 동안 해당 종류주식 상장시가총액이 5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되거나
- 해당 종류주권의 양도에 제한을 받는 경우
- 그 밖에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주권 등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의 특례로서 2012년 7월 23일 현재 상장되어 있는 주권, 외국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의 수를 합산한 소액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비율로 적용 가능하도록 함(부칙 2조)

— 또한 종류주권의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에 대한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를 위하여 일정 퇴출요건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함(부칙 3조)

4.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 보호예수가 면제되는 전문투자자의 범위를 확대함
(2조의5 : 2012/4/20 개정, 4/23 시행)
 - 신탁중앙회 및 사모펀드를 제외한 집합투자기구를 추가함

- 상법상 사채에 대한 전자등록제 도입에 따라 관련 규정을 마련함
(15조 2항, 25조 1항, 29조, 31조 : 2012/4/20 개정, 4/23 시행)
 - 전자등록된 채권에 대하여 발행권종을 구분하지 않도록 하고, 신규 상장신청, 변경상장신청 시 견양제출을 면제함

- 개정 상법을 반영하여 소규모합병에 대한 상장기준을 변경함
(23조의2, 24조의2 : 2012/4/20 개정, 4/23 시행)
 - 결산승인 이전 상장심사청구를 허용하는 소규모합병을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의 총수가 합병 후 존속법인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합병으로 규정함
 - 단,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이 존속법인의 자기자본 100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됨
 - 또한 재상장시 합병제한 요건이 면제되는 소규모합병의 기준을 위의 개정된 사항을 정비함

- 보통주를 기준으로 하는 주식분포상황표 제출근거를 마련하면서 주식분포상황표에 대한 적용근거를 규정함
(41조의2 : 2012/4/20 개정, 4/23 시행)
 - 상장법인은 주식분포상황과 관련하여 주식분포상황표(별지 제18호)를 해당 사업보고서 제출일까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함
 - 이때 주식분포상황표는 소액주주 및 유동주식수를 기준을 작성함

- 주식분포상황과 관련한 관리종목지정기준 및 상장폐지기준은 주식분포상황표 또는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적용함

□ 수익증권 변경상장수수료 면제범위를 수량변경에 한정하도록 함
(50조 5항 : 2012/4/20 개정, 4/23 시행)

- 수익증권도 ETF·투자회사 주권과 동일하게 수량변경(신탁원본액 변경)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상장수수료를 면제하도록 명시함

□ 종류주권의 상장요건을 신설함
(51조의3 : 2012/4/20 개정, 4/23 시행)

- 종류주권의 상장신청 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음
 - 종류주권(통일규격증권)의 권종별 견양 또는 통일규격증권 발행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
 - 종류주권의 발행을 결의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사본
 - 종류주권의 보호예수와 관련한 서류
 -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
 - 그 밖에 거래소가 상장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종류주권의 질적심사사유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함
 - 당해 종류주식이 기존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는 경우
 - 출자지분과 회사지배에 관한 비례적 이익간 불균형이 발생하여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 이익배당이나 상환을 위한 재원이 충분히 유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공익과 투자자보호에 위배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또한 상장위원회 심의 면제사유로 질적심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를 명시함

□ 종류주권의 관리종목지정 및 해제시기를 규정함

(51조의4 : 2012/4/20 개정, 4/23 시행)

— 종류주권의 관리종목지정 시기는 다음과 같음

- 해당 보통주식 주권의 관리종목지정일
- 사업보고서 제출일 다음 날
- 반기의 최초매매일
- 해당 사실의 확인일 다음 날

— 종류주권의 관리종목지정 해제시기는 다음과 같음

- 해당 보통주식 주권의 관리종목지정 해제일
- 사업보고서, 주식분포상황표, 주주명부 또는 실질주주명부에 따른 지정사유해소 확인일 다음 날
- 반기의 최초매매일
- 해당 종류주권이 상장시가총액이 5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되거나 상장시가총액이 5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인 요건을 충족한 날의 다음 날

□ 종류주권의 자진상장폐지 신청 시 동의서 요건을 규정함

(44조의3 : 2012/4/20 개정, 4/23 시행)

- 자진상장폐지 시 동의서는 해당 종류주권의 상장폐지를 결의한 종류주주총회의 의사록 사본이거나 혹은 해당 종류주식 주주의 과반수가 그 종류주권의 상장폐지에 동의 및 확인하고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이어야 함

□ 주권 및 외국주권 등의 연부과금 및 상장수수료 부과기준 변경

(50조, 별표 2 : 2012/7/20 개정, 7/23 시행)

- 상장법인의 주권 및 외국주권과 외국주식예탁증권의 연부과금 및 상장수수료 산정 시 부과기준을 시가총액 기준으로 변경함
- 종래 주권에 대한 자본금 기준 부과방식과 외국주권과 외국주식예탁증권의 상장주식 수 기준 부과방식을 폐지함

<부록 표 III-2> 시가총액 기준 부과의 세부 내용

구분	부과기준
연부과금	직전년도의 평균시가총액
신규상장수수료	기준시가총액
신주(추가) 상장수수료	신주·추가상장할 시가총액(신주·추가상장 주식수에 상장신청일 직전일의 종가를 곱하여 산출)
재상장수수료	재상장금액(재상장주식수에 평가가격 ¹⁾ 을 곱하여 산출)

주: 1) 유가증권 업무규정 시행세칙 30조 1항 3호

- 무액면주권의 연부과금과 상장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주권과 동일하게 시가총액 기준으로 설정함

무액면주식

액면주식과 달리 주식의 권면에 주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식 수만 기재되는 주식으로, 해당 주주는 전체 발행주식에 대한 자기 지분 비율만을 알 수 있으며, 액면금액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기업의 경제가치를 반영하는 발생시점의 시장가치에 의하여 발행되고 기업의 자본금도 그 발행가액에 따라 결정됨. 기업의 재무관리 편의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2011년 상법개정(2012년 4월 15일 시행)으로 도입됨

- 부과기준 변경에 따른 혼선 방지를 위해 상장수수료는 2012년 8월 6일 이후 납부하는 상장수수료부터 적용하고, 연부과금의 경우 2013년도분 징수시(2014년초 납부)부터 해당 기준을 반영함
- 시가총액 기준으로 부과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상장수수료와 연부과금이 인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액구간별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인하함
 - $\text{상장수수료} = \text{상장할 금액} \times \text{수수료율}$
- 연부과금과 상장수수료의 최저·최대 금액을 설정함

구분	종 래		개 정	
	최저	최대	최저	최대
연부과금	-	-	120만원	5천만원
신규상장수수료	120만원	-	120만원	8천만원
재상장/신주·추가상장	10만원	-	10만원	8천만원

- 상장심사수수료는 500만원으로 함
 - 주권과 무액면주권, 외국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

□ 종류주식에 대한 연부과금과 상장수수료 부과 기준 마련

(50조, 별표 2 : 2012/7/20 개정, 7/23 시행)

- 상장법인이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연부과금은 종류주식 시가총액을 보통주식 시가총액에 합산하여 1건으로 부과함
 - 외국종류주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을 1건으로 합산하여 평균 시가총액을 계산함
- 종류주식의 상장수수료는 보통주식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신규상장심사수수료는 250만원으로 함
 - 다만, 종류주식(외국종류주식 포함)을 보통주식과 동시에 상장예비심사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장심사수수료는 100만원으로 하고, 그 밖의 상장수수료는 보통주식과 합산하여 1건으로 부과함

5.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 공시책임자의 자격을 강화함

(2조 4항 : 2012/4/18 개정, 4/23 시행)

- 기존의 공시책임자는 상근이사 또는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상근 자이었음
- 이에 공시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또는 상근이사,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 회의에 참석하는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상근자로 개정함

-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공시책임자를 대표집행임원 또는 집행임원으로 대체함

□ 상장외국법인의 공시의무비율 적용기간을 개선함

(3조 4항 : 2012/4/18 개정, 4/23 시행)

- 국내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사업연도 종료후 90일까지) 이후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는 상장외국법인의 사업보고서 마감시한을 감안하여 상장외국법인의 재무정보의 적용기간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다음 사업연도 종료후 4월이 되는 날까지로 규정함

□ 개정 상법을 반영하여 관련 공시제도를 정비하고, 투자위험 정보에 관한 공시를 신설함

(7조 1항 2호 : 2012/4/18 개정, 4/23 시행)

- 개정 상법이 특정한 경우 제한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였던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수시공시 의무대상을 자본시장법상의 자기주식에서 상법상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으로 확대함
- 개정 상법이 무액면주식의 발행을 허용함에 따라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간의 전환관련 사항을 공시의무에 추가함
- 개정상법이 현물배당을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금전 이외 현물배당 결정사실을 공시의무에 추가함
- 장래 발생 가능한 투자위험 요인을 사전에 공시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관련하여 자기자본의 5%(대규모법인 2.5%)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원리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공시의무대상에 추가함
- 또한 자기자본의 5%(대규모법인 2.5%) 이상의 타인에 대한 선급금 지급, 금전의 가지급, 금전대여 또는 증권의 대여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 공시의무를 부여

- 현행 금전 가지급 등 사항을 유가증권시장은 자율공시사항으로, 코스닥시장은 수시공시의무사항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모두 공시의무사항으로 전환한 것임
- 이후 선급금,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의 50% 이상 변경 시 공시변경조치를 하여야 함(31조)

□ 공시위반제재금을 상향 조정함

(35조의2 : 2012/4/18 개정, 4/23 시행)

-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함으로써 불성실공시 제재를 강화함

□ 집합투자업자등에 대한 불성실공시 사실게재의무를 신설함

(86조 2항 : 2012/4/18 개정, 4/23 시행)

- 거래소가 집합투자업자등의 불성실공시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해당 사실과 경위 등을 증권시장지에 불성실공시한 날로부터 5일간, 전자공시시스템에 1개월간 각각 게재하도록 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함

6.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 서류제출 또는 조회공시 통보방법으로 전자문서를 추가함

(3조, 7조 : 2012/4/19 개정, 4/23 시행)

- 상장법인의 서류제출 또는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통보방법으로 우편·인편 또는 모사전송 이외에 전자문서 방법을 허용함

□ 자율공시사항을 정비함(8조 : 2012/4/19 개정, 4/23 시행)

- 투자자에게 자원개발 투자 관련정보를 제공하도록 자원개발 착수 이후 진행사항 및 사업중단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함
 - 매장량 등 경제성 판명을 공시하는 경우 평가보고서 제출 및 평가기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 금전의 가지급, 대여금 등의 사항이 공시의무사항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자율공시사항에서 삭제함

□ 공시위반제재금을 상향 조정함

(13조의3 : 2012/4/19 개정, 4/23 시행)

- 고의·중과실·상습적 공시위반사항의 경우 공시위반제재금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불성실공시법인 제재를 강화함
 - 경미한 위반사항(대체부과)의 경우에도 부과별점 1점당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 대표집행임원에 회사대표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관련 서식을 개정함

(별지 1~6 : 2012/4/19 개정, 4/23 시행)

□ 별점 대체부과 대상을 변경함

(13조의3 1항 1호 : 2012/5/21 개정, 5/22 시행)

- 공시위반제재금 부과기준의 부과대상 변경하여 별점 대체부과 신청을 허용하고 공시위원회에서 별점 대체부과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기존의 경우 예고별점이 5점 미만 시 제한하여 대체부과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대체부과 요건은 별점 5점 미만이고 고의·중과실 또는 상습적이거나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사실이 없어야 함

□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예고별점 기준을 변경함

(별표 12012/5/21 개정, 5/22 시행)

- 기존 위반사항의 중요성 및 위반기간에 따라 설정되었던 벌점 기준을 위반의 중요성에 따라 재설정함
 - 중대한 위반의 경우 7점, 통상의 위반의 경우 5점, 경미한 위반의 경우 3점으로 정하고, 공시위반기간을 가중·감경사유에 반영하도록 함

□ 불성실공시 제재심의기준을 마련함

(별표 2 : 2012/5/21 개정, 5/22 시행)

- 예고벌점 및 위반의 동기를 기준으로 가중감경사유를 반영하여 부과벌점을 심의하도록 함

위반동기 위반의 중요성	고의	중과실	과실	단순착오
중대한 위반	10점	8점	6점	4점
통상의 위반	8점	6점	4점	2점
경미한 위반	6점	4점	2점	0점

- 또한 부과벌점의 합리적 부과를 위하여 위반경위별 가중·감경사유를 확대하고 사유별 ±1점씩 총 ±2점의 범위에서 가중 및 감경의 폭을 조정하도록 함

7. 유가증권시장 상장심사 지침

- 상장주선인의 기업실사 점검표(Due Diligence 체크리스트)에 유형별 Due Diligence 현황을 신설함

(별표 4 : 2012/2/3 개정, 2/6 시행)

- 투명성과 계속성에 따라 기업을 분류하여 유형별로 기업실사 시 파악한 기업에 관한 사항과 대표주관회사의 개선사항을 기재하도록 함
- 이를 위하여 ‘투명성과 계속성 판단을 위한 조건 및 세부기준’을 첨부함

<부록 표 III-3> 투명성과 지속성 판단을 위한 조건 및 세부기준

투명성	지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경영자 리더십 1. 환경변화 통찰 및 전략수행 능력 2. 이해관계자 관리 및 의사소통 능력 3. 기업 내외의 리스크 인지 및 관리 능력 4. 기업의 사회적 및 환경적 책임 의식 5. 도덕성 및 윤리의식 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구조 안정성 1. 매출과 영업이익의 지속적인 성장 2. 안정적인 수익모델 구축 (외부충격흡수) 3. 고정적인 매입처 및 매출처 확보 4. 재무위험 관리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배구조의안정성 1. 최대주주 및 관계회사로부터 경영 독립성 유지 2. 경영권의 안정성 및 후계자 육성 3. 주주 및 경영진간 상호협력·견제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지배력 유지 1. 제품 및 서비스의 차별화 (경쟁우위 원천 확보) 2. 브랜드 이미지 확보 3. 고객만족 경영(고객 충성도 유지) 4. 지속적인 신시장 개척 (글로벌시장 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통제조직 정비 1. 회계 및 내부통제시스템 정비 2. 투명한 경영의사결정 과정 3. 부정행위 발생 시 즉각적인 보고 및 개선 4.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의 독립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 1. 시장선행 전략수립 및 조직혁신 2. 연구개발 및 우수인재에 투자 3. 신제품 개발을 통한 성장동력 발굴

— 또한 ‘대표주관회사의 Due Diligence 가이드라인’을 마련

- 기업의 투명성을 지배구조의 불안전, 경영의 불안전, 최대주주 및 경영자의 전횡, 경영통제시스템 미비, 내부통제시스템 미비, 회계시스템 미비, 투자자 보호 7가지로 나누어 현황, 필수 Due Diligence 사항, 예비심사청구전 개선방안을 제시함
- 또한 기업의 지속성에 대하여 소송 등의 발생, 재무안정성 등의 악화, 기업실적 악화, 경쟁기업 등의 출현, 성장성 악화 5가지 별로 현황, 필수 Due Diligence 사항, 예비심사청구전 개선방안을 제시함

8.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 「시장감시규정」 개정에 따라 매매거래정지 사유 중 시장감시위원회 요청이 있는 경우의 근거 조문을 변경
(25조 1항, 42조 9항 : 2012/3/7 개정, 3/12 시행)
- 기세의 정의를 규정하는데 있어 기존 보통주를 보통주식으로, 우선주를 종류주식으로 변경함
(2조 : 2012/4/18 개정, 4/23 시행)
 - 기존 우선주에 대한 별도의 기세 불인정 내용을 상환주식, 전회주식 등을 포함한 종류주식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개정함
- 무액면주식 도입에 따라 규정을 정비함
(25조 1항 : 2012/4/18 개정, 4/23 시행)
 - 무액면주식의 분할을 수용하기 위하여 종래의 액면분할을 주식분할로 변경함
- 공매도거래에 대한 회원 수탁요건의 강화
(9조의4 3항, 42조 8항 3호 : 2012/9/19 개정, 10/30 시행)
 - 공매도거래 위반 전력자의 공매도 주문 수탁시에 보다 강화된 의무 부과
 - 수탁요건은 유가증권시장의 공매도거래 수탁내용과 동일(앞의 표 참조)
- 공매도 포지션 보고 위반자에 대한 수탁절차 강화 신설
(9조의4 4항~5항, 42조 8항 3호 : 2012/9/19 개정, 10/30 시행)
 - 공매도거래 위반 전력자에 준하여 포지션 보고 위반자에 대해서도 공매도 수탁 시 강화된 절차를 적용

□ 공매도 시장관리에 대한 사항 정비

(9조의2 5항 1호의2, 9조의4 1항 : 2012/9/19 개정, 10/30 시행)

- 종목별로 순보유잔고의 비율이 일정수준 이하인 종목에 대하여 공매도 호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결제수량이 충분하더라도 결제지시서 미도착 또는 하자 등으로 결제를 불이행한 위탁자를 공매도 관련 사후 점검대상에 추가

□ 단기과열종목 단일가매매 실시 근거 마련

(23조 1항 3호 : 2012/10/17 개정, 11/5 시행)

- 주기적(30분 단위) 단일가매매 실시

□ 단기과열종목 지정(23조의2 1항 : 2012/10/17 개정, 11/5 시행)

- 주가상승률, 거래회전을 및 주가변동성이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종목과 시장감시규정에 의해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으로서 매매거래정지가 요청된 종목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
 -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동안 중복지정 배제
 - 지정 관련 세부사항은 세칙에 위임

□ 단기과열종목 매매거래정지 근거 마련

(25조 1항 5호의2, 5호의3 : 2012/10/17 개정, 11/5 시행)

- 1일간 매매거래정지
- 단기과열종목 지정 중에는 경고·위험 종목에 따른 매매거래정지는 미 실시

□ 단기과열종목 지정·지정예고 기준

(28조의2, 3 : 2012/10/26 개정, 11/5 시행)

- 단기과열종목 지정을 위한 주가상승률, 거래회전율 및 주가변동성 기준을 구체화하고 해당 기준의 계산방법을 마련
 - 주가상승률 : 당일종가가 직전 40매매거래일 증가 평균의 100분의 130 이상
 - 거래회전율 : 최근 2매매거래일 평균이 직전 40매매거래일 평균의 100분의 600 이상
 - 주가변동성 : 최근 2매매거래일 평균이 직전 40매매거래일 평균의 100분의 150 이상
- 단기과열종목의 지정·지정예고 방법 및 지정 예외사유 등 구체화
 - 위 세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10매매거래일 이내에 다시 세가지 기준을 재충족(재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날의 종가가 기준일의 증가보다 높을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해당 종목의 지정예고가 가능

□ 단기과열종목 지정해제 기준 신설

(28조의4 : 2012/10/26 개정, 11/5 시행)

- 단기과열종목 지정일로부터 4매매거래일 경과 및 지정일 전일종가 대비 당일 종가가 100분의 120 미만
 - 증가는 각각 배당락, 권리락,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이 있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계산
- 연장기간은 총 10매매거래일 초과 불가

□ 단기과열종목에 단일가매매방식 적용

(8조, 28조 : 2012/10/26 개정, 11/5 시행)

-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매매체결방식을 준용하여 30분 단위 단일가 매매로 체결
 - 기세 결정에 참여가 제한되는 호가 범위, 랜덤엔드 등을 관리종목과 동일하게 적용

□ 단기과열종목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30조 : 2012/10/26 개정, 11/5 시행)

- 시장감시규정에 따라 매매거래정지 요청을 받은 경우 : 1일
 - 단, 이미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주가·회전율·변동성 요건에 따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 단기과열종목 지정일 1일

9.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호가의 적합성 등 점검항목에서 단일가매매 참여호가 접수시간의 경우 최유리지정가호가, 최우선지정가호가 및 그 밖의 호가(경쟁대량매매호가 제외)의 입력제한을 제외함

(8조의3 : 2012/3/8 개정, 3/9 시행)

-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간외대량매매의 방법으로 자기주식매매를 위탁받은 회원에 대한 자료제출 근거 규정을 마련

(24조 1항 : 2012/3/8 개정, 3/12 시행)

- 이때 회원사는 호가를 하기 전에 해당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시장감시규정」 개정에 따라 대용증권으로 지정되는 투자위험종목 해당 조문을 정비함

(44조 : 2012/3/8 개정, 3/12 시행)

- 개정 상법상 종류주식 도입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2조, 17조, 27조, 별표 1, 별표 2 : 2012/4/20 개정, 7/23 시행)

- 우선주 매수기세, 평가가격 및 기준가격 산정 등 기존 우선주에 관한 규정을 상환주식, 전환주식 등을 포함한 종류주식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변경함
-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기세 불인정 기준을 강화하여 기존 우선주의 기준가격이 해당 보통주의 기준가격을 10배 초과하는 것을 종류주식의 기준가격이 해당 보통주식의 기준가격을 2배 초과하는 것으로 개정함

□ 무액면주식제도 도입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함

(10조, 17조, 23조, 별표 1 : 2012/4/20 개정, 4/23 시행)

- 무액면주식을 분할·병합하는 경우를 수용하기 위하여 액면분할(병합)을 주식분할(병합)로 변경함

□ 투자자분류코드를 개선함(38조 2항 : 2012/6/22 개정, 7/16 시행)

- 기존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투자매매업자를 금융투자업자로 확대함
- 종합금융회사 급감에 따라 기존 종합금융회사 및 상호저축은행을 기타 금융기관으로 확대함
-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기구에 대한 분류에 공익성격의 비금융기관을 추가함

10.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이노비즈 인증기업 특례근거를 신설함

(2조 9항 : 2012/4/18 개정, 4/23 시행)

- 기존 벤처기업에 대한 상장특례규정이 이노비즈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벤처기업 범위에 이노비즈기업을 포함시킴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근거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이노비즈기업으로 명명함

□ 개정 상법을 반영하여 특수관계인 및 임원의 범위 집행임원을 포함함
(2조 13항, 7조의3 1항 7호 : 2012/4/18 개정, 4/23 시행)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및 SPAC 임원의 범위에 상법상 집행임원을 포함시켜 분산 및 매각제한, 자격요건 등을 적용받도록 규정함

□ 상장규정상 '주식등'의 범위에 상환사채 및 교환사채 등을 포함시킴
(2조 17항 : 2012/4/18 개정, 4/23 시행)

□ 보통주식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함
(2조 37항, 7조의2 1항 : 2012/4/18 개정, 7/23 시행)

- 보통주식을 발행주식 중에서 상법상 종류주식을 제외한 주식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외국기업의 보통주식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

□ 개정 상법상 이사회 결의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상장 및 퇴출요건에 이를 반영함
(4조 4항 5호, 28조 1항 10호, 38조 1항 13호 : 2012/4/18 개정, 4/23 시행)

- 상법은 재무제표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과 감사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이 아닌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도록 특칙을 마련함(상법 449조의2)
- 이를 적용하여 관련 상장요건 및 상장폐지 요건에 기존 주주총회 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결의로 재무제표를 승인한 경우 이사회를 추가함

- 신규상장 심사요건 중 기준시가총액 및 주식의 분산, 재상장 심사요건 중 유통주식수 등 보통주식을 기준으로 명시함
(6조 1항, 7조의2 1항, 17조 2항·4항, 28조 1항 12호 나목, 38조 1항 20호 : 2012/4/18 개정, 7/23 시행)

- 상법상 무액면주식 도입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6조 1항 16호, 16조의2 1항, 18조, 28조, 41조 : 2012/4/18 개정, 7/23 시행)
 - 신규상장요건 중 액면가액, 신주인수권증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수 요건, 관리종목요건의 거래량 요건의 예외, 외국기업의 상장폐지 관련 무액면주식의 적용 등을 적용하는데 있어 무액면주식을 고려하여 관련 기준에 반영함

- 종류주식의 상장요건 및 절차 등을 신설함
(6조의2 : 2012/4/18 개정, 7/23 시행)
 - 발행인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거나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법인일 것
 - 단, SPAC, 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
 -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예정주식수가 50만주 이상일 것
 - 상장신청일 현재 당해 종류주식의 기준시가총액이 20억원 이상일 것
 - 주식 분산요건으로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국내에서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수가 당해 종류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이고 주주수가 300명 이상일 것
 - 잔존권리행사기간 또는 만기가 상장신청일 현재 1년 이상일 것
 - 주식양도의 제한 요건을 충족할 것
 - 종류주식이 경영권의 남용 또는 기존주주의 이익침해 등에 해당하지 않고, 그 밖에 공익과 투자자보호상 부적합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될 것

- 종류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신청전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및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 예비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거래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할 수 있음

□ SPAC의 현금합병을 제한함

(19조의4 2항 4호, 38조 1항 24호 자목 : 2012/4/18 개정, 4/23 시행)

- 현금자산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하여 합병하는 경우 SPAC의 자금조달효과가 반감됨에 따라 SPAC의 현금합병을 제한함
- 만약 이를 위반하여 SPAC이 합병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상장을 폐지하도록 함
- 단, 합병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단주의 처리 등을 위하여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제외함

□ 코스닥 상장법인의 소속부 지정에 있어 기업경영의 건전성 요건을 추가함

(27조 1항 : 2012/4/18 개정, 4/23 시행)

- 우량기업부 기업에 대한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 기업규모, 재무상태, 경영성과 요건 이외 별도의 기업경영의 건전성 요건을 마련함

□ 관리종목에 대해서도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8조의2 1항 : 2012/4/18 개정, 4/23 시행)

-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이후 조기에 관리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잔여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기간만큼 해당 지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종목에 대해서도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을 허용함

□ 종류주식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등 관련 내용을 마련함

(29조 1항, 44조의2, 44조의3, 45조, 46조, 47조, 50조 : 2012/4/18 개정, 7/23 시행)

- 종류주식의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사유 발생 시 매매거래정지의 근거를 신설함
- 대상 종류주식의 상장폐지 시 당해 신주인수권증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 근거를 마련함

□ 종류주식의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등을 마련함

(40조의2 : 2012/4/18 개정, 7/23 시행)

- 관리종목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음
 - 당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보통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당해 종목의 주주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당해 종목의 상장주식수가 5만주 미만인 경우
 - 당해 종목의 시가총액이 5억원 미만인 상태가 30일간 지속되는 경우
 - 코스닥시장을 통한 당해 종목의 분기의 월평균거래량이 1만주 미만인 경우
- 상장폐지요건은 다음과 같음
 - 당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보통주식이 상장폐지되는 경우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 다음 사업연도에도 주주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 다음 반기에도 동 규정에 의한 상장주식수 미달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간의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시가총액 5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되거나 시가총액 5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되지 아니한 경우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 다음 분기에도 동 규정에 따른 거래량 미달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 영업손실 관련 관리종목 지정기준 정비

(28조 1항 3호의2 : 2012/12/26 개정, 12/31 시행)

- 영업손익의 손익계산서 본문 기재가 의무화됨에 따라 영업손익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및 주식에 기재하는 경우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기준 적용방법을 삭제

□ 상장수수료 등 부과기준 변경 및 부과한도율 조정

(50조 : 2012/12/26 개정, 12/31 시행 단, 50조 1항은 2013/1/1 시행)

-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의 부과기준을 자본금에서 시가총액으로 변경하고, 자본금에 대한 시가총액의 배율에 비례하여 부과한도율을 동일한 비율로 하향 조정
 - 자본금대비 시가총액 배율(12배)에 비례하여 부과한도율을 기존대비 12분의 1 수준으로 조정

11.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 이노비즈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상장특례 도입에 따라 상장 예비심사청구 시 이노비즈 인증확인서를 추가함

(3조 : 2012/4/20 개정, 4/23 시행)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기존 벤처기업수준의 상장특례가 허용됨에 따라 심사청구 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 13조에 따라 발급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2부를 징구하도록 규정함
- 또한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등에 이노비즈기업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서식을 정비함(상장서식 30, 30-3, 30-5, 30-7)

- 우량기업부 정기심사요건으로 기업경영건전성 요건에 대한 세부 사항을 마련함

(24조 1항 : 2012/4/20 개정, 4/23 시행)

- 기업경영의 건전성 요건은 다음과 같음
 - 최근 2년간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어 부과받은 벌점의 합계가 4점 이하일 것
 - 최근 2년간 3회 이상 최대주주 변경사실이 없을 것

- 회계분식 관련 중과실조치에 대한 실질심사사유를 보완함

(33조 : 2012/4/20 개정, 4/23 시행)

- 기존 4월 이상의 증권발행제한 또는 검찰 고발·통보(전·현직 임원에 대한 경우 포함)의 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서 2년 이상의 감사인지정, 임원해임권고(임원해임권고 상당을 포함)사항을 추가함

- 종류주식제도 도입에 따라 신규상장기준 및 관리종목 지정·해제 관련 사항, 상장수수료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함

(7조의2, 33조의5, 38조 : 2012/4/20 개정, 7/23 시행)

- 종류주식의 상장심사청구 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음
 -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견양, 주선인의무이행각서, 이해관계자투자현황 등(신규상장예정기업은 동일 서류의 제출 생략 가능)
 - 종류주식 발행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2부
 - 그 밖에 상장예비심사와 관련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2부
- 종류주식의 질적요건으로 경영권의 남용 또는 기존주주의 이익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
 - 해당 종류주식이 기존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써 남용될 수 있는 경우

- 출자지분과 회사지배에 관한 비례적 이익간 불균형이 발생하여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 이익배당이나 상환을 위한 재원이 충분히 유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공익과 투자자보호에 위배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종류주식의 신규상장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

- 의무이행확약서, 인수계약서, 주주명부요약표, 주금납입증명서 등

— 종류주식의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시기는 다음과 같음

- 기본적으로 당해 보통주식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시기 또는 해제시기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세부적으로 지정 및 해제시기를 명시함

	지정 시기	해제 시기
주주수 미달	공시규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	[상장서식 2]에 따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주주명부요약표와 실질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주주수가 확인된 날의 익일
상장주식수 미달	확인된 날의 익일	최근 반기말이나 사업연도말의 상장주식수가 5만주 이상인 것이 확인된 날의 익일
시가총액 미달	확인된 날의 익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의 익일 (1) 시가총액이 5억원 이상인 일수가 10일 이상 계속될 것 (2) 시가총액이 5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일 것
거래실적 부진	분기종료일의 익일	거래요건을 충족한 분기 종료일의 익일

- 거래소는 해당 종류주식의 상장폐지 등과 관련된 향후 세부절차를 시장안내사항으로 공시하여야 함

— 종류주식에 대한 수수료 납부근거를 명시함

- 종류주식에 대한 상장심사수수료를 보통주식의 1/2로 하되 신규상장예정법인의 경우 면제하도록 함

- 전문평가 기간 연장(9조 8항 : 2012/9/1 개정 · 시행)
 - 전문평가의 내실 있는 운영 및 충분한 평가기간 확보를 위해 현행 4주에서 6주로 연장

- 수수료 부과 구간 및 요율 조정
(상장서식 3 : 2012/12/28 개정, 2013/1/1 시행)
 -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부과구간 및 요율을 합리적으로 재조정

- 수수료면제기준에 의한 면제사유 세척 반영
(38조 3항 7호 : 2012/12/28 개정, 2013/1/1 시행)
 - 공시우수법인에 대한 수수료 면제근거 명정 및 지배구조우수법인 등에 대한 수수료 면제근거를 면제기준에서 세척으로 이관

- 상장폐지법인에 대한 연부과금 면제사유 추가
(38조 3항 1호 바목 : 2012/12/28 개정, 2013/1/1 시행)
 - 부도, 해산, 자본전액잠식에 따른 상장폐지 법인의 수시납부 연부과금 면제
 - 상장폐지법인의 경우 무자력(無資力) 또는 수수료 납부여력이 없는 법인으로서 연부과금 부과 실익이 없는 현실을 고려

	구간(시가총액)	수수료율
연 부 과 금	100억 이하	10억당 1만원
	100억~300억 이하	10만원 + 100억원 초과액 10억원당 8천원
	300억~500억 이하	26만원 + 300억원 초과액 10억원당 7천원
	500억~700억 이하	40만원 + 500억원 초과액 10억원당 6천원
	700억~1,000억 이하	52만원 + 700억원 초과액 10억원당 4천원
	1,000억~2,000억원 이하	64만원 + 1,000억원 초과액 10억원당 2천원
	2,000억~5,000억원 이하	84만원 + 2,000억원 초과액 10억원당 1천원
	5,000억원 초과	114만원 + 5,000억원 초과액 10억원당 5백원
	구간(기준시가총액)	수수료율
상 장 수 료	100억 이하	10억당 3만원(최저한도 5만원)
	100억~300억 이하	30만원 + 100억원 초과액 10억원당 2만5천원
	300억~500억 이하	80만원 + 300억원 초과액 10억원당 2만원
	500억~700억 이하	120만원 + 500억원 초과액 10억원당 1만5천원
	700억~1,000억 이하	150만원 + 700억원 초과액 10억원당 1만원
	1,000억~2,000억원 이하	180만원 + 1,000억원 초과액 10억원당 5천원
	2,000억~5,000억원 이하	230만원 + 2,000억원 초과액 10억원당 2천5백원
	5,000억원 초과	305만원 + 5,000억원 초과액 10억원당 5백원

12.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 공시책임자의 자격을 강화함

(2조 4항 : 2012/4/18 개정, 4/23 시행)

- 이에 공시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시책임자를 등기이사로 지정하도록 함

□ 상장외국법인의 공시의무비용 적용기간을 개선함

(3조 4항 : 2012/4/18 개정, 4/23 시행)

- 국내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사업연도 종료후 90일까지) 이후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는 상장외국법인의 사업보고서 마감시한을 감안하여 상장외국법인의 재무정보의 적용기간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다음 사업연도 종료후 4월이 되는 날까지로 개선함

□ 개정 상법을 반영하여 관련 공시제도를 정비하고, 투자위험 정보에 관한 공시를 신설함

(6조 1항 2호 : 2012/4/18 개정, 4/23 시행)

- 개정 상법이 특정한 경우 제한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였던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수시공시 의무대상을 자본시장법상의 자기주식에서 상법상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으로 확대함
- 개정 상법이 무액면주식의 발행을 허용함에 따라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간의 전환관련 사항을 공시의무에 추가함
- 개정상법이 현물배당을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금전 이외 현물배당 결정사실을 공시의무에 추가함
- 장래 발생 가능한 투자위험 요인을 사전에 공시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관련하여 자기자본의 10%(대기업 5%)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원리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공시의무대상에 추가함

□ 공시위반제재금을 상향 조정함

(34조 1항 : 2012/4/18 개정, 4/23 시행)

-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불성실공시 제재를 강화함

□ 집합투자업자등에 대한 불성실공시 사실게재의무를 신설함

(72조 : 2012/4/18 개정, 4/23 시행)

- 거래소가 집합투자업자 등의 불성실공시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해당 사실과 경위 등을 증권시장지에 불성실공시한 날로부터 5일간, 전자공시시스템에 1개월간 각각 게재하도록 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함

13.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 집행임원설치회사에 있어 대표집행임원에 대하여 대표권한을 부여함
(6조의2 : 2012/4/18 개정, 4/23 시행)
 - 이사회와 감독 아래 회사업무를 집행하는 전담기관인 집행임원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이사 대신 대표집행임원이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

- 시가배당률 계산에 현물배당을 포함하도록 함
(6조의3 : 2012/4/18 개정, 4/23 시행)
 - 상법 개정으로 금전, 주식배당 외에 현물배당도 가능하게 됨에 따라 시가배당률 계산에 있어 현물배당을 추가함

- 자원개발의 중단 및 진행사항에 대한 공시의무를 신설함
(13조 : 2012/4/18 개정, 4/23 시행)
 - 자원개발 착수이후 해당 자원개발 중단 또는 반기별 진행사항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여함
 - 또한 추정 매장량 등 경제성 평가에 관한 공시에 대해 평가기관 명시, 평가보고서 제출의무 및 평가기관에 관한 사항의 기재의무 신설함

- 매매거래정지제도를 개선함(18조 : 2012/4/18 개정, 4/23 시행)
 - 집단소송, 워크아웃 및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 지정사유 발생 등 반복·중복적인 정지사유 발생 시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시점을 최초 공시시점으로 명시함

- 공시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함
(21조 1항 : 2012/4/18 개정, 4/23 시행)

- 공시책임자의 등기이사 선임이 의무화됨에 따라 공시책임자 신고 시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함

□ 불성실공시 제재심의기준을 개정함

(별표 1 : 2012/4/18 개정, 4/23 시행)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심의 시 병합심의의 근거를 마련함
 - 공시위원회는 다수의 공시의무 위반행위가 동일한 원인사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나의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
- 감경사유로서 교육프로그램의 자발적 이수를 신설함
 - 거래소가 인정하는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경우 감경사유(0.5점) 반영하도록 규정함
- 공시위반제재금 미납 시 가중벌점 부과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
 - 납부기한내 미납한 경우 7일이내에 납부할 것으로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 가중벌점을 부과함
 - 상장폐지된 법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내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벌점을 부과하지 아니함

□ 녹색경영정보에 대한 자율적인 공시제도를 도입함

(13조 12호 : 2012/6/22 개정, 7/1 시행)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한 자율공시를 신설하였음
 - 녹색기술, 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의 확인 및 그에 대한 인증취소 또는 확인취소
 - 관리업체 지정 또는 취소
 - 개선명령, 시정이나 보완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
 - 녹색기업 지정 또는 취소
 - 온실가스 배출권의 취득 또는 처분 등 녹색경영정보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불성실공시와 관련된 매매거래정지 기준별점을 조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정함

(16조 2항, 18조 3항, 별표 1 : 2012/6/22 개정, 7/1 시행)

- 불성실공시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과별점을 기존 2.5점에서 2점으로 하향함
- 불성실공시로 인한 매매거래정지 기준별점을 기존 4점 이상에서 5점 이상으로 변경함
- 또한 최근 2년간 의무공시교육 미이수법인에 대한 불성실공시가 발생하는 경우 공시위반제재금 대체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14. 코스닥시장 상장심사 지침

- 위원회 심의기간을 기존 2월에서 영업일 기준 45일로 변경함

(12조 1항 : 2012/2/29 개정, 3/1 시행)

-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 및 1차상장 외국기업은 기존 3월에서 65일로 변경

- 외국기업 현장답사결과보고서 작성기한을 기존 5일에서 7일로 연장함

(21조 : 2012/2/29 개정, 3/1 시행)

- 이는 외국기업의 회계투명성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

-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에 대한 상장심사 방법 및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

(22조 : 2012/2/29 개정, 3/1 시행)

- 국내SPC의 실체가 외국기업임을 고려하여 외국기업에 준한 상장심사를 실시하도록 함

- 외국기업 정관 필수기재사항으로 일정한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강화함

(별표 3 : 2012/2/29 개정, 3/1 시행)

- 주요외국자회사 지분의 전부를 매각하거나 일부를 매각하여 당해 주요외국자회사가 외국자회사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또는 주요외국자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4분의3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2 이상의 수로써 하도록 개정함
 - 기존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의 결의요건이 적용되었음

15.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 10년국채선물 미결제약정 제한수량 확대

(154조 : 2012/12/12 개정, 12/24 시행)

- 장기 국채현물시장 규모 확대 및 기관투자자 중심의 시장특성을 반영하여 미결제약정 제한수량을 5천 계약에서 1만 계약으로 확대
 - 기존 10년 국채선물의 미결제약정 제한수량(5,000계약)은 코스피200지수 파생상품의 개인투자자와 같은 수준이었음
 - 보유기간을 '최종거래월'(1개월)에서 '거래기간 전체'(6개월)로 연장하되, 최근월물과 원월물을 상계한 '순미결제약정수량' 기준으로 산정

- 대상상품·종목·기간 명확화 및 최우선호가간격의 상품별 지정

(83조, 85조 : 2012/12/12 개정, 12/24 시행)

- 시장조성대상의 상품·종목·기간을 명확화하고, 상품별 특성을 반영하여 최우선호가간격을 탄력적으로 운영

□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거금 감면제도 폐지

(87조 : 2012/12/12 개정, 12/24 시행)

- 시장조성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적고, 동일 위험 동일 증거금 부과 원칙 유지를 위해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거금 감면제도 폐지

□ 증거금 예탁수단 확대

(88조, 90조~92조, 127조, 129조의2, 130조~132조, 136조, 138조, 139조, 152조, 169조 : 2012/12/12 개정, 12/24 시행)

- 거래(위탁)증거금 예탁수단으로 현행 현금, 대용증권, 외화(9개 통화) 이외에 외화증권의 예탁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 외화증권 중 주요국 국채의 예탁을 허용하되, 환금성·지급보증성 등을 고려하여 미국국채(US Treasury Securities)를 우선적으로 도입

□ 파생상품담당자 제도 폐지(162조~164조)

- 거래·결제 등의 업무 전산화로 파생상품담당자의 역할 축소, 회원 업무 편의 및 시장간 규제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 등록·관리 방식에서 회원 자율운영으로 전환

16.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호가한도수량을 별표 17의2로 위임

(61조 1항 : 2012/2/17 개정, 3/9 시행)

- 별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호가 한도수량
선물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스피200선물거래(정규거래) • 스타지수선물거래 • 3년국채선물거래 • 5년국채선물거래 • 10년국채선물거래 • 금선물거래 • 미니금선물거래 • 돈육선물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계약 - 다만, 유동성관리상품의 경우에는 100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선물거래 • 미국달러선물거래 • 엔선물거래 • 유로선물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0계약 - 다만, 유동성관리상품의 경우에는 500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스피200선물거래(글로벌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계약
선물 스프레드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스피200선물스프레드거래 • 스타지수선물스프레드거래 • 3년국채선물스프레드거래 • 5년국채선물스프레드거래 • 10년국채선물스프레드거래 • 금선물스프레드거래 • 미니금선물스프레드거래 • 돈육선물스프레드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선물스프레드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0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달러선물스프레드거래 • 엔선물스프레드거래 • 유로선물스프레드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0계약
옵션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가지수옵션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계약 - 다만, 유동성관리상품의 경우에는 100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옵션거래 • 미국달러옵션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0계약 - 다만, 유동성관리상품의 경우에는 500계약

□ 코스피200옵션 거래승수 변경에 따른 단일가 배분방식을 변경함

(62조 1항 : 2012/2/17 개정, 3/9 시행)

- 단일가약정가격이 상·하한가로 결정되는 경우 상·하한 단일가호가 간 수량 배분 방식을 현행 선물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

- 코스피200옵션의 계약당최소증거금액을 기존 1만원에서 5만원으로 변경하고 코스피200선물·옵션거래의 미결제약정수량 환산방법을 조정함

(별표 19, 별표 23 : 2012/2/17 개정, 3/9 시행)

- 호가 적합성 점검항목에서 회원이 사전에 점검하기 어려운 일부 항목을 제외하도록 개정함

(49조의2 5호 : 2012/2/17 개정, 3/9 시행)

- 이때, 회원의 사전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항목은 단일가호가인 경우 최유리지정가호가, 일부/전량충족조건이 부여된 호가의 입력제한 여부임

- 착오거래 정정에 있어 회원이 위탁자의 파생상품계좌번호를 착오한 경우 이를 정정하도록 허용함

(77조, 별지 4호 서식 : 2012/2/17 개정, 3/9 시행)

- 현금예탁필요액비율, 선물현금비율 및 총위험현금비율을 인상함

(145조 : 2012/2/17 개정, 3/9 시행)

- 사전현금예탁필요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 최저율을 기존 1/3에서 50%로 변경함

-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에서 제외되는 차익·헤지거래의 증빙방법 및 신고양식을 표준화함

(163조, 별지 12호 서식, 별지 13호 서식 : 2012/2/17 개정, 3/9 시행)

- 기초주권이 상장폐지되는 경우 해당 주식선물스프레드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164조 : 2012/2/17 개정, 3/9 시행)

□ 착오거래 구제제도(78조의2~4 : 2012/5/9 개정, 6/25 시행)

- 착오거래의 구제요건은 다음과 같음
 - 투자자착오거래의 약정가격과 착오거래구제기준가격과의 차이에 해당 거래의 약정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수치를 합산한 금액이 10억원 이상
 - 투자자착오거래의 약정가격이 착오거래구제제한범위를 초과
 - 투자자착오거래초래 회원과 상대방간 착오거래의 구제에 대해 합의
- 착오거래구제 신청 시한 등을 신설함
 - 협의거래와 글로벌거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착오거래가 발생한 날의 장종료 후 15분 이내에 거래소에 착오거래의 구제를 신청하여야함
 - 해당 착오거래의 구제신청은 거래소과생상품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함
- 착오거래 구제방법은 다음과 같음
 - 투자자착오거래의 약정가격이 착오거래구제제한범위상단가격 보다 높은 경우 : 해당 약정가격과 착오거래구제제한범위상단가격 이내 투자자착오거래를 초래한 회원과 상대방간 합의한 가격
 - 투자자착오거래의 약정가격이 착오거래구제제한범위하단가격보다 낮은 경우 : 착오거래구제제한범위하단가격과 해당 약정가격 이내 투자자착오거래를 초래한 회원과 상대방간 합의한 가격
 - 회원은 거래소가 의제한 투자자착오거래의 약정가격을 회원과 위탁자간 결제 시 사용하고 거래소는 착오거래의 구제와 관련된 서류를 10년 동안 기록·유지의무를 부담함

□ 호가공개기준을 호가가격단위에서 잔량기준으로 변경하고, 국제선물의 총호가 수량을 공개하도록 함

(79조 1항 1호 : 2012/5/9 개정, 6/25 시행)

- 단일가호가시간 외의 호가접수시간의 호가공개기준을 각 매도·매수별 최우선 호가의 가격을 포함하는 5개의 우선호가의 가격, 해당 가격의 호가수량, 호가건수 및 각 매도·매수별 총호가수량·호가건수로 변경함

- 기존 호가가격단위의 호가공개기준의 경우 체결가능한 호가정보가 부족하고 투명성이 낮은데다 주식시장과 상이하여 투자자의 판단에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음
- 이에 호가잔량기준으로 호가공개기준을 변경함
- 또한 기존 국채선물상품 이외의 상품에 한하여 공개되었던 총호가수량 정보를 확대하여 국채선물상품도 공개하도록 함

□ 단일가 호가시간에 예상체결가 및 총호가 수량을 공개하도록 함

(79조 1항 2호 : 2012/5/9 개정, 6/25 시행)

- 기존 예상체결가 미공개로 인하여 가격 급등락의 위험이 크고 불확실성이 상당하다는 비판에 따라 단일가호가시간 중 모든 상품의 예상체결가격 및 각 매도·매수별 총호가수량·호가건수를 공개하도록 변경함

<부록 표 III-4> 호가 공개방식 및 예상체결가 공개 개선

상 품	호가 공개방식		예상체결가 공개						
	현행	개선	현행			개선			
			시가	장중	종가	시가	장중	종가	
주식 관련 통화 / 일반 상품	코스피200선물· 옵션, 스타지수선물, 주식선물·옵션	호가 가격 단위 기준	호가 잔량 기준	×	×	×	○	○	○
	통화선물·옵션, 금·미니금· 돈육선물			○	○	×	○	○	○
금리	국채(3·5·10년) 선물	호가 잔량 기준		○	○	○	○	○	○

자료 : KRX

□ 거래증거금률·위탁증거금률 등 위임근거 신설

(별표 19 : 2012/9/26 개정, 10/2 시행)

- 기존 세칙에서 각 증거금률을 수치로 입력해 표로 나타냈던 것을 없애고 적시조정이 가능하도록 거래소에 위임하는 뜻의 문구로 개정

□ 시장조성호가 제출 상품·종목 등 명확화

(81조 : 2012/12/18 개정, 2013/3/18 시행)

- 시장조성대상상품을 신상품 및 유동성관리상품 중 시장조성개시 3년 미경과 상품 등으로 명시
- 옵션거래의 경우 시장조성계약서에서 정한 종목수 이상으로 하여 신고한 종목으로 하도록 하는 것을 특정종목으로 구체화
 - 기존 : 시장조성계약서에서 정한 종목 수 이상으로 하여 신고한 종목
 - 개선 : 등가격 콜옵션, 풋옵션종목 및 등가격에 연속하는 상하 각각 1개의 행사가격 콜옵션, 풋옵션종목

□ 시장조성호가 제출 간격 차별화

(84조 : 2012/12/18 개정, 2013/3/18 시행)

- 상품별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성 등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장조성호가 간격을 차별화
 - 기존의 10호가 간격을 상품별 기초자산가격 변동성 등을 반영하여 별표에서 정하는 간격(10~100호가 간격)으로 함

□ 시장조성자에 대한 거래증거금 감면 제도 폐지

(88조 : 2012/12/18 개정, 2013/3/18 시행)

- 규정에서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거금 감면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삭제

□ 시장조성대가 지급기간 확대

(90조 : 2012/12/18 개정, 2013/3/18 시행)

- 시장조성에 따른 비용 등 일정금액(고정비성 경비)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기존 최대 8분기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최대 기간을 삭제하고 분기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조성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도록 함
- 단일 시장조성자에 대하여는 고정비성 경비를 차등지급(150%)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외화증권에 의한 거래증거금 예탁한도 마련

(91조 : 2012/12/18 개정, 2013/3/18 시행)

- 기존 대응증권 및 외화의 예탁한도와 동일하게 거래증거금 전액으로 가능하도록 설정하며, 시장관리상 필요 시 거래소의 예탁한도 변경 근거 마련

□ 거래·위탁증거금 예탁 대상 외화증권 종류 신설

(92조의2, 123조의2 : 2012/12/18 개정, 2013/3/18 시행)

- 미국국채 중 발행 후 금융상황에 따라 가격(수익률)이 달라지는 시장성(marketable)을 가진 국채[US Treasury Bill(단기), Note(중기), Bond(장기) 등]를 증거금 납부수단으로 허용
 - 그 밖의 거래소가 인정하는 외화증권 포함

□ 외화증권의 기준시세, 사정비율 등 평가방법 마련

(92조의2, 123조의2 : 2012/12/18 개정, 2013/3/18 시행)

- 외화증권 기준시세에 매매기준율 및 사정비율을 곱하여 원화로 평가한 가격을 거래일마다 산출함(1원 미만 절사)
- 외화증권의 기준시세는 국제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거래소에 순차적으로 제공한 최근 5거래일간 종목별 시세를 단순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 단, 신규발행 등으로 가격제공일수가 5거래일 미만의 경우 제공된 시세를 산술평균함
- 미국국채(T-Bill, T-Note 및 T-Bond)의 만기가 1년 미만에서 30년까지 다양함에 따라 잔존만기별로 다른 사정비율 적용⁶⁾
 - Treasury Bill(단기채) 및 잔존만기 1년 미만 : 92%
 - Treasury Note, Bond : 잔존만기 10년 미만인 경우 88%, 10년 이상 84%

거래증거금 외화증권 예탁 및 인출 신청 서식 마련

(별지 7호의2 : 2012/12/18 개정, 2013/3/18 시행)

유동성관리상품⁷⁾에 대한 주가지수선물CB(Circuit Breaker)제도 적용 배제

(75조 : 2012/12/18 개정, 2013/3/18 시행)

- 가격발견기능이 없는 유동성관리상품 경우 선물CB의 잦은 발동으로 투자자의 혼란을 초래하므로 선물CB의 적용을 배제

Circuit Breaker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임. 1987년 10월 미국의 사상 최악의 주가 대폭락사태인 블랙먼데이(Black Monday) 이후 주식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임. 한국에서는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의 가격제한 폭이 지난 1998년 2월 종전 상하 12%에서 상하 15%로 확대되면서 한국증권거래소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하였음. 코스닥 시장에는 2001년 10월 15일 도입되었음

파생상품담당자 제도가 규정에서 폐지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

(167조, 별지 12호~13호 서식 : 2012/12/18 개정, 2013/3/18 시행)

6) 국내 국공채 대용증권 사정비율 : 95%

7) 매월 직전 3개월의 일평균 거래량이 일정 수치 미달(주가지수상품의 경우 일평균 300계약)일 경우 유동성관리상품으로 지정

- 자구 수정(133조, 별표 24 : 2012/12/18 개정, 2013/3/18 시행)
 - 사전위탁증거금의 예탁, 착오거래구제 제한범위

17. 시장감시규정

- 투자경보 제도상의 매매거래 정지범위를 확대함
 - (5조의3 : 2012/3/7 개정, 3/12 시행)
 - 기존의 경우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 후에도 3일 연속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위원회가 매매거래정지를 요청할 수 있었음
 - 현행 매매거래정지 요건을 완화하여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후에도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후에도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위원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매매거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

18.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 불공정거래 예방조치를 강화
 - (2조의2 : 2012/3/8 개정, 3/12 시행)
 - 투자경고 또는 투자위험종목에 관여한 계좌와 관련된 회원에게 기존 유선상을 제외하고 서면으로만 예방조치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예방조치요구를 받는 회원이 고객에게 취하여야 할 조치 가운데 주문수탁의 거부예고를 추가
 - 또한 다음의 경우 주문수탁의 거부예고 이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 고객의 계좌가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에 관여하여 예방조치 요구를 받는 경우와 주문의 양태, 종목별 관여율 및 주가변동 등을 감안할 때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어 예방조치요구를 받는 경우

□ 투자경고종목 및 투자위험종목의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규정

(3조의3, 3조의4 : 2012/3/8 개정, 3/12 시행)

- 기존의 매매거래일수를 20일에서 15일로 축소하는 등 투자경고종목 및 투자위험종목 지정을 용이하게 개선하여 단기급등종목에 대한 투기적 매매 관리감독을 강화함

□ 투자경고종목의 매매거래정지 요청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

(3조의5 : 2012/3/8 개정, 3/12 시행)

- 위원회는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후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하도록 시장에 요청할 수 있음
 - 특정일의 주가가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보다 높고 특정일의 2일간 주가상승률이 20% 이상인 종목
- 이때 위원회는 투자경고종목으로 특정일의 주가가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보다 높거나 특정일의 2일간 주가상승률이 20% 이상이 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의 익일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고할 수 있음

□ 투자위험종목의 매매거래 정지요건을 추가하여 투자위험종목 지정 시 지정일에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

(3조의6 : 2012/3/8 개정, 3/12 시행)

- 위원회는 기존의 거래정지 요청 및 거래정지 예고에 있어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일 및 그 지정 예고일에 매매거래정지 요청 및 예고할 수 있도록 함

□ 약식제재금 부과기준상 우선주를 종류주식으로 변경함

(별표 2 : 2012/4/10 개정, 4/23 시행)

- 상법이 종류주식의 발행을 허용함에 따라 약식제재금 부과기준의 자기주식매매 신고관련 규정 위반과 관련하여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을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함

□ 각종 서식상 기존 대표이사에 대표집행임을 추가함

(별지 1, 2, 4, 6호 : 2012/4/10 개정, 4/23 시행)

- 상법이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상장법인 주요주주 등의 자기주식 등 거래현황 보고, 공정거래질서저해우려 품문 또는 이상거래 징후·현상 보고, 민원·분쟁현황 및 처리결과 보고, 위탁자 기본정보 현황 서식들에 대표이사와 대표집행임을 병기하도록 함

□ 포상금·소액포상금 지급한도 상향

(6조의3 1항 : 2012/7/3 개정, 7/9 시행)

- 불특정 다수 대상 범죄인 불공정거래의 사회적 파급효과 및 최근 대법원의 양형 기준이 강화된 것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 및 소액포상금의 지급한도를 상향 조정함
 - 포상금 : 1억원 → 3억원
 - 소액포상금 : 70만원 → 130만원

□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6조의3 2항 : 2012/7/3 개정, 7/9 시행)

- 포상금의 지급대상 사안으로 종래의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 및 거래소 회원조치' 이외에도 '거래소의 감독기관 통보'를 추가함

□ 특별포상금제도 신설(6조의3 3항 : 2012/7/3 개정, 7/9 시행)

-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품문 유포 등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에 대해, 위원회가 제보를 받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기간 중의 신고내용이 시장감시 업무의 수행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특별포상금제도를 마련함

- 각 사안별 중대성에 따라 최고 5천만원 이내로 지급하며, 지급여부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함

□ 투자유의 안내제도 신설

(제2조의 3항 : 2012/8/27 개정, 9/3 시행)

— 불공정거래나 자본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투자자 유의사항을 한국거래소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안내

- 시장질서 저해행위로 다수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 그밖에 자본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예상 될 경우

□ 유가증권시장의 투자경고·위험종목 지정기준 중 주가상승률 비교지수 요건 개선

(3조의 3 : 2012/9/12 개정, 9/13 시행)

— 산업별주가지수의 구성종목이 10개 이하인 유가증권시장 상장종목의 경우 투자경고·위험 종목의 지정에 있어 주가상승률 비교기준이 되는 주가지수로 종합주가지수를 적용하도록 함

산업별 주가지수

산업별 주가동향을 단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주가지수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서는 1974년부터 이를 산출·발표하고 있음

산업별 주가지수는 주가동향의 파악은 물론 투자자의 산업별 투자결정에
도움이 되는 지표로서 ① 산업의 선정 및 분산 범위의 결정, ② 선정된 산업에
서의 투자종목의 결정, ③ 선정된 종목의 적정주가수준의 결정 등에 활용되
는 지표임

□ ELW(주식워런트증권)의 시장경보제도 도입

(3조 1항 : 2012/10/5 개정, 10/8 시행)

- ELW의 특성상 규제 실익 및 적용가능성을 감안하여 시장경보제도 중 투자주의종목 지정제도만 도입하여 소수지점·계좌 거래집중종목에 대한 지정기준을 마련
 - ELW에 관한 3조 1항~3항의 시행은 2012년 10월 29일부터임

□ 투자주의종목 지정기준 변경

(3조 2항 : 2012/10/5 개정, 10/8 시행)

-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소수계좌·지점 거래집중종목 주가등락률 요건을 완화하고 지점 연계성이 약화된 점을 고려하여 소수지점 관여율 상향 조정
 - 소수지점·계좌 거래집중종목의 주가상승률 및 하락률을 20%에서 15%로 완화
 - 특정 지점의 매수관여율과 매도관여율을 40%로 상향
- 상한가 잔량 상위의 이상급등종목의 지정빈도를 높이기 위해 참여계좌수 요건을 삭제하고 소수계좌 상한가 호가잔량 요건을 신설
 - 정규시장 종료 시 상한가 매수호가의 미체결수량이 10만주 이상이면서 미체결수량 상위 10개 계좌의 미체결수량 합계가 전체 미체결수량의 90% 이상인 종목
- 다양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시장경보기능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개연성이 높은 예방조치 반복 적출종목에 대한 지정기준을 신설
 - 15일간 예방조치요구 과다종목 : 최근 15일(당일 제외) 중 직전 매매거래일을 포함하여 3일 이상 예방조치 요구를 받은 계좌가 관여한 종목

□ 투자경고·위험종목 지정기준 등 개선

(3조의3, 3조의4 : 2012/10/5 개정, 10/8 시행)

- 지정 및 지정예고 시 불공정거래 개연성 측면을 감안하여 주가상승률 기준에 요건을 추가
 - 최고가 매수체결 과다
 - 최고가 매수호가 잔량과다
 - 일중 매도·매수거래량 일치 계좌 과다
- 투자경고·위험종목 지정기준 중 주가급등락종목의 비교지수대비 주가 상승률 요건 조정
 - 단기: 5배, 중장기: 3배
- 상호중복소지 등이 있는 지정요건들을 합리적으로 정비

□ 일중 매도·매수거래량 일치 계좌 과다 판단기준 산식 정의

(3조의7 : 2012/10/5 개정, 10/8 시행)

- 투자경고·위험종목 지정 시 '일중 매도·매수거래량 일치 계좌 과다' 개념을 도입함에 따라 '매도·매수 거래량 일치율' 및 '일치계좌수 비중'의 산출방식을 정의
 - 매수·매도거래량 일치율 = [일정기간 특정 계좌의 매수(매도)수량/일정기간 특정 계좌의 매도(매수) 수량] × 100(이 경우 분모는 매수수량과 매도수량 중 더 많은 수량으로 함)
 - 매수·매도거래량 일치 계좌수 비중 = (일중 매수·매도거래량 일치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계좌수)/(일중 정규시장 참여 전체 계좌수) × 100(이 경우 일정기간 일치 계좌수 비중 산정은 가 매매거래일 일치계좌수 비중의 단순 산술평균으로 함)

□ 포상금의 산정 및 지급에 대한 심의절차 신설

(6조의3 : 2012/12/27 개정, 2013/1/1 시행)

-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의 산정·지급과 관련하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의 산정·지급에 대한 심의절차를 둘 수 있는 근거 마련

- 회원 모니터링시스템 적출기준 등의 결정에 대한 위원장에의 위임 근거 명시

(3조의8 5항 신설 : 2012/12/27 개정, 2013/1/1 시행)

- 회원의 모니터링시스템 감시항목 및 적출기준의 결정을 시장감시 위원장에 위임하는 근거 마련

19. 회원관리규정

- 재무상황 보고 시 자기자본보고를 의무화함

(30조 2항 : 2012/1/27 개정, 2012/3/1 시행)

- 결제회원의 거래소 재무상황 보고에 있어 기존 영업용순자본비율 180% 미달하거나 미달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서 자기자본 100억원 미달하거나 미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보고하도록 추가함
 - 재무요건 중 자기자본은 자본금과 달리 회사의 영업 및 재무상황에 따라 수시변동 가능하므로 재무상황 보고대상에 포함시킴

- 재무요건 미달에 따른 회원조치인 거래정지를 폐지함

(36조 1항 : 2012/1/27 개정, 2012/3/1 시행)

- 재무요건 미달 관련 회원조치인 6월 이내의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규정을 삭제하여 재무요건 미달정도 및 회복가능성, 회원사 및 투자자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회원조치가 운용될 수 있도록 개선함

- 회원자격 또는 거래의 정지기간 내에 재무요건 충족을 확인한 경우 회원조치를 해지하도록 함

(37조 2항 : 2012/1/27 개정, 2012/3/1 시행)

- 회원조치 유예기간중 재무요건 미달 사항을 해결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 조치유예를 중단하고 조치사유에 따른 회원조치가 가능하도록 함

(37조 3항 : 2012/1/27 개정, 2012/3/1 시행)

- 이는 유예기간중의 긴급사항에 대한 회원조치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함

- 재무요건 미달에 따른 회원조치 시 재무요건 개선을 요구하는 개선기간을 부여하도록 함

(37조 4항 : 2012/1/27 개정, 2012/3/1 시행)

- 이는 회원조치 부과 시 개선기간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원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 회원조치 통지 및 의견제출, 재심청구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함

(38조 1항~4항 : 2012/1/27 개정, 2012/3/1 시행)

- 거래소의 회원조치 사유 발생사실 통보의무를 명시함
- 회원은 거래소의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 의견 제출하여야 하며 재무요건 미달 시 개선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함
- 거래소의 조치사유 발생 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 회원조치를 처리하여 함
- 기존 회원의 재심청구를 이의신청 제도로 체계화함

20.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 업무규정

-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 참가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3조, 5조, 8조, 9조 : 2012/3/23 제정, 3/30 시행)

- 정제업자, 수출입업자, 대리점, 주유소인 석유사업자는 다음의 가입 요건을 충족하여 거래소로부터 가입승인을 통보받은 경우 본 전자상거래에 참여할 수 있음
 - 가입신청일 현재 석유사업법에 따른 석유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2개월 내에 석유제품의 매매거래실적을 보유할 것
 -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등으로 인하여 석유사업법에 따라 사업정지처분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가입신청일 현재 그 처분 또는 조치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것
- 참가자는 탈퇴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또한 다음 사유 발생 시 당연 탈퇴함
 - 석유사업법에 따른 석유사업의 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석유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 석유사업의 변경등록 및 양도, 합병 또는 해당 사업자의 사망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석유사업이 승계된 경우
 - 지급불능으로 되거나 회생절차개시, 파산 신청 또는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 거래소가 본 규정에 따라 참가자탈퇴를 결정하여 탈퇴일을 통지한 경우

□ 참가자는 참가자단말기에서 실행되는 호가입력프로그램을 통하여 매매거래시스템에 접속하여 석유제품의 매매거래를 할 수 있음

(11조~15조 : 2012/3/23 제정, 3/30 시행)

- 이때 참가자는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신의의 원칙에 따라 거래하며 일정 사유 발생 시 거래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여야 함

□ 매매거래 운영 규제는 다음과 같음

(20조, 22조, 24조 : 2012/3/23 제정, 3/30 시행)

- 매매거래시간은 10시부터 16시로 공휴일, 근로자의 날, 토요일, 그 밖에 거래소가 매매거래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은 휴일로 매매거래를 하지 아니함
- 거래소는 참가자 간 석유제품의 매매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중개업무를 담당함

- 매매거래의 대상종목은 저유소별로 석유제품의 종류·상표로 구분함
 - 저유소란 석유제품의 저장 등을 위하여 석유제품의 저장시설 중 거래소가 정하는 석유저장시설
 - 석유제품의 종류란 자동차용 휘발유중 보통휘발유(1호)와 경유 중 자동차용 경유
 - 상표란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알뜰상표, 자가상표(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알뜰상표가 아닌 석유제품의 상표)를 의미함

□ 호가 관련 규제는 다음과 같음

(25조~30조, 35조 : 2012/3/23 제정, 3/30 시행)

- 호가의 제출
 - 정제업자(직영대리점 포함)의 경우 해당 정제업자의 상표, 알뜰상표 또는 자가상표에 대한 매도호가
 - 수출입업자의 경우 알뜰상표 또는 자가상표에 대한 매도호가
 - 대리점의 경우 모든 상표에 대한 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
 - 주유소의 경우 모든 상표에 대한 매수호가
 - 단, 상표권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대리점은 해당 정제업자의 상표에 대한 매도호가를 제출할 수 없음
 - 또한, 전속공급계약을 체결한 주유소는 해당 정제업자의 상표에 한하여 매수호가를 제출할 수 있음
 - 호가접수시간은 매매거래시간
- 호가의 종류는 저유소·석유제품의 종류·상표, 수량 및 가격을 지정하는 호가로서 지정한 가격 또는 그 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려는 호가 즉 지정가호가로 함
- 호가수량단위 및 매매수량단위는 각각 2만리터로 하며, 호가가격단위는 0.5원임
- 호가한도수량은 최소 2만 리터에서 최대 50만 리터로 함
- 호가 제출 시 또는 미리 호가수량단위당 150만원의 거래보증금을 거래소 명의의 보증금계좌에 현금으로 예탁하여야 함

- 단,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보증금을 현금에 갈음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로 예탁 가능
- 호가는 각 저유소의 종목별로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가격의 제한을 받음
- 기준가격이라 함은 1)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 체결가격, 2) 1호 가격이 없는 경우 직전 매매거래일에 체결된 동종 석유제품의 동일 상표의 전체 매매거래의 거래량 가중평균가격, 3) 1호와 2호 가격이 없는 경우 직전 매매거래일에 체결된 석유제품의 종류별 매매거래의 거래량 가중평균가격을 의미
 - 호가는 각 저유소의 종목별 기준가격에 5% 상하한의 제한을 받음

<부록 그림 III-1> 석유 전자상거래시장 참가자 구조



□ 경쟁매매원칙(36조~38조 : 2012/3/23 제정, 3/30 시행)

- 경쟁매매에 있어서의 호가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낮은 가격의 매도호가는 높은 가격의 매도호가에 우선, 높은 가격의 매수호가는 낮은 가격의 매수호가에 우선
 - 가격이 동일한 호가 간에는 접수시간에 따라 먼저 접수된 호가가 나중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
- 종목별로 매매거래일의 최초 체결가격과 최종 체결가격은 단일가격에 의한 경쟁매매에 따라 결정함
- 그 외의 매매거래는 복수가격에 의한 경쟁매매에 따름

□ 참가자가 저유소·석유제품의 종류·상표, 가격 및 수량에 관하여 협의상대거래의 내용을 거래소에 신청하는 경우 협의 내용에 따라 매매거래 체결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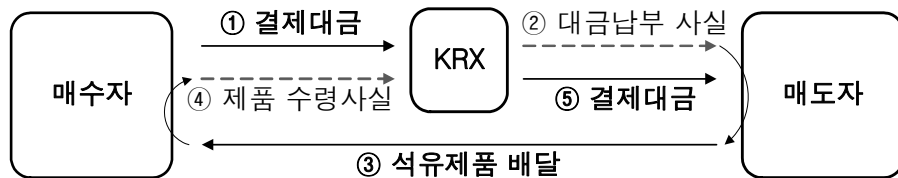
(39조 : 2012/3/23 제정, 3/30 시행)

- 협의상대거래의 신청시간은 10시부터 15시 30분까지이며 협의상대 거래를 거래소 신청 후에는 참가자는 해당 신청을 취소·정정하여서는 안 됨

□ 매매거래의 당사자는 매매체결될 때마다 석유제품과 결제대금을 일정 시한 이내에 지체없이 직접 수수하여 결제함

(45조 : 2012/3/23 제정, 3/30 시행)

- 결제관리를 위해서 결제대금은 거래소 명의의 결제계좌를 경유하여 수수하여야 하는데 이때 거래소는 매도자 및 매수자를 대리, 대행하거나 그 이행을 보조하지는 않으며, 이에 대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 참가자들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53조 : 2012/3/23 제정, 3/30 시행)

- 취득 또는 처분의 의사 없이 통정매매거래,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장거래
- 시세조정행위
- 시세를 상승·하락 또는 고정·안정시키기 위한 담합행위
- 그 밖에 매매거래의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행위 등

□ 거래소는 매매거래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안정을 위하여 매매거래 상황을 감시할 수 있음

(54조 : 2012/3/23 제정, 3/30 시행)

- 이때 거래소는 참가자에 대하여 매매거래와 관련된 업무 또는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 참고자료의 제출, 사실과 상황에 관한 진술서의 제출 및 진술을 위한 출석 요구 및 매매거래와 관련된 업무, 재산상황, 장부, 서류 기타의 문서 조사가 가능함

□ 참가자는 거래소에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56조 : 2012/3/23 제정, 3/30 시행)

- 거래소는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조정 전 합의 권고 가능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분쟁을 조정할 수 있음

□ 참가자 가입요건을 정비함

(5조 2호, 3호 : 2012/5/2 개정, 5/7 시행)

- 가입신청일 현재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등으로 인하여 석유사업법에 따라 사업정지처분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기존의 경우 가입신청일 현재 그 처분 또는 조치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가입을 허용하였음
- 또한 수출입업자 또는 대리점의 경우 가입신청일 현재 석유사업자로 등록이후 1년 경과 시점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참가자에 대한 조치로 다른 참가자에 대한 피해 상황을 구체화함

(15조 1항 5호 : 2012/5/2 개정, 5/7 시행)

- 대리점 등의 세금탈루 등 조세 관련 법규 위반으로 다른 참가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함

□ 알뜰상표에 대한 호가 관련 규정을 정비함

(25조 1항 : 2012/5/2 개정, 5/7 시행)

- 알뜰상표의 매도호가 제출자로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농협중앙회를 추가하고 알뜰상표에 대한 매수호가는 알뜰상표의 주유소에 제한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거래소 지정종목의 경우 호가수량단위 및 매매수량단위의 수량에 대하여 온도환산 방식을 적용함

(28조 2항, 45조 4항 : 2012/5/2 개정, 5/7 시행)

- 정유사 공장에서 직접 출하 시 고온에 따른 부피 팽창으로 과대수량이 측정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거래소가 지정하는 종목에 한하여 석유제품의 수량 계측 시 온도환산방식을 적용하도록 함
- 온도환산방식 적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거래소의 결제대금과 달리 결제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해당 차액을 당사자간 직접 수수하도록 함

□ 거래보증금 예탁 면제범위를 확대함

(30조 1항 : 2012/5/2 개정, 5/7 시행)

- 기존 SK에너지(주), GS칼텍스(주), 현대오일뱅크(주), 에쓰-오일(주), 한국석유공사, 그 밖에 거래소가 인정하는 자에서 삼성토탈을 포함하는 모든 정제업자, 석유공사 이외에 도로공사, 농협중앙회 및 매매거래실적이 일정수량이 있는 사업자, 그 밖에 거래소가 인정하는 자로 확대함
 - 매매거래실적이 일정수량이 있는 사업자란 직전 주를 포함한 직전 3주간의 매매거래 실적이 수출입업자와 대리점의 경우 20만리터, 주유소의 경우 10만리터 이상이면서 직전 1주간의 매매거래실적이 4만리터 이상인 석유사업자를 의미하며 매주 금요일 거래종료후 평가하여 다음주 월요일부터 면제함

- 협의상대거래에 대한 수량제한을 완화하고 출하증명서 사본의 제출을 의무화함

(39조 2항 4호, 39조 6항 : 2012/5/2 개정, 5/7 시행)

- 협의상대거래의 최소 수량을 기존 20만리터에서 10만리터로 축소함
 - 알뜰상표 종목에서 알뜰상표의 주유소가 석유제품을 매수하는 경우 4만리터를 최소 수량으로 조정함
- 또한 매수자에게 석유제품 인수 후 다음 매매거래일까지 출하증명서 사본을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함

- 매매체결후 매매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출하도, 도착도의 배송조건 구분 변경을 허용함

(43조 1항 : 2012/5/2 개정, 5/7 시행)

- 기존 매수자의 호가 입력 시 일반적으로 정하도록 한 배송조건을 매매체결후 1시간까지 매매당사자간 합의하에 출하도와 도착도를 구분하여 변경을 허용하고 이를 거래소에 통지하도록 함

- 배송비 관련 규정을 정비함(46조 1항 : 2012/5/2 개정, 5/7 시행)

- 당사자간 합의한 배송비가 배송요율표보다 낮은 경우 합의된 금액으로 하도록 함

- 거래보증금 면제자의 결제불이행 시 거래보증금 인상 및 지연손해금 산정방식을 변경함

(52조 : 2012/5/2 개정, 5/7 시행)

- 참가자가 거래보증금을 미납하는 경우 호가수량단위당 500만원의 거래보증금을 부과함
 - 거래소는 해당 거래보증금이 납부될 때까지 거래보증금의 미납부사실을 홈페이지 및 호가입력프로그램에 게시하여야 함

- 거래보증금은 통지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통지일의 다음날부터 해당 거래보증금액에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부과함

□ 종목 단순화 및 상장종목 확대

(20조 1항, 24조 2항·5항, 46조 1항 : 2012/7/13 개정, 7/23 시행)

- 종래 전국 36개 저유소 기준으로 세분화된 정유사 상표 종목을 6개 권역 기준으로 변경함
 - 권역은 거래소가 정한 석유저장시설인 저유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수도권, 강원, 충청, 영남, 호남, 제주의 6개 권역으로 구분됨
 - 이에 따라 정유사 상표종목이 종래 135개에서 70개로 축소됨으로써 거래 유동성 제고가 기대됨
- 다만, 특정 지역위주로 영업하여 권역 단위로 매매가 곤란한 경우는 현행 저유소 기준 유지함
 - 수입사와 대리점이 주로 매매하는 자가상표 종목과 정유사의 온도보정종목
- 전자상거래의 상장종목 및 매매지역을 확대
 - 제주지역 5개 상표(정유 4사, 자가)를 신규상장(10종목)함
 - 알뜰상표를 종래 4개 저유소(8개 종목)에서 5개 권역(10개 종목)으로 확대함
- 권역 종목의 배송비는 해당 권역 내에서 매수자가 호가제출 시 지정한 저유소를 기준으로 산정함

□ 거래소에 의한 주유소 호가입력 대행

(11조 2항·3항, 31조 1항, 42조의2 등 : 2012/7/13 개정, 7/23 시행)

- 온라인에 익숙치 않은 주유소인 참가자가 거래소에 전화, 모사전송 등으로 요청하면 주유소를 대신하여 거래소가 전산시스템에 호가입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참가자는 최초의 호가입력 대행 요청 전에 거래소와 호가입력대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 호가입력대행의 범위·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이외에도 호가입력 대행으로 거래소 착오 발생 시 착오매매의 정정 방법이나 최소로 인한 손익에 대해 호가입력대행계약에서 정함

<증권·파생상품시장에서의 위탁과 전자상거래의 호가 대행 차이>

위탁

위탁자를 대신하여 수탁자(금융투자회사)가 수탁자의 명의로 호가를 제출하고 이에 따른 결제이행의 책임도 수탁자가 부담

호가입력 대행

참가자를 대신하여 거래소가 참가자의 명의로 호가입력을 하고 매매거래의 결제 이행책임은 해당 참가자가 부담

거래시간의 확대

(20조 2항, 39조 4항, 45조 1항, 48조 2항 : 2012/7/13 개정, 7/23 시행)

- 거래 종료시간을 1시간 연장하여 종래 10시~16시이던 매매시간을 10시~17시로 확대함
 - 매매시간 연장에 따라 현금 결제시한(17시 → 18시) 및 당일 결제대금 지급시한(18시 → 19시)을 조정
- 협의상대매매의 매매시간을 종래 10시~15:30분에서 10시~16:50분으로 연장함

수출입업자의 참여 편리성 제고

(5조 3호, 6조의2, 25조 1항 : 2012/7/13 개정, 7/23 시행)

- 기존 대리점이 신규로 수출입업을 등록하거나 수출입업자가 대리점을 신규 등록할 경우, 가입 신청과 심사 등의 별도의 참가자 가

입절차 없이도 신규 석유사업 등록증을 제출하면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거래소는 석유사업 등록증을 제출받은 경우 필요한 자료의 징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수출입업과 대리점을 겸업하는 참가자는 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를 모두 제출할 수 있음

— 수출입업자의 석유사업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이후에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 요건을 폐지

- 대리점은 종래와 마찬가지로 석유사업 등록시점부터 1년 경과 후에 가입을 허용

□ 협의상대거래의 호가수량단위 조정

(39조 2항 4호 : 2012/7/13 개정, 7/23 시행)

— 비표준 매매거래인 협의상대거래에 한하여 10만리터 이상 200만리터 내에서 기존 2만리터 단위의 호가에서 2천리터 단위의 정수배 호가로 하향함

- 수송차량의 크기는 2만리터가 가장 일반적이거나, 1만 2천리터, 2만 4리터, 2만 8천리터 등으로 다양한 것을 감안한 조치
- 호가수량단위의 예 : (종래) 10만, 12만, 14만 등 → (개정) 10만, 10만 2천, 10만 4천, 12만, 12만 2천 등(단위: 리터)

□ 출하희망 저유소 변경 허용

(43조 1항 : 2012/7/13 개정, 7/23 시행)

— 매도자가 매수자와 협의하에 출하 저유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결제이행능력을 제고함

- 매수자 지정 저유소의 물량 부족시, 배송차량 미확보, 교통체증,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 권역 기준 종목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 권역 내 저유소 중에서 변경

□ 참가자 요청에 따른 거래보증금 미환급

(30조 6항 단서 : 2012/7/13 개정, 7/23 시행)

- 참가자 요청 시 당일 사용된 거래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익일 매매의 거래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거래보증금 미환급에 따른 이자는 거래소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안분배분
 - 거래보증금은 2만 리터당 150만원(협의상대거래는 2천 리터당 15만원)임

□ 결제불이행에 대한 조치

(51조 1항, 52조 1항 : 2012/7/13 개정, 7/23 시행)

- 매수 참가자가 천재지변, 결제은행의 전산시스템 오류, 그 밖의 거래소가 인정하는 사유로 현금결제시한(18시)까지 결제가 곤란한 경우 결제 이연을 허용함
 - 해당 매매거래일 내에서 거래소가 정하는 시간까지 결제할 수 있음
- 매도 참가자가 일부 수량에 대해서 결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결제가 이행되지 않은 수량을 기준으로 거래보증금 및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도록 함

□ 법인인감증명 사본 제출 폐지

(별지서식 1호 : 2012/7/13 개정, 7/23 시행)

- 법인사업자의 가입신청 시 법인인감증명 사본 제출 폐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은행통장 사본으로 법인실체의 대체 확인 가능

□ 수입석유제품에 대한 가격모니터링 체계 구축

(13조의2, 14조 2항·3항 : 2012/11/19 개정·시행)

- 참가자는 수입석유제품의 세금혜택이 소비자에게 많이 분배될 수 있는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해야 함

- 수입석유제품에 대한 가격모니터링을 위하여 매수자는 인수한 내역을 거래소에 통지하고 매도자는 인도내역의 증빙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함
 - 매수자는 수입석유제품에 대한 저유소에서 출하일시, 수송차량번호 등을 통지(협의상대거래 포함)
 - 매도자는 수입석유제품에 대한 출하증빙서류를 제출(협의상대거래 포함)

□ 수입석유제품에 대한 세금혜택 등을 자신의 과도한 수익으로 챙긴 주유소에 대해서는 분기단위로 평가하여 제재 조치

(15조 : 2012/11/19 개정 · 시행)

- 세금혜택 등에 따른 전자상거래 수익률에 따른 제재
 - 전국주유소의 평균수익률과 해당 지역주유소의 평균수익률에 비해 각각 20% 이상 초과하면서 전자상거래 수익이 전국주유소의 평균수익 대비 리터당 40원 이상 큰 주유소에 대해 제재
 - 제재 심의 전에 의견진술 기회부여 및 석유제품위원회에서 제재수준 심의

□ 일반판매소의 참가 허용 및 대리점의 가입요건 완화

(3조, 5조, 25조 : 2012/11/19 개정 · 시행)

- 석유판매업자인 일반판매소에 대해 일정요건 충족 시 가입을 허용하고 경유에 한해 매수호가 제출 허용
 - 석유사업자 등록 1년 미만인 대리점이 연간 총매출액 50억원 이상이면서 과거 2년간 세금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가입 허용

□ 수출입업과 대리점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복수 ID로 자전거래를 통하여 법인세를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 ID 1개 부여를 명확화

(7조 3항 : 2012/11/19 개정 · 시행)

자전거래(Cross-Trading)

대량으로 주식을 거래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매매를 중개하는 증권회사가 같은 주식을 동일가격으로 동일수량의 매도·매수 주문을 내어 매매거래를 체결시키는 것으로 거래량 급변동으로 인해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주로 기업이 장부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해 보유 중인 주식을 판 뒤 곧바로 동일한 가격과 동일한 수량으로 되사는 경우 또는 그룹 계열사끼리 지분을 주고받을 때 나타남

□ 온도환산종목에 대한 온도환산수량과 온도보정금액 산출방법 명확화 및 인수수량에 대한 이의제기 시점 명확화

(28조 2항, 45조 4항, 48조 6항, 50조 7항 : 2012/11/19 개정·시행)

- 온도환산종목의 경우 매매수량단위는 온도환산수량으로 하고, 결제 자금은 결제대금과 온도보정금액간 차액을 당사자 간 직접 수수
 - 온도환산수량은 석유제품의 부피환산계수에 2만리터를 곱하여 산출
 - 온도보정금액은 온도환산수량에 체결가격을 곱하여 산출
 - 석유제품의 부피환산계수는 미국재료시험학회(ASTM)의 환산계수 등 국내 석유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계수를 활용
- 온도환산적용종목에서 석유제품을 매도한 자는 출하전표, 온도환산 수량 및 온도보정금액을 거래소에 통지
- 매도자는 출하증빙서류에 해당 저유소에서 측정한 출하온도가 기재되도록 저유소에게 요구 의무화
- 매수자는 인수도 수량에 이의가 있는 경우 매수자의 저장시설 입고 전에 제기해야 하며 입고이후는 불가

□ 협의상대거래의 경쟁매매 유도를 위해 전월 거래량의 일정수준 이상 경쟁거래 시 협의상대거래 신청 허용

(39조 6항 : 2012/11/19 개정·시행)

□ 협의상대거래에 대한 종목별 시세 공표

(44조 1항 : 2012/11/19 개정 · 시행)

- 경쟁매매에 대한 영향 최소화 및 가격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매거래시간종료 후 종목별 시세, 거래량, 거래대금 공표

□ 정유사가 자신의 상표권 없이 공급하는 혼합판매용 자가상표 추가 상장 및 주유소의 혼합판매계약 내용 통보

(24조 4항, 14조 1항 9호, 25조 : 2012/11/19 개정 · 시행)

- 정유사의 혼합판매종목 설정근거를 마련
- 주유소가 정제업자 또는 그의 대리점과 혼합판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내용을 거래소에 통보
- 혼합판매목적의 자가상표(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알뜰상표가 아닌 석유제품의 상표를 말함)종목에는 정유사 4사만 매도 허용

혼합판매(석유제품 복수상표 자율판매)

폴사인 주유소에서 타사 또는 수입석유제품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정유사와 주유소간 자유로운 정률 또는 물량 계약에 따라 일정부분의 물량을 혼합판매하는 제도로 금년 9월부터 시행 중

□ 석유제품위원회 심의사항 추가 및 위원 변경

(59조 : 2012/11/19 개정 · 시행)

- 가격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참가자 제재심의 근거 마련
- 참가자 위원은 축소하되 객관적 · 중립적 전문가 위원 증대
 - 석유제품위원회(15인 이내) : 정제 · 수출입 2명, 대리점 · 주유소 · 판매소 3명, 유관협회 2명, 유관기관 2명, 학계 4명, 공무원 1명(안전별 7인 이내 회의)

21. 전문평가기관제도 세부운영기준

- 전문평가 기간을 연장하고 평가회의 2회 이상 의무화 조항 신설
(6조 8항·9항 : 2012/9/1 개정·시행)
 - 전문평가의 내실 있는 운영 및 충분한 평가기간 확보를 위해 평가기간을 현행 4주에서 6주로 연장
 - 전문평가기관은 거래소에 기술평가서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기업에 대한 실사와 의견청취를 위해 2회 이상 평가회의 개최
 - 기존의 평가회의는 기업실사 성격으로 Kick-off 미팅 1회만 실시

- 전문평가 신청기업 등에 대한 평가결과 및 내용의 공개근거를 신설
(7조 : 2012/9/1 개정·시행)
 -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도 제고를 위해 각 전문평가기관의 종합평가결과에 한해 해당 기업 및 상장주선인에게 공개할 수 있음
 - 단, 기술평가가 상장예비심사 청구의 전제조건인 신성장동력기업에 한함

- 전문평가 후 6월 이내 재신청 제한에 대한 예외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재신청 남용방지를 위해 재평가 결과의 재평가신청 제한조항 신설
(10조 : 2012/9/1 개정·시행)
 - 전문평가기관 간 등급격차 과다, 직전평가결과 적격기업의 평가 탈락 등의 경우
 - 전문평가기관으로 지정된 2개의 기관이 산정한 종합평가등급의 차이가 2등급 이상인 경우로서 이 중 1개 기관의 종합평가등급이 A 이상인 경우
 - 최종 평가등급이 BBB 이하인 경우로서 해당 최종 평가등급 확정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다른 전문평가에서 A 이상의 최종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 녹색인증기업이 1개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전문평가를 받은 경우로서 최종 평가등급이 BBB인 경우
 - 그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예외적인 전문평가 재신청 허용의 남용 방지를 위하여 재평가 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재평가 신청은 제한

22. 정보보호관리지침

-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접속기록을 10년 이상 보존하도록 함
(10조 : 2012/10/15 개정, 10/16 시행)
- 시장시스템 · 상장공시시스템 · 시장감시시스템의 가동기록

23. 소송지원 운영지침

- 주민등록번호 대체 확인 수단 도입
(별지 제1호~3호 : 2012/10/15 개정, 10/22 시행)
- 소송지원신청서, 위임장 및 소송신청취하서상의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 대리인 위임 인감증명 제출 폐지
(별지 제2호 : 2012/10/15 개정, 10/22 시행)
- 위임장 제출 시 인감증명서의 제출 없이 위임인을 통한 소송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첨부요건을 삭제

24. 분쟁조정규정 시행세칙

□ 주민등록번호 대체 확인 수단 도입

(별지 제1호~4호 및 9호 : 2012/10/15 개정, 10/22 시행)

- 분쟁조정신청서, 조정신청조서, 위임장 등 각종 서식상의 주민번호 기입란 삭제 후 생년월일의 기입으로 대체

□ 대리인 위임 인감증명 제출 폐지

(별지 제3호 : 2012/10/15 개정, 10/22 시행)

- 위임장 제출 시 인감증명서 제출 없이 위임인을 통한 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첨부요건을 삭제

25. 공익 신고자 보호 및 포상에 관한 지침

□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10조 1항 : 2012/10/17 개정 · 시행)

- 임직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를 신고하는 경우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포상금 지급기준
 - 임직원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176조(시세조종행위의 금지), 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행위 신고 시 : 1,000만원

26.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기준

□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3조 : 2012/10/17 개정 · 시행)

- 자본시장법 시행령 64조 2항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 및 모집·매출 금지
 -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예탁증권
 - 주권 관련 사채권으로서 지분증권이나 증권예탁증권과 관련된 것
 - 지분증권, 증권예탁증권이나 이들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파생결합증권
 - 장내파생상품
- 단, 지수형 추가연계증권을 제외하며, 임직원이 되기 전에 취득한 금융투자상품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인 매매 허용

□ 투자금융상품 처분방법 및 절차의 구체화

(4조 2항, 9조 1항 : 2012/10/17 개정 · 시행)

- 지수형 추가연계증권 및 예외적으로 매매가 허용되는 금융투자상품(투자금융상품)을 처분하고자 하는 임직원은 사전에 신고하도록 함
- 계좌개설 신고도 사전 신고 시까지 하도록 명시
 - 단, 지수형 추가연계증권은 매매거래가 있는 날이 속한 분기 종료 후 익월 15일까지 신고

□ 시장관련부서의 매매제한과 사전신고의무 삭제

(5조, 12조 1항 : 2012/10/17 개정 · 시행)

- 투자금융상품의 매매와 관련해 사전신고를 의무화함에 따라 시장관련부서에 대한 규제(매매제한과 사전신고의무)의 실익이 없어 삭제

- 매매제한 등의 적용예외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금융상품으로 지정

(6조 삭제 : 2012/10/17 개정 · 시행)

- 자구 수정(9조, 10조, 13조, 16조 : 2012/10/17 개정 · 시행)

- “시장관련부서” 삭제
- “규제금융상품”을 “투자금융상품”으로 변경

- 개정 전 적법절차에 따라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을 적용

(부칙 2조 : 2012/10/17 개정 · 시행)

27. 증권 및 관련금융상품 표준코드 관리기준

- 속성코드, 발행체고유코드, 종목구분코드 및 단축속성코드 구성
(8조 1항, 9조 6항, 10조 13항, 16조 2항 : 2012/12/5 개정, 2013/1/15 시행)

- 어음 속성코드 “F”에 전자단기사채등 포함
- 어음 및 전자단기사채등 발행체고유코드는 발행기관명코드 5자리로 구성
- 어음 및 전자단기사채등 종목구분코드는 연중발생순위코드 2자리 및 발행년코드 1자리로 구성
- 어음 단축속성코드 “P”에 전자단기사채등 포함

IV. 금융투자협회 규정

1.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유사해외통화선물(FX마진) 손익계좌비율을 협회에 제출하여 공시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3-34조 : 2012/1/17 개정, 3/5 시행)

- 이는 FX마진거래 투자자의 손익현황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 투기적 거래를 지양하고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는 합리적 투자로 유도하기 위함
 - 금융투자회사는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직전 4개 분기에 대한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손실계좌비율과 이익계좌비율을 협회에 제출하고 협회는 동 비율을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함
 - 손실계좌비율이란 손익금액 0이 아닌 계좌수를 '분기중 거래 실적' 또는 '분기말 미결제약정'을 보유한 계좌수로 나눈 것을 의미함
 - 이익계좌비율이란 1에서 손실계좌비율을 (-) 하는 것을 의미함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관한 위험고지'에 투자자와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간의 이해상충의 위험을 명시하고 손익계좌비율을 제시하도록 신설함

(별표 2-1 : 2012/1/17 개정, 3/5 시행)

- 이는 FX마진거래의 위험을 투자자가 정확히 인식하고 보다 신중한 투자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임
- 투자자 거래 손익과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손익의 상충 가능성 및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의 신용위험을 명기하고 손익계좌비율을 공시하도록 개정함

- 「신용정보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 홍보 또는 판매목적의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선택적 동의사항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등 <별지 제2호> 서식을 개정함에 따라 관련 서식을 변경함
(3-18조, 별지 20호 : 2012/2/1 개정 · 시행)

- 금융투자회사의 투자광고관련 금지행위 중 공정한 거래질서 및 건전한 투자문화를 저해하는 행위 항목을 구체적으로 실시
(별표 10 : 2012/3/9 개정 · 시행)

- 기존 투자위험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가격변동위험, 국가위험, 환율변동위험 등의 투자위험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으로 명시

- 파생결합증권의 간이투자설명서 이용 시 핵심설명서 교부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

(2-5조 3항 : 2012/3/29 개정, 4/1 시행)

- 파생결합증권 판매 시 교부되는 핵심설명서가 법령상 간이투자설명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오용될 소지가 상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 핵심설명서는 본질은 자본시장법상의 간이투자설명서에 해당하지만 기재내용이 단순하고 법적 공시서류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책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25조)의 적용이 곤란하였음

- 이에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핵심설명서 교부의무를 배제함

- 현금위탁증거금을 현금예탁필요액으로 변경함

(3-5조 3호 : 2012/4/13 개정, 5/2 시행)

- 2012년 2월 29일 감사원은 파생상품 투자자이용료 지급에서 제외되는 현금위탁증거금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현금위탁증거금 초과한 부분에 대한 적절한 이용료 지급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함

- 이에 현금위탁증거금을 현금예탁필요액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현금예탁필요액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예탁한 위탁증거금을 예탁금 이용료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 금융투자회사의 공시사항에 회계기간 변경 결정 내용등(금융투자업규정 3-70조 1항 6호)을 추가함

(2-59조 : 2012/4/24 개정, 5/2 시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6조)으로 금융투자회사의 기존 3월 결산 외에 12월 결산이 가능해짐
- 이에 「금융투자업규정」에서 회계기간 변경 결정한 경우를 금융투자회사 공시사항으로 추가함에 따라 하위 동 규정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개정함

□ 펀드 투자권유 방식 개선

(2-8조 10호, 2-8조의2 7항~8항 : 2012/7/10 개정, 7/11 시행)

- 일반투자자에게 계열회사등인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펀드만을 투자권유하거나 안내하는 행위를 금지함
 - 계열회사등은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로서 자기가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회사, 상호간 임원 겸임 또는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 등의 사실이 있는 회사 등을 말함(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 10호)
- 펀드 판매회사는 계열회사등이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하는 경우 계열 자산운용사 펀드라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계열사의 펀드도 함께 투자권유하도록 함
-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효과 등을 감안하여 전문투자자를 제외한 일반투자자에게만 적용함

□ 판매비중의 공시(2-8조의2 9항 1호 : 2012/7/10 개정, 7/11 시행)

- 펀드 판매회사는 당해 회사 홈페이지와 협회 인터넷홈페이지에 판매한 펀드에 대한 계열 및 비계열 자산운용사 판매비중·수익률·비용을 비교 공시하도록 함

□ 펀드 불완전판매 제재사실 공시

(2-8조의2 9항 2호 : 2012/7/10 개정, 7/11 시행)

- 투자자의 펀드 판매사 선택을 돕기 위해 감독당국으로부터 펀드 불완전판매 제재를 받은 판매회사는 그 사실을 해당 회사 및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함

□ 연금저축펀드를 운용하는 집합투자회사에 금융업권간 통일된 기준으로 산출된 상품수익률 및 수수료율 공시의무 신설

(4-72조의 2 : 2012/9/18 개정, 9/30 시행)

- 기존의 업권별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 및 수수료율 공시기준이 서로 달라 타업권 상품과 단순비교 불가
 -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투자자가 각 업권별 상품에 투자했을 때의 투자성과를 공시하도록 하여 업권별 상품비교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집합투자회사는 연금저축펀드별 수익률 및 수수료율을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산정해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그에 관한 자료를 협회에 제출해야 함

□ 연금저축상품간 계약이전을 원활히 하여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연금저축펀드 판매회사에 연금저축펀드의 기간별 계약유지율과 계약이전수수료 공시의무 부과 및 관련서식 신설

(4-72조의 2 2항~4항 : 2012/9/18 개정, 9/30 시행)

- 연금저축펀드 판매회사는 연금저축펀드별 계약유지율 및 계약이전 수수료를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그에 관한 자료를 협회에 제출해야 함
- 연금저축펀드 판매회사는 협회가 공시하는 연금저축펀드별 수익률 및 수수료율 중 해당 판매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수익률 및 수수료율을 제출마감일 후 15일 이내에 해당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함

□ 선지급 대상 확대(2012/10/26 개정, 11/1 시행)

- 기존의 규정은 선지급가능 기관을 토지비를 대여한 대출금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개발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다양한 기관의 참여가 곤란한 문제점이 있었음
 - 위탁자의 토지 취득을 위한 자금조달처는 금융기관 외에도 연기금, 공제회, 펀드, 시공사, 일반법인, 개인 등 다양
- 선지급이 가능한 자의 범위를 대출금융기관에서 토지비를 대여한 자로 확대함(관리형 토지신탁)

□ 용어의 정의 명확화(2012/10/26 개정, 11/1 시행)

- 관리형 토지신탁의 경우 선지급 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시공사의 책임준공약정이 필요한데 사업 참여자간 책임준공에 대한 해석이 달라 분쟁의 소지가 있음
- 책임준공의 정의를 명확화함
 - 책임준공 : '천재지변, 내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공사가 공사비 지급 지연 또는 민원 등 여하한 이유로도 공사를 중단하거나 지연할 수 없고 예정된 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를 득하기로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
- 해당 신탁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논란 방지

□ 분양계약서 기재사항 명확화(2012/10/26 개정, 11/1 시행)

- 기존 분양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되어있는 선지급기준 부분도 수정하여 선지급대상 범위를 금융기관 외에 토지비를 대여한 자로 확대
 - 기존 기준은 분양기금이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목적으로 금융기관의 PF대출금 상환인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어 분양계약서 기재사항에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의 지급 등에 사용될 수 있음을 명기(관리형 토지신탁)
- 분양대금의 사용에 대해 수분양자에게 명확히 고지함으로써 수분양자 보호 강화 및 향후 선지급 등 분양대금의 비용 집행과 관련된 분쟁 방지

□ 대출원리금 상환제한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해소

(2012/10/26 개정, 11/1 시행)

- 분양이 양호하여 사업비 및 토지비 비율 선지급을 지출하고도 과도한 잉여현금을 보유할 경우 사업수지 개선(이자비용 절감)을 위해 추가적인 토지비 지급이 필요하지만 기존의 기준은 추가지급을 금지
- 이에 따라 잉여자산의 운용수익보다 토지비 대출 이자비용이 높아 사업수지 악화가 발생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수익자의 수익이 감소
 - 토지비, 사업비의 집행 후 남은 분양수입금은 신탁재산 운용 시 발생하는 여유자금으로 보아 운용방법을 금융기관 예치, 국채증권 등의 매수 등 안전자산위주로 운용하도록 자본시장법 제106조(여유자금의 운용)로 제한
- 토지신탁에서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토지비 선지급 가능금액이 확대될 수 있게 추가적인 기준 설정(관리형토지신탁)
 -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최소 사업비 이상의 분양대금 수입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예상 분양수입금이 사업비의 110%를 초과
 - 초기 사업비의 지급이 가능하고, 임의로 계약해지가 불가능한 경우 : 전체 공사비(부지 매입비 제외)의 50% 이상 투입이 확인된 경우(단, 아파트의 경우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로서 직전 회차 중 도금이 완납된 때

- 시공사의 신용도를 고려하여 책임준공 약정 이행가능성이 높은 경우 : 시공사 신용등급 BBB+ 이상

— 추가된 선지급 금액 산정방식

- 선지급 금액 \leq 분양수입금 - 사업비

- 선지급기준의 탄력적 적용으로 분양율이 양호한 사업의 경우 잉여 분양수입금을 토지비의 상환에 사용할 수 있어 시공사의 지급보증 조기 해소 및 사업수지 개선이 예상됨

□ 지급기준 상 적용예외 부분의 자의적인 해석 방지

(2012/10/26 개정, 11/1 시행)

- 기존 기준상 적용예외의 경우 시공사의 관계회사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할 수 있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해석상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범위를 명확화 함(관리형토지신탁)

□ 적용예외 조항 개정(2012/10/26 개정, 11/1 시행)

- 기존 조항상 1인 단독매수자가 확정된 경우 일정요건을 추가하여 적용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나 매수자가 수인(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등)일 경우 적용예외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 문제로 되어 왔음
- 이에 수인의 매수자(기관 등)가 분양물건을 일괄 매수하는 경우를 적용예외에 포함(관리형 토지신탁)하도록 함
- 단, 다수의 매수자(수분양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 제외)가 일괄매입 하는 경우 선지급조건의 예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수자 전원의 별도 서면동의서 징구를 의무화 함
- 매입자금의 규모가 크거나 리스크 분담을 위해 수인의 매수자가 공유 방식 등으로 일괄매입 하는 경우에도 선지급 기준의 예외로 인정하여 펀드 등 기관투자자의 개발사업 투자 참여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
- 토지비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비용 감소금액 만큼 투자수익 증가 가능

□ 금지사항 보완(2012/10/26 개정, 11/1 시행)

- 기존 조항에서 선지급기준 적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탁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하는 대출약정 효력이 신탁계약의 효력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의 신탁계약서 체결을 금지하고 있음
- 이로 인해 대출약정의 효력과 신탁계약의 효력이 동일한 것으로 보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토지비 상환 시 선지급기준과 대출약정과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대출약정의 효력이 신탁계약의 효력과 동등하거나 우선하는 내용의 신탁체결을 금지함으로써 충돌방지가 가능

□ 집합투자업자 등 관계인수인 거래 시 거래내역 제출규정 신설

(2-62조의2 : 2012/12/17 개정 · 시행 단, 7-5조는 2013/1/2 시행)

-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예외 확대로 인수가 가능해진 채권을 관계인수인으로부터 인수한 경우의 세부 공시내용 및 절차를 정함
 - 매수한 채권의 종목 및 수량 등 거래내역을 공시하고자 할 경우,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협회로 제출

□ 은행 등의 채권 장외거래내역 집중 · 관리근거 마련

(7-5조 : 2012/12/17 개정 · 시행 단, 7-5조는 2013/1/2 시행)

-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은행, 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의 채권 장외거래 상세내역 보고 근거 마련
 - 해당 은행 등이 증권회사와 거래한 내역을 거래당일 19시까지 일괄 보고할 수 있음

2.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자산유동화기업어음증권(ABCP) 거래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개선함
(52조, 53조 : 2012/1/11 개정, 1/16 시행)

- 자산유동화기업어음증권의 거래내역으로 거래일, 발행회사, 기초자산, 신용등급, 거래구분 그 밖에 거래내역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함
 - 자산유동화기업어음증권이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증권·파생상품·대출채권 등 유동화대상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발행한 기업어음증권을 의미함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손익계좌비율의 산정기준은 별지 제53호를 통해 마련함

(58조 : 2012/1/18 개정, 3/5 시행)

- 손실계좌비율이란 해당 분기 동안 거래가 있거나 분기초부터 분기말까지 계속 미결제약정을 보유한 유사해외통화선물 계좌 중에서 손익금액이 0과 같거나 작은 계좌수의 비율
- 이익계좌비율이란 100% - 손실계좌비율
- 계좌별 손익금액이란 (당분기말 계좌평가액 - 직전분기말 계좌평가액) + (분기중 계좌인출총액 - 분기중 계좌유입총액)
 - 해당분기동안 거래가 있거나, 분기초부터 분기말까지 계속 미결제약정을 보유한 계좌가 대상임
 - 당분기말 계좌평가액이란 당분기말 장종료후 현금잔액 + 당분기말 증가로 평가한 미결제포지션의 평가액
 - 직전분기말 계좌평가액이란 직전분기말 장종료후 현금잔액 + 직전분기말 증가로 평가한 미결제포지션의 평가액
 - 분기중 계좌인출총액이란 분기중에 발생한 현금 출금액
 - 분기중 계좌유입총액이란 분기중에 발생한 현금 입금액

- 채권거래전용시스템 이용자 신고 부분과 호가보고책임자 신고 부분을 분리하여 규정함

(별지 제30호 : 2012/1/18 개정, 3/5 시행)

-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거래전용시스템 이용자의 신고서 서식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함

- 유사해외통화선물의 평균스프레드 산정 시 종전 체결정보에서 1분 단위 호가 정보를 이용토록 개정함

(2012/2/1 개정 · 시행)

- 평균스프레드 산정에 있어 기존 체결된 왕복계약(진입 및 청산)에서 발생한 스프레드의 단순 평균치로서 간접수수료와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FDM)수취수수료의 합계를 직전분기 1분단위 호가정보의 스프레드 평균치로서 간접수수료와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FDM)수취수수료의 합계로 변경함

- 변경대상 제외펀드에서 사모펀드와 판매보수이연(CDSC) 펀드를 제외함

(40-1조 3호, 5호 : 2012/2/24 개정, 3/2 시행)

- 기존에는 전산시스템 미비 등을 이유로 사모펀드 및 공모펀드 중 판매보수이연(CDSC) 펀드, 세제혜택펀드 등 일부 펀드가 펀드판매회사 변경제도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판매보수이연(CDSC) 펀드의 경우 전환기준일 또는 전환기준일 이전 1영업일인 경우 변경절차 적용을 배제함(40-2조 3호)
 - 이는 펀드의 결산일 또는 결산일 이전 1영업일인 경우 확인서 발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목적임
- 펀드의 결산일 및 판매보수이연(CDSC)펀드의 전환기준일 이동제한 관련하여 <별지 제47호: 계좌정보확인서> 유의사항에 다음 내용을 마련함

- 펀드의 결산일 및 판매보수이연(CDSC)펀드의 전환기준일 이전 1영업일부터 계좌정보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유의사항을 명시함

□ 계좌별 손익금액 산정기준 가운데 분기중 계좌인출총액과 분기중 계좌유입총액 산정기준을 변경함

(별지 53호 : 2012/3/2 개정, 3/9 시행)

- 분기중 계좌인출총액에서 이미 당분기말 계좌평가액에 반영되어 있는 포지션 보유로 인한 롤오버이자 출금액, 포지션 청산으로 인한 결제 출금액, 거래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제외
- 분기중 계좌유입총액에서 이미 당분기말 계좌평가액에 반영되어 있는 포지션 보유로 인한 롤오버이자 입금액, 포지션 청산으로 인한 결제 입금액을 제외

□ 자문형 랩어카운트 수수료에 대한 자료주기, 제출방법, 대표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전체 수수료 부과기준 기재양식을 마련함

(별지 3호 4호 서식 : 2012/3/16 개정 · 시행)

- 자문형 랩어카운트취급 증권사는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매분기말 기준으로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체계 및 부과기준 제정 또는 변경사항을 업무지원서비스(<http://work.kofia.or.kr>)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 대표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전체 수수료 부과기준 기재 양식은 다음과 같음

회사명	기준일자	전체 수수료 체계 및 부과 기준	대표 수수료 체계 및 부과기준						
			기본 수수료				기타 수수료	성과 보수	비고
			구분	선취	후취	합계			
		(hwp, pdf, doc 등 파일 제출)							

— 전체 수수료 체계 및 부과기준 양식은 다음과 같음

회사명	기준일자	투자자문 업자명 (국내, 해외 구분)	서비스 및 계약명	기본 수수료				기타 수수료	성과보수	비고
				구분	선취	후취	합계			

- 금융투자협회 업무지원사이트 개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일임업자, 신탁업자의 수수료 부과기준 제출사이트를 <http://work.kofia.or.kr>로 변경함

(별지 3호 2호 서식 : 2012/3/16 개정·시행)

- 정책금융공사채권이 기존 산업금융채권을 대체함에 따라 채권시가평가 기준수익률(매트릭스)내 구분을 특수채 가운데 공사채 및 공단체에 속하였던 것을 독립적인 정책금융공사채권으로 분류함

(별지 44호 : 2012/4/3 개정, 4/9 시행)

- '주요 경영상황 공시 항목'에 '회계기간 변경을 결정한 경우'를 제4호로 추가하고 공시양식 제4-1호를 신설함

(별지 2호 : 2012/4/24 개정, 5/2 시행)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에서 금융투자회사의 공시사항에 '회계기간 변경을 결정한 경우'가 추가함에 따라 해당 공시양식을 신설함

- 수수료 부과기준을 개선함

(별지 제3호 제1호 서식 : 2012/4/24 개정, 5/2 시행)

— 수수료 부과기준 서식에 위탁매매수수료 외에 기타 수수료를 추가하면서 각각 수수료에 대한 양식은 각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도록 함

□ 수익률·비용 비교공시 대상 펀드 명확화

(2조의2 1항 : 2012/7/10 개정, 7/11 시행)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2-8조의2 9항 1호)에 따른 계열·비계열 판매비중, 수익률, 비용 공시의무의 대상은 공모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함

□ 불완전 판매 제재사실 공시 대상 제재 범위 명확화

(2조의2 2항~3항, 별지 54호 : 2012/7/10 개정, 7/11 시행)

- 불완전판매 제재사실 공시대상이 되는 제재를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17조에 따른 기관에 대한 제재로 한정함
- 제재사실 공시의 작성 및 제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지로 정함

□ 수익률공시대상채권에 국고채권 30년물 추가

(50조 1항 1호, 2호 : 2012/8/29 개정, 9/11 시행)

□ 특정 잔존기간의 수익률 보고대상 채권과 잔존만기별 수익률 보고대상 채권에 국고채권 30년물 추가

(51조 2항 1호, 2호 : 2012/8/29 개정, 9/11 시행)

□ 시가평가 기준수익률 대상에 국고채권 30년물 추가

(별지 44호 : 2012/8/29 개정, 9/11 시행)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보고서 서식 중 신탁업무와 관련된 세부사항 변경

(별지 1호 : 2012/9/18 개정, 9/30 시행)

- 대차대조표(겸영신탁업자 신탁계정) : 계정과목을 전면 수정

- 손익계산서(부동산신탁사 신탁계정)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법인세비용 항목 추가
- 손익계산서(겸영신탁업자 신탁계정) : 계정과목을 전면 수정
- 신탁별 수탁현황 : 특정금전신탁을 수시입출금, 자문형, 자사주로 세분화하고 종합재산신탁을 추가
- 금전신탁 자금조달 현황, 금전신탁 자금운용 현황 : 특정금전신탁 세분화 및 상품 세분화

□ 연금저축펀드 비교공시 관련 자료작성방법 및 제출양식 신설
(별지 14-1호(2012년 3월31일부로 발표하는 영업보고서부터 소급 적용) : 2012/9/18 개정, 9/30 시행)

□ 연금저축 비교공시 중 수익률 산정 방식 개선
(별지 14-1호 : 2012/10/30 개정, 10/31 시행)

- 금융소비자리포트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한 평균연간수익률 신설
 - $(\text{적립금} - \text{원금}) / \text{원금평잔} \div \text{설정일부터 공시기준일까지 년수}$
- 기존의 “ $(\text{적립금} - \text{원금}) / \text{원금}$ ” 개념에서 “ $\text{적립금} / \text{원금합계}$ ”의 개념으로 변경됨
 - 즉, 누적수익률에서 적립률로 변경됨

□ 관계인수인과의 거래에 관한 공시
(6조의2 : 2012/12/17 개정 · 시행. 단, 49조는 2013/1/2 시행)

- 관계인수인과의 거래에 관한 공시의 작성 및 제출방법 마련

□ 은행 등의 채권 장외거래내역 보고사항 명시
(49조 1항 : 2012/12/17 개정 · 시행. 단, 49조는 2013/1/2 시행)

-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은행, 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가 증권회사 등과의 채권 장외거래시의 보고 항목을 명시
 -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가 거래체결 후 15분 이내에 협회에 보고하는 항목과 동일하게 적용

3.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 현금위탁증거금을 현금예탁필요액으로 변경

(5조, 7조, 8조, 19조, 별첨 1 : 2012/4/18 개정, 5/2 시행)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 파생상품 예탁금 이용료 지급제외대상인 현금위탁증거금을 현금예탁필요액으로 개정함(4.13)에 따라 이를 반영함
- 또한 금융투자회사별로 별첨1을 통하여 현금예탁필요액을 명시하여 투자자에게 고지하도록 함

□ 지연인출제도 도입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에 반영 내용을 마련함

(별표 9, 10조의2 : 2012/5/9 개정, 6/11 시행)

- 고객이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등 전자적 장치에서 카드,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고객 본인 계좌의 현금을 인출하고자 할 때, 인출전 1회 300만원 이상의 현금이 송금 및 이체되어 고객본인계좌로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10분간 입금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출이 지연될 수 있음을 규정함

<부록 표 IV-1> 자연인출제도

도입배경	피해자의 송금과 동시에 이를 인출하는 피싱의 특성상 기존 지급정지 제도를 통한 피해액 환급 가능성이 제한적이고, 지급정지 성공확률 개선을 위하여 피해금 인출 전 은행의 충분한 자체 모니터링 후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동제도를 도입함
이체금액 인출제한	300만원 이상의 계좌 간 이체금액은 수취계좌로 입금 된지 10분 후에 인출이 가능하도록 설정 1. 입금방식 : 송금·이체 등 구분없이 모든 입금에 대해 적용 2. 출금매체 : 자동화기기에서 인출할 수 있는 접근매체(현금, 신용, 체크, 직불카드 등 모든 카드 및 예금통장)에 적용 3. 출금방식 : 자동화기기에서 인출하는 경우에만 적용 4. 출금지역 : 국내·외 모두 적용 5. 거래주체 : 개인·법인 모두 적용 6. 출금제한 금액 산정 : 한도 개념을 적용하여, 300만원 이상이 계좌에 입금된 후 이체 등으로 잔액이 변동되어도 입금된 금액을 한도로 10분간 계속 출금을 제한

□ 대고객환매조건부매매약관 정의 조항 수정

(2조 4항 : 2012/8/31 개정, 9/10 시행)

환매조건부매매

일명 Repo거래(Repurchase Agreement Transaction)라고 하며, 대상물을 환매일에 사전에 정한 금액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거나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매매거래

우리나라에서는 거래대상 증권을 채권에만 국한하고 있고, 채권을 매수(매도)하면서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조건(가격)으로 다시 매도(매수)하는 2건의 매매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유가증권 매도·매수계약을 의미

- 자본시장법 시행령(181조 1항)에서 환매조건부매매의 경우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날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표준약관상의 정의 규정은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날을 약정하지 아니한 조건부 매매를 “개방형 거래”로 정의하고 있어 혼란의 우려가 있음

기한부거래와 개방형거래

환매조건부매매에는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을 미리 약정한 기한부거래와 미리 약정하지 않은 개방형거래로 나뉘는데 바꾸어 말하면 약정기간이 정해진 거래와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거래로 설명될 수 있음

- 개방형 거래에 대한 정의를 고객이 환매수 또는 환매도를 신청한 날을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정한 조건부매매로 명확히 함

□ 분쟁조정기관의 예시에 한국거래소 추가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22조,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36조, 신용거래 약관19조,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16조 : 2012/8/31 개정, 9/10 시행)

- 기존 표준약관은 분쟁조정기관으로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으로 규정되어 있었음

□ 표준약관의 성격상 금융투자협회규정으로 하는 것이 체계상 부적절한 점이 있어 약관규정에서 표준약관을 분리하여 별도 관리

(3조 1항, 2항 : 2012/10/26 개정, 11/12시행)

- 영업행위 규제 등 회원사를 구속하는 내용의 금융투자협회규정과 달리 표준약관은 회사와 고객 간의 계약내용을 표준화한 것임
 - 따라서 회사는 표준약관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 상황에 따라 수정 가능
 - 표준투자권유준칙이나 모범규준도 표준약관과 같이 회사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협회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음
-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표준약관 제·개정 시 금융감독원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는 바 협회는 자율규제위원회 결의를 거친 후 금감원으로 신고하여 사전심사를 받고 있었음
 - 이로 인해 위원회의 자율규제와 금감원의 공적규제가 상호 충돌할 우려가 있고 신속한 표준약관 개정애 애로점이 있음

- 또한, 자본시장법과 거래소규정 등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신속한 표준약관 개정이 필요한 경우 규정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신속한 개정이 어려울 수 있음
- 금융감독원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표준약관 개정보고와 금융투자협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규정 개정보고업무가 중복됨
- 표준약관 개정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거치고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에 표준약관의 개정 보고를 하므로 투자자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음

4.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 기관투자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한국투자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 및 우정사업본부를 추가함

(2조 8호 : 2012/1/17 개정, 1/18 시행)

- 이는 인수제도 개선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의 기반 확대를 위한 것임
- 현재 기관투자자는 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보험회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법인,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투자신탁, 투자익명조합,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국법인임

- 대표주관계약체결 관련하여 제출서류에 발행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하고 계약서 내용에 계약의 해제·해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개선함

(3조 : 2012/1/17 개정, 1/18 시행)

- 금융투자회사는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식인수를 의뢰받은 경우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고, 주식인수의뢰서 사본, 대표주관계약서 사본 및 발행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계약 체결일 부터 5영업일 이내 협회에 신고하여야 함
 -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 내용을 반영하여 대표주관계약서 내용에 계약의 해제·해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금융투자회사는 무보증사채의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협회에 신고하여야 함

(11조 : 2012/1/17 개정, 1/18 시행)

- 기존의 경우 무보증사채의 발행과정에서 발행회사와 주관회사간 명문화된 계약체결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발행회사의 일방적인 발행 취소, 증권사 간의 무분별한 금리 경쟁, 기업실사 부실화 문제가 발생하였음
- 금융투자회사는 무보증사채의 인수를 의뢰받은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10영업일 이전에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고, 대표주관계약서 사본을 계약 체결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신고하여야 함
 - 다만, 무보증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함
- 대표주관계약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발행회사의 경영실적, 영업관련 사항 및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확인 및 조사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의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및 그 최대주주 등에 대한 평판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수요예측 실시 등 공모금리 결정과 관련한 사항
 - 계약의 해제·해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본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31일 이후 대표주관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함(부칙 2조)

□ 무보증사채의 수요예측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수요예측 실시 예외를 규정함

(12조 : 2012/1/17 개정, 1/18 시행)

- 기존의 경우 시장수급이 아닌 발행회사에 의해 미리 결정되는 발행금리와 유통금리간의 차이로 인하여 인수회사가 양 금리 간의 차이를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 주관회사가 발행사로부터 채권을 비싸게(낮은 금리로) 인수한 후 수수료 범위내에서 인수가격보다 싸게(높은 금리로) 할인 매각하는 이른바 수수료 녹이기 현상이 발생함
- 무보증사채의 공모금리는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 단, 다음의 경우 수요예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 공모예정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
 - 전환사채, 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무보증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 공모예정금액의 전부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 무보증사채의 인수금리는 수요예측결과를 감안하여 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금리를 공모금리로 함
- 대표주관회사는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자신의 고유재산과 집합투자재산을 구분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여야 하며 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별 신청금리 및 신청수량 등의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본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7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함 (부칙 2조)

□ 무보증사채 대표주관회사의 인수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주관업무 수행 금지 규정을 삭제함

(13조 2항 : 2012/1/17 개정, 1/18 시행)

- 기존의 경우 무보증사채의 대표주관회사는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인수회사의 실질적인 주관업무 수행 금지를 규정하였음
 - 주관업무란 인수회사를 대표하여 발행회사와 인수조건을 결정, 청약업무 통할, 증권신고서 제출 등을 의미
 - 하지만 실질적인 주관업무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고 그 위반여부 판단이 어려운데다 수요예측제도의 도입으로 공모가격 결정과정의 투명성이 제고됨에 따라 이를 개정함
 - 대표주관회사는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인수회사가 가장 많은 수량을 인수하도록 하거나 인수가격의 결정과정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안 됨
- 무보증사채의 주관회사 제한요건에 보유비율 산정 시 준용규정 신설하면서 조합 등을 통한 간접보유하는 경우를 추가함
- (13조 3항 : 2012/1/17 개정, 1/18 시행)
- 기존 무보증사채는 조합 등을 통하여 발행회사 또는 주관회사에 대하여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여도 이에 대한 보유비율 산정규정이 없어 주관회사 업무 수행이 가능하였음
 - 이에 무보증사채의 경우에도 대표주관회사 제한 요건을 주식과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개정함
 - 본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31일 이후 대표주관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함(부칙 2조)
- 불성실수요예측참여행위에 무보증사채의 경우를 추가함
- (17조의2 : 2012/1/17 개정, 1/18 시행)
- 이는 새롭게 마련되는 수요예측제도와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기관투자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함 것임

-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 공모와 관련하여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개월간 무보증사채 공모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를 허용하거나 공모무보증사채를 배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본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7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함(부칙 2조)

□ 공공적법인 등에 대하여 수요예측, 배정에 관한 일부 인수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20조 : 2012/1/17 개정, 1/18 시행)

- 기존의 경우 금융투자회사가 공공적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였음
- 하지만 본 규정은 상장을 목적으로 한 비상장법인의 공모 시 적용되므로 상장법인인 공공적 법인에 대한 인수규정 적용배제는 실효성이 없음
 - 공공적법인이란 국가기간산업 등 국민경제상 중요한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법인임(자본시장법 152조 3항)
- 이에 자본시장법 상의 공공적법인과 일부 기관에 대하여 수요예측, 배정 규정(5조, 9조 1항~2항, 17조의2)만을 제한하여 적용 배제하도록 개정함
 - 공공적 법인 외 일부기관은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2조)와 정부가 50% 이상 지분 소유 혹은 30% 이상 지분소유하고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조 1항 3호)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을 의미함
- 단, 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하는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관리(17조의2) 규정은 적용함

- 금융투자협회의 대표주관회사 실적공시 시스템 개선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의 제출서식을 개정함

(별지 2호 : 2012/3/29 개정, 4/15 시행)

- 대표주관회사는 상장일로부터 3년간 발행회사 관련 사항을 서식에 따라 협회에 통보하고 협회는 통보받은 내용을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음
- 본 개정 서식은 201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함

- 2012년 4월 15일 시행되는 개정상법을 반영하여 규정상의 수탁회사를 사채관리회사로, 수탁계약서를 사채관리계약서로 개정함

(2012/3/29 개정, 4/15 시행)

- 상법이 수탁회사의 권한 가운데 사채관리 기능 부분을 분리하여 사채관리회사가 운용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한 것임

- 개정 상법상의 내용을 반영하여 무보증사채 발행인과 사채관리회사간 동규정 제6조의 주식 주관회사의 제한 등에 대한 적용 규정을 삭제함

(11조의2 4항 : 2012/6/28 개정, 7/1 시행)

- 개정 상법은 사채모집 수탁회사의 권한 중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그 밖에 사채관리기능을 분리하여 사채관리회사에게 지정·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면서 사채관리회사의 자격으로 인수인 및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하고 은행, 신탁회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제한하였음(상법 480조의2, 480조의3)

- 또한 상법 시행령에서 사채관리회사 자격에서 배제되는 사채관리회사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최대주주, 주요주주 및 사채발행회사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회사, 사채발행회사 주식보유 혹은 사채발행회사 임원겸임 등으로 사채권자의 이익과 충돌하는 특수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사채관리를 하기 어려울 경우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상법 시행령 27조)

- 기존 인수업무 규정에서 무보증사채 발행인과 사채관리회사간 제6조 제1항 주식 주관회사 제한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정 상법상의 제한에 비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 이에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동규정 제6조 제1항 적용 규정을 삭제하고 「상법」 제480조의3, 「상법 시행령」 제27조를 준용하도록 함

□ 공모주식 배정이 제한된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개정하여 발행회사 및 그 계열회사 임원의 공모주식 청약에 허용함

(9조 4항 : 2012/6/28 개정, 7/1 시행)

- 기존 규정에 따르면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모주식을 배정할 수 없었음
 - 동 규정은 이해관계인을 임원, 최대주주, 주요주주, 계열회사 및 그 임원,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 해당 개인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및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하고 있음(2조 9항)
- 공모가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결정되고 배정 또한 청약경쟁률에 따라 배정되므로 발행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의 공모주 청약에 금지할 실익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허용함
 - 공모주식 배정이 제한된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임원 및 계열회사의 임원을 제외한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개정함

□ 위반금액기준 현실화 및 제재금 부과 대상 확대

(17조의 2 5항 : 2012/10/26 개정, 11/1 시행)

- 기존은 미청약·미납입의 경우 위반금액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6~12개월간 수요예측참여를 제한

<부록 표 IV-2> 기존 수요예측 참여제한 내용

구분	적용대상			제재내용
수요예측 참여금지	미청약 · 미납입	위반 금액	100억원 초과	12개월 이내 금지
			1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	9개월 이내 금지
			10억원 이하	6개월 이내 금지

- 지정기준상의 위반 금액을 현실화하여 대폭 감액(1/5수준)하고 위반 구간을 세분화함

<부록 표 IV-3> 개정 수요예측 참여제한 내용

구분	적용대상			제재내용
수요예측 참여금지	미청약 · 미납입	위반 금액	20억원 초과	12개월 이내 금지
			10억원 초과~20억원 이하	10개월 이내 금지
			2억원 초과~10억원 이하	8개월 이내 금지
			2억원 이하	6개월 이내 금지

- 기존 규정 내용은 운용사의 책임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그 피해(공모주 미배정)가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집합투자기구에서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만 일정요건 충족 시 제재금 부과가 가능했음
- 불성실 수요예측자에 대한 제재의 선택범위 확대 등으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과대상을 확대하고 부과요건을 폐지함

<부록 표 IV-4> 부과대상과 부과요건의 신·구 대조표

구분	기존	개정
부과대상	집합투자기구	협회 회원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부과요건	해당 사유발생일 직전 1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가 없었던 경우	폐지

5.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투자상담관리인력의 등록요건을 변경함

(1-4조 4호 : 2012/6/28 개정, 8/1 시행)

- 기존 금융투자회사는 효율적인 영업점 감독을 위하여 영업점별 투자상담사 및 투자권유대행인의 업무를 감독하는 투자상담관리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실무상으로는 라이선스를 보유한 신입직원이 이에 지정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음
- 이에 다음과 같이 투자상담관리인력의 등록요건을 강화함
 - 투자상담관리인력은 해당 지점 또는 영업소 등에서 투자권유가 가능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모든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금융투자회사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지점장 등 해당 지점 또는 영업소 등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함
- 또한 금융투자회사 1년 경력자에 대한 투자상담관리인력 등록교육 면제를 제외함(5-2조)

□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등록거부범위를 축소함

(2-3조 : 2012/6/28 개정, 8/1 시행)

- 기존의 경우 특정 라이선스를 보유한 전문인력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라이선스의 등록이 정지되고 다른 라이선스 취득 시 신규 등록이 불가능하였음
- 부서 이동 등으로 인하여 기존 보수교육이 불필요함에도 전문인력이 다른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하여 미이수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불합리함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수교육 미이수자의 해당 업무와 무관한 다른 라이선스의 신규 등록을 허용하도록 개정함

□ 산업분야 경력자의 근무경력 인정

(1-4조 6호 다목, 2-1조 : 2012/7/27 개정, 8/1 시행)

- IT, 바이오, 전자, 화학 등과 같은 특정 분야의 산업현장에서 연구 개발(R&D), 산업동향 분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에 대해서는 윤리·준법 교육만 이수하면 금융투자분석사(애널리스트) 등록을 허용함
 - 회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자로 한정
- 애널리스트의 윤리 및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최초 등록 시 10시간 이상의 윤리·준법교육 이수 의무화
 - 준법·윤리교육 이수 확인서(동 규정 별지 5호의2)의 제출 의무 부과

□ 평가전문인력의 근무경력 인정

(1-4조 6호 라목~바목, 2-1조 : 2012/7/27 개정, 8/1 시행)

- 신용평가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집합투자재산평가회사에서 채권 및 펀드 등의 금융투자상품이나 기업에 대한 평가·분석업무에 종사한 자는 윤리·준법 교육만 이수하면 금융투자분석사(애널리스트) 등록을 허용함
 - 신용평가 전문인력: 공인회계사 및 금융기관, 채권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에서 증권의 평가·분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집합투자기구평가 전문인력: 금융기관 또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증권 등의 평가·분석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집합투자재산평가 전문인력: 금융기관 또는 채권평가회사에서 증권의 평가·분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애널리스트의 윤리 및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최초 등록 시 10시간 이상의 윤리·준법교육 이수 의무화
 - 준법·윤리교육 이수 확인서(동 규정 별지 5호의2)의 제출 의무 부과

□ 인정 연구기관 범위 확대

(1-4조 6호 사목, 2-1조 : 2012/7/27 개정, 8/1 시행)

- 기존에는 2년간의 근무 경력만 있으면 애널리스트 등록이 가능한 연구기관이 자본시장연구원과 금융연구원 두 곳뿐이었으나, 정부와 기업출연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의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준법 교육만 이수하면 금융투자분석사(애널리스트) 등록을 허용함
 - 산업분야 경력요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연구기관 근무경력 기간도 3년으로 조정함
- 애널리스트의 윤리 및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최초 등록 시 10시간 이상의 윤리·준법교육 이수 의무화
 - 준법·윤리교육 이수 확인서(동 규정 별지 5호의2)의 제출 의무 부과

□ 투자자산운용사 시험 과목 개편

(2012/11/30 개정, 2013/1/1 시행)

- 고객상담·재무설계 과목 폐지
- 기본적인분석, 기술적분석, 산업분석, 국제금융시장분석 과목 통합

과목	기존(문항수)	개정(문항수)
제1과목	고객상담·재무설계(7)	-
	세제관련법규·세무전략(10)	세제관련법규·세무전략(7)
제2과목	기본적분석(7), 기술적분석(5), 산업분석(5), 국제금융시장분석(5)	투자분석기법(12)
제3과목	직무윤리(7)	직무윤리(5)
	주식투자운용·투자전략(8)	주식투자운용·투자전략(6)
	채권투자운용·투자전략(8)	채권투자운용·투자전략(6)
	파생상품투자운용·투자전략 (8)	파생상품투자운용·투자 전략(6)
	투자운용결과분석(5)	투자운용결과분석(4)
	거시경제(5)	거시경제(4)
총 30문항 축소(130문항 → 100문항)		

- 증권분석사 시험의 폐지(2012/11/30 개정, 2013/1/1 시행)
 - 증권분석사 시험을 협회의 자율자격시험에서 제외하고 증권분석사 시험 관련 조문 삭제
 - 증권분석사 시험주관은 증권분석사회로 이관

- 회원별 등록수수료의 차등 징수(2012/11/30 개정, 2013/1/1 시행)
 - 회원의 종류(정회원·준회원)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수수료를 미납한 회사는 전문인력 신규등록 정지조치 부과
 - 구체적인 징수 절차·금액 등은 시행세칙 개정 후 안내 예정

6.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자율규제위원장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의 범위 확대
(9조 : 2012/7/27 개정, 8/1 시행)
 - 자율규제위원장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으면 금융투자분석사 등록이 가능하므로, 종래 자본시장연구원과 금융연구원으로 한정되어 있던 연구기관의 범위를 확대·규정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이 출자한 연구기관
 - 자본시장법 시행령(10조 2항)의 금융기관이 출자한 연구기관
 - 자본시장법 시행령(10조 3항 1호~13호)의 공사 등 법인이 출자한 연구기관
 - 주권상장법인이 출자한 연구기관

- 전문인력 등록수수료를 license별로 부과하되, 회원 종류 및 회원 가입 여부에 따라 차등화된 금액 신설

(14조: 2012/12/17 개정, 2013/1/1 시행)

- 준회원 : 3만원, 비회원 : 6만원
- 협회는 매년 발생한 등록수수료를 산정해 금융투자회사에 통보하고 금융투자회사는 등록수수료를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협회에 납부

7. 장외주식의 호가증가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지정해제사유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와 동시에 해당 종목의 매매 거래를 정지할 수 있도록 매매정지 시점을 명시

(32조 1항 3호 : 2012/9/18 개정, 9/19 시행)

- “조회공시에”를 “조회공시를 요구한 때부터 조회공시에”로 변경

8.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전담중개업자 모범 기준

- 고유재산 운용제한 완화

(43조 1항 1호, 3호 : 2012/12/14 제정 · 시행)

- 운용업자의 고유재산(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여 동일한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없는 제한규정에 대하여 1년 유예 기간 부여
- 동일 헤지펀드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의 3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는 투자금지 규정에 대한 유예기간(기존 1년)을 1년 추가 연장
 - 헤지펀드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2년까지는 적용하지 않음

□ 재간접 헤지펀드 적용 기준 명확화 등

(7장 : 2012/12/14 제정 · 시행)

-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재간접 헤지펀드) 적용기준을 50% 초과 투자 사모펀드로 명확히 하고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헤지펀드도 동일 적용토록 관련 규정 신설

□ 전담중개업자 업무 추가 등(73조 및 91조 : 2012/12/14 제정 · 시행)

- 전담중개업자의 업무범위에 RP거래를 포함하는 상위규정개정 사항 반영
 - 전담중개업자 RP 업무 추가에 따라 표준전담중개업자계약서의 제2절 세부사항 중 「2-9 환매조건부매매거래」 신설
- 정보교류의 이해상충이 크지 않은 경우로서 제외되는 전문투자자 대상 RP 업무 시 정보교류의 차단 제외 관련 상위규정개정 사항 반영

□ 신용공여 이자율 산정방식 자율화

(77조 6항 : 2012/12/14 제정 · 시행)

- 일률적인 신용공여 이자율 산정방식을 폐지하고, 신용공여 이자율 산정에 대한 전담중개업자의 자율성 부여
 - 전담중개업자의 헤지펀드에 대한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전담신용거래 용자 또는 전담신용거래대주를 제공하는 경우 보증금율은 20% 이상으로 정함
 - 전담중개업자가 담보물 및 담보평가금액 등을 고려한 신용위험액(신용공여 가산이자)을 적정하게 산정하고 이를 감안하여 적정 신용공여이자를 산정하는 것으로 함

9.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업무관련 대외활동 모범기준

- 임직원은 대외활동 시 해당 활동의 성격, 이해상충 등을 감안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3조, 1.4조 : 2012/1/27 제정, 3/1 시행)

- 회사의 공식의견이 아닌 경우 사건임을 명백히 표현하여야 함
- 대외활동으로 인하여 회사의 주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됨
- 대외활동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회사에 신고하여야 함
-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 임직원의 대외활동 시 금지행위는 다음과 같음

(1.5조 : 2012/1/27 제정, 3/1 시행)

- 업무상 취득한 비밀(미공개중요정보 등 포함)을 외부에 전송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중요자료나 홍보물 등을 배포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불확실한 사항을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또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주장이나 예측이 담긴 내용을 제공하는 행위
- 합리적인 논거 없이 시장이나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또는 증권발행기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하는 행위
-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나 부당권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제공하는 행위

- 경쟁업체의 금융투자상품, 인력 및 정책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명확한 근거 없이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행위
- 관계법규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의 인적사항, 매매거래 정보 및 신용정보 등에 관한 내용을 제공하는 행위

□ 회사는 일정사유 발생 시 대외활동을 하는 임직원에게 그 활동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 임직원은 해당 활동을 중단하여야 함

(1.6조 : 2012/1/27 제정, 3/1 시행)

- 일정 사유란 해당 대외활동으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된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거나 고객, 주주 및 회사 등과의 이해상충이 확대되는 경우임

□ 회사는 대외활동의 종류, 허용범위, 준수사항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제정할 수 있음

(1.7조 : 2012/1/27 제정, 3/1 시행)

□ 임직원의 세부 대외활동에 대한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마련

(2012/1/27 제정, 3/1 시행)

- 임직원의 외부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등의 활동의 경우 사전에 그 내용 및 원고 등의 자료를 회사에 보고하여야 함(2.1조)
- 임직원의 언론매체와 접촉 시 사전에 관계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회사는 임직원의 언론매체 접촉계획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함(2.2조)
- 임직원이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2.3조)
 -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설명 등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게시하거나 대량의 메시지를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투자자 등 고객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면서 자기, 회사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됨
- 익명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도 비공개를 요하는 정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하여서는 안 됨
- 다른 임직원의 전자통신수단 계정을 도용 불가
- 임직원은 직접 또는 임직원의 개인계좌(자기계산계좌 포함)를 통한 투자자금이나 그 밖의 투자를 위한 재산의 수취행위 금지

10.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 금융투자회사는 발행기업의 의사를 반영하되 최대한 채권의 적정 발행금리를 추정하여 공모희망금리와 발행물량을 제시하여야 함

(2012/2/1 제정, 4/17 시행)

— 이때 제시하는 최저금리는 최고금리의 일정 범위 내이어야 함

- 금융투자회사는 무보증사채의 공모금리 결정을 위해 수요예측을 실시하여야 함

(2012/2/1 제정, 4/17 시행)

— 금융투자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고, 수요예측 참여자의 신청수량 및 가격 기재 시 착오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수요예측 참여자의 요구 시 금리대별로 희망물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금융투자회사는 수요예측기간 중 금융투자회사는 수요예측기간 중 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펀드재산과 고유재산을 구분하여 접수하여야 함

- 또한 공모금액 미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예측 종료 후 별도의 수요를 파악하여서는 안 됨

- 금융투자회사는 수요예측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발행 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함

□ 금융투자회사는 공모금리를 결정하는데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2012/2/1 제정, 4/17 시행)

- 금융투자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 및 가격평가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참여자의 금리결정 가중치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대표주관계약 체결 시 기재한 수요예측 및 공모금리 결정 방법으로 공모금리가 결정되면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발행하여야 함
- 수요예측 이전에 발행금리를 약속하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됨
- 인수회사는 수요예측 참여물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발행예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계산으로 인수할 수 없음
 - 수요예측 참여물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발행예정 금액에 미달하여 인수회사가 잔여물량을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유효 수요 중 가장 높은 금리 미만으로 인수할 수 없음

□ 금융투자회사는 공모채권을 배정하는데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2012/2/1 제정, 4/17 시행)

- 금리를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하여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하여야 함
-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 및 투자행태 등을 고려하여 공모채권 배정 시 가중치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금융투자회사는 다음과 같이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2012/2/1 제정, 4/17 시행)

-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는 다음과 같음
 -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채권을 배정받은 후 청약에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사채청약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 수요예측 참여 시 관련정보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 인수회사와의 이면 합의 등을 통해 사전에 약정된 금리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서 상기 사항에 준하는 경우
- 금융투자회사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수요예측 참여자에게 다음 사항을 충분히 고지하여 실제 배정받을 물량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함
 - 무보증사채 발행 시 일정기간 수요예측 참여가 제한되며 공모채권을 배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함

□ 공모희망금리 결정근거 상세공시 신설

(3조 3항 : 2012/8/8 개정, 8/20 시행)

- 수요예측 공모희망금리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
 - 민간채권평가사(2개사 이상) 평가금리
 - 동종업계·동일등급 채권의 최근 발행금리 및 유통금리 등

□ 유효수요의 판단기준 신설

(5조 3항, 8항 : 2012/8/8 개정, 8/20 시행)

유효수요

실제로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을 갖고 물건을 구매하려는 욕구, 즉 확실한 구매력의 뒷받침이 있는 수요

- 금융투자회사가 내부적으로 합리적인 유효수요의 판단기준을 정하여 운영
 - 수요예측 결과를 근거로 유효수요를 산정
 - 수요예측 결과를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그 때 유효수요를 산정하는 방법 등

- 유효수요 범위 및 금리결정 시 수요예측내용 반영 방법 공지
(5조 8항 : 2012/8/8 개정, 8/20 시행)
 - 유효수요 판단기준에 따라 산정된 유효수요 범위
 - 최종 공모금리 결정 시 수요예측결과를 반영한 방법을 공지해야 함

- 청약물량 배정 시 수요예측 참여자에 우선권 부여
(6조 3항, 4항 : 2012/8/8 개정, 8/20 시행)
 -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자에게는 미참여 기관에 비해 청약물량 배정 시에 우선권을 부여
 - 금융투자회사는 공모채권의 배정에 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함

11. 기업공개 수요예측 모범규준

- 금융투자회사는 발행기업의 의사를 고려하되 최대한 기업의 적정가격을 추정하여 공모희망가격을 제시하여야 함
(2012/2/1 제정, 3/31 시행)

- 금융투자회사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2012/2/1 제정, 3/31 시행)
 - 수요예측참여자의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수요예측참여자의 신청수량, 신청가격, 의무보유확약 여부 기재 시 착오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집합투자업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을 구분하여 접수하여야 함

- 또한 수요예측이 진행되는 동안 경쟁률은 비공개하여야 하며 공모 금액 미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예측 종료 후 별도의 수요파악을 하여서는 안 됨
- 수요예측 관련사항 기록 및 해당 자료를 상장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함

□ 금융투자회사는 공모가격 결정 시 수요예측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함

(2012/2/1 제정, 3/31 시행)

- 수요예측참여자의 성향 및 가격평가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모가격 결정 시 가중치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공모가격 결정 시 제외하여야 함

□ 금융투자회사는 공모주식 배정에 있어 기관투자자의 매매성향, 가격분석능력 및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하여 차등 배정할 수 있음

(2012/2/1 제정, 3/31 시행)

- 이때 의무보유확약을 한 수요예측참여자 등 중·장기 투자성향의 투자자에 대하여 우대 배정하여야 함
-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기관투자자에 대해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안 됨
 -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 금융투자회사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2012/2/1 제정, 3/31 시행)

-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란 다음과 같음
 -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 내에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의무보유기간 확약의 준수여부는 해당기간 중 일별잔고를 기준으로 확인)
 - 수요예측 참여 시 관련정보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서 상기 사항에 준하는 경우
- 금융투자회사는 수요예측 참여 기관투자자에게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일정기간 수요예측참여가 제한되며 주식을 배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함
- 또한 의무보유확약을 한 수요예측참여기관에 대하여 수요예측배정결과 통보 시 의무보유확약 여부 및 기간(매매가능시기) 등을 고지하여야 함

12. 파생결합증권 신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 투자결정 시 일반투자자가 투자판단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16-1-4조의 내용을 준용하여 증권신고서(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 투자설명서 등에 기재하여야 함

(2012/2/29 제정·시행)

- 파생결합증권의 공모가격 결정방법은 신고서 제출시점 기준으로 발행사 또는 외부 평가기관에서 산정한 파생결합증권의 공정가액을 기재하여야 함

(2012/2/29 제정 · 시행)

- 신고서 제출시점에 제3의 독립된 평가기관 또는 발행인이 산정한 이론상의 평가금액에 만기까지의 헤지비용을 추산하여 더한 가격을 기재
- 복수의 평가기관이 산정한 평가금액을 사용하는 경우 평가기관의 가격들을 단순평균한 가격에 만기까지의 헤지비용을 추산하여 더한 가격을 기재

- 파생결합증권 신고서에 기초자산의 변동에 따른 자동조기상환 또는 만기 시 예상손익을 기재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2012/2/29 제정 · 시행)

- 파생결합증권의 보유자가 받게 될 최대손실액과 그 조건, 최대이익액과 그 조건 등
-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알기 쉽게 표현된 표나 그림 또는 그래프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및 만기평가가격에 따른 투자수익률을 구체적으로 설명
- 과거 5년간 기초자산의 가격을 이용한 수익률 모의실험결과 표 및 그래프

- 파생결합증권 신고서상 권리내용의 통지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음

(2012/2/29 제정 · 시행)

- 일일 공정가액(기준가)을 발행인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다는 사실,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또는 만기평가가격 결정 시 지체 없이 상환금액을 산정하여 발행인 본 · 지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는 사실,

공정가액(기준가)의 산정주체(외부 평가기관 또는 발행인), 확인방법 및 확인가능시간 등을 기재하여야 함

□ 투자자의 요청에 의해 중도 상환하는 경우 파생결합증권 신고서 상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2012/2/29 제정 · 시행)

- 본 증권이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본 증권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본 증권을 중도상환할 수 있다는 사실
 - 단, 본 증권의 시장청산이 불가능한 경우 중도상환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함
- 중도상환 청구권에 대한 사항으로 중도상환 신청 시 헤지비용, 잔존 만기, 기초자산가격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중도상환금액이 산정됨에 따라 원금보장형이라도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을 기재하여야 함
 - ELS의 경우 발행 후 6개월 미만인 상품은 공정가액의 90% 이상, 6개월 경과 상품은 공정가액의 95% 이상을 적용하여 중도상환가격 항목에 기재(DLS는 현행 90% 이상 유지)
 - 중도상환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정가액(기준가)을 산정하는 주체에 관련한 사항,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도상환금액 산정에 관한 세부내역(공정가액(기준가), 실제 중도상환가격, 공정가액(기준가) 대비 실제 중도상환가격의 비율)을 교부한다는 사항, 발행인별 공정가액(기준가) 대비 중도상환가격 비율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비교·검색할 수 있음을 기재하여야 함

□ 권리내용 변경 시 파생결합증권 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2012/2/29 제정 · 시행)

- 발행인의 파산 등 또는 기초자산의 상장폐지 등의 사유로 조기종결하게 되는 경우 조기종결사유, 방법 등
- 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 지수 계산방법 변경 또는 지수산출의 폐지, 지수제공자 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권리내용이 조정될 수 있다는 사실

- 기초자산이 개별주식인 경우 기초자산 주권에 대하여 증자, 주식배당, 액면병합·분할 등의 사유 발생 시 기준가격 조정에 관한 산식
 - 또한 미리 정한 기준가격 조정산식이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 고객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준수하여 기준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사실
- 당해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이 있을 시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통지·공고한다는 사실

□ 투자위험요소는 가격변동위험, 발행인 위험, 조기종결 및 중도상환위험, 기타 투자위험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2012/2/29 제정·시행)

<부록 표 IV-5> 투자위험요소의 구분

가격변동 위험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된다는 점, 공정가액(기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위험, 발행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미치는 영향, 평가손실 위험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설명
발행회사 위험	발행회사의 재무상태 및 신용상태 악화에 따른 투자자 손실가능성을 기재
조기종결 및 중도상환 위험	조기종결 위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제한될 위험, 중도상환 시 원금손실 위험, 중도상환가격산정 관련 이해상충 위험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설명
기타 투자위험	일반적인 파생결합증권의 위험, 장내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위험, 세제 및 법률상 위험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

□ 파생결합증권 신고서상 기재하여야 할 기초자산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2012/2/29 제정·시행)

- 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 지수 개요, 산출기관 등을 간략히 서술하고, 추가정보를 참조할 수 있도록 지수 산출기관의 웹사이트 등을 기재

- 기초자산이 개별주식인 경우 대상 회사의 기업 개요 및 대상 회사가 발행시점 기준 과거 6개월간 공시한 공시 목록을 서술하고, 이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과 링크(또는 연결화면)
- 기초자산의 최근 5년간 가격변동 추이에 대해 수치 또는 도해 등을 활용하여 주가상승기 및 하락기의 추이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기재하여야 함

13. 파생결합증권의 발행 및 운용에 관한 모범규준

□ 단기물 발행제한(2012/10/26 제정, 10/30 시행)

- 금융투자회사는 파생결합증권(ELS 및 DLS)의 만기를 3개월 이상으로 해야 하고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조기상환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 단, 즉시지급조건의 달성에 의해 발행일부터 상환금 지급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일 수 있는 상품의 발행은 가능하나 이 경우라도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조기상환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설정해야 함
 - 만기 : 발행일부터 투자자에게 최종 상환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날짜까지의 기간
 - 조기상환 : 자동조기상환(autocallable), 발행자 임의상환(callable), 투자자 임의상환(puttable) 등 명목만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원리금의 상환
 - 즉시지급조건 : 기초자산의 가격이 사전에 정해진 행사가격 이상이 되는 경우 즉시 자동조기상환이 이루어지는 조건

□ 헤지자산의 구분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012/10/26 제정, 10/30 시행)

- 금융투자회사는 파생결합증권의 발행대금으로 운용하는 모든 헤지자산을 고유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 헤지자산은 ELS와 DLS별로 구분·관리하여야 함
 - 파생결합증권 및 헤지자산은 종류별(현금포함)로 세부내역을 상시적으로 측정 가능하여야 하며 부서간 대여 등 타 부서를 통해 운용되고 있는 자산내역도 상시적으로 파악 가능하여야 함
 - 헤지자산의 구분은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에 따른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보고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금융투자회사는 파생결합증권 및 헤지자산 현황을 일별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 헤지자산의 건전성 확보(2012/10/26 제정, 10/30 시행)

- 금융투자회사는 헤지자산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내부규정에 다음의 사항을 반영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 헤지자산에 대한 투자가능등급
 - 요인별 리스크한도
 - 승인절차
 - 일별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등
- 금융투자회사는 내부규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거나 투자가능등급 외의 자산을 헤지자산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승인 절차를 마련해야 함
- 별도의 승인절차에 따라 헤지자산을 편입하고자 하는 경우 내부통제 부서가 그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문제점 발견 시 담당임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함
- 금융투자회사는 헤지자산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 및 계열회사의 자산을 기초로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운용하여서는 안 됨
- 단, 관련법령을 준수하는 경우로 해당 증권 및 유동화증권이 투자적격 등급(BBB-) 이상인 경우에는 운용 가능함
- 금융투자회사는 헤지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파생결합증권의 자금흐름, 만기, 유동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 내부통제와 위험 관리(2012/10/26 제정, 10/30 시행)

- 금융투자회사는 파생결합증권에 관한 내부규정과 이 기준의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 금융투자회사는 헤지자산 운용현황, 헤지자산의 적정성 및 위험의 종류별 한도 준수 여부 등을 매일 모니터링
- 금융투자회사는 기초자산에 개별주식이 하나라도 포함되는 경우 <만기 시 수익 지급조건> 및 <백투백헤지 시 ELS·DLS 발행사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 단, <만기 시 수익 지급조건>은 공모펀드에 편입되는 사모 ELS·DLS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적용
- 만기 시 수익 지급조건
 - 개별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DLS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만기평가가격을 최종만기 평가일을 포함한 직전 3영업일 이상 증가의 평균값 또는 최종만기평가일의 거래량 가중평균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함
 - ① 기초자산에 포함된 주식이 증권신고서 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전월말 기준으로 한 종목이라도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이 상위 20위 밖인 경우
 - ② ELS·DLS 발행금액(공·사모를 포함,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해당 개별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당일 발행금액의 합)이 당해 신고서 제출일 전전월의 1개월간 해당 주식의 일평균 거래대금의 10%를 한 종목이라도 초과하는 경우
- 백투백헤지 시 ELS·DLS 발행사의 의무
 - 백투백헤지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ELS·DLS를 발행한 금융투자회사가 만기평가가격 산정 시 평균가격 등을 적용하는 경우 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헤지하는 금융투자회사의 명칭을 명시하여 투자자에게 공시
 - Bridge 회사가 있는 경우 최종 헤지운용사와 Bridge 금융회사를 모두 명시
 - 헤지운용사는 만기이전에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

- 자체적으로 헤지를 하는 ELS·DLS 발행사는 'ELS·DLS 헤지관련 운용지침'을 제정·운영하여야 하며, 백투백헤지를 이용하는 ELS·DLS 발행사는 헤지운용사가 운용지침의 제정·운영여부를 확인해야 함

(2012/10/26 제정, 10/30 시행)

- ELS·DLS 등 헤지관련 주식은 여타 고유계정 보유주식과 내부적으로 구분 가능할 것
- ELS·DLS 만기평가일 또는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본인 또는 제3자를 통한 기초자산 시장가격의 의도적인 시세조종금지
- ELS·DLS 헤지관련 주식 주문계좌를 사전에 확정하고 변경 시 기록 절차를 마련할 것

14.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기존 제40조 매매주문 처리준칙에서 규정하던 사항을 개정하여 제40조에서 제40조의10 까지 확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함

(2012/10/26 개정, 4/2 시행)

- 매매주문 처리준칙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40조 : 2012/10/26 개정, 4/2 시행)

- 기존에는 관계 법령 등에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위임하였음
- 매매주문시스템이란 회사의 매매주문 접수, 호가의 점검 및 집행 등 매매주문처리와 관련된 시스템
- 침입차단시스템(Firewall)이란 전자통신을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기기

- 대외계시스템(FEP)이란 회사와 거래소를 연결하는 서버로서 회사 시스템과 거래소 시스템간에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관한 주문이나 거래 체결 내역 및 시세정보를 송·수신하는 회사의 통신제어시스템
- 프로세스란 회사와 거래소 간의 호가 및 거래 체결내역을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논리적 회선을 의미

□ 매매주문처리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음

(40조의2 : 2012/10/26 개정, 4/2 시행)

- 신의성실의 원칙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접수·처리할 수 있는 체계와 이를 점검·확인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
- 매매주문 절차에 대한 고객 설명의무 부여 및 투자자 선택권 보장
- 투자자의 매매주문 공정·안전 접수 및 주문자의 권한여부 확인의무, 호가의 적합성 점검항목 준수 의무, 투자자별 거래한도, 위탁증거금 등에 대한 관리를 통한 결제의 이행보증의무
- 특정 위탁자에 대한 자료, 서비스 등 차별적 제공 금지
- 매매주문을 접수받아 처리전달 시 주문에 대한 처리상황, 체결내역 등에 대한 고객 통지 의무 및 고객의 금융거래내역 등이 제삼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의무 명시

□ 회사는 매매주문시스템을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함

(40조의3 : 2012/10/26 개정, 4/2 시행)

- 이때 회사가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에는 회사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간주

□ 회사는 침입차단시스템을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함

(40조의4 : 2012/10/26 개정, 4/2 시행)

— 침입차단기능만을 전용으로 침입차단시스템을 설치하고 이때 회사의 다른 전산설비와 물리적으로 구분되도록 하여야 함

□ 회사는 시세정보의 제공형태나 제공방식 등에 대해서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않고 특정 위탁자에게만 차별적으로 제공여서는 안 됨

(40조의5 : 2012/10/26 개정, 4/2 시행)

— 매매주문시스템을 통해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 처리를 위한 설비나 시설 등에 대한 차별적 제공행위도 금지

— 또한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거래소 호가시스템에 전송하는 과정에서 거래소가 정한 기준을 벗어나 프로세스별로 속도차이가 발생하도록 하여서는 안 됨

□ 회사는 투자자의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40조의6 : 2012/10/26 개정, 4/2 시행)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용조건을 제한하거나 비용을 차등부과 하지 아니할 것

— 투자자의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 등 선택 시 투자자의 신용도, 전문성, 위험관리능력 등을 고려할 것

—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투자자와 매매거래계좌설정 계약 체결 시 이를 반영할 것

—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회사의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등은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을 것

- 전자통신방법에 따라 매매주문을 접수하는 경우 해당 매매주문은 자체 매매주문 정보처리시스템상 최초로 침입차단시스템을 경유하여야 함

- 회사는 전산·통신 설비 장애로 인하여 매매주문처리 불능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운용하여야 함
(40조의8 : 2012/10/26 개정, 4/2 시행)

- 회사는 주문착오방지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적절한 주문착오 방지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40조의9 : 2012/10/26 개정, 4/2 시행)
 - 임직원의 착오로 인해 투자자 주문이 주문내용과 달리 체결되었거나 또는 체결 가능한 주문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 회사의 착오매매 처리에 관한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관련 내역 및 증빙자료를 3년 이상 보관·유지하여야 함

15. 금융투자회사의 표준윤리준칙

- 윤리기준(2012/10/26 제정)
 - 애널리스트 윤리강령에 있는 윤리기준과 행위기준상 신의성실의무 및 법령준수의무를 표준윤리준칙에 편입시킴

- 행위기준(2012/10/26 제정)
 - 임직원의 의무
 - 소속회사에 대한 의무

— 고객에 대한 의무

- 기존 표준윤리강령의 고객이익우선에 관한 조항의 '자기 또는 제3자의'를 신설 모범규준에서는 '본인, 회사 또는 제3자의'로 바꿈
- 업무관련 대외활동 모범규준에서 규정하던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활동'사항 중 투자자금등의 직접 수취행위금지에 관한 조항을 대외활동에 한정하지 않고 대고객 금지행위로 편입

— 업무관련 대외활동

- 종래 업무관련 대외활동 모범규준의 내용을 표준윤리준칙으로 편입

16.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 제정 모범규준의 목적과 정의조항 정비

(1-1조, 1-2조 : 2012/10/26 제정)

- 제정된 모범규준은 금융투자회사의 매매주문 시 착오입력, 금융범죄 예방 및 임직원 금융범죄 발생 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투자자와의 건전한 거래질서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용어의 정의

-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 : CMA계좌, 증권계좌, 파생상품계좌, 종합계좌 등 계좌종류를 불문하고 고객이 자유롭게 입출금을 할 수 있는 계좌
- 비대면채널 :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는 입출금거래 방법으로서, CD·ATM거래, 폰뱅킹, 인터넷 뱅킹, HTS 이용거래, 직불카드 결제거래 등
- 금융범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형법 등을 위반하여 범한 죄
- 시스템매매에 의한 주문 : 고객 자신의 판단을 배제하고 사전에 내장된 일련의 조건에 의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종목, 매매시점 또는 매매호가에 대한 의사결정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동으로 매매주문을 내는 전산소프트웨어에 의한 매매

- 대포통장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통장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반하는 타인에게 양도·대여·판매된 통장
- CMS : 은행, 금융투자회사(증권사 등), 금융결제원이 공동 참여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CMS 이용기관이 고객이 거래하는 금융기관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거나 고객계좌로 자금을 입금할 수 있는 서비스

□ 기존 '금융투자회사의 주문착오방지를 위한 모범규준'의 내용을 신설 모범규준 상 2편 금융투자회사의 주문착오방지로 편입

(2012/10/26 제정)

- 적용범위와 기본원칙 조문화(2-1조, 2-2조)
- 주문착오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보류기준에 해당하는 주문과 경고기준에 해당하는 주문의 입력관련 내용의 조문화(2-3조)
- 적용제외 대상의 조문화(2-4조)
 - 기존 장중대량매매, 장중바스켓 매매, 시스템매매에 관하여 각주 처리된 정의부분을 한국거래소 업무규정의 용어는 준용규정으로 위임하고, 시스템매매에 의한 주문은 정의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하여 삭제
- 상품별 적용기준에 대한 기본 원칙 조문화(2-5조)
 - 가격미지정건에 대한 적용방식 제시

□ 기존 '신분증위변조 및 CMS이용 금융범죄행위방지 모범규준'의 내용을 신설 모범규준 상 3편 금융범죄행위방지로 편입

(2012/10/26 제정)

- CMS 이체한도 설정(3-1조)
- 본인 확인절차 강화(3-2조)
- 이상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3-3조)
- 고객 정보 확인(3-4조)
- 청구서류(3-5조)

- 기존 '전화금융사기 등 피해예방대책 세부방안'의 내용을 신설 모범규준 상 3편 금융범죄행위방지로 편입

(2012/10/26 제정)

- 신원확인 및 계좌개설 거절(3-6조)
- 계좌 개설요건 강화(3-7조)
- 계좌 개설 허용(3-8조)
- 비대면채널 추가 신청(3-9조)
- 양도금지 문구기재(3-10조)
- 주의문구(3-11조)
- 음성경고(3-12조)

- 기존 '금융범죄행위에 대한 고발기준 표준안'의 내용을 신설 모범규준 상 4편 임직원 금융범죄행위에 대한 고발로 편입

(2012/10/26 제정)

- 보고(4-1조)
- 고발대상(4-2조)
- 고발주체(4-3조)
- 처리결과 보고(4-4조)
- 기록·유지(4-5조)

17. 금융투자회사등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

- 모범 규준의 구성(2012/10/26 제정)

- 제1편 총칙

- 집행임원 정의 규정삭제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용어 개정을 염두
- '감사위원회' 정의 추가
- '상근감사' 정의 추가
- '감사인' 정의 추가

— 제2편 사외이사

- 총칙
- 사외이사의 선임 : 상법 제542의 8 제4항의 개정내용 반영
- 사외이사의 임기
- 사외이사의 역할 및 활동 등
-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및 보상
- 사외이사 활동의 지원
- 공시 등

— 제3편 감사위원회

- 총칙 : 상근감사관련 규정 신설
- 권한 및 업무 : 상법 제391조 2항 개정내용 반영
- 회의 : 상법 제415조의 2 제5항에서 규율
- 감사인 : 준법감시 및 리스크 관리 부서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인사 및 대우 부분 삭제,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계획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 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
- 기타

18.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모범 기준의 구성(2012/10/26 제정)

— 제1편 총칙

- 기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 제2편 유동성리스크 관리(기존의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기준을 편입)
 - 총칙
 - 유동성리스크의 인식 및 측정
 - 유동성리스크의 통제 및 완화
 - 담보관리 및 유동성 관리
- 제3편 신용거래 리스크 관리
 - 총칙
 - 신용거래 리스크관리
 - 고객별 리스크관리
 - 리스크관리 내부통제의 의의
- 제4편 연계신용거래 리스크 관리
 - 총칙
 - 연계신용 업무 취급기준
 - 연계신용 이용고객 보호
 -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 제5편 적격기관투자자 파생상품 위험한도 관리
 - 총칙
 - 적격기관투자자
 - 위험노출액 한도 관리
 - 모니터링
- 제6편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 총칙
 - 고유재산의 부동산 PF업무
 - 투자자재산의 부동산 PF업무

19. 신용거래 리스크관리 등을 위한 모범규준

- 신용거래 금지종목을 확대함(Ⅱ.2.(2) : 2012/4/1 개정·시행)
 - 기존 신용거래 보증금률을 상향조치하였던 것을 거래소의 투자주의종목 지정 시 지정일로부터 5거래일 동안 신용거래 매수를 불가능하도록 개정함

- 최저보증금률을 40%에서 45%로 상향함
(Ⅱ.2.(3) : 2012/4/1 개정·시행)
 - 신용거래유자의 리스크 관리 필요성에 따라 최저보증금률을 40%에서 45%로 강화함

- 임의처분대상 주식수량 산정방법에 있어 임의처분 요건을 구체화함
(Ⅱ.5.(4) : 2012/4/1 개정·시행)
 - 기존 담보유지비율 미달 등에서 만기 미상환, 담보유지미달, 이자·매매수수료 및 제세금의 연체 등으로 규정함

- 담보 및 보증금으로 제공되는 상장주권 등의 평가를 신설함
(Ⅱ.5.(5) : 2012/4/1 개정·시행)
 - 당일종가로 평가함으로 원칙으로 하되 명시적인 투자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대응가 등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마련함
 - 단, 전산시스템 구축기간을 고려하여 본 개정사항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함

20. 적격기관투자자 거래시스템 운영규정

□ 적격기관투자자증권거래인력의 이용자 등록 및 등록해지

(3조~4조 : 2012/4/13 개정, 5/2 시행)

- 적격기관투자자증권거래인력은 협회에 이용자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함
- 협회는 적격기관투자자가 등록해지를 요청하거나 이용자가 더 이상 적격기관투자자증권의 장외거래 또는 장외거래중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해당 등록을 해지할 수 있음

□ 적격기관투자자증권의 등록(5조 : 2012/4/13 개정, 5/2 시행)

- 적격기관투자자증권은 한국예탁결제원을 등록기관으로 하여 「공사채등록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며 발행인 또는 발행인지정 금융투자업자가 등록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 해당 등록서류에는 적격기관투자자증권 발행 관련 정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의 사본 또는 발행 결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무제표, 등록 또는 예탁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적격기관투자자증권의 보유자 현황에 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적격기관투자자증권의 거래는 등록신청서 제출일부터 1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개시함

□ 거래시스템의 운영(6조~9조 : 2012/4/13 개정, 5/2 시행)

- 거래시스템은 프리본드와 동일하게 오전 7시부터 오후 20시까지 운영됨
- 적격기관투자자는 거래시스템을 통하여 적격기관투자자증권을 매매하여야 하며 협회는 거래시스템을 통한 매매거래 내역의 청산 및 결제와 관련하여 매매거래 당사자의 이행을 보장하거나 결제대금의 지급 및 적격기관투자자증권의 인도를 보증하지 아니함

- 협회는 규정 위반 또는 거래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해가 된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적격기관투자자의 거래시스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 고지의무 등(10조~11조 : 2012/4/13 개정, 5/2 시행)

- 협회는 등록신청서, 부속서류 및 거래시스템 이용제한에 대한 내용을 공지할 수 있음
- 적격기관투자자증권의 매도자는 매매거래 의사를 확정하기 전 다음 사항을 매수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 적격기관투자자증권은 적격기관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전매할 수 없다는 사실
 - 적격기관투자자증권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발행된다는 사실

□ 자료제출 및 보고(12조~14조 : 2012/4/13 개정, 5/2 시행)

- 협회는 거래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적격기관투자자에게 거래시스템을 통한 체결결과 등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적격기관투자자는 투자판단을 위하여 적격기관투자자증권의 발행인에게 채무 및 사업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적격기관투자자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적격기관투자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적격기관투자자증권 보유현황을 익월 5일까지 협회에 보고하여야 함
 -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보고함
- 적격기관투자자 중 적격기관투자자증권을 매매 또는 중개를 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는 보고자를 지정하여 월별 매매·중개 체결내역을 익월 5일까지 협회에 보고하여야함

□ 외국 법인에 관한 특례(15조 : 2012/4/13 개정, 5/2 시행)

- 외국법인의 경우 현지의 법령이나 관행 등을 감안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함

21. 부동산 PF 리스크관리기준 표준안

□ 리스크 관리규제를 강화함(6조 4항 : 2012/4/30 개정, 5/1 시행)

- 회사로 하여금 부동산 PF 관련 투자절차, 투자한도, 자금 집행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사고예방 및 리스크관리를 위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함

□ 금융투자회사 고유재산의 부동산 PF 익스포저 한도에 대한 적용 대상을 확대함

(8조 2항 1호 : 2012/4/30 개정, 5/1 시행)

- 부동산 PF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하여 매입보장약정이행으로 취득한 부동산 PF 대출 관련 유동화증권을 포함하여 부동산 PF 익스포저 한도를 자기자본의 30% 이내로 제한함
 - 부동산 PF 대출에 부동산 PF 대출채권의 매입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자기자본 30% 이내 제한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감소로 투자금액이 자기자본의 30%를 초과하게 된 경우 이를 30%로 간주하도록 규정함
 - 또한 자기자본의 의미를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하되 자본금 증가사유 발생 시 이를 반영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 제 336조상의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겸영하는 회사는 해당 시점의 대손충당금 차감 전 대출채권 금액임을 명시함

22.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 시 신청인 제출 서류에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추가함

(10조 1항 4호, 별지 6호 : 2012/6/28 개정·시행)

-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2011.3.29 제

정, 2012.3.30 시행)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함

23.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 회사가 원화와 외화 간 환전은 물론 외화와 외화간의 환전 및 송금업무까지 대행하도록 약관에 명시

(6조 2호 : 2012/11/23 개정, 12/5 시행)

— 기존 약관이 회사가 외화증권의 매매 및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원화와 외화 간 환전만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 엔화를 보유한 고객이 미국시장에 참여하는 경우와 같이 외화증권의 매매 시 고객이 보유한 외화를 사용하여 다른 국가의 자본시장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국내 외국환거래법 상으로도 환전통화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약관은 회사의 환전 업무를 원화와 외화 간으로 축소하고 있었음

- 또한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회사는 환전 및 송금업무를 일괄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약관은 송금업무를 생략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 필요

□ 환전업무의 실질반영(6조 2호~3호 : 2012/11/23 개정, 12/5 시행)

— 환전일을 고객이 매매주문하기 전에 지정한 날(매매주문일 또는 매매주문일 이전 영업일에 한함)로 변경

- 기존 약관은 환전일을 약정일(매매주문일의 익영업일)로 한정

— 적용환율을 회사와 외국환은행간 협의·결정한 환율 또는 회사가 별도로 제시하는 환율로 확대

- 외환거래규정에 따르면 회사가 보유한 외화를 이용하여 고객의 투자 자금에 대한 환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약관은 회사가 외국환은행과 협의·결정한 환율로만 적용하도록 규정

— 환전일과 혼동되는 환전결제일 관련 내용은 삭제

- 기존 약관에는 환전일 외에 환전결제일을 규정하여 회사의 업무 및 고객의 투자판단에 혼란을 초래

□ 외화증권에 대한 예탁·보관 관련 조문정비

(7조 1항 : 2012/11/23 개정, 12/5 시행)

—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외화증권을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외국보관기관 중에 한국예탁결제원이 선임한 외국보관기관예탁을 원칙으로 함

— 외국법령 또는 관행 등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이 외국보관기관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외국보관기관 중에 회사가 직접 예탁할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하도록 함

- 기존 약관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달리 외화증권의 경우에도 국내증권과 유사하게 회사에 혼합·예탁하도록 하고 회사가 이를 회사 명의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은 외국보관기관에 집중 예탁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었음

□ 권리행사 시 비용처리절차 마련 및 조문정비

(8조 : 2012/11/23 개정, 12/5 시행)

— 각종 세금 등에 대하여 고객계좌의 예수금에서 우선 징수하고 잔액이 부족한 경우 고객에게 일정기간 내에 납부할 것을 최고

- 최고 이후에도 고객이 미납할 경우 결제불이행 시 처리방법을 규정한 기존 약관 제4조를 준용
- 기존 약관은 외화증권의 권리행사 시 발생하는 각종 세금, 연체료 및 기타 부과금 등에 대한 징수 근거 미비로 고객과의 분쟁소지가 상존하고 있었음

□ 각종 수수료 납부일 정비(11조 : 2012/11/23 개정, 12/5 시행)

- 회사의 업무현실을 반영하여 각종 수수료 납부일을 매수의 경우 매매체결일, 매도의 경우에는 “고객 또는 회사의 외화예금계정에 입금일까지”로 변경
 - 기존 약관은 각종 수수료 납부일을 매수의 경우 약정일(매매주문일의 익영업일), 매도의 경우에는 외화가 예탁원의 외화예금계정에 입금된 날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회사는 매수의 경우 매매체결일, 매도의 경우에는 회사가 실제 수수료 차감이 가능한 “고객 또는 회사의 외화예금계정에 입금된 날까지” 징수하고 있었음

24. 최종호가수익률 공시를 위한 수익률 보고 관련 기준

□ 정의규정(2조 : 2012/12/14 제정 · 시행)

- “최종호가수익률”이란 협회에 의해 지정된 보고회사가 국채, 통화안정증권 등 특정 채무증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를 거래한 최종 거래수익률 또는 호가수익률을 산술평균한 수익률

□ 수익률 보고회사 지정(3조 : 2012/12/14 제정 · 시행)

- 협회는 매 6개월마다 종류별로 실적을 감안하여 수익률 보고회사를 지정
 - 채권과 CD는 실적 상위 10개사를 지정하며, CP는 종금업무 경영 3개 은행과 실적 상위 5개사를 지정
- 실적산정기간은 상반기의 경우 직전년도 6월부터 11월까지로 하고, 하반기의 경우 직전년도 12월부터 당해년도 5월까지로 함
- 채권의 실적은 채권 장외거래(자기매매, 중개매매)실적과 일반회사채(공모) 인수실적을 각각 70%와 30%씩 반영하여 산정
 - 실적산정 시 동률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래실적이 높은 회사에 우선권 부여

- 거래실적과 인수실적이 각각 동일하여 동률이 될 경우에는 거래건수가 많은 회사에 우선권 부여
- CD의 실적은 CD 거래실적으로 함
 - 실적산정 시 동률이 발생하는 경우 거래건수가 많은 회사에 우선권 부여
 - 거래실적 및 거래건수가 동일하여 동률이 될 경우에는 신규로 발행된 91일물 CD의 거래실적이 많은 회사에 우선권 부여
- CP의 실적은 CP 거래실적으로 함
 - 이하 CD의 우선권 부여 조건과 동일
- 수익률 보고회사로 지정된 회사는 지정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채무증권 또는 CD와 관련된 업무를 중단할 예정이 아닌 한, 보고회사 지정을 거부할 수 없음

□ 수익률 보고회사의 의무(4조 : 2012/12/14 제정·시행)

- 수익률 보고회사로 지정된 회사는 지정기간 동안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익률을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회사로 지정된 기간 동안 보고업무의 연속성 및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수익률 보고회사는 수익률 보고업무와 관련하여 관리자의 업무 지도·감독 등 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 수익률 보고의 기본원칙(5조 : 2012/12/14 제정·시행)

- 채권의 경우 해당 채권의 당일 거래내역, 매수·매도 호가, 채권간 스프레드, 한국은행 기준금리, 채권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고
- CD의 경우 당일 CD의 발행 및 거래내역, 은행채 등 유사채권의 수익률, 한국은행 기준금리, 단기금리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고
- CP의 경우 당일 CP의 발행 및 거래내역, 한국은행 기준금리, 단기금리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고

□ 수익률 보고 대상 채권등(6조 : 2012/12/14 제정 · 시행)

— 수익률 보고 대상 채권

- 국채 : 국고채권(3월, 6월, 9월, 1년, 1년6월, 2년, 2년6월, 3년, 5년, 10년, 20년, 30년), 제1종 국민주택채권(5년)
- 통화안정증권 : 통화안정증권(91일, 1년, 2년)
- 특수채 : 한국전력공사채권(3월, 6월, 9월, 1년, 1년6월, 2년, 2년6월, 3년, 5년)
- 금융채 : 산업금융채권(3월, 6월, 9월, 1년, 1년6월, 2년, 2년6월, 3년, 5년)
- 회사채(AA-, 무보증) : 회사채(3월, 6월, 9월, 1년, 1년6월, 2년, 2년6월, 3년, 5년)
- 회사채(BBB-, 무보증) : 회사채(3월, 6월, 9월, 1년, 1년6월, 2년, 2년6월, 3년, 5년)
- 단, 회사채(AA-, BBB-)의 경우 공모회사채 중 협회가 제시하는 대표적인 종목군을 참조

— 수익률 보고 대상 CD

- 시중은행CD : 신용평가등급이 AAA인 시중은행이 발행한 91일 CD 발행분
- 특수은행CD :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이 발행한 91일 CD 발행분

— 수익률 보고 대상 CP

- 신용등급이 A1인 CP : CP(7일, 15일, 1월, 3월, 6월, 1년)
- 신용등급이 A2+인 CP : CP(7일, 15일, 1월, 3월, 6월, 1년)
- 신용등급이 A3+인 CP : CP(7일, 15일, 1월, 3월, 6월, 1년)

□ 지정기간 중 수익률 보고회사 변경(7조 : 2012/12/14 제정 · 시행)

— 수익률 보고회사로 지정된 회사가 이하의 사유로 수익률 보고회사로 존속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실적 차순위 회사를 보고회사로 지정할 수 있음

- 영업정지, 해당업무의 예기치 못한 중단 등으로 정상적인 수익률 보고가 곤란한 경우

- 시장상황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공정한 수익률을 보고하는 경우
 - 월 3회 이상 수익률 보고를 누락하거나 수익률 입력시한을 초과하는 경우
 - 기타 수익률 보고회사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보고기간이 1월 이내로 남거나, 기타 사유로 보고회사를 변경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고회사를 변경하지 않을 수 있음
- 수익률을 보고하지 못하는 회사가 발생하였으나, 보고회사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 당해회사의 보고수익률을 본회 수익률공시의 안정성을 감안하여 평균값으로 처리

25. 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를 위한 전자문서 관리 모범규준

- 총칙(2012/12/26 제정, 2013/1/2 시행)
- 모범규준의 목적과 적용범위 및 정의규정을 두고 있음
- 전자문서 작성(2012/12/26 제정, 2013/1/2 시행)
- 사전동의
 - 전자문서의 요건, 사전동의 및 동의내용, 보관, 확인자료 제시에 관해 규정
 -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
 - 인증정보 보관, 실명확인증표의 해상도, 대리인 확인방식에 관해 규정
 - 전자문서의 화면표시
 - 화면규격과 화면 적합성 규정
 - 전자문서에 대한 입력
 - 입력방법, 표시, 장치 저장제한 규정

- 전자서명
 - 전자서명 방법, 추가적용, 인장 해상도, 전자문서의 설명의무에 관해 규정
 - 전자문서 보관
 - 타임스탬프 및 전송 후 보관제한 규정
 - 전자문서 사후열람
 - 제공방법, 조회 및 출력, 출력표시 규정
 - 계좌개설에 따른 후속 조치
 - 보안카드 등 제공 및 거래 가능시기, 매매제한 규정
- 암호화 및 위변조 방지(2012/12/26 제정, 2013/1/2 시행)
- 전자문서 암호화 등
 - 암호화 및 보안전송 규정
 - 전자문서 위변조 방지
 - 불변경성, 시스템 제한, 무결성 확보, 생성시점, 통합생성 등, 구간 암호화 규정
- 전자문서 관리(2012/12/26 제정, 2013/1/2 시행)
- 개인정보보호
 - 정보보호 방안 수립
 - 보안 및 통제
 - 보안원칙, 통제절차 수립, 기록유지, 보안대책 수립, 보안성 심의 규정
 - 복구 및 백업
 - 전자문서 백업 등 규정

26.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관리지침

□ 등록요건 산정 시 세부기준의 명확화(3조 : 2012/12/27 제정·시행)

- 법령상 모집인의 자격요건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세부기준 명시
 - 경력기간의 산정은 협회에 등록된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되, 투자권유 대행인과 보험설계사간 경력 합산은 불가 등

□ 등록신청 서류 종류 및 제출방법의 구체화

(4조 : 2012/12/27 제정·시행)

- 등록신청서 및 등록규정에 따른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부 서류는 전산처리(경력 요건사항)로 같음

□ 등록 거부사유의 구체화(5조 : 2012/12/27 제정·시행)

- 등록규정상 거부사유에 해당되는 자(자격요건 미충족자, 등록취소 일로부터 3년 미경과자 등)
 -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타 등록기관에 신청 중인 자, 미성년자, 외국인(단, 체류자격 구분에 따라 취업활동을 제한받지 않는 경우는 제외)

□ 등록의 말소신청 시 절차의 구체화(9조 : 2012/12/27 제정·시행)

- 소속 회사 또는 모집인 본인이 직접 말소 신청 가능
 - 말소신청서, 등록증 등
 - 처리결과를 사업자에게 전산으로 통보

□ 협회의 자격요건 상실자에 대한 말소 처리

(11조 : 2012/12/27 제정·시행)

- 자격요건이 상실된 자에 대해 소속 회사에 말소신청 요구 및 말소 신청이 없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모집인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요청

기타 사항(13~16조 : 2012/12/27 제정 · 시행)

- 수수료, 기타 서식 마련 등